

2018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보고서

2018. 11.

2018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보고서

2018. 11.

※ 이 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 출 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1. 30.



연구진

연구책임자 : 송 재 옥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연 구 원 : 박 여 울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하 숙 양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 지 영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보고서 목차

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개요	1
1. 평가 개요	3
2. 추진 경과	5
3. 평가지표체계	7
4. 기초사업장 평가설명회 진행	9
5. 현장평가위원 지표교육 실시	10
I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 총평	11
1. 평가 현황	13
2. 평가 결과 총괄	14
1) 사업장 등급별 결과	14
2) 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결과	15
3) 지역별 평가 결과	17
III.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21
1.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23
2. 기초푸드뱅크 등급별 평가 결과	24
3. 기초푸드뱅크 지역별 평가 결과	25
IV.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27
1.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29
2. 기초푸드마켓 등급별 평가 결과	30
3. 기초푸드마켓 지역별 평가 결과	31
V.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33
1. 법적 기준 평가	35
1)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영역 평가	35
(1) 평가지표 1 :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35
(2) 평가지표 2 :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43
(3) 평가지표 3 : 독립매장 여부	47
2) 인력 현황 영역 평가	50
(1) 평가지표 4 : 전담직원 확보수준	50
(2) 평가지표 5 : 보조인력 활용수준	55
(3) 평가지표 6 :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0
(4) 평가지표 7 : 직원 근무여건	65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영역 평가	70
(1) 평가지표 8 :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0
(2) 평가지표 9 : FMS 활용도	76
4)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영역 평가	82
(1) 평가지표 10 :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82
(2) 평가지표 11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87
(3) 평가지표 12 : 기부자(처) 관리수준	90
(4) 평가지표 13 : 이용자 관리수준	96
(5) 평가지표 14 :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102
2. 운영성과 영역 평가	107
1)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영역 평가	107
(1) 평가지표 15 : 사업계획의 적절성	107
(2) 평가지표 16 : 예산관리 수준	112
(3) 평가지표 17 : 운영위원회 운영	116
(4) 평가지표 18 : 사업홍보의 적극성	121
(5) 평가지표 19 : 사업 교류협력도	125
2) 사업성과 평가	131
(1) 평가지표 20 :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131
(2) 평가지표 21 :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137

VI.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43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의의	145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개선방안	147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151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151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152

부록 1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표	153
부록 2 : 2018년 지역별 평가 결과	251
부록 3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현장평가 SHEET	270
부록 4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이용자 및 평가위원 만족도	284

표 목차

[표 1-2] 추진 경과	5
[표 1-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체계	7
[표 1-4] 기초사업장 평가설명회 일정	9
[표 1-5] 현장평가위원 자격 기준	10
[표 1-6] 현장평가위원 지표교육 일정	10
[표 2-1] 평가사업장 현황	13
[표 2-2] 등급별 평가 결과 개요	14
[표 2-3]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평가 결과	16
[표 2-4] 지역별 평가지표 평균 점수 결과	18
[표 3-1]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23
[표 3-2] 기초푸드뱅크 등급별 평가 결과	24
[표 3-3] 푸드뱅크 지역별 평가 결과 개요	26
[표 4-1]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29
[표 4-2] 기초푸드마켓 등급별 평가 결과	30
[표 4-3] 기초푸드마켓 지역별 평가 결과	32
[표 5-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36
[표 5-2]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36
[표 5-3]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37
[표 5-4] 차량 보유 및 차량 도색 여부 등 세부평가 결과	39
[표 5-5] 냉장·냉동시설 보유 등 세부평가 결과	41
[표 5-6]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43
[표 5-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44
[표 5-8]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44
[표 5-9] 보관창고 보유 여부 등 세부평가 결과	46
[표 5-10] 독립매장 여부 지표	47
[표 5-11] 독립매장 여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48
[표 5-12] 독립매장 여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48
[표 5-13]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50
[표 5-14]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51
[표 5-15]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52
[표 5-16] 전담직원 확보수준의 세부평가 결과	53
[표 5-17]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55
[표 5-18]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56
[표 5-19]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57

[표 5-20]	보조 인력 활용수준의 세부평가 결과	58
[표 5-2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60
[표 5-22]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61
[표 5-23]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62
[표 5-24]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의 세부평가 결과	64
[표 5-25]	직원 근무여건 지표	65
[표 5-26]	직원 근무여건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66
[표 5-27]	직원 근무여건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67
[표 5-28]	직원 근무여건의 세부평가 결과	69
[표 5-29]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70
[표 5-30]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71
[표 5-31]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72
[표 5-32]	기부식품등 위생관리의 세부평가 결과	74
[표 5-33]	FMS 활용도 지표	76
[표 5-34]	FMS 활용도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77
[표 5-35]	FMS 활용도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78
[표 5-36]	FMS 활용도 세부평가 결과	80
[표 5-37]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82
[표 5-38]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83
[표 5-39]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84
[표 5-40]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세부평가 결과	86
[표 5-41]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87
[표 5-42]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87
[표 5-43]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88
[표 5-44]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세부평가 결과	89
[표 5-45]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90
[표 5-46]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90
[표 5-47]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92
[표 5-48]	신규 발굴 기부자(처) 수	94
[표 5-49]	기부자(처) 관리수준 세부평가 결과	95
[표 5-50]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96
[표 5-51]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96
[표 5-52]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98
[표 5-53]	신규 발굴 이용자 수	100
[표 5-54]	이용자 관리수준 세부평가 결과	101
[표 5-5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102

[표 5-56]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03
[표 5-57]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04
[표 5-58]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 세부평가 결과	106
[표 5-59]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107
[표 5-60]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08
[표 5-61]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09
[표 5-62] 사업계획의 적절성 세부평가 결과	111
[표 5-63] 예산관리 수준 지표	112
[표 5-64] 예산관리 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12
[표 5-65] 예산관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13
[표 5-66] 예산관리 수준 세부평가 결과	115
[표 5-67]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116
[표 5-68]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17
[표 5-69]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18
[표 5-70]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평가 결과	120
[표 5-71]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121
[표 5-72]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21
[표 5-73]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22
[표 5-74] 사업홍보 세부평가 결과	124
[표 5-75]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125
[표 5-76]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26
[표 5-77]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27
[표 5-78] 사업 교류협력 평균 건수	129
[표 5-79] 사업 교류협력도 세부평가 결과	130
[표 5-80]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131
[표 5-81]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32
[표 5-82]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33
[표 5-83]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세부평가	135
[표 5-84]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137
[표 5-85]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138
[표 5-86]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139
[표 5-87]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세부평가	141
[표 부록4-1] 사업장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 현황	285
[표 부록4-2]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286
[표 부록4-3] 이용자 만족도 기술통계	287
[표 부록4-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기술통계	288

그림 목차

[그림 1-1] 평가추진 과정	4
[그림 1-2] 평가사업 추진체계도	4
[그림 2-1] 지역별 전체사업장 평균 점수	17
[그림 5-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38
[그림 5-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45
[그림 5-3] 독립매장 여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49
[그림 5-4]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53
[그림 5-5]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58
[그림 5-6]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63
[그림 5-7] 직원 근무여건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68
[그림 5-8]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73
[그림 5-9] FMS 활용도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79
[그림 5-10]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85
[그림 5-11]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89
[그림 5-12]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93
[그림 5-13]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99
[그림 5-1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05
[그림 5-15]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10
[그림 5-16] 예산관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14
[그림 5-17]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19
[그림 5-18]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23
[그림 5-19]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28
[그림 5-20]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34
[그림 5-21]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140

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개요

1. 평가 개요	3
2. 추진 경과	5
3. 평가지표체계	7
4. 기초사업장 평가설명회 진행	9
5. 현장평가위원 지표교육 실시	10

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개요

1. 평가 개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시행되었다.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 개선에 있다.

평가는 2017년 1월 1일 이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411개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인력 현황,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기초사업장 유형에 따라 법적 기준과 운영 성과로 구분된다.

- 법적 기준 평가지표 : 푸드뱅크 13개 지표, 푸드마켓 14개 지표
- 운영 성과 평가지표 : 푸드뱅크 7개 지표, 푸드마켓 7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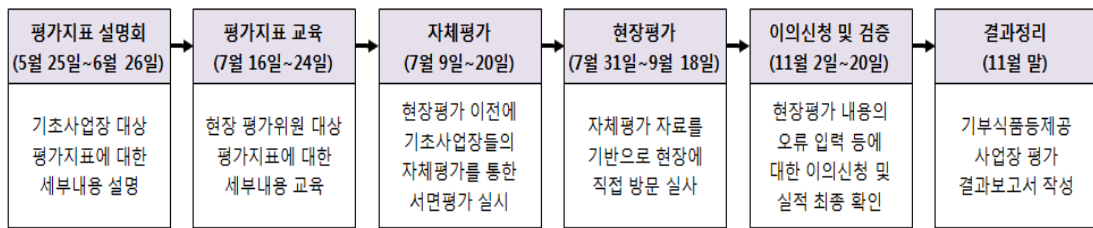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평가지표별 특성에 따라 평가대상 시점에 차이를 두었고, 평가대상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유형 1 : 평가대상 기간 연도별 평가
- * 유형 2 : 평가대상 기간 통합 평가
- * 유형 3 : 1개년(2017년) 평가
- * 유형 4 : 현장평가 시 평가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기초사업장 대상 평가지표 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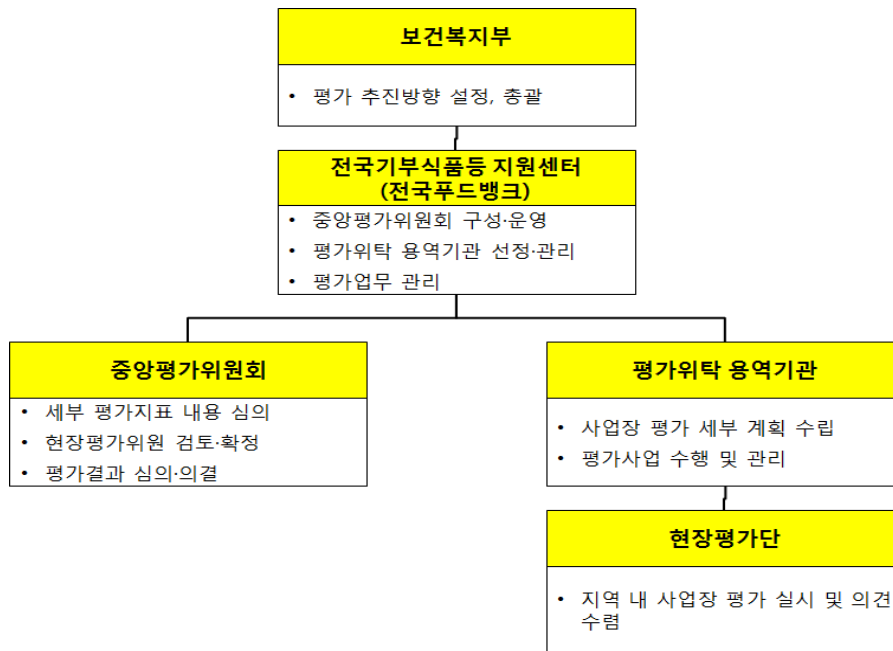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교육을 진행하였다. 현장평가에 앞서 기초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했으며, 자체서면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현장평가 자료를 입력하면서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검증했으며, 최종 확인 후 사업장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1-1] 평가추진 과정



현장평가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추천한 평가위원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진행하였으며, 사업장당 2인 1조(현장 전문가 1인, 학계 1인)로 구성·운영하였다.

[그림 1-2] 평가사업 추진체계도



2. 추진 경과

평가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5월에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앙평가위원회는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총괄 관리를 위한 위원회로 정부,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였고, ‘세부 평가지표 심의’, ‘현장평가위원 검토·확정’, ‘평가 결과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6월에 제1차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추진계획 및 통합형 사업장에 대한 평가지표 적용 등을 심의하였다. 또한, 권역별로 기초사업장들에 대한 평가지표 설명회를 5월 25일부터 6월 26일 동안 총 8회 개최하였다.

[표 1-2] 추진 경과

기간	주요 추진 사항
‘1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추진계획 수립
‘18.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 학계, 실무자 등 7인으로 구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위탁 용역기관 선정(한국정책평가연구원)
‘18.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사업장 대상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권역별 8회 : 5.25~6.26) 제1차 중앙평가위원회 개최(6.7)
‘18.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중앙평가위원회 개최(7.5) 자체평가 실시(7.6~7.20) 권역별 현장평가위원 대상 지표교육 진행(7.9~7.20)
‘18.8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평가 실시 및 취합(411개 기초사업장 : 7.31~9.28)
‘1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평가 자료 확인 및 평가 코딩 현장평가 점수에 대한 이의 신청
‘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보고(11.2)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과 통보(11.22) 코딩 최종 확정 제3차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및 최종보고(11.26) 최종보고서 제출(11.30)

7월에는 제2차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 사업장 평가 대상사업장 및 현장평가위원을 확정하였고, '서울지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지표 적용'을 심의하였다. 자체평가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현장평가위원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표교육을 진행하였다. 현장평가는 7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9월 18일 제주지역을 마지막으로 411개 기초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였고 9월 28일까지 평가를 모두 취합하였다. 10월에는 평가내용을 코딩하고 평가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중간보고, 이의신청 확인 및 코딩을 최종으로 확정하였다. 11월 16일에 제3차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3. 평가지표체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평가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를 적용·평가하였다. 평가지표체계는 사업장 신고 및 운영 형태에 따라 4개 유형(푸드뱅크 당연신고사업장, 푸드뱅크 임의신고사업장, 푸드마켓 당연신고사업장, 푸드마켓 임의신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며,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평가지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체계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평가지표	기초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7	7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6	6	6
			독립매장 유무	-	-	3	3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6+(1)	6+(1)	6+(1)
			보조인력 활용수준	4+(1)	4+(1)	4+(1)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6+(1)	6+(1)	6+(1)
			직원의 근무여건	5	5	5	5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	7	7	7
			FMS 활용도	5	5	4	4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 배분의 적절성	7	7	7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6	6	6	6
			기부자(처) 관리수준	5	5	4	4
			이용자 관리수준	5	5	4	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6	6	6
	법적기준 가중치 소계			75+(3)	75+(3)	75+(3)	75+(3)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3	3	3	3
			예산관리 수준	3	3	3	3
			운영위원회 운영	3	3	3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3	3	3	3
	사업교류 협력도		3	3	3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5	5	5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5	5	5	5
운영성과 가중치 소계			25	25	25	25	
지표수 계			20	20	21	21	
가중치 총계			100+(3)				

* () 안의 수치는 가산점을 의미함.

푸드마켓은 독립매장 유무 지표가 포함되어 푸드뱅크의 지표 수(20개)보다 1개가 많은 21개 지표로 구성, 대신 푸드마켓은 'FMS 활용도', '기부자(처) 관리수준', '이용자 관리수준' 3개 지표의 가중치가 푸드뱅크에 비해 1점씩 낮다.

그리고 '전담직원 확보수준', '보조인력 확보수준',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3개 지표에 대해서는 가산점 1점씩 주어져 총 3점의 가산점이 부여되어, 가산점을 포함하면 103점이 최고 점수이나,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며, 가산점을 포함한 103점을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0\text{점으로 환산 점수} = \text{가산점을 포함한 평가점수} \times (100/103)$$

4. 기초사업장 평가설명회 진행

기초사업장 평가설명회는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권역별로 8회에 걸쳐 개최·진행하였다. 자체교육을 진행한 충북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광역의 기초사업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표 1-4] 기초사업장 평가설명회 일정

연번	푸드뱅크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1	서울광역푸드뱅크	6.22(금) 14시~	서울시청 시민홀워크숍룸 2호(서울시청 지하2층)
2	부산광역푸드뱅크	6.12(화) 13시~	경상남도 광역푸드뱅크 신관 강당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272 (구암2동 31번지)
3	대구광역푸드뱅크		
4	경북광역푸드뱅크		
5	경남광역푸드뱅크		
6	인천광역푸드뱅크	6.7(목) 14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7	경기광역푸드뱅크	6.15(금) 13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8	울산광역푸드뱅크	6.26(화) 14시~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9	대전광역푸드뱅크	5.31(목) 13시~	대전시사회복지회관 9층 대회의실
15	세종광역푸드뱅크		
10	강원강역푸드뱅크	6.5(화) 13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체험연수동 소회의실1
11	광주광역푸드뱅크	5.25(금) 9시~	제1차 권역별 워크숍 통해 진행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
12	전북광역푸드뱅크		
13	전남광역푸드뱅크		
14	제주광역푸드뱅크		
16	충북광역푸드뱅크	자체교육	충북광역푸드뱅크 진행
17	충남광역푸드뱅크	자체교육	충남광역푸드뱅크 진행

5. 현장평가위원 지표교육 실시

현장평가위원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현장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지역 사업장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현장 평가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5] 현장평가위원 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고, '18.5.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다만, 현재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의 운영주체 등 관련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현장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중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천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18.5.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다만, 현재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의 운영주체 등 관련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광역별로 선정된 현장평가위원 대상으로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표교육을 권역별로 7회 실시하였다. 현장평가위원 지표교육을 통해 평가지표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 및 현장평가 시트 작성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표 1-6] 현장평가위원 지표교육 일정

연번	교육일시	해당지역	교육장소	주소
1	7.16(월) 오후 2시	경기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율전동 285-2번지)
2	7.16(월) 오후 2시	충북/충남/ 세종/대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9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 대림빌딩
3	7.17(화) 오전 9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1층 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1112-1)
4	7.24(화) 오후 1시 30분	강원	강원도청 별관 1층 전시실내 회의실	강원 춘천시 중앙로1
5	7.18(수) 오후 2시	서울/인천	서울광역시푸드뱅크 1층 회의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6	7.18(수) 오후 2시	전북/전남/광주	광주사회복지회관 회의실(지하1층)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40 광주사회복지회관
7	7.19(목) 오후 2시	울산/부산/경남/ 경북/대구	대구 하은빌리지 지하 강당	대구 남구 대덕로 181 하은빌리지

I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 총평

1. 평가 현황	13
2. 평가 결과 총괄	14

I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 총평

1. 평가 현황

전국적으로 신고·운영하고 있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중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411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대상 사업장 411개소 중 푸드뱅크가 288개소(70.1%), 푸드마켓이 123개소(29.9%)였으며, 288개소 푸드뱅크 가운데 당연사업장이 122개소, 임의사업장이 166개소였다. 123개소 푸드마켓 가운데 당연사업장이 62개소, 임의사업장이 61개소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75개소(18.2%)로 가장 많았고, 서울 57개소(13.9%), 부산 28개소(6.8%), 전남 26개소(6.3%), 인천 25개소(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개소)이었다. 지역별 및 사업장 유형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평가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푸드뱅크			푸드마켓		
			소계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411	100%	288	122	166	123	62	61
서울	57	13.9%	27	25	2	30	28	2
부산	28	6.8%	16	1	15	12	2	10
대구	20	4.9%	13	4	9	7	2	5
인천	25	6.1%	11	10	1	14	4	10
광주	18	4.4%	15	9	6	3	0	3
대전	15	3.6%	7	0	7	8	6	2
울산	8	1.9%	7	4	3	1	0	1
세종	2	0.5%	1	1	0	1	1	0
경기	75	18.2%	57	35	22	18	12	6
강원	17	4.1%	16	6	10	1	0	1
충북	28	6.8%	23	7	16	5	0	5
충남	24	5.8%	18	3	15	6	3	3
전북	20	4.9%	15	5	10	5	2	3
전남	26	6.3%	23	4	19	3	0	3
경북	22	5.4%	19	2	17	3	1	2
경남	22	5.4%	18	4	14	4	0	4
제주	4	1.0%	2	2	0	2	1	1

2. 평가 결과 총괄

1) 사업장 등급별 결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점수는 가산점 3점을 포함하여 103점이 만점이지만, 최종적으로는 103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최종점으로 하였다. 우선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A(90점 이상), B(80점 이상~90점 미만), C(70점 이상~80점 미만), D(60점 이상~70점 미만), E(60점 미만)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총 411개 평가대상 사업장 중 등급별로는 A등급 117개소(28.5%), B등급 164개소(39.9%), C등급 70개소(17.0%), D등급 27개소(6.6%), E등급 33개소(8.0%)로 나타났다.

[표 2-2] 등급별 평가 결과 개요

구분	등급 구간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0점 이상 ~80점 미만		D 60점 이상 ~70점 미만		E 60점 미만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총계(411)		117	28.5	164	39.9	70	17.0	27	6.6	33	8.0
푸드뱅크	전체(288)	54	18.8	116	40.3	61	21.2	25	8.7	32	11.1
	당연(122)	29	23.8	65	53.3	15	12.3	7	5.7	6	4.9
	임의(166)	25	15.1	51	30.7	46	27.7	18	10.8	26	15.7
푸드마켓	전체(123)	63	51.2	48	39.0	9	7.3	2	1.6	1	0.8
	당연(62)	30	48.4	28	45.2	3	4.8	1	1.6	0	0.0
	임의(61)	33	54.1	20	32.8	6	9.8	1	1.6	1	1.6

푸드뱅크 당연사업장 122개소 가운데 A등급은 29개소(23.8%), B등급은 65개소(53.3%), C등급은 15개소(12.3%), D등급은 7개소(5.7%), E등급은 6개소(4.9%)였다. 푸드뱅크 임의사업장 166개소 가운데 A등급은 25개소(15.1%), B등급은 51개소(30.7%), C등급은 46개소(27.7%), D등급은 18개소(10.8%), E등급은 26개소(15.7%)의 결과를 보였다. 특히 전체 411개소 사업장 중 E등급을 받은 33개소 가운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8.8%에 달했다.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62개소 가운데 A등급은 30개소(48.4%), B등급은 28개소(45.2%), C등급은 3개소(4.8%), D등급은 1개소(1.6%), E등급은 없었다. 푸드마켓 임의사업장 61개소 가운데 A등급은 33개소(54.1%), B등급은 20개소(32.8%), C등급은 6개소(9.8%), D등급은 1개소(1.6%), E등급은 1개소(1.6%)의 결과를 나타냈다.

2) 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결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신고기준과 법적 기준은 선행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한 등급 구분에서도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과 미충족 사업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법적 신고기준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한 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사업자 신고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신고기준 >

* 당연신고 사업자

- 신고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 신고기준 : ①보관창고(16.5㎡이상), ②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및 온도계 설치, ③냉장(냉동)시설로 된 적재고(1,000리터 이상) 및 온도계 설치, ④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 임의신고 사업자

- 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신고기준 : ①보관창고 ②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및 온도계 설치, ③냉장(냉동)시설로 된 적재고 및 온도계 설치

신고기준을 포함한 법적 기준 충족 항목은 차량, 냉장·냉동시설, 보관창고, 전담직원, 보조인력, 직원교육, 80%이상 배분, 매주 3회 이상 배분, 매주 60인 이상 배분, 무상제공으로 총 10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1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충족 사업장은 37개소(9.0%)이었다.

[표 2-3]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평가 결과

구분			등급 구간										
			A		B		C		D		E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총계(411)			117	28.5	164	39.9	70	17.0	27	6.6	33	8.0	
법적 기준	충족	계(37)		27	73.0	9	24.3			1	2.7		
		푸드뱅크	전체(14)	7	50.0	6	42.9			1	7.1		
			당연(10)	4	40.0	6	60.0						
			임의(4)	3	75.0					1	25.0		
		푸드마켓	전체(23)	20	87.0	3	13.0						
			당연(22)	19	86.4	3	13.6						
	임의(1)		1	100.0									
	미충족	계(374)		90	24.1	155	41.4	70	18.7	26	7.0	33	8.8
		푸드뱅크	전체(274)	47	17.2	110	40.1	61	22.3	24	8.8	32	11.7
			당연(112)	25	22.3	59	52.7	15	13.4	7	6.3	6	5.4
임의(162)			22	13.6	51	31.5	46	28.4	17	10.5	26	16.0	
푸드마켓		전체(100)	43	43.0	45	45.0	9	9.0	2	2.0	1	1.0	
		당연(40)	11	27.5	25	62.5	3	7.5	1	2.5			
	임의(60)	32	53.3	20	33.3	6	10.0	1	1.7	1	1.7		

법적 기준을 충족한 37개소 가운데 푸드뱅크는 14개소(37.8%), 푸드마켓은 23개소(62.2%)였으며, A등급은 27개소(73.0%), B등급은 9개소(24.3%), D등급 1개소(2.7%)의 결과를 보였다. 법적 기준을 충족한 14개 푸드뱅크 가운데 당연사업장은 10개소, 임의사업장은 4개소였고, 법적 기준을 충족한 23개 푸드마켓 가운데 당연사업장은 22개소, 임의사업장은 1개소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도 60점대의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1개소가 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62.01점을 받은 사업장(경기 1개소)은 법적 기준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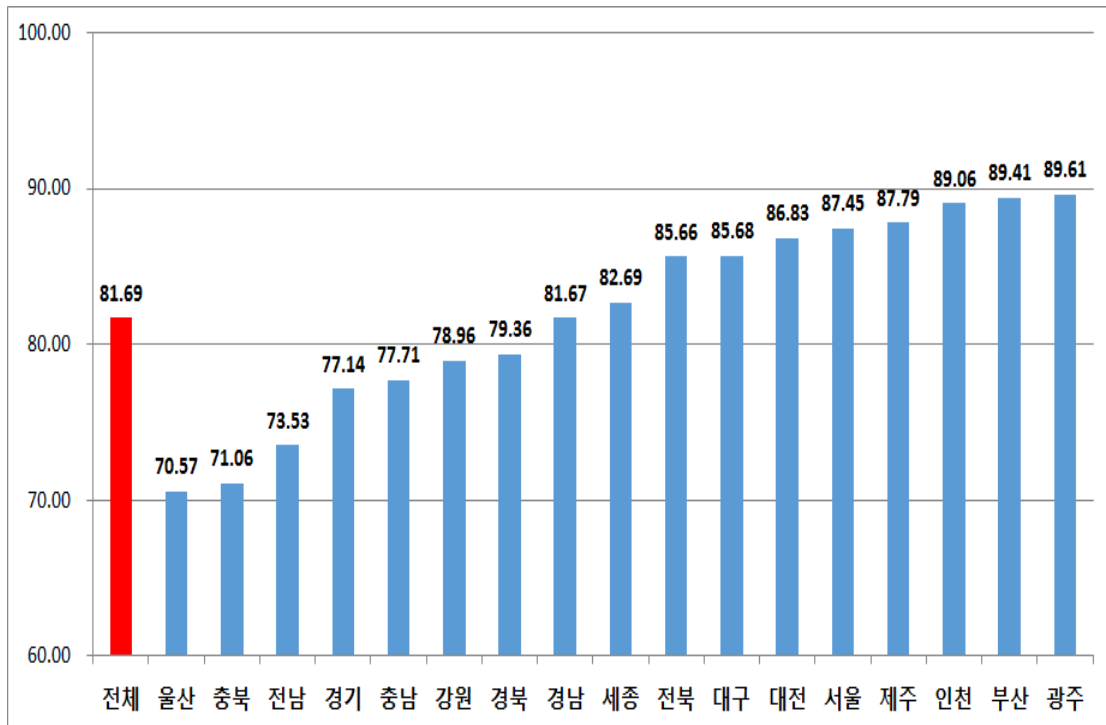
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근무여건, 이용자 관리수준,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 등의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은 모두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3) 지역별 평가 결과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 점수는 81.69점이며, 평균 점수 이상의 광역은 9개 광역이며, 8개 광역이 평균 점수 미만의 결과를 보였다. 전체사업장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광역은 광주(89.61점)였으며, 부산(89.41점), 인천(89.06점), 제주(87.79점), 서울(87.45점), 대전(86.83점), 대구(85.68점), 전북(85.66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곳은 울산(70.57점)이었다.

[그림 2-1] 지역별 전체사업장 평균 점수

(단위 : 점)



[표 2-4] 지역별 평가지표 평균 점수 결과

(단위 : 점)

지표	가중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6.62	1.15	6.87	0.39	6.85	0.67	6.90	0.35	7.00	0.00	7.00	0.00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5.34	1.38	5.96	0.19	5.98	0.11	5.90	0.20	6.00	0.00	6.00	0.00
독립매장 여부(푸드마켓만 해당)	3	3.00	0.00	3.00	0.00	3.00	0.00	2.79	0.80	3.00	0.00	3.00	0.00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6.40	1.00	6.14	1.30	5.92	0.99	6.43	0.52	6.50	0.51	5.33	2.79
보조인력 확보수준	4+(1)	4.57	1.14	4.02	1.16	3.48	1.69	4.63	0.82	4.44	0.78	4.17	1.16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6.74	1.30	7.00	0.00	6.71	0.67	6.83	0.60	7.00	0.00	6.58	1.05
직원의 근무여건	5	4.75	0.97	4.57	0.80	4.60	1.18	4.76	0.71	4.75	0.77	3.77	1.50
기부식품 위생관리	7	6.21	0.95	6.95	0.26	6.37	0.71	7.00	0.00	7.00	0.00	6.44	0.71
FMS 활용도(푸드뱅크)	5	4.70	1.10	4.81	0.75	4.85	0.55	5.00	0.00	5.00	0.00	4.79	0.57
FMS 활용도(푸드마켓)	4	3.92	0.30	4.00	0.00	4.00	0.00	4.00	0.00	4.00	0.00	4.00	0.00
기부식품 배분의 적절성	7	5.37	1.32	5.31	0.75	4.99	0.86	5.25	0.51	5.93	0.88	5.72	0.80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6	6.00	0.00	6.00	0.00	6.00	0.00	5.76	1.20	6.00	0.00	6.00	0.00
기부자(처) 관리수준(푸드뱅크)	5	4.42	1.21	4.14	1.65	4.65	0.90	4.73	0.52	5.00	0.00	4.29	1.15
기부자(처) 관리수준(푸드마켓)	4	3.78	0.70	3.80	0.69	4.00	0.00	4.00	0.00	4.00	0.00	4.00	0.00
이용자 관리수준(푸드뱅크)	5	4.47	1.21	4.53	1.11	5.00	0.00	4.64	0.63	5.00	0.00	4.64	0.94
이용자 관리수준(푸드마켓)	4	3.94	0.22	4.00	0.00	4.00	0.00	3.88	0.36	4.00	0.00	4.00	0.00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5.40	1.40	5.57	1.00	5.60	0.99	6.00	0.00	6.00	0.00	5.60	1.06
사업계획의 적절성	3	2.61	0.65	2.96	0.18	3.00	0.00	2.72	0.59	3.00	0.00	2.79	0.55
예산관리 수준	3	2.88	0.56	2.97	0.17	3.00	0.00	2.93	0.36	3.00	0.00	2.88	0.46
운영위원회 운영	3	2.50	0.83	2.73	0.74	2.83	0.30	2.69	0.69	3.00	0.00	2.93	0.20
사업홍보의 적극성	3	2.74	0.72	2.49	0.84	2.81	0.59	2.73	0.61	3.00	0.00	2.75	0.67
사업교류 협력도	3	1.32	0.82	1.85	0.87	1.11	0.89	1.52	0.75	0.97	0.43	1.35	0.89
기부식품 접수실적	5	3.17	0.98	3.18	1.21	2.04	0.88	2.22	1.06	1.84	0.72	2.77	1.04
기부식품 배분실적	5	3.30	0.97	3.47	0.77	2.31	0.80	2.92	0.91	1.87	0.42	2.95	1.01
합계	100+(3)	90.07	13.64	92.09	7.18	88.25	7.50	91.73	5.66	92.30	1.84	89.44	9.69
백점 환산 점수		87.45	13.24	89.41	6.97	85.68	7.28	89.06	5.50	89.61	1.78	86.83	9.41

[표 2-4] 지역별 평가지표 평균 점수 결과(계속)

(단위 : 점)

지표	가중치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5.31	2.23	7.00	0.00	6.21	1.37	6.32	1.16	6.79	0.56	6.70	1.01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4.69	2.07	6.00	0.00	5.31	1.34	5.88	0.33	5.14	1.80	5.46	1.69
독립매장 여부(푸드마켓만 해당)	3	3.00	0.00	3.00	0.00	2.83	0.71	3.00	0.00	3.00	0.00	3.00	0.00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5.63	1.46	6.00	0.00	5.49	2.23	6.01	1.71	5.82	2.45	5.99	1.99
보조인력 확보수준	4+(1)	3.24	1.98	5.00	0.00	2.89	1.87	3.72	1.77	2.57	1.95	4.19	1.46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4.76	0.82	6.67	0.00	5.70	2.04	6.26	1.18	6.47	0.47	5.70	0.90
직원의 근무여건	5	2.81	2.14	5.00	0.00	3.20	1.76	4.09	1.49	2.61	1.54	3.42	1.34
기부식품 위생관리	7	5.08	1.66	5.60	0.00	6.10	1.37	6.09	1.21	5.15	1.53	5.95	1.32
FMS 활용도(푸드뱅크)	5	4.93	0.19	5.00	0.00	4.15	1.50	4.56	1.28	3.93	1.73	4.53	1.33
FMS 활용도(푸드마켓)	4	3.60	0.00	4.00	0.00	3.91	0.29	4.00	0.00	2.96	1.73	3.33	1.63
기부식품 배분의 적절성	7	4.59	0.91	5.25	0.00	5.30	1.32	4.53	0.89	4.25	1.46	4.67	1.33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6	6.00	0.00	6.00	0.00	5.92	0.69	6.00	0.00	6.00	0.00	6.00	0.00
기부자(처) 관리수준(푸드뱅크)	5	3.12	1.38	5.00	0.00	3.52	1.72	2.95	2.13	2.85	1.81	3.25	1.76
기부자(처) 관리수준(푸드마켓)	4	4.00	0.00	4.00	0.00	3.39	0.84	4.00	0.00	2.80	1.20	2.65	1.13
이용자 관리수준(푸드뱅크)	5	3.99	1.40	5.00	0.00	4.12	1.21	4.38	0.76	3.79	1.19	3.91	1.53
이용자 관리수준(푸드마켓)	4	4.00	0.00	4.00	0.00	3.80	0.66	4.00	0.00	3.60	0.55	3.67	0.52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5.25	1.39	3.00	0.00	5.09	1.66	5.53	1.50	3.71	1.67	5.04	1.55
사업계획의 적절성	3	2.49	0.96	2.10	0.00	2.49	0.79	2.26	0.84	2.10	1.02	2.06	0.98
예산관리 수준	3	2.29	1.13	3.00	0.00	2.54	0.93	2.88	0.35	2.55	0.80	2.58	0.86
운영위원회 운영	3	1.43	1.17	3.00	0.00	2.35	0.93	1.79	1.36	1.80	1.23	1.91	1.13
사업홍보의 적극성	3	1.50	1.45	3.00	0.00	2.34	0.99	2.21	1.04	1.85	1.15	2.41	0.96
사업교류 협력도	3	0.47	0.81	0.42	0.00	1.13	0.81	0.54	0.42	0.81	0.53	0.46	0.50
기부식품 접수실적	5	2.48	0.89	1.40	0.28	2.60	1.02	2.36	0.91	2.06	1.34	2.74	1.00
기부식품 배분실적	5	2.32	0.74	1.73	0.85	2.49	0.92	2.80	0.63	2.61	0.94	2.83	1.03
합계	100+(3)	72.69	15.78	85.17	0.57	79.46	17.45	81.33	11.53	73.19	13.90	80.04	11.18
백점 환산 점수		70.57	15.32	82.69	0.54	77.14	16.94	78.96	11.20	71.06	13.49	77.71	10.86

[표 2-4] 지역별 평가지표 평균 점수 결과(계속)

(단위 : 점)

지표	가중치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6.94	0.28	6.65	0.72	6.70	0.55	6.65	0.86	7.00	0.00	6.63	0.98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5.83	0.29	5.71	0.51	5.89	0.34	5.93	0.18	6.00	0.00	5.62	1.08
독립매장 여부(푸드마켓만 해당)	3	3.00	0.00	3.00	0.00	2.00	1.73	3.00	0.00	3.00	0.00	2.93	0.46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6.25	0.63	5.43	2.36	6.13	0.81	6.34	1.01	6.25	0.50	5.98	1.69
보조인력 확보수준	4+(1)	4.02	1.26	1.71	2.04	3.60	1.95	3.23	2.20	4.45	1.11	3.60	1.78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6.41	1.55	5.76	1.47	5.10	1.42	6.33	1.28	7.00	0.00	6.25	1.40
직원의 근무여건	5	4.48	0.73	3.25	1.75	3.82	1.37	4.11	1.00	4.63	0.75	3.93	1.50
기부식품 위생관리	7	6.16	0.70	5.98	0.93	5.92	0.86	6.24	0.83	7.00	0.00	6.20	1.12
FMS 활용도(푸드뱅크)	5	5.00	0.00	4.43	1.12	4.87	0.47	4.92	0.35	4.75	0.35	4.58	1.12
FMS 활용도(푸드마켓)	4	3.92	0.18	3.87	0.23	3.60	0.69	4.00	0.00	4.00	0.00	3.87	0.56
기부식품 배분의 적절성	7	5.25	0.00	4.71	0.82	4.69	1.36	5.01	0.82	5.69	0.88	5.10	1.15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6	6.00	0.00	6.00	0.00	6.00	0.00	6.00	0.00	6.00	0.00	5.97	0.42
기부자(처) 관리수준(푸드뱅크)	5	4.29	0.98	2.79	1.67	3.72	1.34	3.80	1.62	3.50	2.12	3.74	1.62
기부자(처) 관리수준(푸드마켓)	4	3.84	0.36	3.20	1.39	4.00	0.00	3.70	0.60	3.40	0.85	3.68	0.74
이용자 관리수준(푸드뱅크)	5	4.42	0.95	4.03	0.90	4.23	0.88	4.24	1.32	4.59	0.59	4.29	1.10
이용자 관리수준(푸드마켓)	4	3.93	0.15	3.78	0.39	4.00	0.00	3.75	0.50	4.00	0.00	3.89	0.36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4.60	1.60	4.92	1.38	4.73	1.45	5.68	0.84	5.50	1.00	5.20	1.44
사업계획의 적절성	3	2.64	0.54	2.27	0.63	2.74	0.52	2.64	0.64	3.00	0.00	2.57	0.72
예산관리 수준	3	2.96	0.20	2.88	0.33	2.86	0.64	2.61	0.82	3.00	0.00	2.78	0.65
운영위원회 운영	3	2.43	0.75	1.67	0.90	2.20	1.09	2.64	0.76	2.81	0.38	2.36	0.96
사업홍보의 적극성	3	2.66	0.71	2.19	0.82	2.83	0.51	2.42	0.89	2.81	0.38	2.49	0.89
사업교류 협력도	3	0.98	0.70	0.51	0.30	0.84	0.32	0.22	0.30	0.86	0.57	1.01	0.79
기부식품 접수실적	5	3.54	0.84	2.19	0.91	2.39	1.09	2.20	1.02	2.02	0.80	2.58	1.10
기부식품 배분실적	5	3.13	0.83	2.33	0.89	2.36	0.72	2.66	0.87	2.80	1.36	2.74	0.96
합계	100+(3)	88.22	6.52	75.73	11.32	81.74	9.84	84.13	9.92	90.42	6.93	84.14	13.43
백점 환산 점수		85.66	6.33	73.53	10.99	79.36	9.55	81.68	9.63	87.79	6.72	81.69	13.04

III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1.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23
2. 기초푸드뱅크 등급별 평가 결과	24
3. 기초푸드뱅크 지역별 평가 결과	25

Ⅲ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1.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기초푸드뱅크는 총 288개소로 평균 점수는 78.80점으로 나타났다. 당연사업장 122개소의 평균 점수는 83.68점이고, 임의사업장 166개소의 평균 점수는 75.21점으로 당연사업장이 임의사업장보다 8.47점 높았다.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 14개소의 평균 점수는 88.64점이고, 법적 기준 미충족 사업장 274개소의 평균 점수는 78.30점으로, 충족 사업장이 미충족 사업장보다 10.35점 높았다.

[표 3-1] 기초푸드뱅크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푸드뱅크 전체	법적 기준 충족	14	62.01	96.73	88.64	7.9466
	법적 기준 미충족	274	12.38	95.53	78.30	14.1418
	계	288	12.38	96.73	78.80	14.0735
기초푸드뱅크 당연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10	88.22	91.49	89.86	1.1066
	법적 기준 미충족	112	55.94	95.37	83.13	9.2212
	계	122	55.94	95.37	83.68	9.0293
기초푸드뱅크 임의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4	62.01	96.73	85.60	15.8979
	법적 기준 미충족	162	12.38	95.53	74.95	15.9062
	계	166	12.38	96.73	75.21	15.9422

당연사업장은 122개소로 평균 점수는 83.68점으로 나타났다. 당연사업장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10개소로 평균 점수는 89.86점이었고, 미충족 사업장은 112개소로 평균 점수는 83.13점이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미충족 사업장보다 평균 점수에서 6.73점 높았다.

임의사업장은 166개소로 평균 점수는 75.21점으로 나타났다. 임의사업장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4개소로 평균 점수는 85.60점이었고, 미충족 사업장은 162개소로 평균 점수는 74.95점이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미충족 사업장보다 평균 점수에서 10.65점 높았다.

2. 기초푸드뱅크 등급별 평가 결과

기초푸드뱅크 288개소 중 A등급은 54개소, B등급은 116개소, C등급 61개소, D등급 25개소, E등급 32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B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C등급, A등급, E등급, D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충족 사업장 14개소 중 A등급은 7개소, B등급은 6개소, D등급은 1개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미충족 사업장 274개소 중 A등급은 47개소, B등급은 110개소, C등급은 61개소, D등급은 24개소, E등급은 32개소로 나타났다.

[표 3-2] 기초푸드뱅크 등급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장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D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E등급 (60점 미만)	평균
기초푸드뱅크 전체	법적 기준 충족	14	7	6	0	1	0	88.64
	법적 기준 미충족	274	47	110	61	24	32	78.30
	계	288	54	116	61	25	32	78.80
기초푸드뱅크 당연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10	4	6	0	0	0	89.86
	법적 기준 미충족	112	25	59	15	7	6	83.13
	계	122	29	65	15	7	6	83.68
기초푸드뱅크 임의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4	3	0	0	1	0	85.60
	법적 기준 미충족	162	22	51	46	17	26	74.95
	계	166	25	51	46	18	26	75.21

당연사업장은 122개소로 A등급은 29개소, B등급은 65개소, C등급은 15개소, D등급은 7개소, E등급은 6개소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족 사업장 10개소 중 A등급은 4개소, B등급은 6개소이며, 미충족 사업장 112개소 중 A등급은 25개소, B등급은 59개소, C등급은 15개소, D등급은 7개소, E등급은 6개소로 나타났다.

임의사업장은 166개소로 A등급은 25개소, B등급은 51개소, C등급은 46개소, D등급은 18개소, E등급은 26개소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기

준으로 살펴보면, 총족 사업장 4개소 중 A등급은 3개소, D등급은 1개소이며, 미총족 사업장 162개소 중 A등급은 22개소, B등급은 51개소, C등급은 46개소, D등급은 17개소, E등급은 26개소로 나타났다.

3. 기초푸드뱅크 지역별 평가 결과

17개 지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점수는 78.80점이었으며,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89.35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68.61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가 전체 지역별 평균 이상인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광주(89.35점), 부산(87.12점), 인천(86.84점), 전북(84.39점), 대구(84.16점), 서울(83.86점), 세종(83.07점), 제주(82.70점), 대전(81.33점), 경남(80.25점) 순이며, 평균 미만인 지역은 7개 지역으로 강원(78.24점), 경북(78.04점), 충남(76.37점), 경기(75.02점), 전남(71.72점), 충북(69.69점), 울산(68.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 총족 여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은 법적 기준 총족 1개소(96.73점), 미총족 15개소(86.48점), 그리고 광주지역은 법적 기준 총족 5개소(89.81점), 미총족 10개소(89.12점)로 확인되었으며, 경기지역은 법적 기준 총족 8개소(86.90점), 미총족 49개소(73.08점)로 나타났다.

3개 지역을 제외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은 법적 기준 총족 기초푸드뱅크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3-3] 푸드뱅크 지역별 평가 결과 개요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국	전체	288	12.38	96.73	78.80	14.0735
	법적 기준 충족	14	62.01	96.73	88.64	7.9466
	법적 기준 미충족	274	12.38	95.53	78.30	14.1418
서울	전체	27	18.64	95.37	83.86	18.1522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27	18.64	95.37	83.86	18.1522
부산	전체	16	61.78	96.73	87.12	8.4204
	법적 기준 충족	1	96.73	96.73	96.73	-
	법적 기준 미충족	15	61.78	95.45	86.48	8.3024
대구	전체	13	61.04	94.68	84.16	8.3217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3	61.04	94.68	84.16	8.3217
인천	전체	11	67.78	92.48	86.84	7.2228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1	67.78	92.48	86.84	7.2228
광주	전체	15	85.63	93.48	89.35	1.8252
	법적 기준 충족	5	88.54	91.13	89.81	1.0860
	법적 기준 미충족	10	85.63	93.48	89.12	2.1169
대전	전체	7	56.84	90.84	81.33	11.6753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7	56.84	90.84	81.33	11.6753
울산	전체	7	45.70	84.76	68.61	15.4251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7	45.70	84.76	68.61	15.4251
세종	전체	1	83.07	83.07	83.07	-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	83.07	83.07	83.07	-
경기	전체	57	12.38	92.36	75.02	18.2518
	법적 기준 충족	8	62.01	92.07	86.90	10.1391
	법적 기준 미충족	49	12.38	92.36	73.08	18.6095
강원	전체	16	51.71	90.47	78.24	11.1408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6	51.71	90.47	78.24	11.1408
충북	전체	23	33.54	87.20	69.69	14.3281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23	33.54	87.20	69.69	14.3281
충남	전체	18	47.69	92.82	76.37	12.0138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8	47.69	92.82	76.37	12.0138
전북	전체	15	70.60	95.53	84.39	6.6617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5	70.60	95.53	84.39	6.6617
전남	전체	23	55.10	89.81	71.72	10.0199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23	55.10	89.81	71.72	10.0199
경북	전체	19	54.97	90.21	78.04	9.4700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9	54.97	90.21	78.04	9.4700
경남	전체	18	56.10	91.63	80.25	10.0773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8	56.10	91.63	80.25	10.0773
제주	전체	2	78.69	86.71	82.70	5.6710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2	78.69	86.71	82.70	5.6710

IV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1.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29
2. 기초푸드마켓 등급별 평가 결과	30
3. 기초푸드마켓 지역별 평가 결과	31

IV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1.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기초푸드마켓은 총 123개소로 평균 점수는 88.46점으로 나타났다. 당연사업장 62개소의 평균 점수는 88.90점이고, 임의사업장 61개소의 평균 점수는 88.02점으로 당연사업장이 임의사업장보다 0.88점 높았다.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개소 사업장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23개소로 최소값 80.68점, 최대값 95.16점, 평균 92.12점으로 확인되었다. 법적 기준 미충족 사업장은 100개소로 최소값 54.62점, 최대값 96.33점으로 평균 87.62점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이 미충족 사업장보다 4.50점 높았다.

[표 4-1] 기초푸드마켓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푸드마켓 전체	법적 기준 충족	23	80.68	95.16	92.12	3.2824
	법적 기준 미충족	100	54.62	96.33	87.62	6.5407
	계	123	54.62	96.33	88.46	6.3049
기초푸드마켓 당연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22	80.68	95.16	92.12	3.3594
	법적 기준 미충족	40	65.52	95.39	87.13	5.4729
	계	62	65.52	95.39	88.90	5.3692
기초푸드마켓 임의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1	91.96	91.96	91.96	-
	법적 기준 미충족	60	54.62	96.33	87.95	7.1912
	계	61	54.62	96.33	88.02	7.1495

당연사업장은 62개소로 평균 점수는 88.90점으로 나타났다. 당연사업장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22개소로 평균 점수는 92.12점이었고, 미충족 사업장은 40개소로 평균 점수는 87.13점이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미충족 사업장보다 평균 점수에서 4.99점 높았다.

임의사업장은 61개소로 평균 점수는 88.02점으로 나타났다. 임의사업장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1개소로 91.96점이었고, 미충족 사업장은 60개소로 평균 점수는 87.95점이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미충족 사업장보다 평균 점수에서 4.01점 높았다.

2. 기초푸드마켓 등급별 평가 결과

기초푸드마켓 평가대상 사업장 123개 중 A등급은 63개소(51.2%), B등급은 48개소(39.0%), C등급은 9개소(7.3%), D등급은 2개소(1.6%), E등급은 1개소(0.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A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B등급, C 등급, D등급, E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충족 사업장 23개소 중 A등급은 20개소, B등급은 3개소로 나타났으며, 전체 미충족 사업장 100개소 중 A등급은 43개소, B등급은 45개소, C등급은 9개소, D등급은 2개소, E등급은 1개소로 나타났다.

[표 4-2] 기초푸드마켓 등급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장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D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E등급 (60점 미만)	평균
기초푸드마켓 전체	법적 기준 충족	23	20	3	0	0	0	92.12
	법적 기준 미충족	100	43	45	9	2	1	87.62
	계	123	63	48	9	2	1	88.46
기초푸드마켓 당연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22	19	3	0	0	0	92.12
	법적 기준 미충족	40	11	25	3	1	0	87.13
	계	62	30	28	3	1	0	88.90
기초푸드마켓 임의사업장	법적 기준 충족	1	1	0	0	0	0	91.96
	법적 기준 미충족	60	32	20	6	1	1	87.95
	계	61	33	20	6	1	1	88.02

당연사업장은 62개소로 A등급은 30개소, B등급은 28개소, C등급은 3개소, D등급은 1개소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족 사업장 22개소 중 A등급은 19개소, B등급은 3개소이며, 미충족 사업장 40개소 중 A등급은 11개소, B등급은 25개소, C등급은 3개소, D등급은 1개소로 나타났다.

임의사업장은 61개소로 A등급은 33개소, B등급은 20개소, C등급은 6개소, D등급은 1개소, E등급은 1개소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족 사업장은 A등급은 1개소이며, 미충족 사업장 60개소 중 A등

급은 32개소, B등급은 20개소, C등급은 6개소, D등급은 1개소, E등급은 1개소로 나타났다.

3. 기초푸드마켓 지역별 평가 결과

17개 지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점수는 88.46점으로 지역별 푸드마켓의 점수를 살펴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제주(92.87점), 부산(92.47점), 대전(91.65점), 광주(90.92점), 인천(90.80점), 서울(90.68점), 강원(90.60점), 전북(89.44점), 대구(88.51점) 9개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반해 경남(88.11점), 경북(87.71점), 전남(87.37점), 울산(84.32점), 경기(83.86점), 세종(82.30점), 충남(81.72점), 충북(77.36점) 8개 지역은 전체 푸드마켓 평균 점수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법적 기준 충족 14개소(92.86점), 미충족 16개소(88.77점)이며, 부산지역은 법적 기준 충족 1개소(94.26점), 미충족 11개소(92.30점), 그리고 대전지역은 법적 기준 충족 4개소(92.33점), 미충족 4개소(90.97점)로 확인되었다. 경기지역은 법적 기준 충족 3개소(87.41점), 미충족 15개소(83.15점)로 나타났다.

5개 지역을 제외한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2개 지역은 법적 기준 충족 기초푸드마켓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4-3] 기초푸드마켓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국	전체	123	54.62	96.33	88.46	6.3049
	법적 기준 충족	23	80.68	95.16	92.12	3.2824
	법적 기준 미충족	100	54.62	96.33	87.62	6.5407
서울	전체	30	78.17	95.39	90.68	4.5285
	법적 기준 충족	14	86.39	95.16	92.86	2.4277
	법적 기준 미충족	16	78.17	95.39	88.77	5.1232
부산	전체	12	88.28	96.33	92.47	2.2115
	법적 기준 충족	1	94.26	94.26	94.26	-
	법적 기준 미충족	11	88.28	96.33	92.30	2.2426
대구	전체	7	82.51	95.26	88.51	3.8906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7	82.51	95.26	88.51	3.8906
인천	전체	14	85.31	95.66	90.80	2.8638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4	85.31	95.66	90.80	2.8638
광주	전체	3	90.21	91.75	90.92	.7778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3	90.21	91.75	90.92	0.7778
대전	전체	8	88.58	94.97	91.65	1.8509
	법적 기준 충족	4	90.77	94.97	92.33	1.8451
	법적 기준 미충족	4	88.58	93.03	90.97	1.8358
울산	전체	1	84.32	84.32	84.32	-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	84.32	84.32	84.32	-
세종	전체	1	82.30	82.30	82.30	-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	82.30	82.30	82.30	-
경기	전체	18	54.62	91.96	83.86	9.4457
	법적 기준 충족	3	80.68	91.96	87.41	5.9494
	법적 기준 미충족	15	54.62	91.25	83.15	10.0022
강원	전체	1	90.60	90.60	90.60	-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1	90.60	90.60	90.60	-
충북	전체	5	69.37	84.00	77.36	6.2469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5	69.37	84.00	77.36	6.2469
충남	전체	6	74.81	89.45	81.72	5.0814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6	74.81	89.45	81.72	5.0814
전북	전체	5	85.03	93.37	89.44	3.3454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5	85.03	93.37	89.44	3.3454
전남	전체	3	77.17	94.00	87.37	8.9670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3	77.17	94.00	87.37	8.9670
경북	전체	3	81.93	92.59	87.71	5.3875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3	81.93	92.59	87.71	5.3875
경남	전체	4	85.16	91.28	88.11	2.5142
	법적 기준 충족	0	-	-	-	-
	법적 기준 미충족	4	85.16	91.28	88.11	2.5142
제주	전체	2	92.83	92.91	92.87	0.0566
	법적 기준 충족	1	92.91	92.91	92.91	-
	법적 기준 미충족	1	92.83	92.83	92.83	-

V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1. 법적 기준 평가	35
2. 운영성과 영역 평가	107

V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1. 법적 기준 평가

법적 기준은 시설 장비의 안전관리, 인력 현황,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4개 성과영역으로 구성된다.

1)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영역 평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영역은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독립매장 유무’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지표 가운데 ‘독립매장 유무’는 기초푸드마켓에만 해당하는 지표이며,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2개 지표는 기초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 공통지표다.

(1) 평가지표 1 :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이 지표는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준용하여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차량·냉장(냉동)고 시설구비와 청결성 및 위생성을 평가한다.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가중치가 7점이며, 세부적인 평가항목에서 냉장·냉동고 시설에 대해서 당연사업장은 1,000리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임의사업장은 시설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5-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5	5	5	5	
	정성	2	2	2	2	
	계	7	7	7	7	
평가내용 정량지표	①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고 있음(차량은 도색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② 운반차량의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음(운반차량의 적재고 내부 온도계 또는 외부에서 적재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③ 1000리터 이상의 냉장(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음(운반차량 아님/적정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④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음(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은 제외함)					
	해당 항목	[1.0]	4가지 항목 해당			
	가중치	[0.75]	3가지 항목 해당			
평가내용 정성지표	①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적재고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임			② 냉장(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상	중	하	상	중	하
	1.0	0.5	0.0	1.0	0.5	0.0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 평가내용 정량지표에서 ③번 항목의 1000리터 이상의 냉장(또는 냉동)시설은 당연사업장에만 해당하며, 임의사업장은 용량 제한이 없음.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초사업장 전체 평균은 가중치 7점 중에 6.6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이 6.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6.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 점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낮은 점수를 보인 일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표 5-2]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1.00	7.00	6.63	0.9828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1.00	7.00	6.52	1.1017
	당연사업장	122	4.50	7.00	6.75	0.6170
	임의사업장	166	1.00	7.00	6.35	1.3279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2.25	7.00	6.89	0.5415
	당연사업장	62	2.25	7.00	6.80	0.7381
	임의사업장	61	5.75	7.00	6.98	0.1600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에 대한 지역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 대전, 세종, 제주지역이 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울산이 5.31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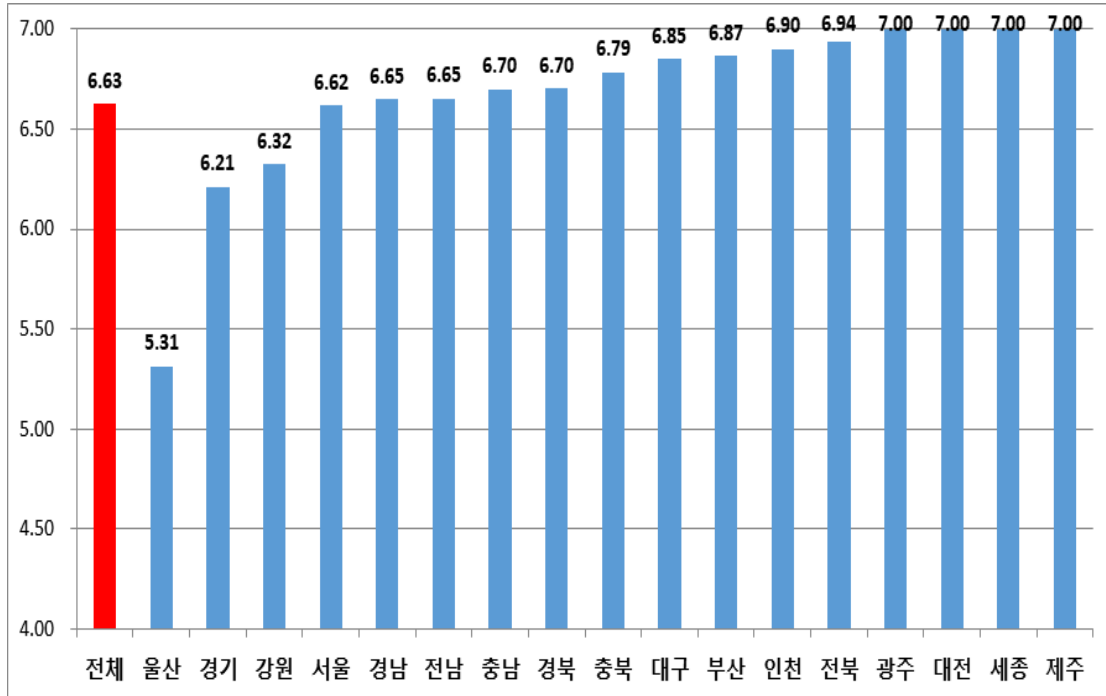
[표 5-3]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1.00	1.00	5.75	4.00	5.75	7.00	7.00	2.25	7.00	1.25	3.50	4.75	2.25	5.75	4.50	5.25	3.5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63	6.62	6.87	6.85	6.90	7.00	7.00	5.31	7.00	6.21	6.32	6.79	6.70	6.94	6.65	6.70	6.65	7.00		
	표준편차	0.98	1.15	0.39	0.67	0.35	0.00	0.00	2.23	0.00	1.37	1.16	0.56	1.01	0.28	0.72	0.55	0.86	0.0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1.00	1.00	5.75	4.00	5.75	7.00	7.00	2.25	7.00	1.25	3.50	4.75	2.25	5.75	4.50	5.25	3.5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52	6.53	6.84	6.77	6.77	7.00	7.00	5.07	7.00	6.02	6.28	6.74	6.60	6.92	6.61	6.66	6.57	7.00	
		표준편차	1.10	1.36	0.43	0.83	0.51	0.00	0.00	2.29	-	1.49	1.19	0.61	1.16	0.32	0.76	0.58	0.94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4.50	4.75	7.00	7.00	5.75	7.00		6.50	7.00	4.50	5.25	5.75	5.75	7.00	4.50	6.50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75	6.87	7.00	7.00	6.88	7.00		6.88	7.00	6.51	6.71	6.64	6.58	7.00	6.38	6.75	7.00	7.00	
		표준편차	0.62	0.46	-	0.00	0.40	0.00		0.25	-	0.83	0.71	0.61	0.72	0.00	1.25	0.35	0.00	0.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1.00	1.00	5.75	4.00	5.75	7.00	7.00	2.25		1.25	3.50	4.75	2.25	5.75	4.75	5.25	3.50		
		최대값	7.00	3.50	7.00	7.00	5.75	7.00	7.00	3.5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35	2.25	6.83	6.67	5.75	7.00	7.00	2.67		5.25	6.03	6.78	6.60	6.88	6.66	6.65	6.45		
		표준편차	1.33	1.77	0.44	1.00	-	0.00	0.00	0.72		1.95	1.37	0.63	1.25	0.40	0.66	0.61	1.04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2.25	2.25	5.75	7.00	7.00	7.00	7.00	7.00	7.00	4.75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89	6.70	6.90	7.00	7.00	7.00	7.00	7.00	7.00	6.81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표준편차	0.54	0.95	0.36	0.00	0.00	0.00	0.00	-	-	0.59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2.25	2.25	7.00	7.00	7.00		7.00		7.00	4.75			7.00	7.00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80	6.68	7.00	7.00	7.00		7.00		7.00	6.71			7.00	7.00		7.00		7.00	
		표준편차	0.74	0.99	0.00	0.00	0.00		0.00		-	0.71			0.00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5.75	7.00	5.75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98	7.00	6.88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표준편차	0.16	0.00	0.40	0.00	0.00	0.00	0.00	-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그림 5-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차량 보유 및 차량 도색 여부 등 세부평가

차량 보유, 차량 도색 여부, 차량적재고 온도계 설치, 온도계 작동 및 적정 온도 유지, 차량 개별점검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차량 적재고 위생 및 청결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411개 사업장 가운데 408개소(99.3%)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소(울산 1개소, 충남 1개소, 서울 1개소)는 차량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울산지역의 1개소는 2018년 3월에 폐차되어 푸드마켓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 차량 도색은 405개소가 도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색 예외인 경우도 12개소(경기 2개소, 서울 1개소, 대구 1개소, 경북 8개소)이었으며, 도색하지 않은 경우는 10개소(경기 3개소, 강원 1개소, 서울 1개소, 전북 1개소, 울산 2개소, 부산 1개소, 경남 1개소)였다.

[표 5-4] 차량 보유 및 차량 도색 여부 등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차량 보유	도색 여부	온도계 설치	적정 온도 유지	법적 기준 충족	차량 개별 점검	차량적재고위생/청결 (정성평가)		
								우수	보통	미흡
전체 사업장	411	408 (99.3%)	383 +(12)	400	400	386 (93.9%)	381	388	15	5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86 (99.3%)	263 +(11)	278	278 (92.0%)	259	268	13	5
	당연	122	122 (100.0%)	117 +(2)	122	121 (96.7%)	116	116	3	1
	임의	166	164 (98.8%)	146 +(9)	156	156 (88.6%)	143	150	10	4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22 (99.2%)	120 +(1)	122	122 (98.4%)	122	120	2	0
	당연	62	61 (98.4%)	61 +(0)	61	61 (98.4%)	61	59	2	0
	임의	61	61 (100.0%)	59 +(1)	61	61 (98.4%)	61	61	0	0

* 차량 도색여부 항목에서 ()내 수치는 도색 예외인 사업장 수를 의미함

* 법적기준 충족은 ①차량보유, ②도색여부, ③온도계 설치, ④적정온도 유지 4개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차량적재고 온도계 설치와 관련하여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408개소) 가운데 400개소(98.0%)가 온도계를 설치하였고, 8개소(경기 1개소, 강원 2개소, 서울 1개소, 대구 1개소, 울산 2개소, 경남 1개소)는 온도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도계를 설치한 400개소 모든 사업장의 온도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법적 기준으로서 차량 보유, 도색 여부, 차량적재고 온도계 설치, 온도계의 정상작동 및 적정온도 유지 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386개소(93.9%)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가운데 265개소(92.0%)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고,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18개소(96.7%),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47개소(88.6%)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가운데 121개소(98.4%)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고,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1개소(98.4%),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60개소(98.4%)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지만 차량을 자체적으로 정기점검하는 사업장은 차량을 보유한 408개소 가운데 381개소(93.4%)가 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27개소(충북 1개소, 전남 2개소, 경기 16개소, 서울 1개소, 충남 2개소,

대구 1개소, 울산 1개소, 경북 3개소)가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적재고의 위생 및 청결 상태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 408개소 가운데 우수사업장은 388개소(95.1%), 보통 15개소(3.7%), 미흡 5개소(1.2%)이었다. 푸드뱅크는 차량을 보유한 286개소 가운데 268개소(93.7%)가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차량을 보유한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 118개소(96.7%)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차량을 보유한 임의사업장 164개소 중 150개소(91.5%)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푸드마켓은 차량을 보유한 122개소 가운데 120개소(98.4%)가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차량을 보유한 당연사업장 61개소 중 59개소(96.7%)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차량을 보유한 임의사업장 61개소 중 61개소(100%) 모두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④ 냉장·냉동시설 보유 등 세부평가

냉장·냉동시설 보유, 냉장·냉동고 온도계 설치, 온도계 작동 및 적정온도 유지, 냉장·냉동시설 개별점검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냉장·냉동시설 위생 및 청결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당연사업장은 1,000리터 이상의 냉장·냉동시설 보유를 기준으로, 임의사업장은 용량 제한 없이 냉장·냉동시설 보유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냉장·냉동시설은 408개소(99.3%)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푸드뱅크는 288개소 가운데 285개소(99.0%)가 보유하였고,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푸드뱅크 사업장은 3개소(경기 1개소, 강원 1개소, 경남 1개소)이었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가운데 100% 모두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시설 온도계 설치와 관련하여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사업장(408개소) 가운데 401개소(98.3%)가 온도계를 설치하였고, 7개소(충북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1개소, 서울 2개소)는 온도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도계를 설치한 401개소 가운데 390개소가 온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11개소(전남 1개소, 경기 7개소, 강원 2개소, 인천 1개소)는 온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표 5-5] 냉장·냉동시설 보유 등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냉장·냉동 시설보유	온도계 설치	적정온도 유지	법적기준 충족	냉장·냉동 시설 개별점검	냉장·냉동고 위생/청결 (정성평가)		
							우수	보통	미흡
전체 사업장	411	408 (99.3%)	401	390	390 (94.9%)	381	378	23	7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85 (99.0%)	278	273 (93.4%)	259	260	19	6
	당연	122	122 (100.0%)	121	118 (95.9%)	116	111	8	2
	임의	166	163 (98.2%)	157	155 (91.5%)	143	149	11	4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23 (100.0%)	123	121 (98.4%)	122	118	4	1
	당연	62	62 (100.0%)	62	60 (96.8%)	61	57	4	1
	임의	61	61 (100.0%)	61	61 (100.0%)	61	61	0	0

* 법적기준 충족은 ① 냉장·냉동시설보유, ② 온도계 설치, ③, ④ 적정온도 유지 3개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법적 기준으로서 냉장·냉동시설 보유, 도색 여부, 냉장·냉동시설 온도계 설치, 온도계의 정상작동 및 적정온도 유지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390개소(94.9%)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가운데 269개소(93.4%)가 법적기준을 충족하였고, 이 가운데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17개소(95.9%),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52개소(91.6%)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가운데 121개소(98.4%)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 가운데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0개소(96.8%), 임의사업장은 61개소(100%) 모두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냉장·냉동시설을 자체적으로 정기점검하는 사업장은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408개소 가운데 381개소(93.4%)가 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27개소(충북 2개소, 전남 3개소, 경기 13개소, 서울 3개소, 충남 2개소, 경북 3개소, 경남 1개소)가 자체 정기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시설의 위생 및 청결 상태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408개소 가운데 우수사업장은 378개소(92.6%), 보통 23개소

(5.6%), 미흡 7개소(1.7%)이었다. 푸드뱅크는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285개소 가운데 260개소(91.2%)가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 111개소(91.0%)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임의사업장 163개소 중 149개소(91.4%)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푸드마켓은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123개소 가운데 118개소(95.9%)가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당연사업장 62개소 중 57개소(91.9%)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임의사업장 61개소 중 61개소(100%) 모두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2) 평가지표 2 :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준용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관창고는 당연사업장의 경우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사업장은 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겸용이 가능하다.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의 가중치는 6점이며, 이 가운데 정량평가 4점, 정성평가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평가는 보관창고의 청결 및 위생 상태, 보관창고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평가한다.

[표 5-6]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4	4	4	4	
	정성	2	2	2	2	
	계	6	6	6	6	
평가내용 정량평가	해당항목 가중치	[1.0]	실 면적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함			
		[0.5]	실 면적 16.5㎡ 미만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함			
		[0.0]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			
평가내용 정성평가	① 보관창고의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② 식품보관 장소가 창고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상	중	하	상	중	하
	1.0	0.5	0.0	1.0	0.5	0.0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 평가내용 정량지표에서 실면적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당연사업장에만 해당하며, 임의사업장은 용량 제한이 없고 겸용 사용도 가능함.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초사업장 전체 평균은 가중치 6점 중에 5.6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이 5.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각각 5.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 점수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0점의 점수를 받은 일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표 5-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6.00	5.62	1.0847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6.00	5.54	1.1891
	당연사업장	122	0.00	6.00	5.57	0.9916
	임의사업장	166	0.00	6.00	5.52	1.3181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6.00	5.80	0.7624
	당연사업장	62	0.00	6.00	5.67	1.0439
	임의사업장	61	5.00	6.00	5.93	0.2007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전체사업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대전, 세종, 제주지역이 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울산이 4.69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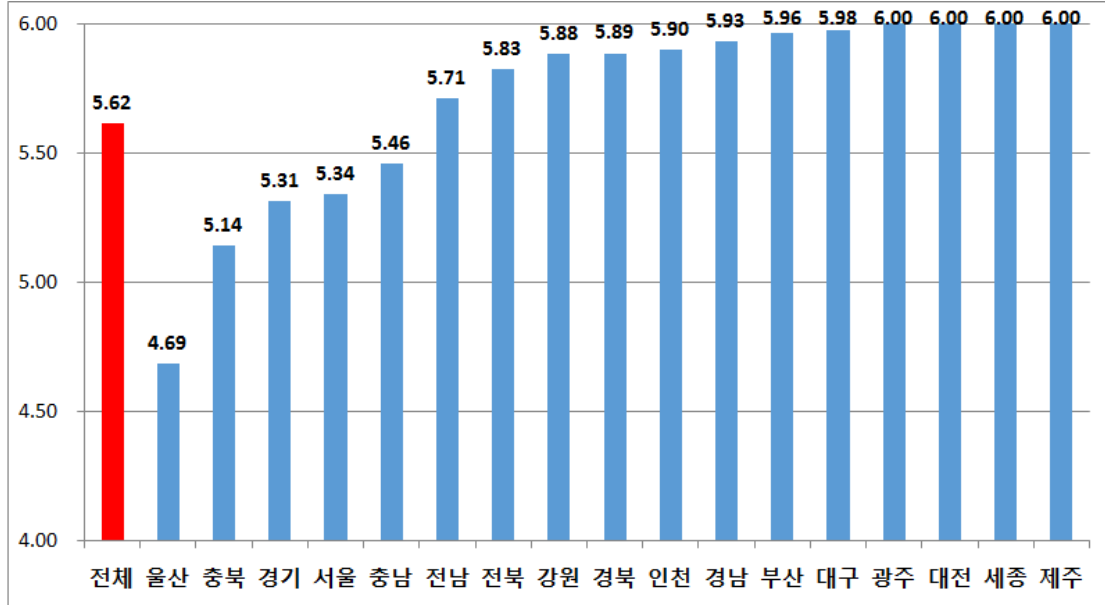
[표 5-8]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5.00	5.50	5.5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62	5.34	5.96	5.98	5.90	6.00	6.00	4.69	6.00	5.31	5.88	5.14	5.46	5.83	5.71	5.89	5.93	6.00		
	표준편차	1.08	1.38	0.19	0.11	0.20	0.00	0.00	2.07	0.00	1.34	0.33	1.80	1.69	0.29	0.51	0.34	0.18	0.00		
푸드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5.00	5.50	5.5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54	5.11	5.94	5.96	5.91	6.00	6.00	4.57	6.00	5.21	5.94	4.98	5.31	5.83	5.67	5.87	5.92	6.00	
		표준편차	1.19	1.61	0.25	0.14	0.20	0.00	0.00	2.21	-	1.35	0.25	1.96	1.93	0.31	0.54	0.37	0.19	0.00	
	당연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0.00	6.00	6.00	5.50	6.00		3.50	6.00	2.00	5.00	1.00	6.00	5.50	4.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57	5.36	6.00	6.00	5.90	6.00		5.38	6.00	5.46	5.83	4.57	6.00	5.90	5.25	6.00	6.00	6.00	
		표준편차	0.99	1.27		0.00	0.21	0.00		1.25	-	1.00	0.41	1.88	0.00	0.22	0.96	0.00	0.00	0.00	
		임의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5.00	5.5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4.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52		2.00	5.93	5.94	6.00	6.00	6.00	3.50		4.82	6.00	5.16	5.17	5.80	5.76	5.85	5.89			
표준편차	1.32		2.83	0.26	0.17		0.00	0.00	3.04		1.72	0.00	2.02	2.10	0.35	0.39	0.39	0.21			
푸드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0.00	6.00	6.00	5.50	6.00	6.00	5.50	6.00	0.50	5.00	5.50	5.5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50	6.00	6.00	5.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80	5.55	6.00	6.00	5.89	6.00	6.00	5.50	6.00	5.64	5.00	5.90	5.92	5.80	6.00	6.00	6.00		
		표준편차	0.76	1.12	0.00	0.00	0.21	0.00	0.00	-	-	1.29	0.00	0.22	0.20	0.27	0.00	0.00	0.00		
	당연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0.00	0.00	6.00	6.00	5.50		6.00		6.00	0.50			5.5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67	5.54	6.00	6.00	5.88		6.00		6.00	5.46			5.83	6.00		6.00			
		표준편차	1.04	1.15	0.00	0.00	0.25		0.00		-	1.57			0.29	0.00		-			
		임의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5.00	5.50	6.00	6.00	5.50	6.00	5.50		6.00	5.00	5.50	6.00	5.5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5.50		6.00	5.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93		5.75	6.00	6.00	5.90	6.00	6.00	5.50		6.00	5.00	5.90	6.00	5.67	6.00	6.00	6.00			
표준편차	0.20		0.35	0.00	0.00	0.21	0.00	0.00	-		0.00	-	0.22	0.00	0.29	0.00	0.00	0.00			

[그림 5-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보관창고 보유 여부 등 세부평가

보관창고 보유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연사업장인 경우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의사업장인 경우 면적이거나 단독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와 보관창고 위생 및 환기구, 보관창고 이격거리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전체 당연사업장 184개소 가운데 170개소(92.4%)가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3개소(1.6%)는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16.5㎡ 미만 사업장도 9개소(4.9%)이었으며, 보관창고가 없는 사업장은 2개소이었다. 전체 임의사업장 227개소 가운데 219개소(96.5%)가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은 110개소(90.2%)이었고, 푸드뱅크 임의사업장 166개소 중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은 158개소(95.2%)이었다.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62개소 중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은 60개소(96.8%)이었고, 푸드마켓 임의사업장 61개소 중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법적 기준 충족 사업장은 61개소(100.0%)이었다.

보관창고와 관련하여 법적 기준 미충족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9개소(충북 2개소, 전남 1개소, 경기 3개소, 서울 2개소, 울산 1개소)가 16.5㎡ 미만의 보관창고를 보유하여 충족하지 못했고, 1개소(서울 1개소)는 보관창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은 8개소(충북 2개소, 경기 2개소, 서울 1개소, 충남 2개소, 울산 1개소)가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1개소(서울)만이 16.5㎡ 미만의 보관창고를 보유하여 충족하지 못하였고,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은 61개소 모두 보관창고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보관창고 보유 여부 등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보관창고 보유							법적 기준 충족	보관창고 위생 및 환기구 (정성평가)			보관창고 이격거리 (정성평가)			
		당연				임의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6.5㎡ 이상		16.5㎡ 미만		없음	있음	없음								
		단독	겸용	단독	겸용											
전체 사업장	411	170	3	9	1	1	219	8	389 (94.6%)	325	66	18	363	27	19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110	2	9	0	1	158	8	268 (93.1%)	221	50	17	251	17	20
	당연	122	110	2	9	0	1	-	-	110 (90.2%)	94	24	4	110	10	2
	임의	166	-	-	-	-	-	158	8	158 (95.2%)	127	26	13	141	7	18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60	1	0	1	0	61	0	121 (98.4%)	104	16	3	112	10	1
	당연	62	60	1	0	1	0	-	-	60 (96.8%)	49	10	3	54	7	1
	임의	61	-	-	-	-	-	61	0	61 (100.0%)	55	6	0	58	3	0

* 보관창고 16.5㎡ 이상 기준은 당연사업장만 해당되며, 임의사업장은 면적 제한이 없음.

* 보관창고 단독사용 여부는 당연사업장만 해당되며, 임의사업장은 겸용도 가능함.

* 법적 기준 충족 당연사업장 : ①16.5㎡ 이상, ②단독사용
임의사업장 : ①보관창고 보유

보관창고의 위생 및 환기구 상태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보관창고를 보유한 사업장 392개소 가운데 우수사업장은 378개소(92.6%), 보통 23개소(5.6%), 미흡 7개소(1.7%)이었다. 푸드뱅크는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285개소 가운데 260개소(91.2%)가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당연사업장 124개소 중 111개소(89.5%)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임의사업장 161개소 중 149개소(92.5%)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푸드마켓은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123개소 가운데 118개소(95.9%)가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당연사업장 62개소 중 57개소(91.9%)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한 임의사업장 61개소 중 61개소(100%) 모두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3) 평가지표 3 : 독립매장 여부

독립매장 여부 지표의 가중치는 3점이며, 푸드마켓에만 해당하는 지표로써 푸드마켓이 독립매장을 보유하고, 사업 주체의 사업장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5-10] 독립매장 여부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	-	3	3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독립매장이 있음		
		[0.0]	독립매장이 없음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초푸드마켓 전체 평균은 가중치 3점 중에 2.9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의 결과를 보였다. 전체 푸드마켓 123개소 가운데 3개소(2.4%)만이 독립매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11] 독립매장 여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3.00	2.93	0.4647
	당연사업장	62	0.00	3.00	2.95	0.3810
	임의사업장	61	0.00	3.00	2.90	0.5387

② 지역별 평가 결과

기초푸드마켓 123개소 가운데 3개소를 제외한 120개소(97.6%)가 독립매장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적 편차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독립매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당연사업장 1개소(경기)와 임의사업장 2개소(인천 1개소, 경북 1개소)에 대해서는 독립매장이 없는 원인을 파악하여, 독립매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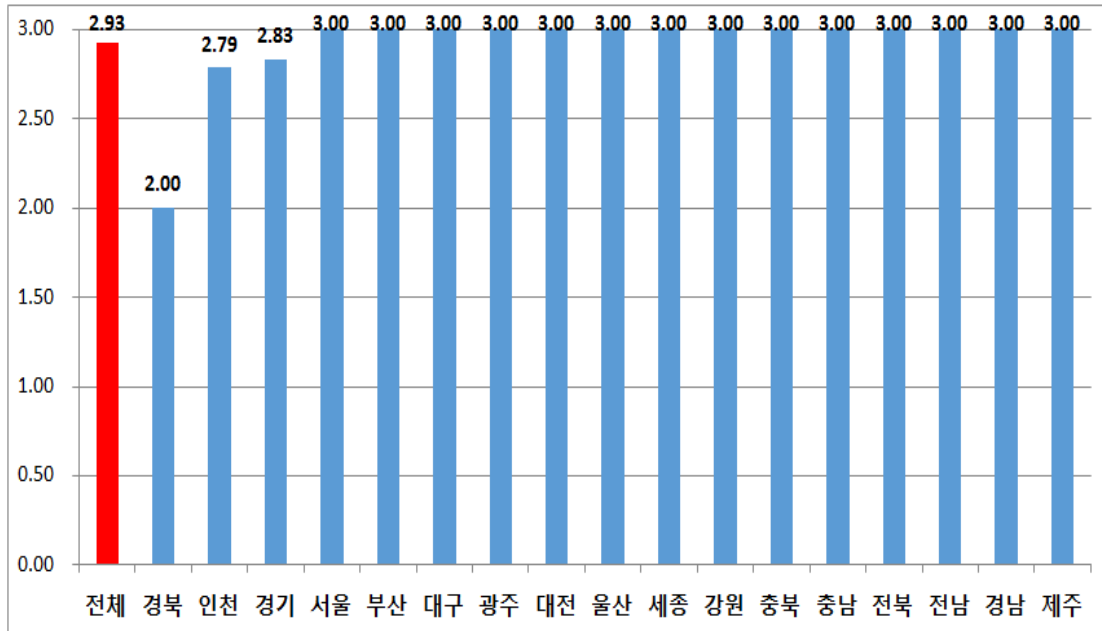
[표 5-12] 독립매장 여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푸드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3.00	3.00	3.00	0.00	3.00	3.00	3.00	3.00	0.00	3.00	3.00	3.00	3.00	3.00	0.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93	3.00	3.00	3.00	2.79	3.00	3.00	3.00	3.00	2.83	3.00	3.00	3.00	3.00	3.00	2.00	3.00	3.00
		표준편차	0.46	0.00	0.00	0.00	0.80	0.00	0.00	-	-	0.71	-	0.00	0.00	0.00	0.00	1.73	0.00	0.00
	당연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0.00	3.00	3.00	3.00	3.00		3.00		3.00	0.00			3.0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95	3.00	3.00	3.00	3.00		3.00		3.00	2.75			3.00	3.00		3.00		3.00
		표준편차	0.38	0.00	0.00	0.00	0.00		0.00		-	0.87			0.00	0.00		-		-
	임의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3.00	3.00	3.00	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0.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90	3.00	3.00	3.00	2.7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50	3.00	3.00
		표준편차	0.54	0.00	0.00	0.00	0.95	0.00	0.00	-		0.00	-	0.00	0.00	0.00	0.00	2.12	0.00	-

[그림 5-3] 독립매장 여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2) 인력 현황 영역 평가

인력 현황 영역에는 '전담직원 확보수준',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직원의 근무여건'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지표 가운데 '전담직원 확보수준',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3개 지표는 각각 가산점 +1점씩이 부여된 지표이다.

(1) 평가지표 4 : 전담직원 확보수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준용하여 전담직원의 확보수준을 평가한다.

[표 5-13]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6 (가산점 +1점)	6 (가산점 +1점)	6 (가산점 +1점)	6 (가산점 +1점)	
당연사업장 평가내용	가산점 (+1)	전담직원 1명보다 많은 경우		(지표 가중치) + 1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해당항목 가중치	[1.0]	전담직원 1명인 경우		0.7 + [(전담직원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3]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7]	담당직원(겸직) 1명보다 많은 경우		0.4 + [(담당직원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3/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담당직원(겸직)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4]	담당직원(겸직) 1명인 경우		(담당직원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4 담당직원(겸직)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0]	전담 또는 담당직원(겸직) 없는 경우			
임의사업장 평가내용	가산점 (+1)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지표 가중치) + 1 전담직원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항목 가중치	[1.0]	담당직원(겸직)이 1명인 경우		(담당직원(겸직)의 업무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1.0 단, 담당직원(겸직)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간 개월로 함	
		[0.0]	담당직원(겸직)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기초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의 공통지표이지만, 당연사업장은 반드시 전담직원(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 분장표에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임의사업장은 전담직원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며 담당(겸직)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전담직원 확보수준 당연사업장의 경우 전담직원이 1명을 초과한 경우에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임의사업장은 1명의 전담직원이 평가대상기간(36개월) 중에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초사업장 전체 평균은 가중치 6점에 가산점 1점이 부여되어 총 7점이 만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5.9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이 6.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5.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푸드마켓 평균 점수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보다 1.00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들의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 일부 사업장들의 전담직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개선되어야 한다.

[표 5-14]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7.00	5.98	1.6868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7.00	5.68	1.8620
	당연사업장	122	0.00	7.00	5.72	1.2601
	임의사업장	166	0.00	7.00	5.65	2.2053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7.00	6.68	0.8371
	당연사업장	62	2.40	7.00	6.54	0.7246
	임의사업장	61	0.00	7.00	6.82	0.9221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전담직원 확보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가 6.5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인천(6.43점), 서울(6.40점), 경남(6.34점), 전북과 제주(각각 6.25점), 부산(6.14점), 경북(6.1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인 5.98점보다 낮은 지역은 6개 지역(대전, 전남, 경기, 울산, 충북, 대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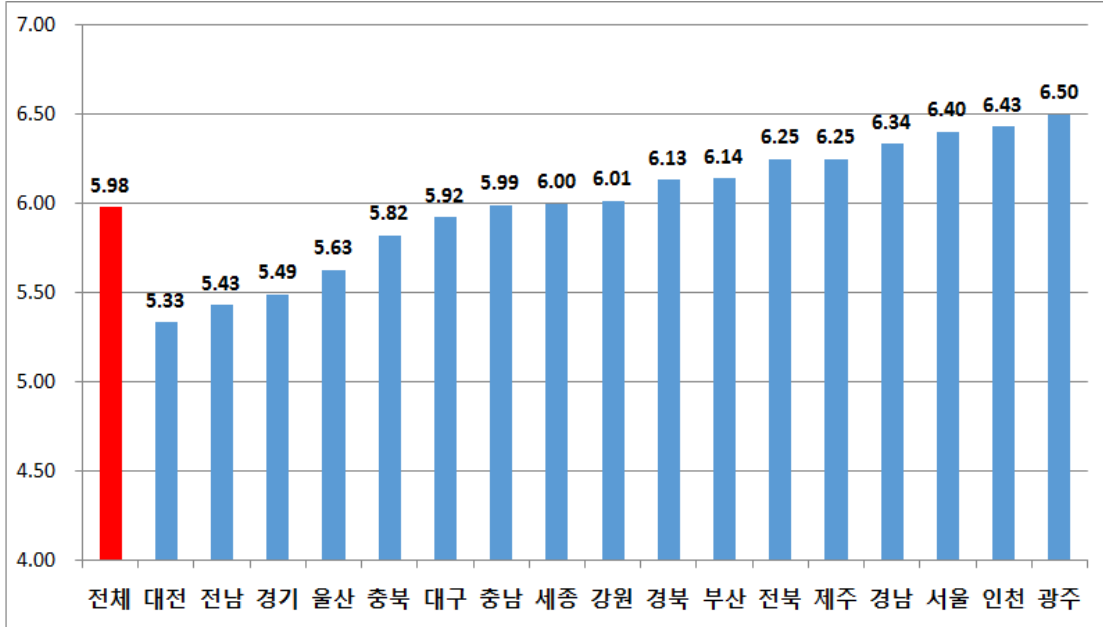
[표 5-15]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0.00	2.40	5.80	6.00	0.00	2.40	6.00	0.00	0.00	0.00	0.00	4.75	0.00	4.00	2.40	6.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6.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5.98	6.40	6.14	5.92	6.43	6.50	5.33	5.63	6.00	5.49	6.01	5.82	5.99	6.25	5.43	6.13	6.34	6.25	
	표준편차	1.69	1.00	1.30	0.99	0.52	0.51	2.79	1.46	0.00	2.23	1.71	2.45	1.99	0.63	2.36	0.81	1.01	0.5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0.00	4.80	5.80	6.00	0.00	2.40	6.00	0.00	0.00	0.00	0.00	4.75	0.00	4.00	2.40	6.00
		최대값	7.00	7.00	6.00	7.00	7.00	7.00	7.00	7.00	6.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6.00
		평균	5.68	5.85	5.63	6.00	6.07	6.40	3.57	5.43	6.00	5.26	5.95	5.57	5.82	6.13	5.23	6.00	6.19	6.00
		표준편차	1.86	1.20	1.50	0.56	0.31	0.51	3.36	1.46	-	2.36	1.75	2.64	2.26	0.63	2.44	0.79	1.07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5.95	6.00	4.80	5.80	6.00		2.40	6.00	0.00	4.35	0.00	0.00	4.75	4.80	4.20	2.40	6.00
		최대값	7.00	7.00	6.00	6.00	7.00	6.00		7.00	6.00	7.00	7.00	7.00	6.00	5.10	6.00	7.00	6.00	
		평균	5.72	6.08	6.00	5.55	6.08	6.00		5.13	6.00	5.64	6.04	5.43	4.67	5.60	4.94	5.10	5.35	6.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0.00	5.83	6.00	7.00	0.00	5.54		0.00	0.00	0.00	0.00	6.00	0.00	4.00	6.00	
		최대값	7.00	6.00	6.00	7.00	6.00	7.00	7.00	6.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5.65	3.00	5.60	6.20	6.00	7.00	3.57	5.85		4.67	5.90	5.63	6.06	6.40	5.29	6.10	6.43	
		표준편차	2.21	4.24	1.55	0.46	-	0.00	3.36	0.27		3.28	2.13	2.80	1.88	0.52	2.69	0.70	0.51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최소값			0.00	6.00	6.00	2.40	6.00	7.00	6.00	7.00	6.00	0.00	7.00	7.00	5.95	6.00	7.00	7.00	7.00	6.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6.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68	6.90	6.83	5.77	6.71	7.00	6.88	7.00	6.00	6.22	7.00	7.00	6.49	6.60	7.00	7.00	7.00	6.50
표준편차			0.84	0.31	0.39	1.56	0.47	0.00	0.35	-	-	1.63	-	0.00	0.56	0.55	0.00	0.00	0.00	0.71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2.40	6.00	6.00	2.40	6.00		6.00		6.00	6.00			5.95	6.00		7.00		6.00
		최대값	7.00	7.00	6.00	6.00	6.00		7.00		6.00	7.00			6.00	6.00		7.00		6.00
		평균	6.54	6.89	6.00	4.20	6.00		6.83		6.00	6.50			5.98	6.00		7.00		6.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7.00	7.00	6.00	7.00	7.00	7.00	7.00		0.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82	7.00	7.00	6.40	7.00	7.00	7.00	7.00		5.67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표준편차	0.92	0.00	0.00	0.55	0.00	0.00	0.00	-		2.80	-	0.00	0.00	0.00	0.00	0.00	0.00	-

[그림 5-4] 전담직원 확보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전담직원 확보수준의 세부평가

전담직원 확보수준은 전담직원과 담당(겸직)직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5-16] 전담직원 확보수준의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전담직원	담당(겸직) 직원	직원 없음	법적기준 충족	가산점	
전체 사업장	411	303 (73.5%)	84 (20.4%)	24 (5.8%)	378 (92.0%)	184 (44.8%)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186 (64.6%)	79 (27.4%)	23 (8.0%)	257 (89.2%)	91 (31.6%)
	당연	122	113 (92.6%)	6 (4.9%)	3 (2.5%)	113 (92.6%)	18 (14.8%)
	임의	166	73 (44.0%)	73 (44.0%)	20 (12.0%)	146 (88.0%)	73 (44.0%)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17 (95.1%)	5 (4.1%)	1 (0.8%)	121 (98.4%)	93 (75.6%)
	당연	62	61 (98.4%)	1 (1.6%)	0 (0.0%)	61 (98.4%)	37 (59.7%)
	임의	61	56 (91.8%)	4 (6.6%)	1 (1.6%)	60 (98.4%)	56 (91.8%)

* 가산점은 당연사업장의 경우 전담직원이 1명을 초과한 경우, 임의사업장은 전담직원이 1명 이상(12개월 이상)인 경우임.

* 법적기준 충족 당연사업장 : 전담직원 1인 이상

임의사업장 : 담당(겸직)직원 1인 이상

전체 411개 사업장 중 303개소(73.5%)가 전담직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담당(겸직)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은 84개소(20.4%), 직원이 없는 사업장은 24개소(5.8%)이었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 113개소(92.6%)가 전담직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1개소(98.4%)가 전담직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전담직원 또는 담당(겸직)직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장은 24개소(충북 4개소, 전남 3개소, 경기 9개소, 강원 1개소, 서울 1개소, 충남 2개소, 대전 3개소, 부산 1개소)이었으며, 이 가운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의 20개소가 직원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전담직원 확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은 378개소(92.0%)이었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57개소(89.2%)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에는 113개소(92.6%)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고, 푸드뱅크 임의사업장 166개소 중에는 146개소(88.0%)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21개소(98.4%)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62개소는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고,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1개소(경기지역)만이 법적 기준 미충족 결과를 보였다.

법적 기준 미충족 사업장 33개소 중 당연사업장의 경우 전담직원이 아닌 담당(겸직)직원을 확보한 사업장 7개소(경기 3개소, 대구 1개소, 울산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1개소)와 전담직원이 없는 사업장 3개소(충북 1개소, 경기 1개소, 충남 1개소)에 대해서는 전담직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24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2) 평가지표 5 : 보조인력 활용수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준용하여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초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의 공통지표이지만, 당연사업장은 반드시 2명 이상의 보조 인력을 활용해야 하며, 임의사업장은 보조 인력 1명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연사업장의 경우 보조 인력이 2명을 초과한 경우에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임의사업장은 1명을 초과한 경우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표 5-17]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4 (가산점 +1점)	4 (가산점 +1점)	4 (가산점 +1점)	4 (가산점 +1점)
당연사업장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가산점 (+1)		보조 인력이 2명 보다 많은 경우	(지표 가중치) + 1 보조 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2 < 보조인력 업무 개월 합계)
		[1.0]	보조 인력이 2명 인 경우	0.5 + [(보조 인력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5/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보조 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 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2 ≥ 업무 개월 합계 > 평가 대상기간 개월 수)	
		[0.5]	보조 인력이 1명 인 경우	(보조 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5 보조 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 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0]	보조 인력이 없는 경우		
임의사업장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가산점 [+1]		보조 인력이 1명 을 초과한 경우	(지표 가중치) + 1 보조 인력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 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1.0]	보조 인력이 1명 인 경우	(보조 인력의 업무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수)×1.0 평가대상기간 개월수는 평가대상기간 개월로 함	
		[0.0]	보조 인력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초사업장 전체 평균은 가중치 4점에 가산점 1점이 부여되어 총 5점이 만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3.60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이 4.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2.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푸드마켓 평균 점수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보다 1.28점이 높게 나타났다. 보조 인력 활용 수준과 관련하여 푸드마켓은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지만,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푸드뱅크의 보조 인력 활용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표 5-18]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5.00	3.60	1.7825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5.00	3.22	1.9013
	당연사업장	122	0.00	5.00	3.65	1.5557
	임의사업장	166	0.00	5.00	2.91	2.0677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5.00	4.50	1.0117
	당연사업장	62	1.72	5.00	4.49	1.0091
	임의사업장	61	0.00	5.00	4.51	1.0226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보조 인력 활용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개 사업장이 있는 세종이 5.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세종을 제외하고는 인천(4.63점), 서울(4.57점), 제주(4.45점), 광주(4.44점), 충남(4.1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60점 이상의 지역은 11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3.60점보다 낮은 지역은 6개 지역(전남, 충북, 경기, 경남, 울산, 대구)이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평균 점수가 1.71점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전남지역 26개 사업장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장이 보조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 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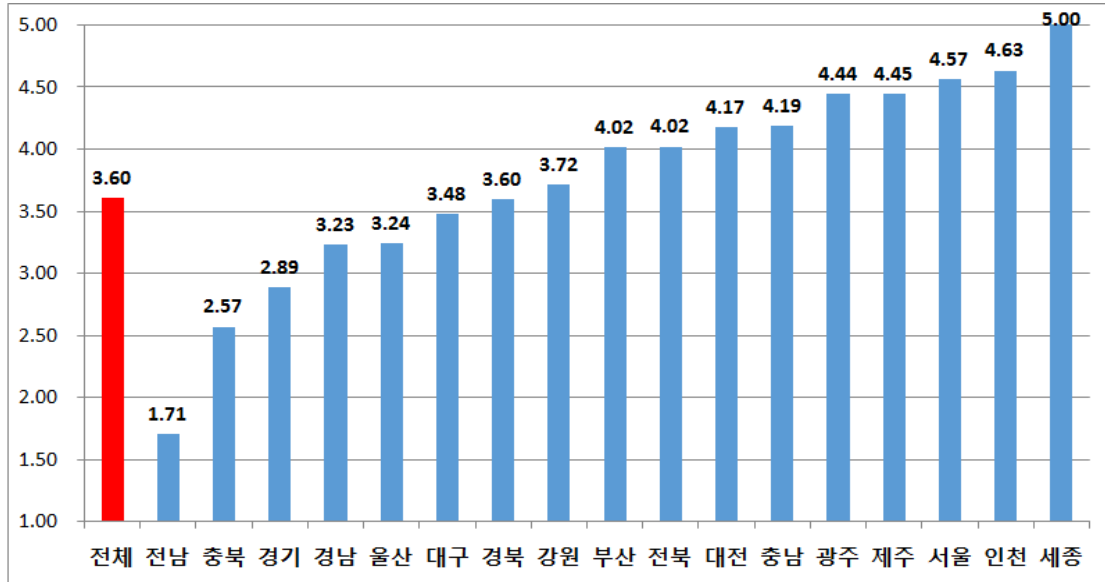
[표 5-19]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0.00	0.00	1.94	2.00	1.72	0.00	5.00	0.00	0.00	0.00	0.00	1.22	0.00	0.00	0.00	2.78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3.60	4.57	4.02	3.48	4.63	4.44	4.17	3.24	5.00	2.89	3.72	2.57	4.19	4.02	1.71	3.60	3.23	4.45	
	표준편차	1.78	1.14	1.16	1.69	0.82	0.78	1.16	1.98	0.00	1.87	1.77	1.95	1.46	1.26	2.04	1.95	2.20	1.11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0.00	0.00	1.94	2.00	2.40	0.00	5.00	0.00	0.00	0.00	0.00	1.22	0.00	0.00	0.00	2.78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3.22	4.12	3.67	3.19	4.29	4.33	4.15	2.99	5.00	2.72	3.64	2.13	4.02	3.76	1.49	3.37	2.90	3.89
		표준편차	1.90	1.54	1.26	1.90	1.09	0.82	1.13	2.00	-	1.98	1.80	1.86	1.64	1.34	1.89	2.02	2.29	1.57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2.00	2.00	2.00	1.94	2.00		1.00	5.00	0.00	0.11	0.50	3.33	2.94	0.00	5.00	4.00	2.78
		최대값	5.00	5.00	2.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67	5.00	5.00	5.00	
		평균	3.65	4.45	2.00	4.00	4.32	4.33		2.99	5.00	3.07	3.23	2.29	4.00	3.75	1.67	5.00	4.75	3.89
		표준편차	1.56	1.02	-	1.41	1.15	1.00		1.82	-	1.77	2.05	1.37	0.88	0.79	1.16	0.00	0.50	1.57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0.00	0.00	4.00	4.00	2.40	0.00		0.00	0.00	0.00	0.00	1.22	0.00	0.00	0.00	
		최대값	5.00	0.00	5.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2.91	0.00	3.79	2.83	4.00	4.33	4.15	3.00		2.16	3.88	2.06	4.03	3.77	1.46	3.18	2.37	
		표준편차	2.07	0.00	1.22	2.04	-	0.52	1.13	2.65		2.19	1.69	2.07	1.78	1.58	2.04	2.05	2.34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4.00	2.44	2.00	3.61	5.00	1.72	5.00	5.00	0.89	5.00	4.00	4.00	4.00	0.00	5.00	4.00	5.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50	4.97	4.47	4.02	4.90	5.00	4.19	5.00	5.00	3.41	5.00	4.60	4.67	4.80	3.33	5.00	4.75	5.00
		표준편차	1.01	0.18	0.87	1.14	0.37	0.00	1.27	-	-	1.41	-	0.55	0.52	0.45	2.89	0.00	0.5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1.72	4.00	5.00	2.00	3.61		1.72		5.00	2.00			4.00	5.00		5.00		5.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49	4.96	5.00	3.50	4.65		3.93		5.00	3.50			4.33	5.00		5.00		5.00
		표준편차	1.01	0.19	0.00	2.12	0.70		1.38		-	1.38			0.58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5.00	2.44	3.11	5.00	5.00	5.00	5.00		0.89	5.00	4.00	5.00	4.00	0.00	5.00	4.00	5.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51	5.00	4.37	4.22	5.00	5.00	5.00	5.00		3.25	5.00	4.60	5.00	4.67	3.33	5.00	4.75	5.00
		표준편차	1.02	0.00	0.93	0.80	0.00	0.00	0.00	-		1.58	-	0.55	0.00	0.58	2.89	0.00	0.50	-

[그림 5-5] 보조 인력 활용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보조 인력 활용수준의 세부평가

보조 인력 활용수준은 전담직원과 담당(겸직)직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5-20] 보조 인력 활용수준의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기준 당연사업장 보조 인력		2017년 기준 임의사업장 보조 인력		2017년 기준 보조 인력 없음	법적 기준 충족	가산점
		2명이상	2명미만	1명이상	1명미만			
전체 사업장	411	162	18	181	0	50	343 (83.5%)	200 (48.7%)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102	16	121	0	49 (77.1%)	110 (38.2%)
	당연	122	102	16	-	-	4 (82.3%)	58 (46.8%)
	임의	166	-	-	121	0	45 (73.2%)	52 (31.7%)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60	2	60	0	1 (97.6%)	90 (73.2%)
	당연	62	60	2	-	-	0 (96.8%)	46 (74.2%)
	임의	61	-	-	60	0	1 (98.4%)	44 (72.1%)

* 가산점은 당연사업장의 경우 보조 인력이 2명을 초과한 경우, 임의사업장은 보조 인력이 1명을 초과한 경우임

* 법적 기준 충족
 당연사업장 : 보조 인력 2인 이상
 임의사업장 : 보조 인력 1인 이상

2017년 기준으로 전체 411개 사업장 중 361개소(87.8%)가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 2명 이상을 활용해야 하는데,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02개소(83.6%)가 2명 이상의 보조 인력을 활용하였고, 16개소(13.1%)는 2명 미만의 보조 인력을 활용하였으며, 보조 인력이 없는 사업장은 4개소(전남 1개소, 경기 3개소)이었다.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21개소(72.9%)가 1명 이상의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반면, 45개소(27.1%)는 보조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푸드마켓은 당연사업장 62개소 중 2명 이상의 보조 인력을 활용한 사업장은 60개소(96.8%)이었고 2개소(경기 1개소, 대구 1개소)는 2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60개소가 1명 이상의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고 1개소(전남지역)는 보조 인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조 인력 활용수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은 343개소(83.5%)이었고, 푸드뱅크의 경우에는 288개소 중 223개소(77.4%)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123개소 중 120개(97.6%)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11개 사업장 중 가산점을 받은 사업장은 200개소(48.7%)이었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가운데 110개소(38.2%)가, 푸드마켓은 123개소 가운데 90개소(73.0%)가 가산점을 받은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푸드뱅크는 임의사업장의 45개소가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 인력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평가지표 6 :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전담 또는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필수교육은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3개 항목이며, 필수교육 외에 권장교육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정보화교육(FMS 활용교육 제외) 등의 기타 교육을 수행한 경우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표 5-2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6 (가산점 +1점)	6 (가산점 +1점)	6 (가산점 +1점)	6 (가산점 +1점)
평가내용		필수 : ① 식품위생교육, 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권장 : ④ 기부식품제공사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정보화교육(FMS 활용교육 제외) 등의 기타교육			
		가산점 (+1)		위의 ①, ②, ③, ④번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만을 충족하는 경우	
			[0.8]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0.6]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①, ③), (②, ③)	
			[0.4]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④), (②, ④), (③, ④)	
			[0.2]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③)	
[0.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는 가중치 6점에 가산점 1점이 부여되어 총 7점이 만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6.25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6.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5.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푸드마켓 평균 점수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보다 0.69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2]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7.00	6.25	1.4005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7.00	6.05	1.5590
	당연사업장	122	0.00	7.00	6.47	1.1732
	임의사업장	166	0.00	7.00	5.73	1.7284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2.33	7.00	6.74	0.7308
	당연사업장	62	3.13	7.00	6.78	0.6394
	임의사업장	61	2.33	7.00	6.70	0.8170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 광주, 제주 3개 지역이 7.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6.83점), 서울(6.74점), 대구(6.71점), 세종(6.67점), 대전(6.5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6.25점 이상의 지역은 12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6.25점보다 낮은 지역은 5개 지역(울산, 경북, 충남, 경기, 전남)이었다.

평균 4.76점을 받은 울산지역과 평균 5.10점을 받은 경북지역은 3개년 간 (2015년~2017년) FMS활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참여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식품위생 교육과 FMS활용 교육은 사업장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는 2017년 기준으로 411개 사업장 중 41개소(10.0%)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보호교육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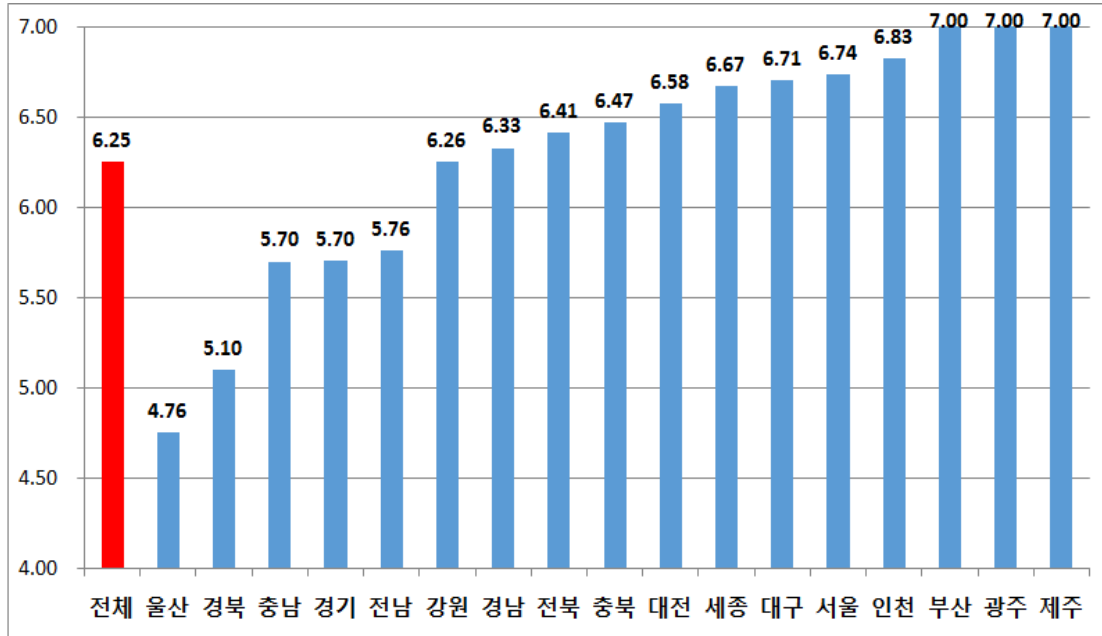
[표 5-23]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7.00	4.67	4.10	7.00	3.20	3.93	6.67	0.00	2.80	5.53	3.13	0.00	2.40	2.33	2.4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6.00	6.67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25	6.74	7.00	6.71	6.83	7.00	6.58	4.76	6.67	5.70	6.26	6.47	5.70	6.41	5.76	5.10	6.33	7.00	
	표준편차	1.40	1.30	0.00	0.67	0.60	0.00	1.05	0.82	0.00	2.04	1.18	0.47	0.90	1.55	1.47	1.42	1.28	0.0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7.00	4.67	4.10	7.00	3.20	3.93	6.67	0.00	2.80	5.53	3.13	0.00	2.40	2.33	2.4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6.00	6.67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05	6.44	7.00	6.61	6.67	7.00	6.20	4.76	6.67	5.54	6.21	6.41	5.69	6.29	5.60	4.96	6.18	7.00
		표준편차	1.56	1.87	0.00	0.80	0.88	0.00	1.48	0.89	-	2.18	1.20	0.47	1.02	1.77	1.49	1.37	1.37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6.00	7.00	6.00	6.27	7.00		3.93	6.67	0.00	2.80	5.53	5.47	7.00	6.00	4.73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6.00	6.67	7.00	7.00	7.00	6.27	7.00	7.00	4.73	7.00	7.00
		평균	6.47	6.96	7.00	6.75	6.93	7.00		4.57	6.67	6.09	5.99	6.41	5.74	7.00	6.67	4.73	7.00	7.00
		표준편차	1.17	0.20	-	0.50	0.23	0.00		0.97	-	1.73	1.63	0.60	0.46	0.00	0.47	0.00	0.00	0.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7.00	4.67	4.10	7.00	3.20	4.33		0.00	4.33	6.00	3.13	0.00	2.40	2.33	2.40	
		최대값	7.00	0.00	7.00	7.00	4.10	7.00	7.00	6.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5.73	0.00	7.00	6.54	4.10	7.00	6.20	5.02		4.67	6.34	6.42	5.68	5.94	5.38	4.99	5.95	
		표준편차	1.73	0.00	0.00	0.92	-	0.00	1.48	0.87		2.57	0.93	0.43	1.11	2.12	1.54	1.45	1.48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2.33	7.00	7.00	6.27	6.27	7.00	6.27	4.73	6.67	2.33	7.00	6.33	5.47	5.93	7.00	3.93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4.73	6.67	7.00	7.00	7.00	6.27	7.00	7.00	7.00	7.00	
		평균	6.74	7.00	7.00	6.90	6.95	7.00	6.91	4.73	6.67	6.22	7.00	6.73	5.74	6.79	7.00	5.98	7.00	7.00
		표준편차	0.73	0.00	0.00	0.28	0.20	0.00	0.26	-	-	1.41	-	0.37	0.41	0.48	0.00	1.77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3.13	7.00	7.00	6.27	7.00		6.27		6.67	3.13			5.47	7.00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6.67	7.00			6.27	7.00		7.00		7.00
		평균	6.78	7.00	7.00	6.64	7.00		6.88		6.67	6.31			5.74	7.00		7.00		7.00
		표준편차	0.64	0.00	0.00	0.52	0.00		0.30		-	1.20			0.46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2.33	7.00	7.00	7.00	6.27	7.00	7.00	4.73		2.33	7.00	6.33	5.47	5.93	7.00	3.93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4.73		7.00	7.00	7.00	6.27	7.00	7.00	7.00	7.00	7.00
		평균	6.70	7.00	7.00	7.00	6.93	7.00	7.00	4.73		6.04	7.00	6.73	5.74	6.64	7.00	5.47	7.00	7.00
		표준편차	0.82	0.00	0.00	0.00	0.23	0.00	0.00	-		1.87	-	0.37	0.46	0.62	0.00	2.17	0.00	-

[그림 5-6]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의 세부평가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의 기준 충족은 필수교육에 해당하는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017년 기준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업장은 411개 사업장 중 394개소(95.9%)이었으며, 푸드뱅크의 경우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 120개소(98.4%)가,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51개소(91.0%)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였고, 푸드마켓의 경우 당연사업장과 임의사업장 모든 사업장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FMS활용교육을 수료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 377개소(91.7%)이었으며, 푸드뱅크의 경우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 117개소(95.9%)가,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42개소(85.5%)가 FMS활용교육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당연사업장 62개소 중 59개소(95.2%)가,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9개소(96.7%)가 수료한 결과를 보였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수료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 370개소(90.0%)이었으며, 푸드뱅크의 경우 당연사업장 122개소 중 112개소(91.8%)가, 임의사업장은 138개소(83.1%)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당연사업장 62개소 중 61개소(98.4%)가,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9개소(96.7%)가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년 기준 식품위생교육, FMS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3개 항목을 모두 수료하여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은 358개소(87.1%)이었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41개소(83.7%),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7개소(95.1%)의 결과를 보였다. 기준 충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표 5-24]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의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기준 교육 참여 (필수교육)			2017년 기준 법적 기준 충족	2017년 기준 직무 및 정보화 교육 (권장교육)	2017년 기준 가산점	
		식품위생 교육	F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전체 사업장	411	394 (95.9%)	377 (91.7%)	370 (90.0%)	358 (87.1%)	360 (87.6%)	325 (79.1%)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71 (94.1%)	259 (89.9%)	250 (86.8%)	241 (83.7%)	239 (83.0%)	210 (72.9%)
	당연	122	120 (98.4%)	117 (95.9%)	112 (91.8%)	112 (91.8%)	107 (87.7%)	100 (82.0%)
	임의	166	151 (91.0%)	142 (85.5%)	138 (83.1%)	131 (78.9%)	132 (79.5%)	110 (66.3%)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23 (100.0%)	118 (95.9%)	120 (97.6%)	117 (95.1%)	121 (98.4%)	115 (93.5%)
	당연	62	62 (100.0%)	59 (95.2%)	61 (98.4%)	59 (95.2%)	62 (100.0%)	59 (95.2%)
	임의	61	61 (100.0%)	59 (96.7%)	59 (96.7%)	58 (95.1%)	59 (96.7%)	56 (91.8%)

* 가산점은 3개 필수교육 외에 권장교육(직무 및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경우임

* 법적 기준 충족은 ①식품위생 교육, ②FMS 활용교육, ③개인정보보호교육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권장교육으로서 직무 및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 360개소(87.6%)이었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39개소(83.0%),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21개소(98.4%)가 이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 외에 3개의 필수교육과 권장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가산점을 받은 사업장은 325개소(79.1%)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10개소(72.9%)가,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5개소(93.5%)가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평가지표 7 : 직원 근무여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을 준용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직원 근무여건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평가한다. 전담(또는 담당)직원의 휴가 또는 부재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연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 5-25] 직원 근무여건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5	5	5	5
평가내용	① 전담직원의 (휴가 또는 부재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 ②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연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음 ③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준수)				
	해당항목 가중치	[1.0]	3개 항목 충족		
		[0.7]	2개 항목 충족		
		[0.4]	1개 항목 충족		
		[0.0]	해당 항목 없음		
평가대상시점	2017년도만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직원 근무여건 지표는 가중치가 5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3.93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과 임의사업장이 각각 4.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3.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보다 0.90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6] 직원 근무여건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5.00	3.93	1.4953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5.00	3.66	1.6072
	당연사업장	122	0.00	5.00	4.14	1.2992
	임의사업장	166	0.00	5.00	3.31	1.7202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5.00	4.56	0.9348
	당연사업장	62	0.00	5.00	4.56	1.0287
	임의사업장	61	2.00	5.00	4.56	0.8371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직원 근무여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개 사업장만 있는 세종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4.76점), 광주(4.75점), 서울(4.75점), 제주(4.63점), 대구(4.60점), 부산(4.57점), 전북(4.4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93점 이상의 지역은 10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3.93점보다 낮은 지역은 7개 지역(충북, 울산 경기, 전남, 충남, 대전, 경북)이었다.

평균 2.6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충북지역은 28개소 가운데 23개소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장도 13개이었다. 울산지역도 평균 2.81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8개 사업장 중 5개소가 전담(또는 겸직) 직원 부재 시 대체인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평균 3.20점을 받은 경기지역과 평균을 살펴보면 75개 사업장 중에 전담(겸직)직원 부재시 대체인력이 없는 사업장이 18개소,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장이 29개소,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 39개소 이었고, 평균 3.25점을 받은 전남지역도 26개소 가운데 16개소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원 근무여건 평가점수가 낮은 지역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항목과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충족 항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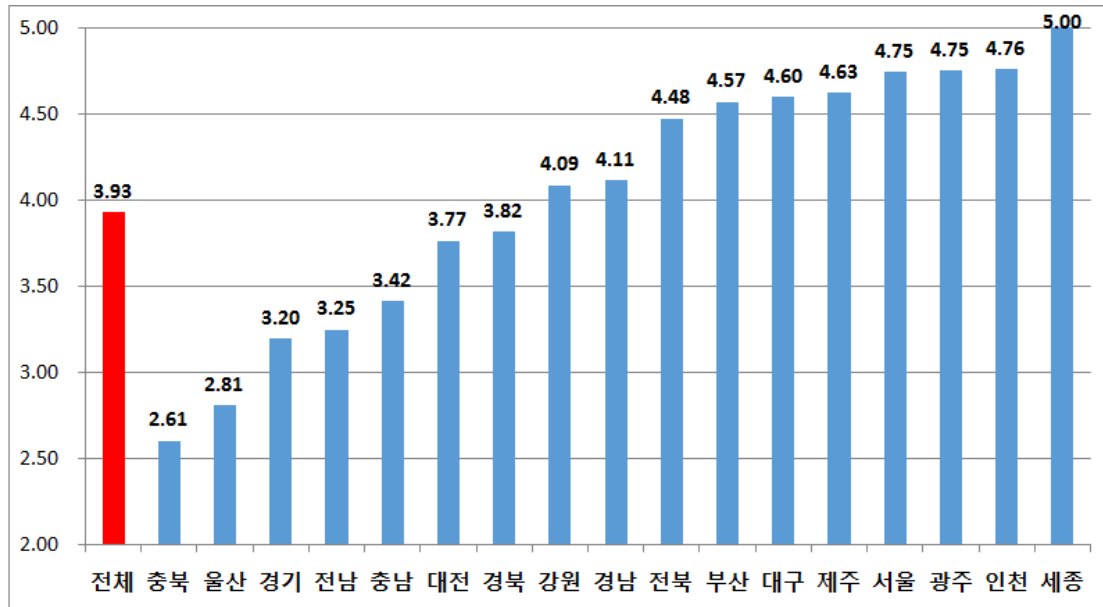
[표 5-27] 직원 근무여건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2.00	0.00	2.00	2.00	0.00	0.00	5.00	0.00	0.00	0.00	0.00	3.50	0.00	0.00	2.00	3.5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3.93	4.75	4.57	4.60	4.76	4.75	3.77	2.81	5.00	3.20	4.09	2.61	3.42	4.48	3.25	3.82	4.11	4.63	
	표준편차	1.50	0.97	0.80	1.18	0.71	0.77	1.50	2.14	0.00	1.76	1.49	1.54	1.34	0.73	1.75	1.37	1.00	0.75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2.00	0.00	2.00	2.00	0.00	0.00	5.00	0.00	0.00	0.00	0.00	3.50	0.00	0.00	2.00	3.5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3.66	4.52	4.53	4.50	4.59	4.70	2.79	2.71	5.00	2.98	4.03	2.54	3.22	4.40	3.02	3.63	4.08	4.25
		표준편차	1.61	1.36	0.90	1.41	0.97	0.84	1.60	2.29	-	1.76	1.52	1.66	1.35	0.76	1.74	1.38	1.05	1.06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3.50	5.00	5.00	3.50	5.00		2.00	5.00	0.00	3.50	0.00	2.00	3.50	0.00	2.00	3.50	3.5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50	3.50	5.00	5.00	3.50	5.00	5.00
		평균	4.14	4.88	5.00	5.00	4.85	5.00		4.25	5.00	3.46	4.75	2.57	3.00	4.40	3.00	2.75	4.63	4.25
		표준편차	1.30	0.42	-	0.00	0.47	0.00		1.50	-	1.51	0.61	1.34	0.87	0.82	2.12	1.06	0.75	1.06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2.00	0.00	2.00	2.00	0.00	0.00		0.00	0.00	0.00	0.00	3.50	0.00	0.00	2.00	
		최대값	5.00	0.00	5.00	5.00	2.00	5.00	5.00	2.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3.31	0.00	4.50	4.28	2.00	4.25	2.79	0.67		2.23	3.60	2.53	3.27	4.40	3.03	3.74	3.93	
		표준편차	1.72	0.00	0.93	1.68	-	1.25	1.60	1.15		1.90	1.76	1.82	1.45	0.77	1.71	1.40	1.09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3.50	3.50	3.50	3.50	5.00	3.50	3.50	5.00	0.00	5.00	2.00	2.00	3.50	5.00	5.00	3.50	5.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50	5.00	5.00	5.0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56	4.95	4.63	4.79	4.89	5.00	4.63	3.50	5.00	3.89	5.00	2.90	4.00	4.70	5.00	5.00	4.25	5.00
		표준편차	0.93	0.27	0.68	0.57	0.40	0.00	0.69	-	-	1.60	-	0.82	1.22	0.67	0.00	0.00	0.87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0.00	3.50	5.00	3.50	3.50		3.50		5.00	0.00			3.50	5.00		5.00		5.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56	4.95	5.00	4.25	4.63		4.50		5.00	3.46			4.50	5.00		5.00		5.00
		표준편차	1.03	0.28	0.00	1.06	0.75		0.77		-	1.78			0.87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2.00	5.00	3.50	5.00	5.00	5.00	5.00	3.50		3.50	5.00	2.00	2.00	3.50	5.00	5.00	3.50	5.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50		5.00	5.0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56	5.00	4.55	5.00	5.00	5.00	5.00	3.50		4.75	5.00	2.90	3.50	4.50	5.00	5.00	4.25	5.00
		표준편차	0.84	0.00	0.72	0.00	0.00	0.00	0.00	-		0.61	-	0.82	1.50	0.87	0.00	0.00	0.87	-

[그림 5-7] 직원 근무여건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직원 근무여건의 세부평가

직원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전담 또는 겸직직원 부재 시 대체인력을 확보한 사업장은 363개소(88.3%)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46개소(85.4%)가 대체인력이 있었으며,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13개소(92.6%),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33개소(80.1%)가 대체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7개소(95.1%)가 대체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0개소(96.8%),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7개소(93.4%)가 대체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장은 326개소(79.3%)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12개소(73.6%)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99개소(81.1%),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13개소(68.1%)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는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4개소(92.7%)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56개소(90.3%), 임의사업장은 58개소(95.1%)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준수 항목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소 중 261개소(63.5%)가 준수하고 있었다. 푸드뱅크 288개소 중 159개소(55.2%)가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86개소(70.5%),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73개소(44.0%)가 준수한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02개소(82.9%)가 종사자 급여기준을 준수하였고,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52개소(83.9%),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0개소(82.0%)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233개소(56.7%)이었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137개소(47.6%),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96개소(78.0%)의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기초사업장에 대하여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마련과 더불어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나가야 하며, 특히 푸드뱅크의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5-28] 직원 근무여건의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전담 또는 겸직직원 부재시 대체인력 여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여부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준수	3개 항목 충족	
전체 사업장	411	363 (88.3%)	326 (79.3%)	261 (63.5%)	233 (56.7%)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46 (85.4%)	212 (73.6%)	159 (55.2%)	137 (47.6%)
	당연	122	113 (92.6%)	99 (81.1%)	86 (70.5%)	75 (61.5%)
	임의	166	133 (80.1%)	113 (68.1%)	73 (44.0%)	62 (37.3%)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17 (95.1%)	114 (92.7%)	102 (82.9%)	96 (78.0%)
	당연	62	60 (96.8%)	56 (90.3%)	52 (83.9%)	50 (80.6%)
	임의	61	57 (93.4%)	58 (95.1%)	50 (82.0%)	46 (75.4%)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영역 평가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영역에는 ‘기부식품 위생관리’, ‘FMS 활용도’ 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지표 가운데 ‘기부식품 위생관리’ 지표는 기초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의 가산점이 동일하지만, ‘FMS 활용도’ 지표는 기초푸드뱅크가 5점, 기초푸드마켓은 4점으로 차이가 있다.

(1) 평가지표 8 :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기부식품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는지, 기부식품 보관 시 투명적재용기 사용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지, 기부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했는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직원 및 보조인력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

[표 5-29]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7	7	7	7	
평가내용	① 지자체와 기부식품의 대한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② 기부식품 보관 시 투명적재용기 사용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③ 보관 중이거나 제공할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함 ④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음 ⑤ 보건증 소지 여부					
	해당항목 가중치	[1.0]	5가지 항목 해당			
		[0.8]	4가지 항목 해당			
		[0.6]	3가지 항목 해당			
		[0.4]	2가지 항목 해당			
		[0.2]	1가지 항목 해당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④⑤현장평가 시점 기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는 가중치가 7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6.20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6.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5.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보다 0.38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0]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7.00	6.20	1.1162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7.00	6.09	1.2069
	당연사업장	122	1.40	7.00	6.36	1.0205
	임의사업장	166	0.00	7.00	5.89	1.2943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4.20	7.00	6.47	0.8120
	당연사업장	62	4.20	7.00	6.50	0.7213
	임의사업장	61	4.20	7.00	6.43	0.8992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 광주, 제주 3개 지역이 평균 7.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부산(6.95점), 대전(6.44점), 대구(6.37점), 경남(6.24점), 서울(6.2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6.20점 이상의 지역은 8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6.20점보다 낮은 지역은 9개 지역(울산, 충북, 세종, 경북, 충남, 전남, 강원, 경기, 전북)이었다.

평균 5.08점을 받은 울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2017년 기준 8개 사업장 중 5개소가 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증 소지 여부도 4개소가 충족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충북지역도 평균 5.1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2017년 기준 28개 사업장 중 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9개소이었으며,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장이 1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이 요구되며,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전담직원, 담당(겸직)직원, 보조인력 등)의 보건증 소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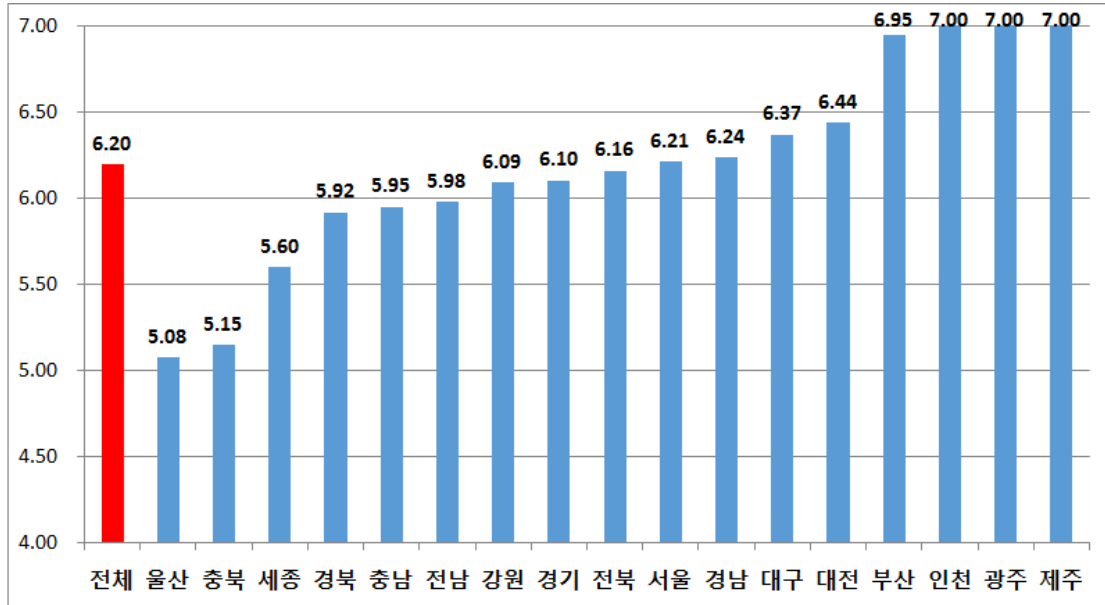
[표 5-31]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2.80	5.60	5.60	7.00	7.00	5.60	2.80	5.60	0.00	4.20	1.40	2.80	5.60	4.20	4.20	4.2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5.6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20	6.21	6.95	6.37	7.00	7.00	6.44	5.08	5.60	6.10	6.09	5.15	5.95	6.16	5.98	5.92	6.24	7.00	
	표준편차	1.12	0.95	0.26	0.71	0.00	0.00	0.71	1.66	0.00	1.37	1.21	1.53	1.32	0.70	0.93	0.86	0.83	0.0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2.80	5.60	5.60	7.00	7.00	5.60	2.80	5.60	0.00	4.20	1.40	2.80	5.60	4.20	4.20	4.2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5.6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09	6.07	6.91	6.35	7.00	7.00	6.40	5.00	5.60	5.92	6.21	5.23	5.91	6.07	5.97	5.89	6.14	7.00
		표준편차	1.21	1.16	0.35	0.73	0.00	0.00	0.75	1.78	-	1.47	1.14	1.65	1.48	0.68	0.87	0.88	0.85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1.40	5.60	7.00	5.60	7.00	7.00		2.80	5.60	1.40	5.60	5.60	2.80	5.60	4.20	5.60	7.0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5.6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36	6.33	7.00	6.65	7.00	7.00		5.60	5.60	6.16	6.53	6.00	5.60	6.16	5.95	6.30	7.00	7.00
		표준편차	1.02	0.71	-	0.70	0.00	0.00		1.98	-	1.28	0.72	0.68	2.42	0.77	1.34	0.99	0.00	0.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2.80	5.60	5.60	7.00	7.00	5.60	2.80		0.00	4.20	1.40	2.80	5.60	4.20	4.20	4.20	
		최대값	7.00	2.80	7.00	7.00	7.00	7.00	7.00	5.6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5.89	2.80	6.91	6.22	7.00	7.00	6.40	4.20		5.54	6.02	4.90	5.97	6.02	5.97	5.85	5.90	
		표준편차	1.29	0.00	0.36	0.74	-	0.00	0.75	1.40		1.70	1.33	1.84	1.35	0.68	0.79	0.89	0.81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최소값			4.20	5.60	7.00	5.60	7.00	7.00	5.60	5.60	5.60	4.20	4.20	4.20	5.60	5.60	4.20	5.60	5.6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5.60	5.60	7.00	4.20	5.6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47	6.35	7.00	6.40	7.00	7.00	6.48	5.60	5.60	6.69	4.20	4.76	6.07	6.44	6.07	6.07	6.65	7.00
표준편차			0.81	0.71	0.00	0.75	0.00	0.00	0.72	-	-	0.77	-	0.77	0.72	0.77	1.62	0.81	0.7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4.20	5.60	7.00	7.00	7.00		5.60		5.60	4.20			5.60	5.60		5.60		7.00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5.60	7.00			5.60	7.00		5.60		7.00
		평균	6.50	6.40	7.00	7.00	7.00		6.77		5.60	6.65			5.60	6.30		5.60		7.00
		표준편차	0.72	0.71	0.00	0.00	0.00		0.57		-	0.87			0.00	0.99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4.20	5.60	7.00	5.60	7.00	7.00	5.60	5.60		5.60	4.20	4.20	5.60	5.60	4.20	5.60	5.60	7.00
		최대값	7.00	5.60	7.00	7.00	7.00	7.00	5.60	5.60		7.00	4.20	5.6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6.43	5.60	7.00	6.16	7.00	7.00	5.60	5.60		6.77	4.20	4.76	6.53	6.53	6.07	6.30	6.65	7.00
		표준편차	0.90	0.00	0.00	0.77	0.00	0.00	0.00	-		0.57	-	0.77	0.81	0.81	1.62	0.99	0.70	-

[그림 5-8]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기부식품등 위생관리의 세부평가

기부식품등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은 2017년 기준 411개소 중 322개소(78.3%)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간(2015년~2017년) 매년 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274개소(66.7%)이었다.

푸드뱅크는 2017년 기준 288개소 중 217개소(75.3%)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은 182개소(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93개소(76.2%)이었고,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89개소(53.6%)이었다.

푸드마켓은 2017년 기준 123개소 중 105개소(85.4%)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은 92개소(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46개소(74.2%)이었고,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46개소(75.4%)이었다.

기부식품 투명 적재용기 사용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소 중 373개소(90.8%)가 투명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58개소(89.6%)이었고,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11개소(91.0%),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47개소(88.6%)의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5개소(93.5%)가 투명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57개소(91.9%),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8개소(95.1%)이었다.

[표 5-32] 기부식품등 위생관리의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지자체와의 정기점검		기부식품 투명적재 용기사용	기부식품 유통기한 준수	비상연락 체계 확보	보건증 소지 여부	5개 항목 충족	
		2017년 정기점검	매년 정기점검						
전체 사업장	411	322 (78.3%)	274 (66.7%)	373 (90.8%)	404 (98.3%)	401 (97.6%)	368 (89.5%)	233 (56.7%)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17 (75.3%)	182 (63.2%)	258 (89.6%)	282 (97.9%)	279 (96.9%)	251 (87.2%)	151 (52.4%)
	당연	122	104 (85.2%)	93 (76.2%)	111 (91.0%)	118 (96.7%)	121 (99.2%)	111 (81.0%)	77 (63.1%)
	임의	166	113 (68.1%)	89 (53.6%)	147 (88.6%)	164 (98.8%)	158 (95.2%)	140 (84.3%)	74 (44.6%)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05 (85.4%)	92 (74.8%)	115 (93.5%)	122 (99.2%)	122 (99.2%)	117 (95.1%)	82 (66.7%)
	당연	62	54 (87.1%)	46 (74.2%)	57 (91.9%)	62 (100.0%)	62 (100.0%)	61 (98.4%)	41 (66.1%)
	임의	61	51 (83.6%)	46 (75.4%)	58 (95.1%)	60 (98.4%)	60 (98.4%)	56 (91.8%)	41 (67.2%)

기부식품 유통기한 준수와 관련하여 전체 411개소 중 404개소(98.3%)가 유통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소(경기 4개소, 강원 1개소, 서울 1개소, 충남 1개소)는 유통기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비상연락체계 확보는 전체 411개소 중 401개소(97.6%)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소(충북 2개소, 경기 4개소, 서울 2개소, 대전 1개소, 울산 1개소)는 비상연락체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건증 소지 여부는 전체 411개소 중 368개소(89.5%)가 충족한 결과를 보였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51개소(87.2%),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7개소(95.1%)가 보건증을 소지한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233개소 (56.7%)이었으며, 특히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74개소(44.6%)로 나타났다.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유통기한 준수 및 식품취급 직원의 보건증 소지 안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평가지표 9 : FMS 활용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근거하여 직원의 FMS 활용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는 FMS를 통한 영수증 증빙관리, FMS 입력 정보의 정확성, FMS 입력의 충실성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FMS 입력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성에 대해서는 현장 시점에서 샘플 10개를 조사하여 입력이 오류 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5-33] FMS 활용도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5	5	4	4
평가내용	① FMS를 통해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②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음(샘플 10개 조사) ③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샘플 10개 조사)				
	해당항목 가중치	[1.0]	항목 ①, ②, ③ 모두 해당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	항목 ①, ②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①, ③에 해당함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②, ③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0.4]	항목 ①에만 해당함 항목 ②에만 해당함(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항목 ③에만 해당함(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현장평가 시점 기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FMS 활용도 지표는 가중치가 푸드뱅크는 5점, 푸드마켓은 4점이다. 푸드뱅크 288개소의 평균은 4.58점(당연사업장 4.81점, 임의사업장 4.41점)이었으며, 푸드마켓 123개소의 평균은 3.87점(당연사업장 3.95점, 임의사업장 3.79점)의 결과를 보였다.

[표 5-34] FMS 활용도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5.00	4.58	1.1210
	당연사업장	122	0.00	5.00	4.81	0.7858
	임의사업장	166	0.00	5.00	4.41	1.2910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4.00	3.87	0.5571
	당연사업장	62	2.80	4.00	3.95	0.2185
	임의사업장	61	0.00	4.00	3.79	0.7540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FMS 활용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푸드뱅크의 경우 인천, 광주, 세종, 전북 4개 지역이 평균 5.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울산(4.93점), 경남(4.92점), 경북(4.87점), 대구(4.85점), 부산(4.81점), 대전(4.79점), 제주(4.75점), 서울(4.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4.58점 이상의 지역은 12개 지역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5개 지역(충북, 경기, 전남, 충남, 강원)이었다.

푸드마켓의 경우 강원, 제주, 대전, 부산, 대구, 경남, 인천, 광주, 세종 9개 지역이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전북(3.92점), 서울(3.92점), 경기(3.91점), 전남(3.8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87점 이상의 지역은 13개 지역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4개 지역(충북, 충남, 경북, 울산)이었다.

푸드뱅크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충북지역은 5점 만점에 3.93점이었으며, 푸드뱅크 23개소 중 8개소가 FMS 입력정보 일치 및 정확성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푸드마켓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충북지역은 4점 만점에 2.96점이었으며, 푸드마켓 4개소 중 1개소가 0점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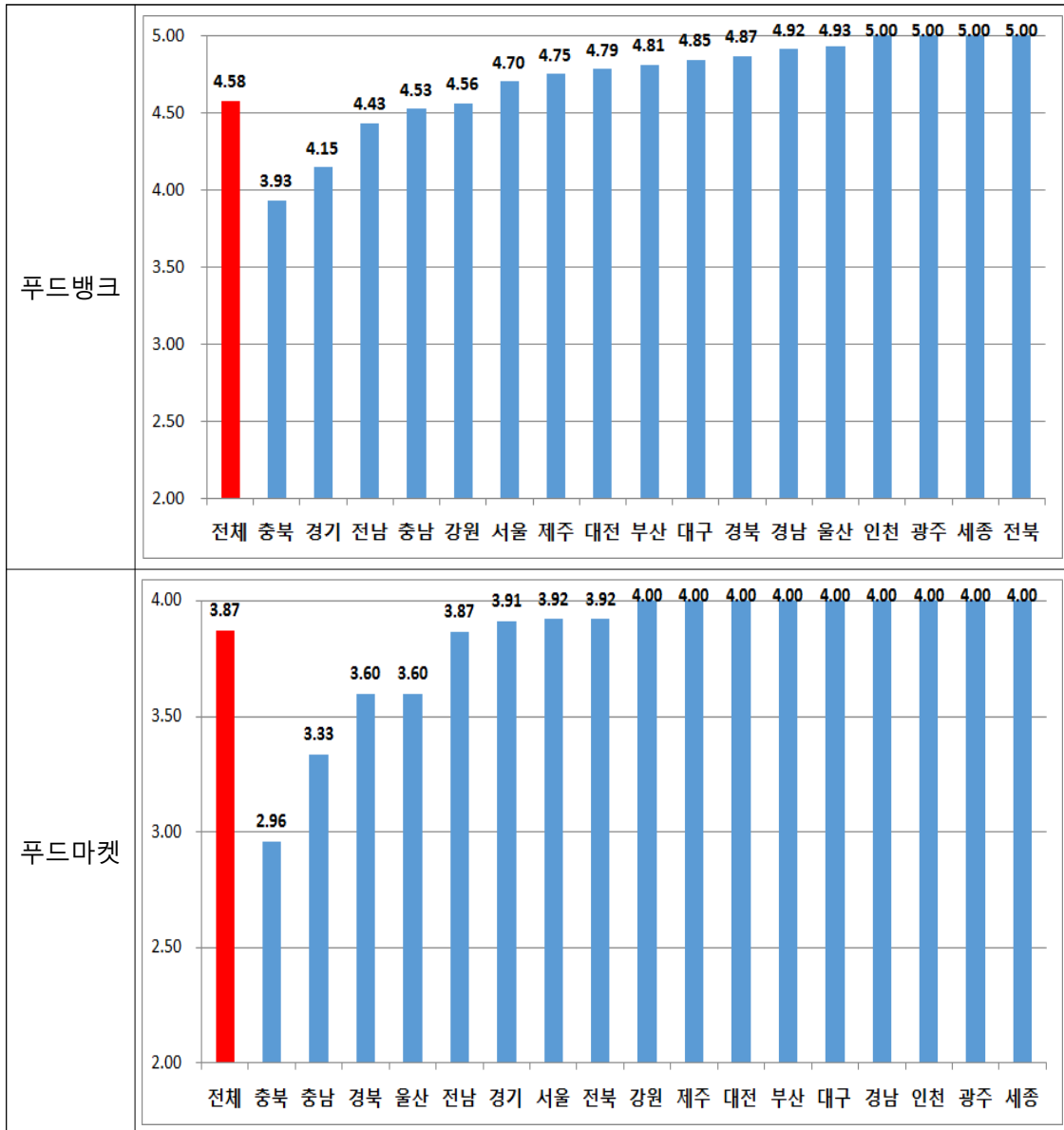
[표 5-35] FMS 활용도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2.00	3.00	5.00	5.00	3.50	4.50	5.00	0.00	0.00	0.00	0.00	5.00	0.00	3.00	3.50	4.5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58	4.70	4.81	4.85	5.00	5.00	4.79	4.93	5.00	4.15	4.56	3.93	4.53	5.00	4.43	4.87	4.92	4.75
		표준편차	1.12	1.10	0.75	0.55	0.00	0.00	0.57	0.19	-	1.50	1.28	1.73	1.33	0.00	1.12	0.47	0.35	0.35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00	5.00	3.50	5.00	5.00	4.50	5.00	5.00	4.5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8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43	5.00	4.64	5.00	5.00	4.88	5.00	5.00	4.75
		표준편차	0.79	0.00	-	0.00	0.00	0.00		0.00	-	1.38	0.00	0.56	0.00	0.00	0.25	0.00	0.00	0.35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2.00	3.00	5.00	5.00	3.50	4.50		0.00	0.00	0.00	0.00	5.00	0.00	3.00	3.50	
		최대값	5.00	2.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41	1.00	4.80	4.78	5.00	5.00	4.79	4.83		3.70	4.30	3.63	4.43	5.00	4.34	4.85	4.89	
		표준편차	1.29	1.41	0.77	0.67	-	0.00	0.57	0.29		1.60	1.58	1.98	1.45	0.00	1.21	0.49	0.40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2.80	4.00	4.00	4.00	4.00	4.00	3.60	4.00	2.80	4.00	0.00	0.00	3.60	3.60	2.80	4.00	4.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6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87	3.92	4.00	4.00	4.00	4.00	4.00	3.60	4.00	3.91	4.00	2.96	3.33	3.92	3.87	3.60	4.00	4.00
		표준편차	0.56	0.30	0.00	0.00	0.00	0.00	0.00	-	-	0.29	-	1.73	1.63	0.18	0.23	0.69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2.80	2.80	4.00	4.00	4.00		4.00		4.00	3.60			4.00	4.00		4.00		4.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95	3.91	4.00	4.00	4.00		4.00		4.00	3.97			4.00	4.00		4.00		4.00
		표준편차	0.22	0.31	0.00	0.00	0.00		0.00		-	0.12			0.00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4.00	4.00	4.00	4.00	4.00	4.00	3.60		2.80	4.00	0.00	0.00	3.60	3.60	2.80	4.00	4.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6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79	4.00	4.00	4.00	4.00	4.00	4.00	3.60		3.80	4.00	2.96	2.67	3.87	3.87	3.40	4.00	4.00
		표준편차	0.75	0.00	0.00	0.00	0.00	0.00	0.00	-		0.49	-	1.73	2.31	0.23	0.23	0.85	0.00	-

[그림 5-9] FMS 활용도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FMS 활용도 세부평가

FMS 활용도와 관련하여 FMS를 통한 영수증을 관리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 411개소 중 393개소(95.6%)이었으며, 3년간(2015년~2017년) 매년 영수증 증빙 관리를 수행한 사업장은 378개소(92.0%)이었다.

푸드뱅크는 2017년 기준 288개소 중 272개소(94.4%)가 영수증을 관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은 260개소(9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3년간 매년 영수증을 관리한 사업장은 117개소(95.9%)이었고,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43개소(86.1%)이었다.

푸드마켓은 2017년 기준 123개소 중 121개소(98.4%)가 영수증을 관리하였고,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은 118개소(9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61개소(98.4%)이었고,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7개소(93.4%)이었다.

FMS 입력정보 일치 및 정확성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소 중 361개소(87.8%)가 FMS 입력정보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45개소(85.1%)가 FMS 입력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10개소(90.2%),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35개소(81.3%)가 정확하게 작성한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6개소(94.3%)가 FMS 입력정보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1개소(98.4%),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5개소(90.2%)가 정확하게 작성한 결과를 보였다.

[표 5-36] FMS 활용도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FMS를 통한 영수증 증빙관리		FMS 입력정보 일치 및 정확성	FMS 입력정보 적절성	3개 항목 충족
		2017년 영수증 증빙관리	매년 영수증 증빙관리			
전체 사업장	411	393 (95.6%)	378 (92.0%)	361 (87.8%)	364 (88.6%)	342 (83.2%)
기초 푸드뱅크	전체	272 (94.4%)	260 (90.3%)	245 (85.1%)	247 (85.8%)	230 (79.9%)
	당연	119 (97.5%)	117 (95.9%)	110 (90.2%)	112 (91.8%)	109 (89.3%)
	임의	153 (92.2%)	143 (86.1%)	135 (81.3%)	135 (81.3%)	121 (72.9%)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1 (98.4%)	118 (95.9%)	116 (94.3%)	117 (95.1%)	112 (91.1%)
	당연	61 (98.4%)	61 (98.4%)	61 (98.4%)	61 (98.4%)	59 (95.2%)
	임의	60 (98.4%)	57 (93.4%)	55 (90.2%)	56 (91.8%)	53 (86.9%)

FMS 입력정보 적절성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소 중 364개소(88.6%)가 FMS 입력정보를 적절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47개소(85.8%)가,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6개소(94.3%)가 FMS 입력정보를 적절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개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42개소(83.2%)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30개소(79.9%),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2개소(91.1%)가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영역 평가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영역에는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기부자(처) 관리수준', '이용자 관리수준',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지표 가운데 '기부자(처) 관리수준'과 '이용자 관리수준' 2개 지표는 기초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1) 평가지표 10 :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기부식품등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하고 있는지, 자체소비율(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이상 제공)을 준수하고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우선지원대상이나 배분제외 및 금지대상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나타난 요건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5-37]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7	7	7	7	
평가내용	①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②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하고 있음(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제공) ③ 자체소비율(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이상 제공)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음 ④ 우선지원대상, 배분제외 및 금지대상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안내 지침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해당항목 가중치	[1.0]	4가지 항목 충족			
		[0.75]	3가지 항목 충족			
		[0.5]	2가지 항목 충족			
		[0.25]	1가지 항목 충족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2017년도만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는 가중치가 푸드뱅크는 7점으로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점수는 5.10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5.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4.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뱅크 288개소의 평균은 4.88점이었으며, 푸드마켓 123개소의 평균은 5.61점으로 푸드마켓이 푸드뱅크보다 0.73점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5-38]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7.00	5.10	1.1493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7.00	4.88	1.2050
	당연사업장	122	1.75	7.00	5.16	1.0025
	임의사업장	166	0.00	7.00	4.67	1.2980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3.50	7.00	5.61	0.8066
	당연사업장	62	3.50	7.00	5.90	1.0137
	임의사업장	61	5.25	7.00	5.31	0.3142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가 5.93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대전(5.72점), 제주(5.69점), 서울(5.37점), 부산(5.31점), 경기(5.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5.10점 이상의 지역은 9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5.10점보다 낮은 지역은 8개 지역(충북, 강원, 울산, 충남, 경북, 전남, 대구, 경남)이었다.

평균 4.25점을 받은 충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2017년 기준 28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이 이용자의 주기적 교체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매주 3회 이상 제공한 사업장 2개소, 매주 60인 이상 제공한 사업장도 2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평균 4.53점을 받은 강원지역도 2017년 기준 17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이 이용자의 주기적 교체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하였고, 매주 3회 이상 제공한 사업장은 6개소, 매주 60인 이상 제공한 사업장은 1개소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 점수가 낮은 원인은 ‘이용자의 주기적 교체, 매주 3회 이상 제공, 매주 60인 이상 제공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다. 향후에는 이용자의 주기적 교체, 매주 3회 이상 제공, 매주 60인 이상 제공에 대한 사업장들의 자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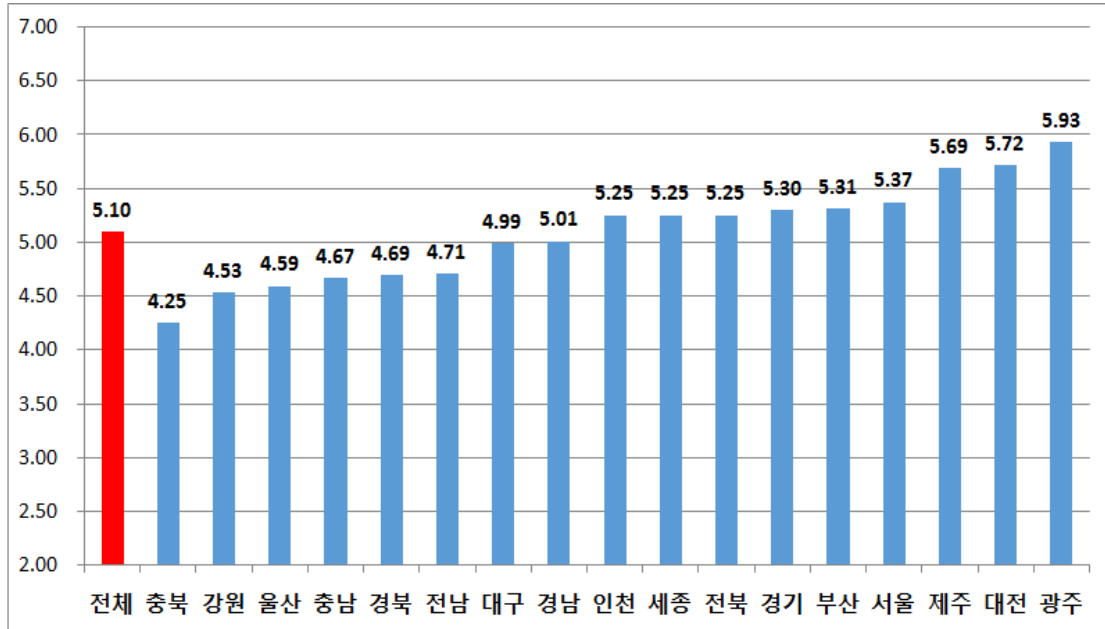
[표 5-39]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3.50	3.50	3.50	5.25	5.25	3.50	5.25	0.00	3.50	0.00	0.00	5.25	3.50	0.00	3.50	5.25	
	최대값	7.00	7.00	7.00	7.00	7.00	7.00	7.00	5.25	5.25	7.00	5.25	5.25	5.25	5.25	5.25	7.00	7.00	7.00	
	평균	5.10	5.37	5.31	4.99	5.25	5.93	5.72	4.59	5.25	5.30	4.53	4.25	4.67	5.25	4.71	4.69	5.01	5.69	
	표준편차	1.15	1.32	0.75	0.86	0.51	0.88	0.80	0.91	0.00	1.32	0.89	1.46	1.33	0.00	0.82	1.36	0.82	0.88	
푸드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3.50	3.50	3.50	5.25	5.25	3.50	5.25	0.00	3.50	0.00	0.00	5.25	3.50	0.00	3.50	5.25
		최대값	7.00	5.25	7.00	7.00	7.00	7.00	5.25	5.25	5.25	7.00	5.25	5.25	5.25	5.25	5.25	7.00	7.00	5.25
		평균	4.88	4.67	5.14	4.85	5.25	6.07	5.25	4.50	5.25	5.16	4.48	4.03	4.47	5.25	4.64	4.61	4.96	5.25
		표준편차	1.21	1.19	0.77	1.05	0.78	0.90	0.00	0.94	-	1.38	0.90	1.53	1.50	0.00	0.85	1.45	0.9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1.75	3.50	5.25	5.25	3.50	5.25		3.50	5.25	3.50	3.50	1.75	3.50	5.25	3.50	5.25	5.25	5.25
		최대값	7.00	5.25	5.25	5.25	7.00	7.00		5.25	5.25	7.00	5.25	5.25	5.25	5.25	5.25	7.00	7.00	5.25
		평균	5.16	4.90	5.25	5.25	5.25	6.22		4.81	5.25	5.45	4.38	4.00	4.67	5.25	4.38	6.13	5.69	5.25
		표준편차	1.00	0.71	-	0.00	0.82	0.92		0.88	-	0.93	0.96	1.66	1.01	0.00	1.01	1.24	0.88	0.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3.50	3.50	5.25	5.25	5.25	3.50		0.00	3.50	0.00	0.00	5.25	3.50	0.00	3.50	
		최대값	7.00	3.50	7.00	7.00	5.25	7.00	5.25	5.25		7.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평균	4.67	1.75	5.13	4.67	5.25	5.83	5.25	4.08		4.69	4.55	4.05	4.43	5.25	4.70	4.43	4.75	
		표준편차	1.30	2.47	0.80	1.24	-	0.90	0.00	1.01		1.82	0.90	1.53	1.60	0.00	0.84	1.40	0.82	
	푸드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최소값			3.50	3.5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3.5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최대값			7.00	7.00	7.00	5.25	5.25	5.25	7.00	5.25	5.25	7.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7.00
평균			5.61	6.01	5.54	5.25	5.25	5.25	6.12	5.25	5.25	5.74	5.25	5.25	5.25	5.25	5.25	5.25	5.25	6.13
표준편차			0.81	1.10	0.68	0.00	0.00	0.00	0.94	-	-	1.01	-	0.00	0.00	0.00	0.00	0.00	0.00	1.24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3.50	3.50	5.25	5.25	5.25		5.25		5.25	3.50			5.25	5.25		5.25		7.00
		최대값	7.00	7.00	7.00	5.25	5.25		7.00		5.25	7.00			5.25	5.25		5.25		7.00
		평균	5.90	6.06	6.13	5.25	5.25		6.42		5.25	5.83			5.25	5.25		5.25		7.00
		표준편차	1.01	1.12	1.24	0.00	0.00		0.90		-	1.14			0.00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최대값	7.00	5.25	7.00	5.25	5.25	5.25	5.25	5.25		7.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평균	5.31	5.25	5.43	5.25	5.25	5.25	5.25	5.25		5.54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표준편차	0.31	0.00	0.55	0.00	0.00	0.00	0.00	-		0.71	-	0.00	0.00	0.00	0.00	0.00	0.00	-

[그림 5-10]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세부평가

기부식품등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411개소 중 405개소(98.5%)가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 6개소만이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이용자의 주기적 교체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411개소 중 342개소(83.2%)가 주기적 교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21개소(76.7%)가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하였고, 그 가운데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03개소(84.4%),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18개소(71.1%)가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한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21개소(98.4%)가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소비 및 제공 준수 항목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80% 이상 배분, 매주 3회 이상 배분, 매주 60인 이상 배분의 3개 세부항목이 법적 기준이다. 즉, 3개 세부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체 411개소 중 54개소(13.1%)만이 법적 기준 3개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6개소(9.0%),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28개소(22.8%)가 법적 기준 3개 항목을 충족한 결과를 보였다. 3개 항목 가운데 매주 60인 이상 배분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의 16.8% 수준인 69개소 뿐이었다.

지원 대상 지원을 준수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96개소(96.4%)이었으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74개소(95.1%),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22개소(99.2%)이었다.

[표 5-40]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	이용자의 주기적 교체	자체 소비 및 제공 준수				지원대상 지원 준수	모든 항목 충족	
				80% 이상 배분	매주 3회 이상 배분	매주 60인 이상 배분	법적 기준 충족			
전체 사업장	411	405 (98.5%)	342 (83.2%)	366 (89.1%)	215 (52.3%)	69 (16.8%)	54 (13.1%)	396 (96.4%)	52 (12.7%)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82 (97.9%)	221 (76.7%)	131 (45.5%)	36 (12.5%)	26 (9.0%)	274 (95.1%)	24 (8.3%)	
	당연	122	122 (100.0%)	103 (84.4%)	110 (90.2%)	78 (63.9%)	24 (19.7%)	16 (13.1%)	119 (97.5%)	15 (12.3%)
	임의	166	160 (96.4%)	118 (71.1%)	151 (91.0%)	53 (31.9%)	12 (7.2%)	10 (6.0%)	155 (93.4%)	9 (5.4%)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23 (100.0%)	121 (98.4%)	105 (85.4%)	84 (68.3%)	33 (26.8%)	28 (22.8%)	122 (99.2%)	28 (22.8%)
	당연	62	62 (100.0%)	60 (96.8%)	56 (90.3%)	47 (75.8%)	30 (48.4%)	26 (41.9%)	61 (98.4%)	26 (41.9%)
	임의	61	61 (100.0%)	61 (100.0%)	49 (80.3%)	37 (60.7%)	3 (4.9%)	2 (3.3%)	61 (100.0%)	2 (3.3%)

* 법적기준 충족은 ① 80% 이상 배분, ② 매주 3회 이상 배분, ③ 매주 60인 이상 배분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2) 평가지표 11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표 5-41]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6	6	6	6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0.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직접모집경비 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는 가중치가 6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5.97점으로 푸드마켓 임의사업장 2개소(경기 1개소, 인천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이 무상제공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6.00	5.97	0.4180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6.00	6.00	6.00	0.0000
	당연사업장	122	6.00	6.00	6.00	0.0000
	임의사업장	166	6.00	6.00	6.00	0.0000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6.00	5.90	0.7619
	당연사업장	62	6.00	6.00	6.00	0.0000
	임의사업장	61	0.00	6.00	5.80	1.0773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5.76점)과 경기(5.92점)를 제외한 15개 지역 모두 6.00점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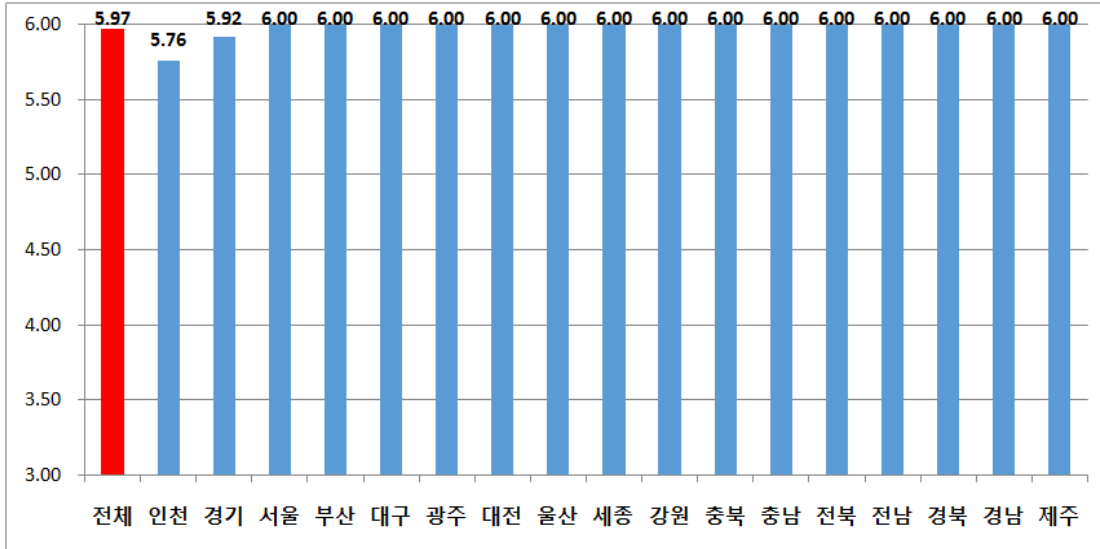
[표 5-43]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6.00	6.00	6.00	0.00	6.00	6.00	6.00	6.00	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97	6.00	6.00	6.00	5.76	6.00	6.00	6.00	6.00	5.9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42	0.00	0.00	0.00	1.20	0.00	0.00	0.00	0.00	0.6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00	0.00	-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6.00	6.00	6.00	0.00	6.00	6.00	6.00	6.00	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90	6.00	6.00	6.00	5.57	6.00	6.00	6.00	6.00	5.6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76	0.00	0.00	0.00	1.60	0.00	0.00	-	-	1.41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6.00	6.00	6.00	0.00	6.00	6.00	6.00		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90	6.00	6.00	6.00	5.40	6.00	6.00	6.00		5.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0.77	0.00	0.00	0.00	1.90	0.00	0.00	-		2.45	-	0.00	0.00	0.00	0.00	0.00	0.00	-		

[그림 5-11]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세부평가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는 전체 411개소 중 409개소(99.5%)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제공을 준수하지 못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표 5-44]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무상제공 준수	법적기준 충족
전체 사업장	411	409 (99.5%)	409 (99.5%)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100.0%)	288 (100.0%)
	당연	122 (100.0%)	122 (100.0%)
	임의	166 (100.0%)	166 (100.0%)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98.4%)	121 (98.4%)
	당연	62 (100.0%)	62 (100.0%)
	임의	61 (96.7%)	59 (96.7%)

* 법적 기준 충족은 무상제공을 준수한 경우

(3) 평가지표 12 : 기부자(처) 관리수준

기부자(처) 관리수준은 기부자 또는 기부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는지,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는지,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등이며, 지표 가중치는 기초푸드뱅크는 5 점, 기초푸드마켓은 4점으로 차이가 있다.

[표 5-45]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5	5	4	4	
평가내용	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음					
	②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ex. 기부협약, 표창수여, 기관장 감사서신 등)를 실시함					
	③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개 모두 해당함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개 해당함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개 해당함				
	[0.0]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와 관련하여 푸드뱅크는 가중치 5점 중에 평균은 3.74점(당연사업장 평균 4.28점, 임의사업장 평균 3.34점)의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가중치 4점 중에 평균은 3.68점(당연사업장 3.71점, 임의사업장 3.64 점)의 결과를 나타냈다.

[표 5-46]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5.00	3.74	1.6198
	당연사업장	122	0.67	5.00	4.28	1.1815
	임의사업장	166	0.00	5.00	3.34	1.7785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53	4.00	3.68	0.7401
	당연사업장	62	0.53	4.00	3.71	0.6741
	임의사업장	61	1.33	4.00	3.64	0.8059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기부자(처) 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푸드뱅크의 광주, 세종 2개 지역이 평균 5.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인천(4.73점), 대구(4.65점), 서울(4.42점), 전북(4.29점), 대전(4.29점), 부산(4.14점), 경남(3.8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74점 이상의 지역은 9개 지역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8개 지역(전남, 충북, 강원, 울산, 충남, 제주, 경기, 경북)이었다.

푸드마켓의 경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8개 지역이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전북(3.84점), 부산(3.80점), 서울(3.78점), 경남(3.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68점 이상의 지역은 12개 지역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5개 지역(충남, 충북, 전남, 경기, 제주)이었다.

푸드뱅크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전남지역은 5점 만점에 2.79점이었으며, 2017년 기준 푸드뱅크 23개소 중 11개소가 장기기부자 특별관리가 미흡한 평가를 받았으며, 12개소가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가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2.85점을 받은 충북 지역도 23개소 중 13개소가 장기기부자 특별관리에 대한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였고,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가 없는 사업장도 13개소이었다.

푸드마켓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충남지역은 4점 만점에 2.65점이었으며, 2017년 기준 푸드마켓 6개소 중 4개소가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기부자(처) 관리수준의 평가점수가 낮은 지역은 장기기부자 특별관리 항목과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 항목에서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기부자(처)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기부자 특별관리 및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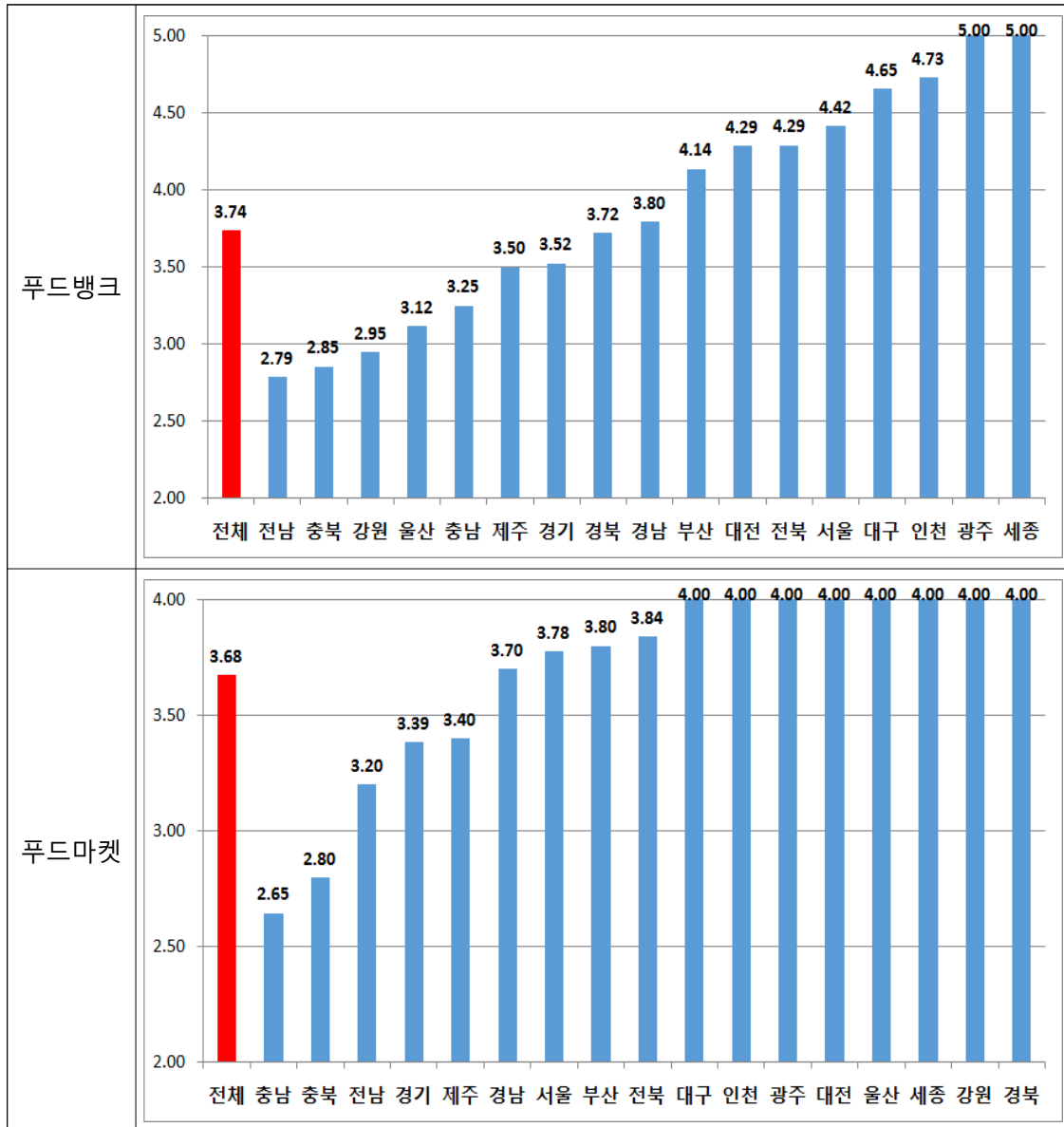
[표 5-47]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0.00	2.00	3.50	5.00	2.00	1.33	5.00	0.00	0.00	0.00	0.00	2.33	0.00	1.17	0.00	2.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3.74	4.42	4.14	4.65	4.73	5.00	4.29	3.12	5.00	3.52	2.95	2.85	3.25	4.29	2.79	3.72	3.80	3.50
		표준편차	1.62	1.21	1.65	0.90	0.52	0.00	1.15	1.38	-	1.72	2.13	1.81	1.76	0.98	1.67	1.34	1.62	2.12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67	3.00	5.00	5.00	4.00	5.00		1.33	5.00	0.67	0.67	2.00	0.67	3.50	1.33	4.50	5.00	2.00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28	4.70	5.00	5.00	4.85	5.00		3.58	5.00	4.02	3.78	3.48	2.89	4.70	2.58	4.75	5.00	3.50
		표준편차	1.18	0.63	-	0.00	0.34	0.00		1.63	-	1.27	1.69	1.25	2.17	0.67	1.64	0.35	0.00	2.12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0.00	2.00	3.50	5.00	2.00	2.00		0.00	0.00	0.00	0.00	2.33	0.00	1.17	0.00	
		최대값	5.00	1.75	5.00	5.00	3.50	5.00	5.0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3.34	0.88	4.08	4.50	3.50	5.00	4.29	2.50		2.73	2.45	2.58	3.32	4.08	2.83	3.60	3.45	
		표준편차	1.78	1.24	1.69	1.06	-	0.00	1.15	0.87		2.05	2.29	1.98	1.75	1.08	1.72	1.36	1.69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53	0.53	1.60	4.00	4.00	4.00	4.00	4.00	4.00	1.33	4.00	1.60	1.07	3.20	1.60	4.00	2.80	2.8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68	3.78	3.80	4.00	4.00	4.00	4.00	4.00	4.00	3.39	4.00	2.80	2.65	3.84	3.20	4.00	3.70	3.40
		표준편차	0.74	0.70	0.69	0.00	0.00	0.00	0.00	-	-	0.84	-	1.20	1.13	0.36	1.39	0.00	0.60	0.85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0.53	0.53	4.00	4.00	4.00		4.00		4.00	2.80			1.07	4.00		4.00		4.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2.80	4.00		4.00		4.00
		평균	3.71	3.76	4.00	4.00	4.00		4.00		4.00	3.50			2.22	4.00		4.00		4.00
		표준편차	0.67	0.72	0.00	0.00	0.00		0.00		-	0.52			1.00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1.33	4.00	1.60	4.00	4.00	4.00	4.00	4.00		1.33	4.00	1.60	1.60	3.20	1.60	4.00	2.80	2.8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2.80
		평균	3.64	4.00	3.76	4.00	4.00	4.00	4.00	4.00		3.16	4.00	2.80	3.07	3.73	3.20	4.00	3.70	2.80
		표준편차	0.81	0.00	0.76	0.00	0.00	0.00	0.00	-		1.31	-	1.20	1.29	0.46	1.39	0.00	0.60	-

[그림 5-12] 기부자(처)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신규 발굴 기부자(처) 수

신규 발굴 기부자(처) 수는 전체 기초사업장이 3년간 신규로 발굴한 기부 업체는 12,232개이었으며, 개소당 30개 업체(3개년 평균 10개 업체)를 신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이 개소당 연평균 12.4개 업체를 발굴하였고, 푸드뱅크는 개소당 연평균 9.0개 업체를 발굴하였다.

신규 발굴 기부자(개인) 수를 살펴보면, 3년간 신규로 발굴한 기부자는 6,447명이었으며, 개소당 15.9명(3개년 평균 5.3명)을 신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이 개소당 연평균 9.8명을 발굴하였고, 푸드뱅크는 개소당 연평균 3.3명을 발굴하였다.

[표 5-48] 신규 발굴 기부자(처) 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업장 수		연도별 신규 발굴 기부업체 수					연도별 신규 발굴 기부자(개인) 수					
			2015	2016	2017	3개년 합계	3개년 평균	2015	2016	2017	3개년 합계	3개년 평균	
			전체 사업장	411	전체 계	3,830	4,212	4,190	12,232	4,077	2,532	2,029	1,886
		개소당	9.50	10.32	10.22	30.0	10.0	6.28	4.96	4.61	15.9	5.3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전체 계	2,401	2,614	2,638	7,653	2,551	1,123	867	837	2,827	942
			개소당	8.54	9.17	9.19	26.9	9.0	4.00	3.03	2.93	10.0	3.3
	당연	122	전체 계	1,627	1,757	1,628	5,012	1,671	559	532	540	1,631	544
			개소당	13.45	14.40	13.34	41.19	13.73	4.62	4.36	4.43	13.41	4.4
	임의	166	전체 계	774	857	1,010	2,641	880	564	335	297	1,196	398
			개소당	4.84	5.26	6.12	16.22	5.41	3.53	2.04	1.81	7.38	2.5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전체 계	1,429	1,598	1,552	4,579	1,526	1,409	1,162	1,049	3,620	1,207
			개소당	11.71	12.99	12.62	37.3	12.4	11.55	9.45	8.53	29.5	9.8
	당연	62	전체 계	1,074	1,152	1,096	3,322	1,107	756	843	773	2,372	791
			개소당	17.32	18.58	17.68	53.58	17.86	12.19	13.60	12.47	38.26	12.75
	임의	61	전체 계	355	466	456	1,277	426	653	319	276	1,248	416
			개소당	5.92	7.31	7.48	20.7	6.9	10.88	5.23	4.52	20.6	6.9

④ 기부자(처) 관리수준 세부평가

기부자(처) 관리수준과 관련하여 2017년 기준 기부자(처) 발굴 노력이 인정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68개소(89.5%)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50개소(86.8%),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8개소(95.9%)이었다.

2017년 기준 장기기부자 특별관리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29개소(80.0%)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11개소(73.3%),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8개소(95.9%)이었다.

2017년 기준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298개소(72.5%)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192개소(66.7%),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06개소(84.6%)이었다.

2017년 기준 3개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411개소 중 269개소(65.9%)이었고, 3년간 매년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247개소(60.1%)이었다.

전반적으로 푸드뱅크가 푸드마켓보다 장기기부자 특별관리 항목과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 항목에 대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의 장기기부자 특별관리 항목과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 항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5-49] 기부자(처) 관리수준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기부자(처) 발굴노력	2017년 장기기부자 특별관리	2017년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	2017년 모든 항목 충족	매년 모든 항목 충족	
전체 사업장	411	368 (89.5%)	329 (80.0%)	298 (72.5%)	269 (65.5%)	247 (60.1%)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50 (86.8%)	211 (73.3%)	192 (66.7%)	165 (57.3%)	150 (52.1%)
	당연	122	114 (93.4%)	106 (86.9%)	95 (77.9%)	88 (72.1%)	80 (65.6%)
	임의	166	136 (81.9%)	105 (63.3%)	97 (58.4%)	77 (46.4%)	70 (42.2%)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18 (95.9%)	118 (95.9%)	106 (86.2%)	104 (84.6%)	97 (78.9%)
	당연	62	60 (96.8%)	62 (100.0%)	53 (85.5%)	53 (85.5%)	48 (77.4%)
	임의	61	58 (95.1%)	56 (91.8%)	53 (86.9%)	51 (83.6%)	49 (80.3%)

(4) 평가지표 13 : 이용자 관리수준

이용자 관리수준은 이용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개인 이용자와 단체 이용자의 구분 관리,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 관련 주의사항 공지, 자체적인 이용자 발굴 노력,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 가중치는 기초푸드뱅크는 5점, 기초푸드마켓은 4점으로 차이가 있다.

[표 5-50]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5	5	4	4
평가내용	① 개인이용자와 단체이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함 ③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있음 ④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해당항목 가중치	[1.0]	4개 항목 충족		
		[0.75]	3개 항목 충족		
		[0.5]	2개 항목 충족		
		[0.25]	1개 항목 충족		
[0.0]	충족 항목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와 관련하여 푸드뱅크는 가중치 5점 중에 평균은 4.29점(당연사업장 평균 4.64점, 임의사업장 평균 4.04점)의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가중치 4점 중에 평균은 3.89점(당연사업장 3.94점, 임의사업장 3.85점)의 결과를 나타냈다.

[표 5-51]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5.00	4.29	1.0962
	당연사업장	122	1.67	5.00	4.64	0.6632
	임의사업장	166	0.00	5.00	4.04	1.2700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1.33	4.00	3.89	0.3580
	당연사업장	62	3.00	4.00	3.94	0.2302
	임의사업장	61	1.33	4.00	3.85	0.4498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이용자 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푸드뱅크는 대구, 광주, 세종 3개 지역이 평균 5.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대전(4.64점), 인천(4.64점), 제주(4.59점), 부산(4.53점), 서울(4.47점), 전북(4.42점), 강원(4.38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4.29점 이상의 지역은 10개 지역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7개 지역(충북, 충남, 울산, 전남, 경기, 경북, 경남)이었다.

푸드마켓의 경우 울산, 경북, 강원, 부산, 제주, 대전, 대구, 광주, 세종 9개 지역이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서울(3.94점), 전북(3.9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89점 이상의 지역은 11개 지역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개 지역(충북, 충남, 경남, 전남, 경기, 인천)이었다.

푸드뱅크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충북지역은 5점 만점에 3.79점이었으며, 2017년 기준 푸드뱅크 23개소 중 9개소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공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8개소가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가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3.91점을 받은 충남지역도 18개소 중 6개소가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드마켓은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 4점 만점에 3.60점을 받은 충북이었지만 이용자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용자 관리수준의 평가점수가 낮은 지역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공지 항목과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용자 관리수준을 충족하고 있기에 충족하지 못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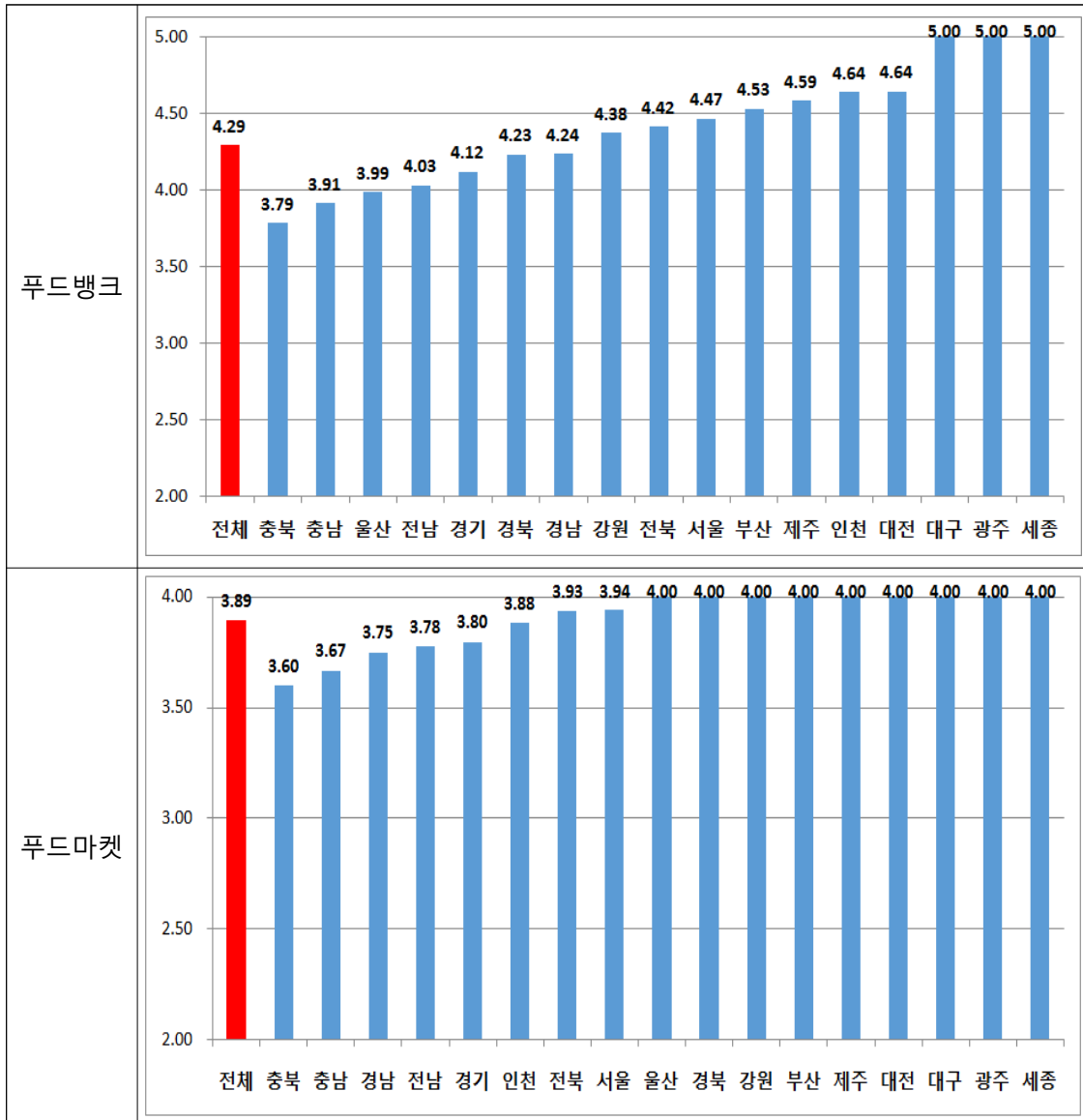
[표 5-52]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1.25	5.00	3.13	5.00	2.50	1.67	5.00	0.00	2.50	1.25	0.42	1.67	2.08	2.50	0.00	4.17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29	4.47	4.53	5.00	4.64	5.00	4.64	3.99	5.00	4.12	4.38	3.79	3.91	4.42	4.03	4.23	4.24	4.59
		표준편차	1.10	1.21	1.11	0.00	0.63	0.00	0.94	1.40	-	1.21	0.76	1.19	1.53	0.95	0.90	0.88	1.32	0.59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1.67	2.50	5.00	5.00	3.75	5.00		1.67	5.00	3.75	3.75	2.92	2.08	4.17	3.75	3.33	5.00	4.17
		최대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64	4.75	5.00	5.00	4.79	5.00		4.17	5.00	4.62	4.65	4.05	4.03	4.83	4.06	4.17	5.00	4.59
		표준편차	0.66	0.63	-	0.00	0.41	0.00		1.67	-	0.54	0.55	0.82	1.69	0.37	0.63	1.18	0.00	0.59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1.25	5.00	3.13	5.00	2.50	2.50		0.00	2.50	1.25	0.42	1.67	2.08	2.50	0.00	
		최대값	5.00	1.88	5.00	5.00	3.13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균	4.04	0.94	4.50	5.00	3.13	5.00	4.64	3.75		3.32	4.21	3.67	3.89	4.21	4.02	4.24	4.02	
		표준편차	1.27	1.33	1.14	0.00	-	0.00	0.94	1.25		1.54	0.84	1.33	1.56	1.10	0.96	0.89	1.43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1.33	3.00	4.00	4.00	2.67	4.00	4.00	4.00	4.00	1.33	4.00	3.00	3.00	3.67	3.33	4.00	3.00	4.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89	3.94	4.00	4.00	3.88	4.00	4.00	4.00	4.00	3.80	4.00	3.60	3.67	3.93	3.78	4.00	3.75	4.00
		표준편차	0.36	0.22	0.00	0.00	0.36	0.00	0.00	-	-	0.66	-	0.55	0.52	0.15	0.39	0.00	0.5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3.00	3.00	4.00	4.00	4.00		4.00		4.00	3.00			3.00	4.00		4.00		4.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94	3.94	4.00	4.00	4.00		4.00		4.00	3.92			3.67	4.00		4.00		4.00
		표준편차	0.23	0.22	0.00	0.00	0.00		0.00		-	0.29			0.58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1.33	4.00	4.00	4.00	2.67	4.00	4.00	4.00		1.33	4.00	3.00	3.00	3.67	3.33	4.00	3.00	4.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85	4.00	4.00	4.00	3.83	4.00	4.00	4.00		3.56	4.00	3.60	3.67	3.89	3.78	4.00	3.75	4.00
		표준편차	0.45	0.00	0.00	0.00	0.42	0.00	0.00	-		1.09	-	0.55	0.58	0.19	0.39	0.00	0.50	-

[그림 5-13] 이용자 관리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신규 발굴 이용자 수

전체 기초사업장이 3년간 신규로 발굴한 이용 단체 수는 총 8,966개이었으며, 사업장 개소당 22.0개 단체(3개년 평균 7.3개 단체)를 신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는 개소당 연평균 8.6개 단체를 발굴하였고, 푸드마켓이 개소당 연평균 4.4개 단체를 발굴하였다.

신규 발굴 이용자(개인) 수를 살펴보면, 3년간 신규로 발굴한 이용자는 337,258명이었으며, 개소당 830.6명(3개년 평균 276.9명)을 신규 발굴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푸드뱅크는 개소당 연평균 157.1명을 발굴하였고, 푸드마켓이 개소당 연평균 555.6명을 발굴하였다.

[표 5-53] 신규 발굴 이용자 수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장 수		연도별 신규 발굴 이용자(단체) 수					연도별 신규 발굴 이용자(개인) 수					
			2015	2016	2017	3개년 합계	3개년 평균	2015	2016	2017	3개년 합계	3개년 평균	
			전체 사업장	411	전체 계	2,703	3,652	2,611	8,966	2,989	109,402	105,934	121,922
		개소당	6.72	8.93	6.37	22.0	7.3	2728	2596	2981	8306	2769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전체 계	2,123	3,091	2,142	7,356	2,452	43,660	39,566	50,631	133,857	44,619
			개소당	7.58	10.77	7.46	25.8	8.6	155.9	138.3	177.0	471.3	157.1
	당연	122	전체 계	1,192	1,360	1,096	3,648	1,216	20,404	17,925	23,008	61,337	20,446
			개소당	9.77	11.15	8.98	29.9	10.0	167.2	146.9	188.6	502.8	167.6
	임의	166	전체 계	931	1,731	1,046	3,708	1,236	23,256	21,641	27,623	72,520	24,173
			개소당	5.89	10.49	6.34	22.7	7.6	147.2	132.0	168.4	447.6	149.2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전체 계	580	561	467	1,608	536	65,742	66,368	71,291	203,401	67,800
			개소당	4.79	4.64	3.83	13.3	4.4	543.3	544.0	579.6	1,666.9	555.6
	당연	62	전체 계	421	300	191	912	304	42,411	43,615	47,649	133,675	44,558
			개소당	6.79	4.92	3.08	14.8	4.9	684.0	703.5	768.5	2,156.0	718.7
	임의	61	전체 계	159	261	276	696	232	23,331	22,753	23,642	69,726	23,242
			개소당	2.69	4.35	4.60	11.6	3.9	395.4	338.9	332.4	1,066.7	355.6

④ 이용자 관리수준 세부평가

이용자 관리수준과 관련하여 2017년 기준 개인과 단체 이용자 구분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98개소(96.8%)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충족한 결과를 보였고,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13개소(전남 1개소, 경기 3개소, 서울 2개소, 전북 1개소, 인천 2개소, 경북 2개소, 부산 1개소, 경남 1개소)이었다.

2017년 기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공지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73개소(90.8%)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51개소(87.2%)가 충족하였고, 이 중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12개소(91.8%),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39개소(83.7%)가 충족한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22개소(99.2%)가 충족하였고, 이 가운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1개소(98.4%), 임의사업장은 61개소 모두 충족하였다.

2017년 기준 이용자 발굴 노력이 인정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80개소(92.5%)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61개소(90.6%)가 충족하였고, 이 중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17개소(95.9%),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44개소(86.7%)가 충족한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9개소(96.7%)가 충족하였고, 이 가운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1개소(98.4%), 임의사업장은 58개소(95.1%)가 충족하였다.

2017년 기준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42개소(83.2%)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22개소(77.1%)가 충족하였고, 이 중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09개소(89.3%),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13개소(68.1%)가 충족한 결과를 보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20개소(97.6%)가 충족하였고, 이 가운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61개소(98.4%),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9개소(96.7%)가 충족하였다.

2017년 기준 3개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411개소 중 308개소(74.9%)이었고, 3년간 매년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283개소(68.9%)이었다. 전반적으로 푸드뱅크가 푸드마켓에 비해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항목에 대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의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항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5-54] 이용자 관리수준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개인과 단체 이용자 구분	2017년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공지	2017년 이용자 발굴노력	2017년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2017년 모든 항목 충족	매년 모든 항목 충족
전체 사업장	411	398 (96.8%)	373 (90.8%)	380 (92.5%)	342 (83.2%)	308 (74.9%)	283 (68.9%)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76 (95.8%)	251 (87.2%)	261 (90.6%)	222 (77.1%)	193 (60.1%)
	당연	122	120 (98.4%)	112 (91.8%)	117 (95.9%)	109 (89.3%)	95 (77.9%)
	임의	166	156 (94.0%)	139 (83.7%)	144 (86.7%)	113 (68.1%)	98 (59.0%)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22 (99.2%)	122 (99.2%)	119 (96.7%)	120 (97.6%)	115 (93.5%)
	당연	62	62 (100.0%)	61 (98.4%)	61 (98.4%)	61 (98.4%)	59 (95.2%)
	임의	61	60 (98.4%)	61 (100.0%)	58 (95.1%)	59 (96.7%)	56 (91.8%)

(5) 평가지표 14 :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행정관리 문서의 구비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행정관리 문서로는 ‘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이관 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이 있다. 기부식품등의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운영 주체의 홈페이지(또는 지자체 및 광역푸드뱅크 홈페이지 공고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 5-5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6	6	6	6
평가내용	①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등(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음 ②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운영주체의 홈페이지(홈페이지 없을 시 지자체 및 광역 홈페이지 공고란 블로그, SNS 등)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0.5]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는 가중치가 6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5.20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5.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4.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보다 0.53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6]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6.00	5.20	1.4387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6.00	5.04	1.5536
	당연사업장	122	0.00	6.00	5.48	1.2076
	임의사업장	166	0.00	6.00	4.72	1.6971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2.00	6.00	5.57	1.0408
	당연사업장	62	3.00	6.00	5.69	0.8794
	임의사업장	61	2.00	6.00	5.44	1.1765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과 광주가 6.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5.68점), 대전(5.60점), 대구(5.60점), 부산(5.57점), 강원(5.53점), 제주(5.50점), 서울(5.40점), 울산(5.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5.20점 이상의 지역은 10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5.20점보다 낮은 지역은 7개 지역(세종, 충북, 전북, 경북, 전남, 충남, 경기)이었다.

평균 3.0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세종이지만 평가대상 기관이 2개소뿐이어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 3.71점을 받은 충북지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지역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모집 및 제공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항목으로서 2017년 기준 28개소 가운데 17개소가 모집 및 제공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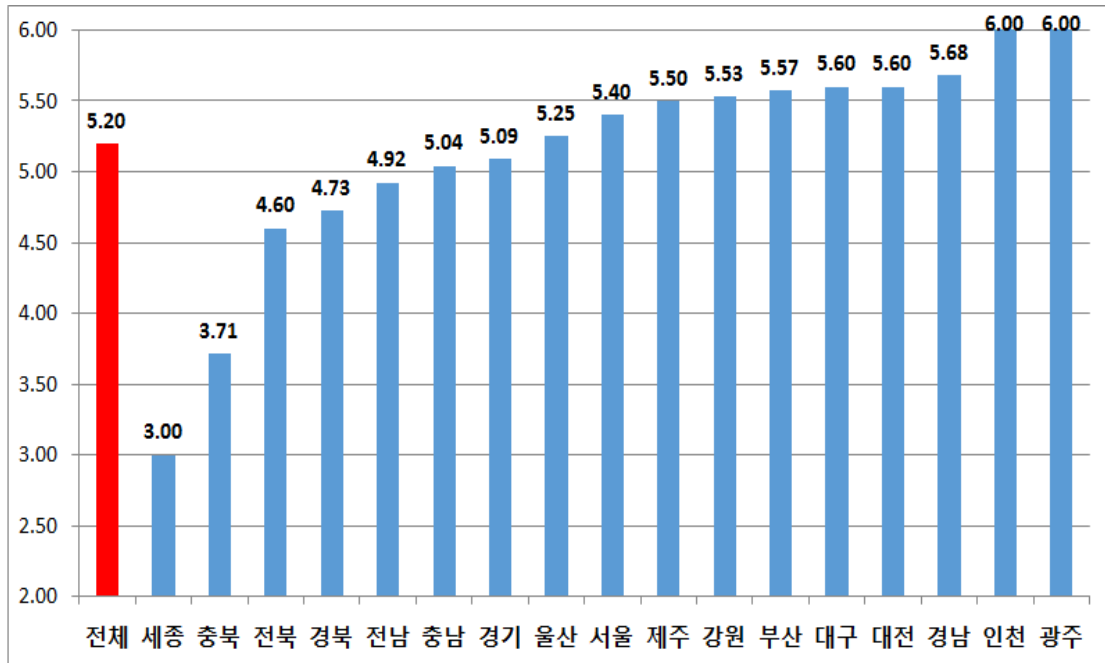
[표 5-57]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3.00	3.00	6.00	6.00	3.00	3.00	3.00	0.00	0.00	0.00	0.00	2.00	2.00	3.00	3.00	4.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3.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20	5.40	5.57	5.60	6.00	6.00	5.60	5.25	3.00	5.09	5.53	3.71	5.04	4.60	4.92	4.73	5.68	5.50	
	표준편차	1.44	1.40	1.00	0.99	0.00	0.00	1.06	1.39	0.00	1.66	1.50	1.67	1.55	1.60	1.38	1.45	0.84	1.0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3.00	3.00	6.00	6.00	3.00	3.00	3.00	0.00	0.00	0.00	0.00	2.00	2.00	3.00	3.00	4.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3.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04	5.26	5.44	5.62	6.00	6.00	5.14	5.14	3.00	4.92	5.50	3.74	5.00	4.53	4.78	4.53	5.61	5.00
		표준편차	1.55	1.75	1.09	0.96	0.00	0.00	1.46	1.46	-	1.77	1.55	1.76	1.64	1.64	1.41	1.47	0.92	1.41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3.00	6.00	6.00	6.00	6.00		6.00	3.00	0.00	6.00	1.00	5.00	3.00	3.00	6.00	6.00	4.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3.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48	5.68	6.00	6.00	6.00	6.00		6.00	3.00	5.26	6.00	4.00	5.67	5.40	4.50	6.00	6.00	5.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3.00	3.00	6.00	6.00	3.00	3.00		0.00	0.00	0.00	0.00	2.00	2.00	3.00	3.00	
		최대값	6.00	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4.72	0.00	5.40	5.44	6.00	6.00	5.14	4.00		4.39	5.20	3.63	4.87	4.10	4.84	4.35	5.50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2.00	3.00	3.00	3.00	6.00	6.00	6.00	6.00	3.00	2.00	6.00	3.00	3.00	3.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3.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57	5.53	5.75	5.57	6.00	6.00	6.00	6.00	3.00	5.61	6.00	3.60	5.17	4.8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1.04	1.01	0.87	1.13	0.00	0.00	0.00	-	-	1.14	-	1.34	1.33	1.64	0.00	0.00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3.00	3.00	6.00	6.00	6.00		6.00		3.00	3.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3.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69	5.54	6.00	6.00	6.00		6.00		3.00	5.75			6.00	6.00		6.00		6.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2.00	5.00	3.00	3.00	6.00	6.00	6.00	6.00		2.00	6.00	3.00	3.00	3.00	6.00	6.00	6.00	6.00
		최대값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5.44	5.50	5.70	5.40	6.00	6.00	6.00	6.00		5.33	6.00	3.60	4.33	4.00	6.00	6.00	6.00	6.00	
표준편차	1.18	0.71	0.95	1.34	0.00	0.00	0.00	-		1.63	-	1.34	1.53	1.73	0.00	0.00	0.00	-		

[그림 5-1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 세부평가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2017년 기준 장부의 사업장 보관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401개소(97.6%)이었고,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10개소(충북 1개소, 경기 5개소, 강원 1개소, 서울 2개소, 충남 1개소)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78개소(96.5%)가 장부의 사업장 보관 항목을 충족하였고,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20개소(98.4%),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58개소(95.2%)가 충족하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모두가 장부의 사업장 보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모집 및 제공 등의 홈페이지 공개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28개소(79.8%)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21개소(76.7%)가 모집 및 제공 등의 홈페이지 공개 항목을 충족하였고,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109개소(89.3%),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12개소(67.5%)가 충족하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07개소(87.0%)가 모집 및 제공 등의 홈페이지 공개 항목을 충족하였고, 그 가운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은 62개소 중 56개소(90.3%),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1개소(83.6%)가 충족한 결과를 보였다.

2017년 기준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327개소(79.6%)이었으며, 3년간 매년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297개소(72.3%)이었다. 전반적으로 3년간 매년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의 2개 항목 모두를 충족한 비율이 57.3%로 낮게 나타나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의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5-58]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장부의 사업장 보관	2017년 모집 및 제공 등의 홈페이지 공개	2017년 모든 항목 충족	매년 모든 항목 충족
전체 사업장	411	401 (97.6%)	328 (79.8%)	327 (79.6%)	297 (72.3%)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78 (96.5%)	221 (76.7%)	193 (67.0%)
	당연	122	120 (98.4%)	109 (89.3%)	99 (81.1%)
	임의	166	158 (95.2%)	112 (67.5%)	94 (56.6%)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23 (100.0%)	107 (87.0%)	104 (84.6%)
	당연	62	62 (100.0%)	56 (90.3%)	55 (88.7%)
	임의	61	61 (100.0%)	51 (83.6%)	49 (80.3%)

2. 운영성과 영역 평가

운영성과 영역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사업의 성과 2개의 성과영역으로 구분된다.

1)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영역 평가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영역에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관리 수준’,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홍보의 적극성’, ‘사업교류 협력도’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평가지표 15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소개, 사업의 필요성, 운영계획, 예산계획 등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 안내’ 에 제시된 내용 들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가중치는 3점이다.

[표 5-59]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3	3	3	3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		
		[0.7]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항목이 부족한 경우(1~2개 부족한 경우)		
		[0.4]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많은 항목이 부족한 경우(3~4개 부족한 경우)		
		[0.0]	연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5개 이상 항목이 부족한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는 가중치가 3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2.57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2.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2.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2.78점)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2.47점)보다 0.31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60]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3.00	2.57	0.7197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3.00	2.47	0.7875
	당연사업장	122	0.00	3.00	2.60	0.6514
	임의사업장	166	0.00	3.00	2.38	0.8636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1.00	3.00	2.78	0.4630
	당연사업장	62	2.10	3.00	2.80	0.3794
	임의사업장	61	1.00	3.00	2.77	0.5377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 광주, 제주 3개 지역은 3.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산(2.96점), 대전(2.79점), 경북(2.74점), 인천(2.72점), 경남(2.64점), 전북(2.64점), 서울(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2.57점 이상의 지역은 10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2.57점보다 낮은 지역은 7개 지역(충남, 충북, 세종, 강원, 전남, 울산, 경기)이었다.

평균 2.0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충남지역은 2017년 기준 24개소 가운데 14개소가 사업계획 내용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충북 지역도 평균 2.10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28개소 중 16개소가 23개소가 사업계획 내용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계획서에 제시할 핵심내용들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에 명시된 내용이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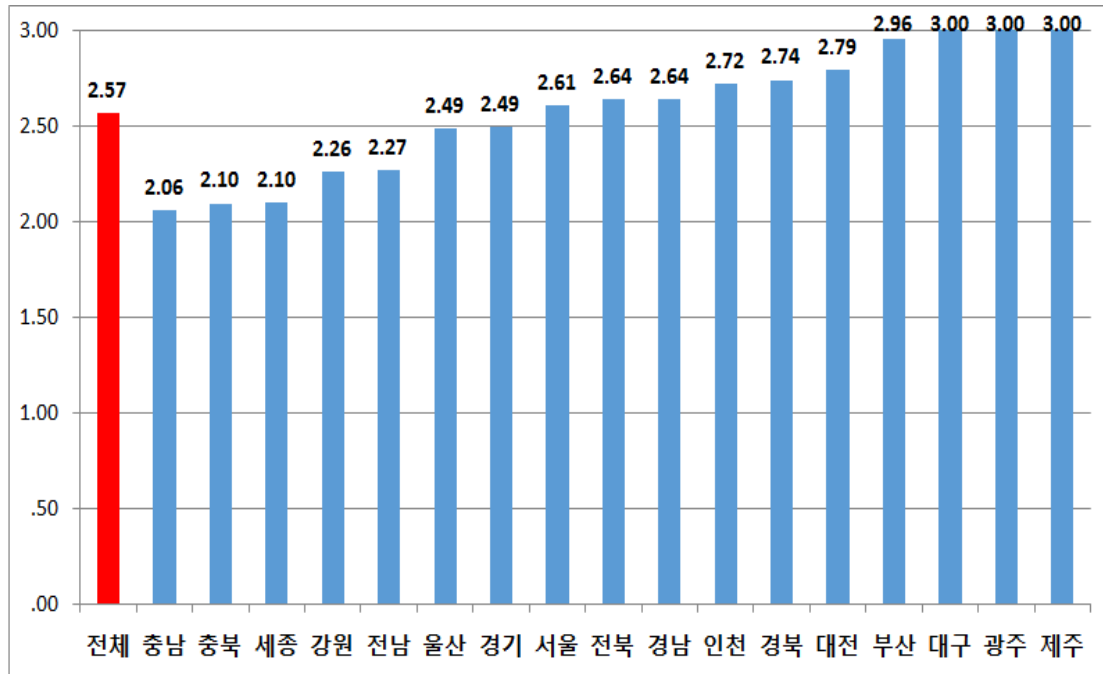
[표 5-61]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2.10	3.00	1.20	3.00	1.20	0.70	2.10	0.00	0.00	0.00	0.00	1.20	1.20	1.20	1.2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1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57	2.61	2.96	3.00	2.72	3.00	2.79	2.49	2.10	2.49	2.26	2.10	2.06	2.64	2.27	2.74	2.64	3.00	
	표준편차	0.72	0.65	0.18	0.00	0.59	0.00	0.55	0.96	0.00	0.79	0.84	1.02	0.98	0.54	0.63	0.52	0.64	0.0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2.10	3.00	1.20	3.00	1.20	0.70	2.10	0.00	0.00	0.00	0.00	1.20	1.20	1.20	1.2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1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47	2.51	2.94	3.00	2.64	3.00	2.56	2.41	2.10	2.40	2.21	2.02	1.97	2.58	2.25	2.70	2.56	3.00
		표준편차	0.79	0.83	0.23	0.00	0.69	0.00	0.77	1.01	-	0.84	0.85	1.06	1.05	0.58	0.59	0.55	0.68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2.10	3.00	3.00	1.40	3.00		1.20	2.10	1.20	1.20	0.00	1.10	2.10	1.2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1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60	2.71	3.00	3.00	2.78	3.00		2.55	2.10	2.59	2.25	1.80	2.07	2.64	1.88	3.00	3.00	3.00
		표준편차	0.65	0.43	-	0.00	0.52	0.00		0.90	-	0.57	0.68	1.35	0.95	0.49	0.86	0.00	0.00	0.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2.10	3.00	1.20	3.00	1.20	0.70		0.00	0.00	0.00	0.00	1.20	1.20	1.20	1.20	
		최대값	3.00	0.00	3.00	3.00	1.2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38	0.00	2.94	3.00	1.20	3.00	2.56	2.23		2.09	2.19	2.11	1.95	2.55	2.33	2.66	2.44	
		표준편차	0.86	0.00	0.23	0.00	-	0.00	0.77	1.33		1.08	0.97	0.94	1.10	0.64	0.51	0.57	0.73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최소값			1.00	2.10	2.70	3.00	1.20	3.00	3.00	3.00	2.10	1.00	3.00	1.20	1.20	2.10	1.2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1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78	2.69	2.98	3.00	2.79	3.00	3.00	3.00	2.10	2.79	3.00	2.46	2.35	2.82	2.40	3.00	3.00	3.00
표준편차			0.46	0.43	0.09	0.00	0.52	0.00	0.00	-	-	0.53	-	0.80	0.69	0.40	1.04	0.00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2.10	2.10	3.00	3.00	3.00		3.00		2.10	2.10			2.1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2.1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80	2.68	3.00	3.00	3.00		3.00		2.10	2.85			2.70	3.00		3.00		3.00
		표준편차	0.38	0.44	0.00	0.00	0.00		0.00		-	0.35			0.52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1.00	2.70	2.70	3.00	1.20	3.00	3.00	3.00		1.00	3.00	1.20	1.20	2.10	1.2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7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77	2.85	2.97	3.00	2.70	3.00	3.00	3.00		2.67	3.00	2.46	2.00	2.70	2.40	3.00	3.00	3.00
		표준편차	0.54	0.21	0.09	0.00	0.60	0.00	0.00	-		0.82	-	0.80	0.75	0.52	1.04	0.00	0.00	-

[그림 5-15]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사업계획의 적절성 세부평가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충실히 작성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 전체 411개소 중 288개소(70.1%)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186개소(64.6%)가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122개소 중 86개소(70.5%), 임의사업장은 166개소 중 100개소(60.2%)가 충실하게 작성하였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02개소(82.9%)가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고, 그 가운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62개소 중 49개소(79.0%), 임의사업장은 61개소 중 53개소(86.9%)가 충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17년 기준 사업계획서의 1~2개 항목이 부족한 사업장은 85개소(20.7%)이었고, 3~4개 항목이 부족한 사업장은 25개소(6.1%)이었다. 사업계획서의 5개 이상 항목이 부족하거나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은 사업장은 13개소(충북 4개소, 경기 3개소, 강원 1개소, 서울 2개소, 충남 2개소, 대전 1개소)이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장들이 처음에 충실하게 작성한 후, 매년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표이다. 향후 사업장들의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작성양식을 제공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핵심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5-62] 사업계획의 적절성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사업계획의 적절성				매년 모든 항목 충족	
		모든 항목 충족	1~2개 항목 부족	3~4개 항목 부족	5개 이상 항목 부족 및 미수립		
전체 사업장	411	288 (70.1%)	85 (20.7%)	25 (6.1%)	13 (3.2%)	272 (66.2%)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186 (64.6%)	68 (23.6%)	21 (7.3%)	13 (4.5%)	176 (61.1%)
	당연	122	86 (70.5%)	28 (23.0%)	6 (4.9%)	2 (1.6%)	82 (67.2%)
	임의	166	100 (60.2%)	40 (24.1%)	15 (9.0%)	11 (6.6%)	94 (56.6%)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02 (82.9%)	17 (13.8%)	4 (3.3%)	0 (0.0%)	96 (78.0%)
	당연	62	49 (79.0%)	13 (21.0%)	0 (0.0%)	0 (0.0%)	48 (77.4%)
	임의	61	53 (86.9%)	4 (6.6%)	4 (6.6%)	0 (0.0%)	48 (78.7%)

(2) 평가지표 16 : 예산관리 수준

예산관리 수준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연도별 예산 관련 장부 관리가 잘 이루어지며, 적법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예산관리 수준 지표의 가중치는 3점이다.

[표 5-63] 예산관리 수준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3	3	3	
평가내용	① 연단위의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가 이루어짐				
	③ 회계처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충실히 갖추고 있음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됨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해당됨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됨			
[0.0]		위의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예산관리 수준 지표는 가중치가 3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2.78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2.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2.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2.97점)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2.69점)보다 0.28점 높게 나타났다.

[표 5-64] 예산관리 수준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3.00	2.78	0.6535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3.00	2.69	0.7544
	당연사업장	122	0.00	3.00	2.87	0.4954
	임의사업장	166	0.00	3.00	2.56	0.8777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1.00	3.00	2.97	0.2025
	당연사업장	62	2.70	3.00	2.99	0.0381
	임의사업장	61	1.00	3.00	2.95	0.2844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예산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 광주, 세종, 제주 4개 지역은 3.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산(2.97점), 전북(2.96점), 인천(2.93점), 전남(2.88점), 서울(2.88점), 대전(2.88점), 강원(2.88점), 경북(2.8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2.78점 이상의 지역은 12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2.78점보다 낮은 지역은 5개 지역(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이었다.

평균 2.29점을 받은 울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7년 기준 8개소 가운데 3개소가 예산관리 수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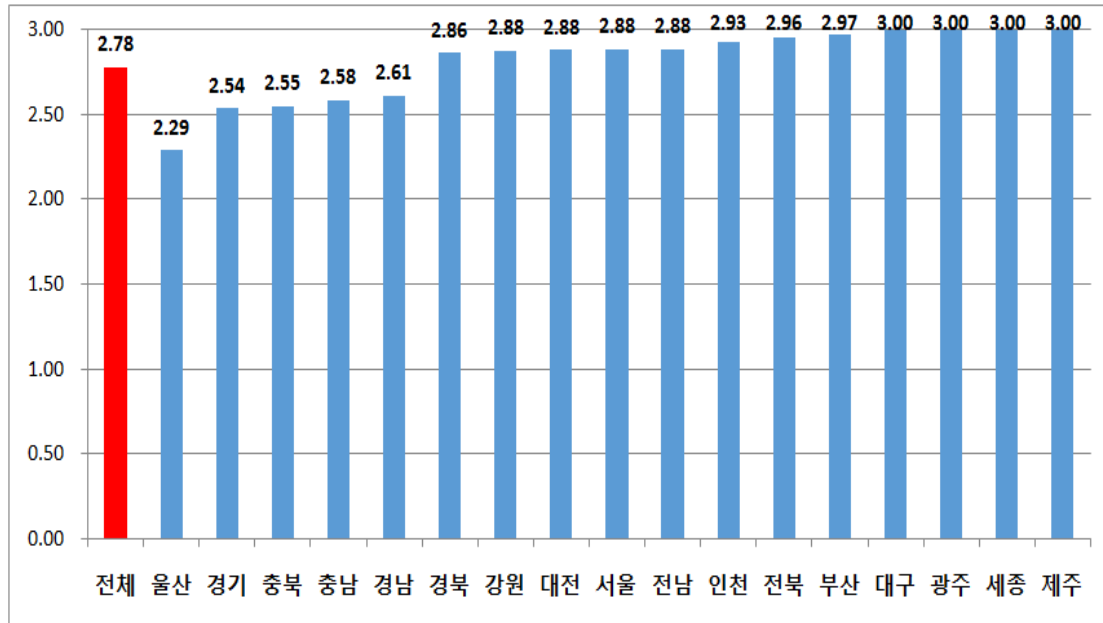
[표 5-65] 예산관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2.10	3.00	1.20	3.00	1.20	0.00	3.00	0.00	1.80	0.00	0.00	2.10	2.00	0.00	0.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78	2.88	2.97	3.00	2.93	3.00	2.88	2.29	3.00	2.54	2.88	2.55	2.58	2.96	2.88	2.86	2.61	3.00	
	표준편차	0.65	0.56	0.17	0.00	0.36	0.00	0.46	1.13	0.00	0.93	0.35	0.80	0.86	0.20	0.33	0.64	0.82	0.0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2.10	3.00	1.20	3.00	1.20	0.00	3.00	0.00	1.80	0.00	0.00	2.10	2.00	0.00	0.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69	2.77	2.94	3.00	2.84	3.00	2.74	2.19	3.00	2.43	2.87	2.50	2.44	2.94	2.87	2.84	2.53	3.00
		표준편차	0.75	0.80	0.23	0.00	0.54	0.00	0.68	1.18	-	1.01	0.36	0.86	0.96	0.23	0.34	0.69	0.88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2.70	3.00	3.00	3.00	3.00		2.10	3.00	0.00	1.80	0.00	1.20	3.00	3.0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87	2.99	3.00	3.00	3.00	3.00		2.78	3.00	2.83	2.80	2.44	1.80	3.00	3.00	3.00	3.00	3.00
		표준편차	0.50	0.06	-	0.00	0.00	0.00		0.45	-	0.60	0.49	1.13	1.04	0.00	0.00	0.00	0.00	0.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2.10	3.00	1.20	3.00	1.20	0.00		0.00	2.10	0.70	0.00	2.10	2.00	0.00	0.00	
		최대값	3.00	0.00	3.00	3.00	1.2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56	0.00	2.94	3.00	1.20	3.00	2.74	1.40		1.79	2.91	2.52	2.57	2.91	2.84	2.82	2.39	
		표준편차	0.88	0.00	0.23	0.00	-	0.00	0.68	1.51		1.21	0.28	0.76	0.93	0.28	0.37	0.73	0.97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최소값			1.00	2.7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	3.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97	2.99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89	3.00	2.80	3.00	3.00	3.00	3.00	3.00	3.00
표준편차			0.20	0.05	0.00	0.00	0.00	0.00	0.00	-	-	0.47	-	0.45	0.00	0.00	0.00	0.00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2.70	2.7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3.00	2.99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표준편차	0.04	0.06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1.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	3.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95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67	3.00	2.80	3.00	3.00	3.00	3.00	3.00	3.00
		표준편차	0.28	0.00	0.00	0.00	0.00	0.00	0.00	-		0.82	-	0.45	0.00	0.00	0.00	0.00	0.00	-

[그림 5-16] 예산관리 수준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예산관리 수준 세부평가

예산관리 수준과 관련하여 예산관리의 3개(예산확보 및 활용계획 수립,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관리, 회계처리 증빙서류 유무)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 411개소 중 368개소(89.5%)이었다. 이 가운데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46개소(85.4%),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22개소(99.2%)가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모든 항목을 충족한 368개소 가운데 3년간 매년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356개소인 결과를 보면, 예산관리 수준을 충실히 진행해온 사업장들이 매년 연속적으로 예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 수립 항목과 관련하여 411개소 중 387개소(94.2%)가 충족하였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관리는 376개소(91.5%), 회계처리 증빙서류 유무는 384개소(93.4%)가 충족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예산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담당자들의 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66] 예산관리 수준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예산관리 수준				매년 모든 항목 충족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 수립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관리	회계처리 증빙서류 유무	2017년 모든 항목 충족	
전체 사업장	411	387 (94.2%)	376 (91.5%)	384 (93.4%)	368 (89.5%)	356 (86.6%)
기초 푸드뱅크	전체	265 (92.0%)	254 (88.2%)	262 (91.0%)	246 (85.4%)	236 (81.9%)
	당연	117 (95.9%)	117 (95.9%)	117 (95.9%)	114 (93.4%)	111 (91.0%)
	임의	148 (89.2%)	137 (82.5%)	145 (87.3%)	132 (79.5%)	125 (75.3%)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2 (99.2%)	122 (99.2%)	122 (99.2%)	122 (99.2%)	120 (97.6%)
	당연	62 (100.0%)	62 (100.0%)	62 (100.0%)	62 (100.0%)	61 (98.4%)
	임의	60 (98.4%)	60 (98.4%)	60 (98.4%)	60 (98.4%)	59 (96.7%)

(3) 평가지표 17 :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은 기초사업장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여부, 운영위원회 위원의 균형적 구성, 운영위원회 지침 기준에 따른 수행 충실성, 운영위원회 논의내용의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의 가중치는 3점이다.

[표 5-67]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성	3	3	3	3
평가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거나 지침이 없을 경우 제공사, 기부자, 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 ③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 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됨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 4가지 모두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5]	위의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65 적용)		
		[0.5]	위의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4 적용)		
		[0.25]	위의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15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는 가중치가 3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2.36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2.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2.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2.66점)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2.24점)보다 0.42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68]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3.00	2.36	0.9579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3.00	2.24	1.0322
	당연사업장	122	0.00	3.00	2.44	0.8795
	임의사업장	166	0.00	3.00	2.09	1.1109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3.00	2.66	0.6711
	당연사업장	62	0.00	3.00	2.69	0.5913
	임의사업장	61	0.00	3.00	2.63	0.7470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 세종 2개 지역은 3.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전(2.93점), 대구(2.83점), 제주(2.81점), 부산(2.73점), 인천(2.69점), 경남(2.64점), 서울(2.50점), 전북(2.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2.36점 이상의 지역은 10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2.36점보다 낮은 지역은 7개 지역(울산, 전남,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기)이다.

평균 1.4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울산지역은 2017년 기준 8개소 가운데 3개소만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평균 1.67점을 받은 전남 지역도 2017년 기준 26개소 중 11개소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 마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등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도 16개소였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들은 운영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없거나,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사업장들이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된 사항만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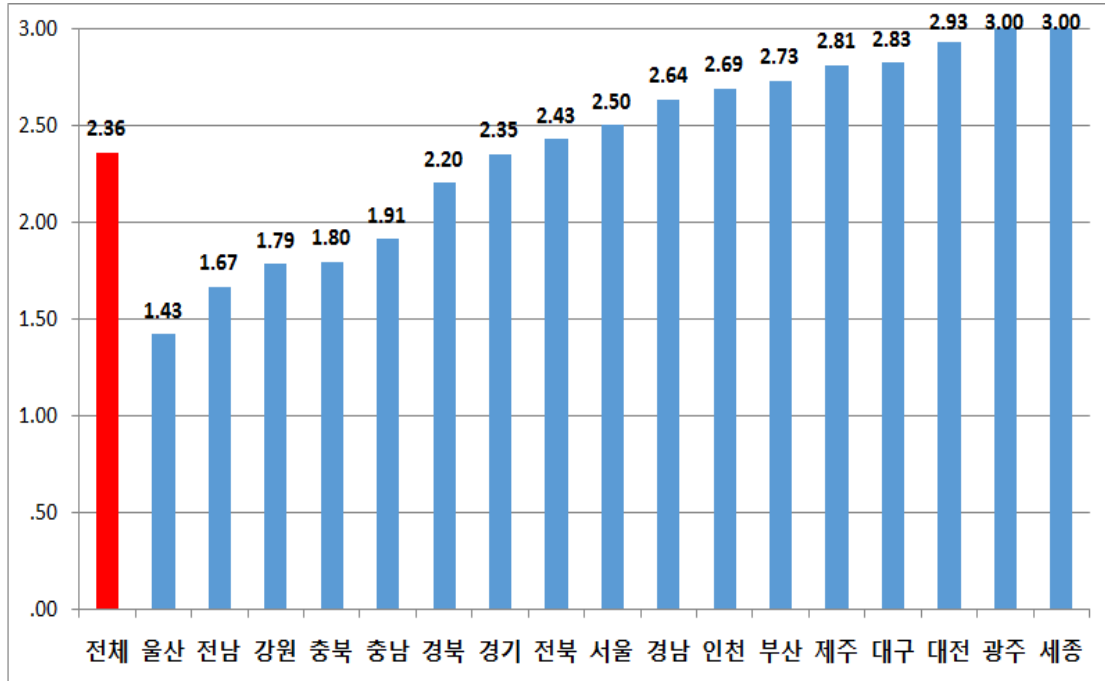
[표 5-69]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0.00	2.25	0.38	3.00	2.25	0.00	3.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5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36	2.50	2.73	2.83	2.69	3.00	2.93	1.43	3.00	2.35	1.79	1.80	1.91	2.43	1.67	2.20	2.64	2.81	
	표준편차	0.96	0.83	0.74	0.30	0.69	0.00	0.20	1.17	0.00	0.93	1.36	1.23	1.13	0.75	0.90	1.09	0.76	0.38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0.75	2.25	0.38	3.00	2.25	0.00	3.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5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24	2.47	2.77	2.81	2.63	3.00	2.85	1.20	3.00	2.26	1.71	1.80	1.79	2.29	1.58	2.08	2.56	2.63
		표준편차	1.03	0.92	0.65	0.33	0.87	0.00	0.29	1.06	-	1.00	1.36	1.25	1.24	0.82	0.86	1.12	0.82	0.53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0.00	3.00	2.75	1.50	3.00		0.00	3.00	0.00	1.50	0.00	0.75	1.50	1.20	0.75	3.00	2.25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1.20	3.00	3.00	3.00	3.00	3.00	3.00	2.25	3.00	3.00	3.00
		평균	2.44	2.66	3.00	2.94	2.85	3.00		0.86	3.00	2.36	2.48	1.21	2.22	2.70	1.73	1.88	3.00	2.63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0.75	2.25	0.38	3.00	2.2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최대값	3.00	0.23	3.00	3.00	0.38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09	0.12	2.75	2.75	0.38	3.00	2.85	1.65		2.11	1.25	2.05	1.70	2.09	1.55	2.10	2.43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0.00	0.00	2.25	1.50	3.00	3.00	3.00	3.00	1.00	3.00	0.00	1.50	2.50	1.2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65	2.53	2.69	2.86	2.74	3.00	3.00	3.00	3.00	2.59	3.00	1.80	2.30	2.85	2.37	3.00	3.00	3.00
		표준편차	0.67	0.76	0.87	0.28	0.53	0.00	0.00	-	-	0.63	-	1.25	0.65	0.22	1.01	0.00	0.0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0.00	0.00	3.00	2.25	3.00		3.00		3.00	1.80			2.4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2.75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68	2.50	3.00	2.50	3.00		3.00		3.00	2.67			2.70	3.00		3.00		3.0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3.00	0.00	3.00	1.50	3.00	3.00	3.00		1.00	3.00	0.00	1.50	2.50	1.2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7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63	3.00	2.63	3.00	2.64	3.00	3.00	3.00		2.42	3.00	1.80	1.90	2.75	2.37	3.00	3.00	3.00	
표준편차	0.75	0.00	0.95	0.00	0.60	0.00	0.00	-		0.92	-	1.25	0.69	0.25	1.01	0.00	0.00	-		

[그림 5-17]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평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 사업장 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업장은 329개소(80.0%)이었으며, 이사회로 운영한 사업장은 58개소(14.1%),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은 24개소(5.8%)이었다. 푸드뱅크 288개소 중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장은 22개소(충북 5개소, 경기 5개소, 강원 4개소, 서울 2개소, 전북 1개소, 충남 2개소, 울산 1개소, 경북 2개소)이었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2개소(서울 1개소, 부산 1개소)만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를 구성한 387개소 가운데 푸드뱅크(또는 푸드마켓) 사업만을 대상으로 논의한 사업장은 210개소(54.3%)이었으며, 일부만을 논의한 사업장은 177개소(45.7%)이었다.

운영위원회 세부기준 지침을 마련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49개소(84.9%)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33개소(90.9%),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6개소(96.8%)이었다.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지침을 준수한 사업장은 전

체 411개소 중 311개소(80.5%)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220개소(76.4%),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개소(90.2%)의 결과를 보였다.

운영위원회 지침 기준을 수행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51개소(85.4%)이었고, 푸드뱅크 288개소 중 234개(81.3%), 푸드마켓 123개소 중 117개소 (95.1%)이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330개소(80.3%)이었고,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219개소(76.0%),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111개소(90.2%)이었다.

2017년 기준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전체 411개소 중 251개소 (61.1%)이었으며, 3년간 매년 모든 항목을 충족한 사업장은 227개소(55.2%)의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한 번이라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 사업장이 매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표의 세부항목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70] 운영위원회 운영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운영위원회 운영										매년 모든 항목 충족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운영위원회의 푸드뱅크 (푸드마켓) 논의 여부		운영위원회 세부기준 지침마련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지침준수	운영위원회 지침기준 수행여부	운영위원회 논의내용 반영노력	2017년 모든 항목 충족		
		운영위원회	이사회	없음	전체 논의	일부 논의							
전체 사업장	411	329 (80.0%)	58 (14.1%)	24 (5.8%)	210	177	349 (84.9%)	311 (80.5%)	351 (85.4%)	330 (80.3%)	251 (61.1%)	227 (55.2%)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19 (76.0%)	47 (16.3%)	22 (7.6%)	129	137	233 (80.9%)	220 (76.4%)	234 (81.3%)	219 (76.0%)	158 (54.9%)	143 (49.7%)
	당연	122	100 (82.0%)	17 (13.9%)	5 (4.1%)	71	46	107 (87.7%)	99 (81.1%)	108 (88.5%)	101 (82.8%)	76 (62.3%)	68 (55.7%)
	임의	166	119 (71.7%)	30 (18.1%)	17 (10.2%)	58	91	126 (75.9%)	121 (72.9%)	126 (75.9%)	118 (71.1%)	82 (49.4%)	75 (45.2%)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10 (89.4%)	11 (8.9%)	2 (1.6%)	81	40	116 (96.8%)	111 (90.2%)	117 (95.1%)	111 (90.2%)	93 (75.6%)	84 (68.3%)
	당연	62	53 (85.5%)	8 (12.9%)	1 (1.6%)	43	18	60 (96.8%)	58 (93.5%)	60 (96.8%)	58 (93.5%)	46 (74.2%)	40 (64.5%)
	임의	61	57 (93.4%)	3 (4.9%)	1 (1.6%)	38	22	56 (91.8%)	53 (86.9%)	57 (93.4%)	53 (86.9%)	47 (77.0%)	44 (72.1%)

(4) 평가지표 18 : 사업홍보의 적극성

사업홍보의 적극성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사업홍보란 기부자(처) 및 이용자 발굴을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통한 언론 노출 및 팜플렛 등 인쇄물 배포 등을 포함한다.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가중치는 3점이다.

[표 5-71]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3	3	3	3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사업홍보 10건 이상 (단, 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은 7건 이상)		
		[0.75]	사업홍보 7건 이상 (단, 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은 5건 이상)		
		[0.5]	사업홍보 4건 이상 (단, 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은 3건 이상)		
		[0.25]	사업홍보 1건 이상 (단, 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은 1건 이상)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는 가중치가 3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2.49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2.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2.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2.84점)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2.34점)보다 0.5점 높게 나타났다.

[표 5-72]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3.00	2.49	0.8853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3.00	2.34	0.9727
	당연사업장	122	0.00	3.00	2.59	0.7660
	임의사업장	166	0.00	3.00	2.16	1.0664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3.00	2.84	0.4853
	당연사업장	62	1.50	3.00	2.94	0.2816
	임의사업장	61	0.00	3.00	2.73	0.6129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사업홍보의 적극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세종이 3.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2.83점), 제주(2.81점), 대구(2.81점), 대전(2.75점), 서울(2.74점), 인천(2.73점), 전북(2.66점), 부산(2.4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2.49점 이상의 지역은 10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2.49점보다 낮은 지역은 7개 지역(울산, 충북, 전남, 강원, 경기, 충남, 경남)이었다.

[표 5-73]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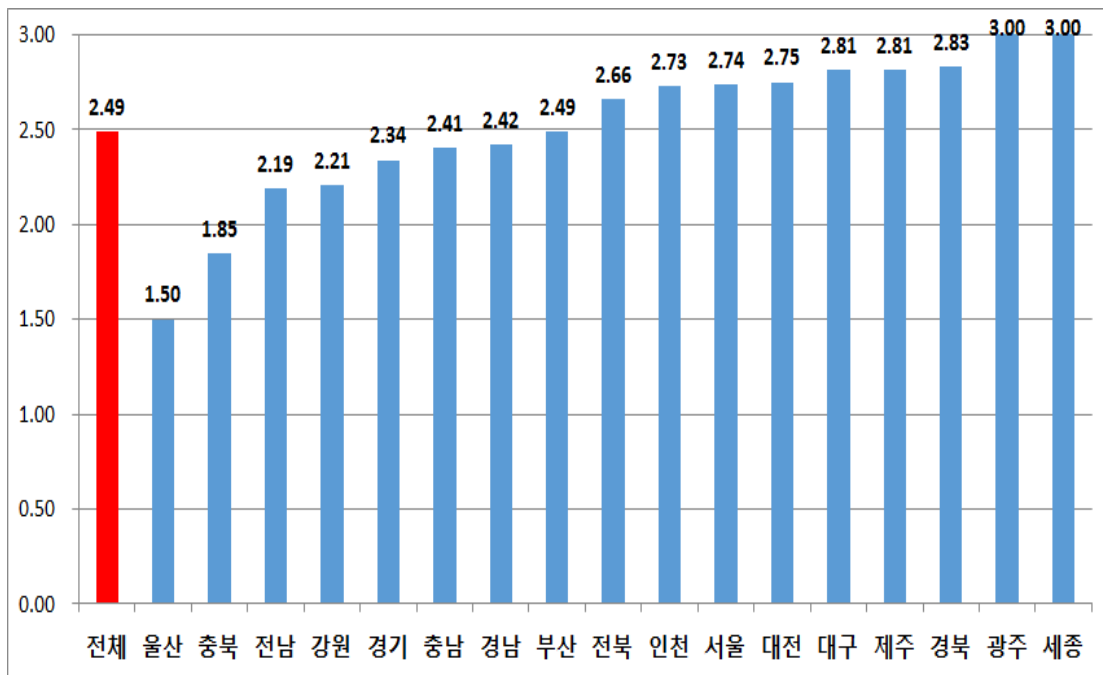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0.75	0.75	0.75	3.00	0.75	0.00	3.00	0.00	0.00	0.00	0.00	0.75	0.75	0.75	0.00	2.25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49	2.74	2.49	2.81	2.73	3.00	2.75	1.50	3.00	2.34	2.21	1.85	2.41	2.66	2.19	2.83	2.42	2.81	
	표준편차	0.89	0.72	0.84	0.59	0.61	0.00	0.67	1.45	0.00	0.99	1.04	1.15	0.96	0.71	0.82	0.51	0.89	0.38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0.75	0.75	0.75	3.00	0.75	0.00	3.00	0.00	0.00	0.00	0.00	0.75	0.75	0.75	0.00	2.25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34	2.53	2.34	2.71	2.59	3.00	2.46	1.29	3.00	2.22	2.16	1.73	2.29	2.60	2.12	2.80	2.33	2.63
	표준편차	0.97	0.96	0.98	0.72	0.78	0.00	0.94	1.42	-	1.02	1.06	1.16	1.04	0.80	0.84	0.55	0.96	0.53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0.75	3.00	3.00	1.50	3.00		0.00	3.00	0.75	1.50	0.00	3.00	3.00	1.50	3.00	2.25	2.25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59	2.73	3.00	3.00	2.78	3.00		1.69	3.00	2.53	2.50	1.39	3.00	3.00	2.06	3.00	2.81	2.63
	표준편차	0.77	0.65	-	0.00	0.51	0.00		1.55	-	0.75	0.77	1.10	0.00	0.00	0.72	0.00	0.38	0.53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0.75	0.75	0.75	3.00	0.75	0.00		0.00	0.00	0.00	0.00	0.75	0.75	0.75	0.00	
최대값		3.00	0.00	3.00	3.00	0.75	3.00	3.00	2.25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16	0.00	2.30	2.58	0.75	3.00	2.46	0.75		1.74	1.95	1.88	2.15	2.40	2.13	2.78	2.20		
표준편차	1.07	0.00	1.00	0.85	-	0.00	0.94	1.30		1.21	1.18	1.19	1.09	0.92	0.88	0.58	1.04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1.50	1.50	3.00	1.50	3.00	3.00	3.00	3.00	0.00	3.00	0.75	1.50	2.25	2.25	3.00	2.25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84	2.93	2.69	3.00	2.84	3.00	3.00	3.00	3.00	2.71	3.00	2.40	2.75	2.85	2.75	3.00	2.81	3.00
	표준편차	0.49	0.30	0.59	0.00	0.43	0.00	0.00	-	-	0.78	-	0.98	0.61	0.34	0.43	0.00	0.38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1.50	1.50	3.00	3.00	3.00		3.00		3.00	2.25			1.50	3.00		3.00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94	2.95	3.00	3.00	3.00		3.00		3.00	2.94			2.50	3.00		3.00		3.00
	표준편차	0.28	0.28	0.00	0.00	0.00		0.00		-	0.22			0.87	0.00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2.25	1.50	3.00	1.50	3.00	3.00	3.00		0.00	3.00	0.75	3.00	2.25	2.25	3.00	2.25	3.00
최대값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평균		2.73	2.63	2.63	3.00	2.78	3.00	3.00	3.00		2.25	3.00	2.40	3.00	2.75	2.75	3.00	2.81	3.00	
표준편차	0.61	0.53	0.64	0.00	0.51	0.00	0.00	-		1.25	-	0.98	0.00	0.43	0.43	0.00	0.38	-		

평균 1.50점을 받은 울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8개 사업장 중 3년간 사업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장이 3개소이었다. 또한, 평균 1.85점을 받은 충북은 28개소 가운데 사업홍보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3개소, 3년간 사업홍보를 3회만 실시한 사업장이 8개소이었으며, 3년간 10회 이상의 홍보를 진행한 사업장은 11개소에 불과했다.

[그림 5-18] 사업홍보의 적극성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사업홍보 세부평가

사업홍보 적극성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 사업장의 3년간 평균 합계는 24.6건(3년간 평균 8.2건)이었으며, 전체 사업장들의 사업홍보 평균 건수는 2015년 6.8건, 2016년 7.9건, 2017년 9.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년간 사업홍보 건수가 10건 이상(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은 7건 이상) 사업장은 287개소(69.8%)이었고, 7건 이상(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은 5건 이상) 사업장은 35개소(8.5%), 4건 이상(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은 3건 이상) 사업장은 40개소(9.7%), 1건 이상 사업장은 31개소(7.5%)이었다.

3년간 사업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장은 18개소(충북 3개소, 경기 6개소, 강원 1개소, 서울 2개소, 충남 2개소, 울산 3개소, 경남 1개소)이었다. 향후 사업홍보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표 5-74] 사업홍보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건, 개소)

구분	사업장 수	사업홍보 건수					3년간 사업홍보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3년 평균 합계	3년간 평균	10건 (7건) 이상	7건 (5건) 이상	4건 (3건) 이상	1건 (1건) 이상	0건	
전체 사업장	411	6.8	7.9	9.9	24.6	8.2	287 (69.8%)	35 (8.5%)	40 (9.7%)	31 (7.5%)	18 (4.4%)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5.6	6.1	6.9	18.6	6.2	180 (62.5%)	27 (9.4%)	34 (11.8%)	30 (10.4%)	17 (5.9%)
	당연	122	7.8	8.5	10.0	26.3	8.8	89 (73.0%)	11 (9.0%)	12 (9.8%)	8 (6.6%)	2 (1.6%)
	임의	166	3.8	4.3	4.6	12.8	4.3	91 (54.8%)	16 (9.6%)	22 (13.3%)	22 (13.3%)	15 (9.0%)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9.6	12.2	17.0	38.8	12.9	107 (87.0%)	8 (6.5%)	6 (4.9%)	1 (0.8%)	1 (0.8%)
	당연	62	12.5	17.2	26.9	56.6	18.9	59 (95.2%)	1 (1.6%)	2 (3.2%)	0 (0.0%)	0 (0.0%)
	임의	61	6.5	7.1	6.9	20.5	6.8	48 (78.7%)	7 (11.5%)	4 (6.6%)	1 (1.6%)	1 (1.6%)

* 3년간 사업홍보 항목에서 () 안의 건수는 신고 후 24개월 이하 사업장인 경우의 기준 건수임.

(5) 평가지표 19 : 사업 교류협력도

사업 교류협력도는 기초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광역푸드뱅크, 기초사업장, 유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정도를 평가한다. 광역푸드뱅크와 교류한 실적,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 관련 단체 및 기타 법인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행사 실적, 기초사업장 간의 협력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단, 광역푸드뱅크로부터 이관실적은 제외)

전반적인 교류협력 건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자체평가 시에 작성했던 항목별 교류실적의 평균값을 기준치로 제시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 기준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지표이므로 교류 건수 기준이 아닌 교류 노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위원들의 정성적인 판단으로 평가되었다.

[표 5-75]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3			3			3			3		
평가내용	항목	① 광역푸드뱅크와 교류한 실적이 있음			②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이 있음			③ 관련단체, 기타 법인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행사 실적이 있음			④ 기초사업장간의 협력한 실적이 있음		
	항목 가중치	1			1			0.5			0.5		
	등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등급 가중치	1.0	0.5	0.0	1.0	0.5	0.0	1.0	0.5	0.0	1.0	0.5	0.0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는 가중치가 3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1.01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인 1.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0.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1.43점)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0.84점)보다 0.59점 높게 나타났다.

[표 5-76]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3.00	1.01	0.7932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3.00	0.84	0.7117
	당연사업장	122	0.00	3.00	1.05	0.7324
	임의사업장	166	0.00	3.00	0.68	0.6545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3.00	1.43	0.8196
	당연사업장	62	0.00	3.00	1.52	0.7780
	임의사업장	61	0.00	3.00	1.34	0.8568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사업 교류협력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1.85점), 인천(1.52점), 대전(1.35점), 서울(1.32점), 경기(1.13점), 대구(1.1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1.01점 이상의 지역은 6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1.01점보다 낮은 지역은 11개 지역(경남, 세종, 충남, 울산, 전남, 강원, 충북, 경북, 제주, 광주, 전북)이었다.

평균 0.22점을 받은 경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7년 기준 22개소 가운데 광역푸드뱅크와의 교류실적을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장은 2개소뿐이었으며, 지자체와의 교류실적을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장은 없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교류실적을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장은 4개소에 불과했으며, 기초사업장 간의 교류실적을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의 교류협력도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지자체와의 교류, 유관기관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미흡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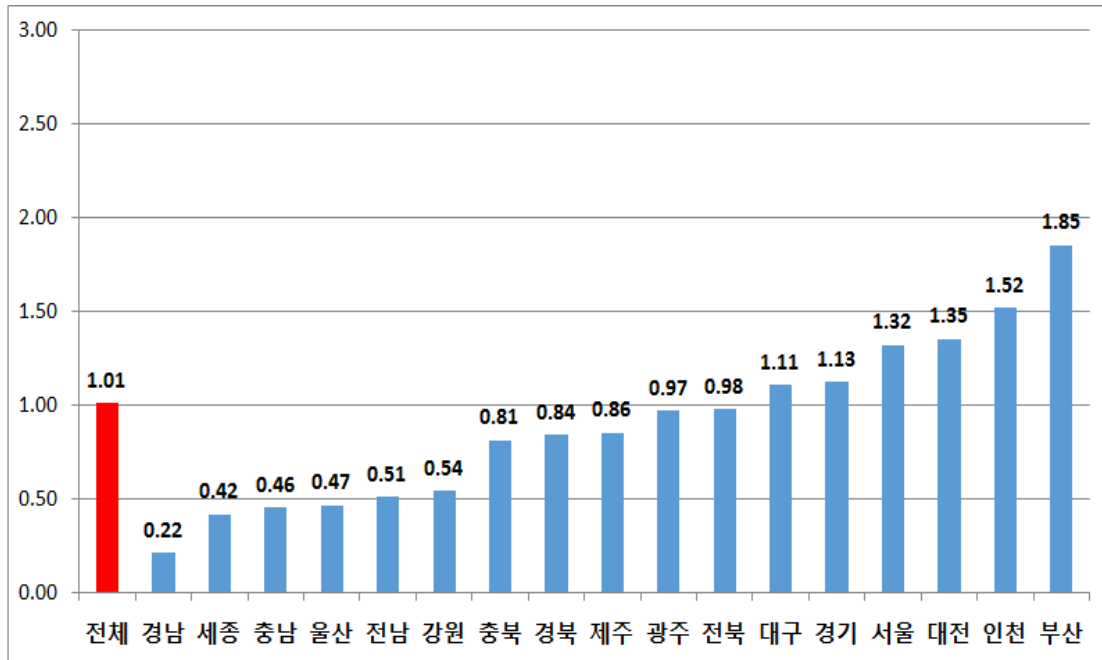
[표 5-77]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0.50	0.00	0.00	0.42	0.17	0.00	0.42	0.00	0.00	0.00	0.00	0.08	0.00	0.50	0.00	0.00		
	최대값	3.00	3.00	3.00	2.67	2.83	1.67	2.83	2.25	0.42	3.00	1.50	1.83	1.75	2.33	1.17	1.50	1.08	1.17		
	평균	1.01	1.32	1.85	1.11	1.52	0.97	1.35	0.47	0.42	1.13	0.54	0.81	0.46	0.98	0.51	0.84	0.22	0.86		
	표준편차	0.79	0.82	0.87	0.89	0.75	0.43	0.89	0.81	0.00	0.81	0.42	0.53	0.50	0.70	0.30	0.32	0.30	0.57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0.50	0.00	0.00	0.42	0.17	0.00	0.42	0.00	0.00	0.00	0.00	0.08	0.00	0.50	0.00	0.00	
		최대값	3.00	3.00	3.00	2.33	2.50	1.67	1.00	2.25	0.42	3.00	1.50	1.83	1.75	2.33	0.92	1.42	1.08	1.08	
		평균	0.84	1.25	1.56	0.80	1.11	0.95	0.56	0.54	0.42	1.01	0.54	0.83	0.46	0.91	0.46	0.78	0.18	0.54	
		표준편차	0.71	0.86	0.90	0.83	0.82	0.42	0.25	0.85	-	0.80	0.44	0.46	0.50	0.67	0.27	0.29	0.32	0.76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0.00	0.00	1.25	0.00	0.00	0.42		0.00	0.42	0.00	0.08	0.17	0.00	1.00	0.33	0.75	0.00	0.00	
		최대값	3.00	3.00	1.25	1.42	2.50	1.67		2.25	0.42	2.67	1.50	1.83	1.00	2.17	0.75	1.00	1.08	1.08	
		평균	1.05	1.35	1.25	0.48	1.22	1.02		0.94	0.42	1.20	0.64	0.69	0.44	1.32	0.54	0.88	0.56	0.54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0.50	0.00	0.00	0.50	0.17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50	0.00		
		최대값	3.00	0.00	3.00	2.33	0.00	1.50	1.00	0.00		3.00	1.42	1.33	1.75	2.33	0.92	1.42	0.50		
		평균	0.68	0.00	1.58	0.94	0.00	0.85	0.56	0.00		0.72	0.48	0.90	0.47	0.70	0.44	0.77	0.08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0.08	1.33	0.83	1.08	0.58	1.33	0.00	0.42	0.00	0.67	0.00	0.00	0.50	0.75	1.00	0.08	1.17
최대값			3.00	3.00	3.00	2.67	2.83	1.67	2.83	0.00	0.42	3.00	0.67	1.83	1.50	2.25	1.17	1.50	0.50	1.17	
평균			1.43	1.39	2.24	1.68	1.85	1.08	2.05	0.00	0.42	1.48	0.67	0.73	0.44	1.20	0.92	1.25	0.35	1.17	
표준편차			0.82	0.78	0.67	0.73	0.52	0.55	0.58	-	-	0.78	-	0.82	0.57	0.80	0.22	0.25	0.20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0.00	0.08	2.75	1.00	1.50		1.33		0.42	0.00			0.08	0.50		1.50		1.17	
		최대값	3.00	3.00	3.00	1.58	2.50		2.75		0.42	3.00			1.50	2.25		1.50		1.17	
		평균	1.52	1.38	2.88	1.29	2.00		2.04		0.42	1.62			0.55	1.38		1.50		1.17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0.33	1.33	0.83	1.08	0.58	1.33	0.00		0.25	0.67	0.00	0.00	0.50	0.75	1.00	0.08	1.17	
		최대값	3.00	2.67	3.00	2.67	2.83	1.67	2.83	0.00		2.50	0.67	1.83	0.58	1.83	1.17	1.25	0.50	1.17	
		평균	1.34	1.50	2.12	1.83	1.79	1.08	2.08	0.00		1.18	0.67	0.73	0.33	1.08	0.92	1.13	0.35	1.17	
표준편차		0.86	1.65	0.67	0.81	0.57	0.55	1.06	-		0.81	-	0.82	0.30	0.68	0.22	0.18	0.20	-		

[그림 5-19] 사업 교류협력도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사업 교류협력 건수

사업 교류협력 건수를 살펴보면, 광역푸드뱅크와의 교류협력은 3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3년간 평균적으로 사업장당 9.7건의 교류실적을 보였으며, 임의사업장에 비해 당연사업장의 교류 건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건수를 살펴보면, 역시 3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3년간 평균적으로 사업장당 3.5건의 교류실적을 보였으며, 당연사업장은 지자체와의 교류가 약 5회~10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임의사업장은 지자체와의 교류 건수가 약 1~2회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건수도 역시 3년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3년간 평균적으로 사업장당 4.9건의 교류실적을 보였으며, 임의사업장에 비해 당연사업장의 교류 건수가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사업장 간의 교류협력 건수를 살펴보면, 3년간 평균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3년간 평균적으로 사업장당 40.2건의 교류실적을 보였으며,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3년간 평균 49.9건으로 임의사업장의 16.1건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은 3년간 평균 80.7건으로 임의사업장의 43.1건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8] 사업 교류협력 평균 건수

(단위 : 건, 개소)

구분	사업장 수	광역푸드뱅크와의 교류협력 건수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건수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3년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3년간 평균	
전체 사업장	411	8.4	10.1	10.5	9.7	3.9	3.4	3.2	3.5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7.6	9.6	10.7	9.3	3.0	2.5	2.3	2.6
	당연	122	9.9	13.2	13.4	12.1	5.4	4.6	4.2	4.8
	임의	166	5.9	7.0	8.8	7.2	0.9	0.8	0.8	0.8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10.1	11.1	9.9	10.4	6.0	5.6	5.2	5.6
	당연	62	14.4	15.0	13.1	14.2	10.1	9.1	8.3	9.2
	임의	61	5.8	7.2	6.6	6.5	1.6	2.0	2.1	1.9
구분	사업장 수	유관기관 과의 교류협력 건수				기초사업장 간의 교류협력 건수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3년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3년간 평균	
전체 사업장	411	4.6	5.0	5.0	4.9	34.4	42.1	44.1	40.2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3.6	3.9	3.9	3.8	28.6	31.7	31.8	30.7
	당연	122	5.4	5.6	5.4	5.5	46.7	56.3	46.8	49.9
	임의	166	2.1	2.6	2.8	2.5	14.0	13.5	20.7	16.1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6.8	7.6	7.5	7.3	47.4	66.2	72.8	62.1
	당연	62	9.0	10.2	9.4	9.5	57.9	93.2	91.0	80.7
	임의	61	4.5	4.8	5.5	4.9	36.4	38.6	54.3	43.1

④ 사업 교류협력도 세부평가

사업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광역푸드뱅크 교류실적 항목에서 전체 411개소 중 '상'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100개소(24.3%), '중' 등급은 144개소(35.0%), '하' 등급은 167개소(40.6%)이었다. 지자체 교류실적 항목에서는 전체 411개소 중 '상' 등급은 58개소(14.1%), '중' 등급이 70개소(17.0%), '하' 등급이 283개소(68.9%)이었다.

유관기관 교류실적 항목에서는 '상' 등급 사업장은 93개소(22.6%), '중' 등급 사업장은 106개소(25.8%), '하' 등급 사업장은 212개소(51.6%)이었다. 그리고 기초사업장 교류실적 항목에서는 '상' 등급 사업장은 148개소(36.0%), '중' 등급 사업장은 62개소(15.1%), '하' 등급 사업장은 201개소(48.9%)이었다.

전반적으로 푸드마켓의 교류실적이 푸드뱅크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와의 교류실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향후에는 지자체와의 교류실적을 강화해 나가며, 적정 수준에서 광역푸드뱅크, 유관기관, 기초사업장 간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5-79] 사업 교류협력도 세부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장 수	2017년 사업 교류협력도												
		광역푸드뱅크 교류 실적			지자체 교류 실적			유관기관 교류 실적			기초사업장 교류 실적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사업장	411	100 24.3%	144 35.0%	167 40.6%	58 14.1%	70 17.0%	283 68.9%	93 22.6%	106 25.8%	212 51.6%	148 36.0%	62 15.1%	201 48.9%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58 20.1%	103 35.8%	127 44.1%	26 9.0%	41 14.2%	221 76.7%	44 15.3%	66 22.9%	178 61.8%	85 29.5%	42 14.6%	161 55.9%
	당연	122	28 23.0%	47 38.5%	47 38.5%	17 13.9%	25 20.5%	80 65.6%	24 19.7%	37 30.3%	61 50.0%	51 41.8%	19 15.6%	52 42.6%
	임의	166	30 18.1%	56 33.7%	80 48.2%	9 5.4%	16 9.6%	141 84.9%	20 12.0%	29 17.5%	117 70.5%	34 20.5%	23 13.9%	109 65.7%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42 34.1%	41 33.3%	40 32.5%	32 26.0%	29 23.6%	62 50.4%	49 39.8%	40 32.5%	34 27.6%	63 51.2%	20 16.3%	40 32.5%
	당연	62	18 29.0%	21 33.9%	23 37.1%	20 32.3%	21 33.9%	21 33.9%	26 41.9%	25 40.3%	11 17.7%	31 50.0%	12 19.4%	19 30.6%
	임의	61	24 39.3%	20 32.8%	17 27.9%	12 19.7%	8 13.1%	41 67.2%	23 37.7%	15 24.6%	23 37.7%	32 52.5%	8 13.1%	21 34.4%

2) 사업성과 평가

사업성과에는 ‘기부식품등 접수실적’과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 평가지표 20 :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기부식품등 접수실적은 사업비, 이용자 수, 기초사업장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에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전체 기초사업장당 접수환가액,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세부지표별로 당연사업장과 임의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당연사업장은 당연사업장의 평균 대비 실적에 따라, 임의사업장은 임의사업장의 평균 대비 실적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였고 해당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5-80]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5	5	5		5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평균 등급	기초사업장 유형별(당연/임의) 평균 대비				
					100% 이상	80%이상~100%미만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40% 미만
					S	A	B	C	D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 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해당기관 사업비}}$			가중치	1.0	0.8	0.6	0.4	0.2
	이용자 1인당 접수 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해당기관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마켓)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전체 기초푸드뱅크(마켓)수}}$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 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관할지역 인구 수}}$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는 가중치가 5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2.58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인 2.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이 2.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뱅크 평균 점수(2.58점)와 푸드마켓 평균 점수(2.58점)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표 5-81]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5.00	2.58	1.1031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5.00	2.58	1.1016
	당연사업장	122	1.07	5.00	2.77	1.0377
	임의사업장	166	0.00	4.73	2.43	1.1279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0.00	5.00	2.58	1.1112
	당연사업장	62	1.00	4.47	2.51	0.9977
	임의사업장	61	0.00	5.00	2.64	1.2211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전북(3.54점), 부산(3.18점), 서울(3.17점), 대전(2.77점), 충남(2.74점), 경기(2.6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2.58점 이상의 지역은 6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2.58점보다 낮은 지역은 11개 지역(세종, 광주, 제주, 대구, 충북, 전남, 경남, 인천, 강원, 경북, 울산)이었다.

평균 1.40점을 받은 세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2개 사업장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종 지역을 제외하면 평균 1.84점을 받은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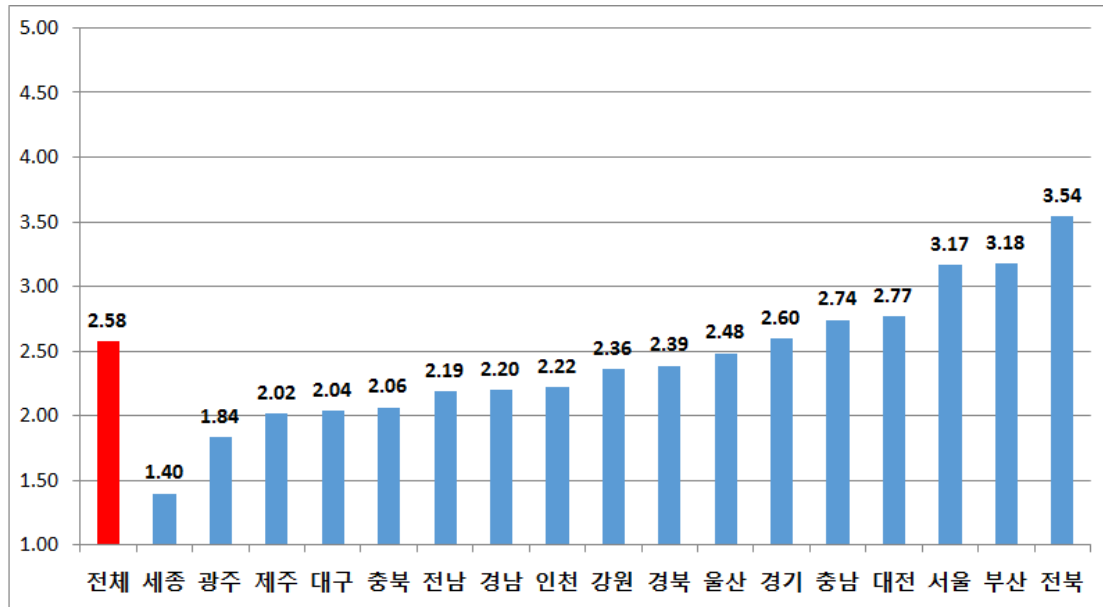
[표 5-82]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1.33	0.33	0.80	0.87	1.07	0.33	1.40	1.20	0.00	1.13	0.00	0.80	2.40	0.93	0.33	0.93	1.53		
	최대값	5.00	5.00	4.73	3.67	4.53	3.80	4.67	3.87	1.60	4.67	4.67	4.73	4.20	5.00	3.67	4.07	4.73	3.20		
	평균	2.58	3.17	3.18	2.04	2.22	1.84	2.77	2.48	1.40	2.60	2.36	2.06	2.74	3.54	2.19	2.39	2.20	2.02		
	표준편차	1.10	0.98	1.21	0.88	1.06	0.72	1.04	0.89	0.28	1.02	0.91	1.34	1.00	0.84	0.91	1.09	1.02	0.80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1.40	0.33	0.80	0.87	1.07	0.33	1.40	1.20	0.00	1.13	0.00	0.80	2.40	0.93	0.33	0.93	1.53	
		최대값	5.00	5.00	4.60	3.67	4.27	3.00	4.67	3.87	1.20	4.67	3.53	4.73	4.20	4.60	3.67	4.07	4.73	1.53	
		평균	2.58	3.27	3.20	1.96	2.35	1.70	2.82	2.51	1.20	2.78	2.21	2.24	2.85	3.33	2.16	2.48	2.26	1.53	
		표준편차	1.10	1.10	1.17	0.90	1.00	0.58	1.34	0.96	-	1.04	0.71	1.30	1.03	0.70	0.91	1.11	1.12	0.00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1.07	1.53	1.40	1.60	1.27	1.07		1.93	1.20	1.27	1.20	1.33	3.27	2.53	2.47	2.07	1.40	1.53	
		최대값	5.00	5.00	1.40	3.33	4.27	3.00		3.87	1.20	4.67	3.07	4.73	4.20	4.60	3.40	3.40	2.13	1.53	
		평균	2.77	3.40	1.40	2.17	2.49	1.48		2.65	1.20	3.00	2.16	2.93	3.67	3.24	2.97	2.74	1.73	1.53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1.40	0.33	0.80	0.87	1.53	0.33	1.40		0.00	1.13	0.00	0.80	2.40	0.93	0.33	0.93		
		최대값	4.73	1.87	4.60	3.67	0.87	2.73	4.67	3.67		4.07	3.53	4.67	4.13	4.13	3.67	4.07	4.73		
		평균	2.43	1.64	3.32	1.87	0.87	2.03	2.82	2.31		2.42	2.25	1.93	2.69	3.37	1.99	2.45	2.41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0.00	1.33	1.33	1.00	1.00	1.80	1.40	2.33	1.60	1.00	4.67	0.00	1.27	3.00	1.47	1.00	1.60	1.80
최대값			5.00	4.47	4.73	3.47	4.53	3.80	4.00	2.33	1.60	3.40	4.67	2.87	3.47	5.00	3.67	2.80	2.33	3.20	
평균			2.58	3.08	3.16	2.18	2.13	2.51	2.72	2.33	1.60	2.04	4.67	1.27	2.41	4.17	2.42	1.80	1.90	2.50	
표준편차			1.11	0.87	1.31	0.91	1.14	1.12	0.78	-	-	0.74	-	1.35	0.88	0.97	1.13	0.92	0.34	0.99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0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1.00	1.33	1.60	2.07	1.00		1.40		1.60	1.00			1.27	3.00		1.00		1.80	
		최대값	4.47	4.47	2.27	2.27	3.13		4.00		1.60	3.40			3.47	3.27		1.00		1.80	
		평균	2.51	3.06	1.94	2.17	1.53		2.61		1.60	1.82			2.56	3.14		1.00		1.80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0.00	2.87	1.33	1.00	1.00	1.80	2.80	2.33		1.90	4.67	0.00	1.47	4.60	1.47	1.60	1.60	3.20	
		최대값	5.00	3.73	4.73	3.47	4.53	3.80	3.33	2.33		3.27	4.67	2.87	2.93	5.00	3.67	2.80	2.33	3.20	
		평균	2.64	3.30	3.40	2.19	2.37	2.51	3.07	2.33		2.47	4.67	1.27	2.27	4.87	2.42	2.20	1.90	3.20	
표준편차		표준편차	1.22	0.61	1.29	1.11	1.13	1.12	0.37	-		0.62	-	1.35	0.74	0.23	1.13	0.85	0.34	-	

[그림 5-20]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③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세부평가

기부식품등 접수실적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 사업장의 평균 접수환가액은 2015년 290,412천원, 2016년 315,121천원, 2017년 352,540천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푸드뱅크의 평균 접수환가액은 355,131천원이었으며, 푸드마켓의 평균 접수환가액은 346,481천원이었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평균 621,718천원으로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의 531,664천원보다 약 90,054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153,121천원)과 푸드마켓 임의사업장(151,882천원)은 비슷한 수준의 접수환가액을 보였다.

사업장들의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평균은 2015년 20.7백만원, 2016년 14.0백만원, 2017년 16.4백만원으로 증감 현상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푸드마켓 당연사업장과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은 등락 폭이 큰 현상을 나타냈다.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은 전체 사업장 평균 2015년에 2,802천원에서 2016년에 5,471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3,227천원으로 감소하

였다. 푸드뱅크는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푸드마켓의 당연사업장은 2015년 11,806천원에서 2016년 26,968천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7,987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사업장 1개소당 접수환가액은 2015년 722천원, 2016년 758천원, 2017년 828천원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모두 일정한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당연사업장의 사업장당 접수환가액이 임의사업장의 사업장당 접수환가액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은 2015년 1,287천원, 2016년 1,349천원, 2017년 1,501천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푸드뱅크는 2017년 기준 1,605천원, 푸드마켓은 1,257천원으로 푸드뱅크가 348천원 더 많은 결과를 보였다.

[표 5-83]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세부평가

(단위 : 백만원, 천원, 원, 개소)

구분	사업장 수	접수환가액(천원)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백만원)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천원)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전체 사업장	411	290,412	315,121	352,540	20.7	14.0	16.4	2,802	5,471	3,227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299,940	316,654	355,131	26.1	16.2	18.5	1,306	1,777	2,804			
	당연	122	523,185	557,561	621,718	19.4	19.4	19.3	2,108	3,079	3,720			
	임의	166	118,366	129,453	153,121	32.3	13.4	17.8	650	754	2,105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268,817	311,585	346,481	9.0	9.0	11.6	6,181	13,925	4,213			
	당연	62	416,613	483,741	531,664	14.3	12.9	17.4	11,806	26,968	7,987			
	임의	61	110,828	130,674	151,882	2.9	4.8	5.2	169	218	248			
구분	사업장 수	사업장당 접수환가액(천원)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원)			접수실적 점수 분포 (개소)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5점	4점 이상	3점 이상	2점 이상	1점 이상	1점 미만	
전체 사업장	411	722	758	828	1,287	1,349	1,501	4	43	110	124	112	18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746	761	834	1,444	1,455	1,605	2	29	82	84	75	16
	당연	122	1,301	1,340	1,459	1,979	2,096	2,202	2	14	40	31	35	0
	임의	166	294	311	359	1,008	956	1,152	0	15	42	53	40	16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669	749	813	933	1,104	1,257	2	14	28	40	37	2
	당연	62	1,036	1,163	1,248	1,160	1,396	1,518	0	5	18	19	20	0
	임의	61	276	314	357	689	798	983	2	9	10	21	17	2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411개소 중 5점을 받은 사업장은 4개소(0.97%)이었으며, 4점 이상~5점 미만 사업장은 43개소(10.5%), 3점 이상~4점 미만 사업장은 110개소(26.8%), 2점 이상~3점 미만 사업장은 124개소(30.2%), 1점 이상~2점 미만 사업장은 112개소(27.3%), 1점 미만 사업장은 18개소(4.4%)의 결과를 보였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5점 2개소(0.7%), 4점 이상~5점 미만 29개소(10.1%), 3점 이상~4점 미만 82개소(28.5%), 2점 이상~3점 미만 84개소(29.2%), 1점 이상~2점 미만 75개소(26.0%), 1점 미만 16개소(5.6%)이었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5점 2개소(1.6%), 4점 이상~5점 미만 14개소(11.4%), 3점 이상~4점 미만 28개소(22.8%), 2점 이상~3점 미만 40개소(32.5%), 1점 이상~2점 미만 37개소(30.1%), 1점 미만 2개소(1.6%)이었다. 1점 미만 사업장은 임의사업장에만 있었고, 당연사업장에서는 1점 미만의 사업장이 없었다.

접수실적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의 하나를 살펴보면, 사업비가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등의 법인 기관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사업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백만 원당 접수환가액 항목에서 점수를 받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평가지표 21 :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은 사업비, 이용자 수, 기초사업장 수, 관할 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에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 환가액, 이용자 1인당 배분 환가액, 전체 기초사업장당 배분 환가액, 관할 지역 인구 1인당 접수 환가액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세부지표별로 당연사업장과 임의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당연사업장은 당연사업장의 평균 대비 실적에 따라, 임의사업장은 임의사업장의 평균 대비 실적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였고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5-84]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가중치	정량	5	5	5	5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 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해당기관 사업비}}$	평균 등급	기초사업장 유형별(당연/임의) 평균 대비					
				100% 이상	80%이상~100%미만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40% 미만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해당기관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마켓)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전체 기초푸드뱅크(마켓)수}}$	가중치	S	A	B	C	D
					1.0	0.8	0.6	0.4	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 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관할지역 인구 수}}$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①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는 가중치가 5점이며, 전체 기초사업장의 평균은 2.74점의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이 2.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과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이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푸드마켓 평균 점수(2.78점)가 푸드뱅크 평균 점수(2.72점)보다 0.06점 낮게 나타났다.

[표 5-85]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사업장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사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사업장 전체		411	0.00	4.93	2.74	0.9591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전체	288	0.00	4.93	2.72	0.9574
	당연사업장	122	1.27	4.93	2.83	0.9418
	임의사업장	166	0.00	4.60	2.63	0.9631
푸드마켓	기초푸드마켓 전체	123	1.00	4.73	2.78	0.9651
	당연사업장	62	1.00	4.73	2.63	1.0018
	임의사업장	61	1.20	4.73	2.94	0.9083

② 지역별 평가 결과

지역별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3.47점), 서울(3.30점), 전북(3.13점), 대전(2.95점), 인천(2.92점), 충남(2.83점), 강원(2.80점), 제주(2.8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2.74점 이상의 지역은 8개 지역이었으며, 평균 2.73점보다 낮은 지역은 9개 지역(세종, 광주, 대구, 울산, 전남, 경북, 경기, 충북, 경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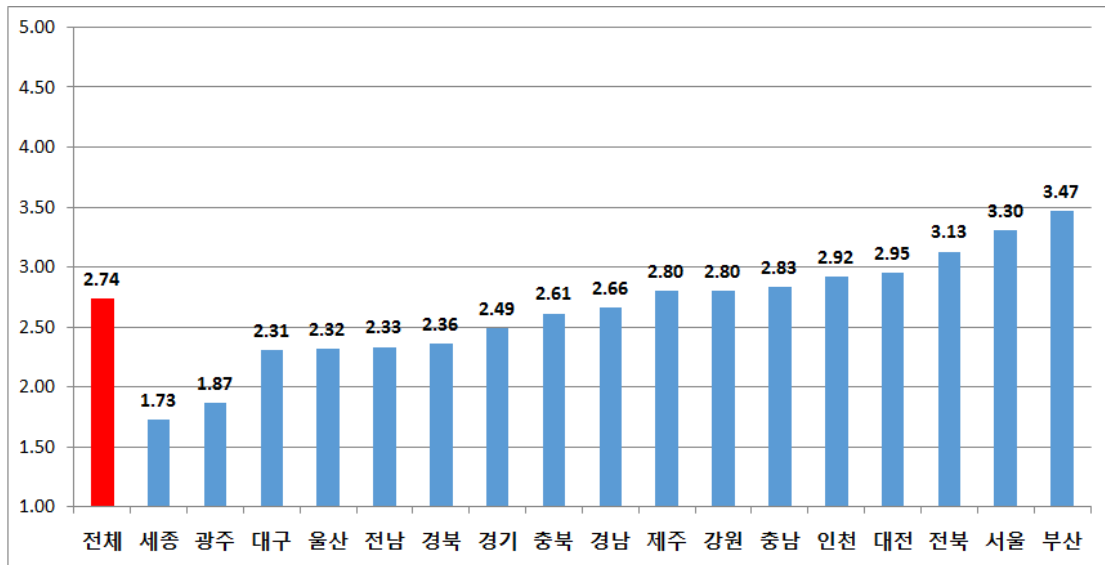
평균 1.73점을 받은 세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2개 사업장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종 지역을 제외하면 평균 1.87점을 받은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5-86]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지역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사업장	사업장 수	411	57	28	20	25	18	15	8	2	75	17	28	24	20	26	22	22	4		
	최소값	0.00	0.00	1.80	0.93	1.40	1.40	1.00	1.60	1.13	0.00	1.47	1.13	1.00	1.33	1.00	1.40	1.47	1.60		
	최대값	4.93	4.93	4.73	3.93	4.47	3.07	4.60	3.80	2.33	4.40	3.60	4.67	4.47	4.47	4.27	4.00	4.47	4.20		
	평균	2.74	3.30	3.47	2.31	2.92	1.87	2.95	2.32	1.73	2.49	2.80	2.61	2.83	3.13	2.33	2.36	2.66	2.80		
	표준편차	0.96	0.97	0.77	0.80	0.91	0.42	1.01	0.74	0.85	0.92	0.63	0.94	1.03	0.83	0.89	0.72	0.87	1.36		
푸드 뱅크	전체	사업장 수	288	27	16	13	11	15	7	7	1	57	16	23	18	15	23	19	18	2	
		최소값	0.00	0.00	1.80	0.93	1.40	1.40	1.00	1.60	2.33	0.00	1.47	1.13	1.07	1.87	1.00	1.40	1.47	1.60	
		최대값	4.93	4.93	4.60	3.67	3.87	3.07	4.60	3.80	2.33	4.40	3.60	4.67	4.47	4.47	4.20	4.00	4.47	1.67	
		평균	2.72	3.42	3.40	2.06	2.39	1.88	3.56	2.31	2.33	2.64	2.76	2.72	3.12	3.39	2.16	2.35	2.73	1.64	
		표준편차	0.96	1.07	0.77	0.72	0.76	0.46	1.20	0.80	-	0.91	0.62	0.95	0.89	0.71	0.77	0.76	0.94	0.05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122	25	1	4	10	9	0	4	1	35	6	7	3	5	4	2	4	2	
		최소값	1.27	2.00	2.67	1.67	1.40	1.40		1.60	2.33	1.27	1.47	1.53	3.40	2.40	2.53	2.07	1.53	1.60	
		최대값	4.93	4.93	2.67	2.93	3.87	3.07		3.80	2.33	4.40	3.20	4.67	4.13	4.47	3.33	3.27	2.13	1.67	
		표준편차	0.94	0.82	-	0.54	0.76	0.51		0.97	-	0.84	0.71	1.07	0.39	0.80	0.37	0.85	0.27	0.05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166	2	15	9	1	6	7	3	0	22	10	16	15	10	19	17	14	0	
		최소값	0.00	0.00	1.80	0.93	1.70	1.60	1.00	1.67		0.00	1.87	1.13	1.07	1.87	1.00	1.40	1.47		
		최대값	4.60	2.30	4.60	3.67	1.70	2.47	4.60	2.33		4.20	3.60	4.07	4.47	4.33	4.20	4.00	4.47		
		표준편차	0.96	1.63	0.77	0.81	-	0.33	1.20	0.35		0.95	0.53	0.87	0.90	0.70	0.75	0.77	0.88		
	푸드 마켓	전체	사업장 수	123	30	12	7	14	3	8	1	1	18	1	5	6	5	3	3	4	2
			최소값	1.00	1.33	2.13	1.67	2.00	1.67	1.80	2.33	1.13	1.00	3.53	1.47	1.00	1.33	2.93	1.93	2.07	3.73
최대값			4.73	4.73	4.73	3.93	4.47	1.87	2.80	2.33	1.13	3.47	3.53	3.00	3.67	3.00	4.27	3.07	2.93	4.20	
평균			2.78	3.20	3.57	2.75	3.34	1.80	2.42	2.33	1.13	2.02	3.53	2.12	1.98	2.36	3.64	2.40	2.34	3.97	
표준편차			0.97	0.88	0.80	0.81	0.81	0.12	0.32	-	-	0.82	-	0.78	0.99	0.72	0.67	0.60	0.41	0.33	
당연 사업장		사업장 수	62	28	2	2	4	0	6		1	12	0	0	3	2	0	1	0	1	
		최소값	1.00	1.33	3.60	1.67	2.00		1.80		1.13	1.00			1.00	1.87		1.93		3.73	
		최대값	4.73	4.73	3.73	2.40	3.73		2.60		1.13	3.47			2.07	2.80		1.93		3.73	
		표준편차	1.00	0.90	0.09	0.52	0.83		0.30		-	0.88			0.58	0.66		-		-	
임의 사업장		사업장 수	61	2	10	5	10	3	2	1	0	6	1	5	3	3	3	2	4	1	
		최소값	1.20	3.00	2.13	2.27	3.07	1.67	2.67	2.33		1.20	3.53	1.47	1.60	1.33	2.93	2.20	2.07	4.20	
		최대값	4.73	3.67	4.73	3.93	4.47	1.87	2.80	2.33		2.93	3.53	3.00	3.67	3.00	4.27	3.07	2.93	4.20	
		표준편차	0.91	0.47	0.88	0.74	0.54	0.12	0.09	-		0.74	-	0.78	1.04	0.91	0.67	0.62	0.41	-	

[그림 5-21]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지표 지역별 평균 점수



③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세부평가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과 관련하여 전체 411개 사업장의 평균 배분 환가액은 2015년 367,703천원, 2016년 403,959천원, 2017년 445,268천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푸드뱅크의 평균 배분 환가액은 476,140천원이었으며, 푸드마켓의 평균 배분 환가액은 372,894천원이었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은 평균 762,378천원으로 푸드마켓 당연사업장의 526,152천원보다 약 236,226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263,208천원)도 푸드마켓 임의사업장(214,527천원)보다 48,681천원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업장들의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 환가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평균은 2015년 34.3백만원, 2016년 19.7백만원, 2017년 24.9백만원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푸드뱅크 당연사업장(2015년 27.3백만원, 2016년 25.1백만원, 2017년 24.0백만원)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2015년 61.6백만원, 2016년 24.5백만원, 2017년 33.4백만원)은 등락 폭이 컸으며, 푸드마켓 당연사업장(2015년 18.2백만원, 2016년 10.3백만원, 2017년 21.1백만원)도 등락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푸드마켓 임의사업장(2015년 4.2백만원, 2016년 6.2백만원, 2017년 9.2백만원)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용자 1인당 배분 환가액은 전체사업장 평균은 2015년 5,047천원에서 2016년 7,168천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6,495천원으로 감소하였다. 푸드뱅크 당연사업장과 임의사업장, 그리고 푸드마켓 임의사업장은 이용자 1인당 배분 환가액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푸드마켓의 당연사업장은 2015년 12,337천원에서 2016년 18,306천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12,798천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5-87] 기부식품등 배분 실적 세부평가

(단위 : 백만원, 천원, 원, 개소)

구분	사업장 수	배분 환가액(천원)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 환가액(백만원)			이용자 1인당 배분 환가액(천원)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전체 사업장	411	367,703	403,959	445,268	34.3	19.7	24.9	5,047	7,168	6,495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397,145	432,142	476,140	45.2	24.8	29.2	1,813	2,361	3,806			
	당연	122	646,994	709,972	762,378	27.3	25.1	24.0	2,649	3,841	4,867			
	임의	166	197,920	224,196	263,208	61.6	24.5	33.4	1,146	1,252	3,017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301,336	338,657	372,894	11.5	8.3	15.4	12,337	18,306	12,798			
	당연	62	435,691	492,677	526,152	18.2	10.3	21.1	24,046	36,046	24,869			
	임의	61	162,501	182,112	214,527	4.2	6.2	9.2	237	275	325			
구분	사업장 수	사업장당 배분 환가액(천원)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 환가액(원)			배분 실적 점수 분포 (개소)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2015년 평균	2016년 평균	2017년 평균	5점	4점 이상	3점 이상	2점 이상	1점 이상	1점 미만	
전체 사업장	411	915	971	1,045	1,813	2,054	2,285	0	48	125	138	97	3	
기초 푸드뱅크	전체	288	988	1,039	1,118	2,153	2,427	2,727	0	32	89	93	71	3
	당연	122	1,609	1,707	1,790	2,578	2,829	2,971	0	16	41	37	28	0
	임의	166	492	539	618	1,814	2,125	2,545	0	16	48	56	43	3
기초 푸드마켓	전체	123	750	814	875	1,045	1,189	1,248	0	16	36	45	26	0
	당연	62	1,084	1,184	1,235	1,163	1,338	1,424	0	7	16	23	16	0
	임의	61	404	438	504	923	1,037	1,065	0	9	20	22	10	0

사업장 1개소당 배분 환가액은 2015년 915천원, 2016년 971천원, 2017년 1,045천원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모두 일정한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당연사업장의 사업장당 배분 환가액이 임의사업장의 사업장당 배분 환가액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역 인구 1인당 접수 환가액은 2015년 1,813천원, 2016년 2,054천원, 2017년 2,285천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푸드뱅크는 2017년 기준 2,727천원, 푸드마켓은 2,565천원으로 푸드뱅크가 162천원 더 많은 결과를 보였다.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접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411개소 중 5점을 받은 사업장은 없었으며, 4점 이상~5점 미만 사업장은 48개소(11.7%), 3점 이상~4점 미만 사업장은 125개소(30.4%), 2점 이상~3점 미만 사업장은 138개소(33.6%), 1점 이상~2점 미만 사업장은 97개소(23.6%), 1점 미만 사업장은 3개소(0.7%)의 결과를 보였다. 1점 미만을 받은 3개소는 푸드뱅크 임의사업장(경기 1개소, 서울 1개소, 대구 1개소)이었다.

푸드뱅크는 288개소 중 5점은 없었고, 4점 이상~5점 미만 32개소(11.1%), 3점 이상~4점 미만 89개소(30.9%), 2점 이상~3점 미만 93개소(32.3%), 1점 이상~2점 미만 71개소(24.7%), 1점 미만 3개소(1.0%)이었다. 푸드마켓은 123개소 중 5점은 없었고, 4점 이상~5점 미만 16개소(13.0%), 3점 이상~4점 미만 36개소(29.3%), 2점 이상~3점 미만 45개소(36.6%), 1점 이상~2점 미만 26개소(21.1%), 1점 미만 사업장은 없었다.

VI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의의	145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개선방안	147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151

VI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의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사회에 대폭 늘어난 노숙인 등 저소득층의 결식문제 완화를 위해 식품제조회사, 식품유통기업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식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계층(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배분하고 있다.

1998년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7년 현재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전국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460개소가 설치됐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푸드뱅크는 2017년 2,028억 원의 식품 및 생활용품을 모집하여 개인과 기관의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등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 같이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사업 내실화를 위한 총체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1년 6월 실시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은 주기적인 확인·점검을 위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제도 도입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평가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실태 분석, 정책 방향 환류 등 사업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2012년에는 기부식품등 제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광역·기초 단위 사업장에 대한 최초의 평가체계와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고, 개발한 평가지표로 2013년 1월 사업장 인프라를 중심으로 첫 평가를 진행했다.

2015년에는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중심의 두 번째 평가를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평가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2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함께 평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기존 평가지표 세부항목들을 보완하는 등 개선하였고, 2018년에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411개 기초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인력 현황,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사업의 성과 등 6개 영역에 대해 평가하였다.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는 법적근거에 따라 실시된 최초의 평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사업장의 인력, 시설·장비 등 신고요건 충족이 사업 운영에 필수사항임을 인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변수가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었다. 또한, 식품 안전성 확보,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개선방안

□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평가지표와 관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일부 지역(예 : 서울, 세종)의 '통합형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통합형 사업장 : 광역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세종행정자치시)에서 정책적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 푸드마켓의 독립매장 여부와 관련하여 독립매장이 없는 사업장은 3개소(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경북 1개소)였다. 3개소에 대해 독립매장이 없는 원인 분석 등을 하고 푸드마켓의 본래 목적달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그리고,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차량·냉장·냉동고·보관창고)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점검 외에 별도로 기부식품등의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 전담직원 확보수준과 관련, 당연사업장은 '2017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따르면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당연신고사업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임의사업장 중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당(겸직)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보조인력 확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하다. 푸드마켓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푸드뱅크 임의사업장 중 45개소는 보조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광역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파악하고 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과 관련, 필수교육인 식품위생교육, FMS 활용교육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예산 및 회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 차원의 예산회계 교육을 마련하여 기초사업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직원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미충족이다. 현재 미충족한 사업장이 전체 411개소 중 150개소(36.5%)에 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급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 기부식품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자체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274개소(66.7%)였고, 137개소(33.3%)는 실시하지 않았다. 정기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기초사업장에서도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FMS 활용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사업장 직원들의 FMS 활용 수준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 직원들의 FMS 활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FMS 교육 이외에도 온라인(인터넷 등)에서도 FMS 활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기적인 교체 등의 사유로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은 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배분하고 있는지 기초사업장 또는 광역푸드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현재의 평가지표는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 제공,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항목으로만 평가했는데, 법적 기준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평가지표 개발에

는 법적 기준 준수와 관련 배점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부자(처) 관리수준과 관련하여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 항목, 기부자(처) 의견수렴 제도·절차 항목에 대해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았다. 특히,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의 기부자(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기부자(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절차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 이용자 관리수준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하지 못했거나, 이용자 의견수렴 자체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있었다. 특히,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51개소(31.1%)에 달했다. 추후 푸드뱅크 임의사업장에 대해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를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과 관련, 모집 및 제공 등의 홈페이지 공개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 83개소(20.2%)에 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홈페이지가 없는 기초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광역푸드뱅크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기초사업장 명의로 된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지침 등이 없거나, 운영위원회 지침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이 약 20%에 이른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만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사업장은 210개소뿐이다.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혼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관련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사업 교류협력도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장들이 평가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지자체와의 교류, 유관기관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향후 지자체, 광역, 기초사업장, 유관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사후관리

- 사업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상위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물질적 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수혜 대상 사업장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하위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강화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평가를 통해 하위사업장에 1회 포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을 통한 개선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2회 포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식품등의 지원을 제한하고, 3회 연속 하위사업장에 포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소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사회에 대폭 증가한 노숙인 등 저소득층의 결식문제 완화를 위해, 식품제조회사, 식품유통기업, 개별 식품제조사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식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였고, 매년 사업 규모는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어 이용자의 요구와 영양 균형 등을 감안한 양질의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제공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담인력의 충족과 인프라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차량, 냉장·냉동고, 보관창고 등의 보유는 사업의 안정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고기준으로, 충족치 못할 경우 사업운영의 안전성 여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사업장 411개소 가운데 106개소(25.8%)가 신고 기준에 미흡했다. 따라서 식품 안전성 확보와 기부식품 이용자 및 기부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취약계층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으로 기부가능 품목을 일상적으로 필요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자립도가 상이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기부자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부자, 해당 지자체, 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는 물론 각 사업장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물적 자원 복지서비스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물적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 전문인력 채용 등 사업 인적자원의 인프라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지표 중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 미확보 등 인적 인프라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지역평가단의 의견으로는 종사자의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업무 과다, 빈번한 종사자 교체에 의한 행정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 대표자의 인식 전환, 지자체의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①일관된 교육 매뉴얼에 의한 전문적인 교육, ②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식품 등 위생·안전관리교육, 행정 및 회계 교육, 기부식품등관리시스템(FMS)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차원의 교육을 통한 전담인력 양성, ③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홍보 및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자원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인적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부록 1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표

1. 기초푸드뱅크(당연사업장) 평가지표

지표 개수 : 20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평가지표명	지표유형	지표번호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뱅크A-1-1-1-1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뱅크A-1-1-1-2	6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정량	뱅크A-1-2-1-1	6+(1)
			보조인력 확보수준	정량	뱅크A-1-2-1-2	4+(1)
운영 성과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정량	뱅크A-1-2-1-3	6+(1)
			직원의 근무여건	정성	뱅크A-1-2-1-4	5
			기부식품 위생관리	정성	뱅크A-1-3-1-1	7
			FMS 활용도	정성	뱅크A-1-3-1-2	5
			기부식품 배분의 적절성	정성	뱅크A-1-4-1-1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정성	뱅크A-1-4-1-2	6
			기부자(자) 관리수준	정성	뱅크A-1-4-1-3	5
			이용자 관리수준	정성	뱅크A-1-4-1-4	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정성	뱅크A-1-4-1-5	6
			가중치 소계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량	뱅크A-2-1-1-1	3
			예산관리 수준	정성	뱅크A-2-1-1-2	3
			운영위원회 운영	정성	뱅크A-2-1-1-3	3
	사업의 성과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정량	뱅크A-2-1-2-1	3
			사업교류 협력도	정성	뱅크A-2-1-2-2	3
			기부식품 접수실적	정량	뱅크A-2-2-1-1	5
가중치 소계					25+(3)	
지표 수 계						20
가중치 총계						100+(3)

구분	별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전략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기초뱅크형 당연	기초마켓형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적	가중치		
뱅크A-1-1-1-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				정량(5) +정성(2)	7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차량·냉장·냉동고 시설구비와 청결성 위생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정량지표	①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고 있음(차량은 도색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② 운반차량의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음(운반차량의 적재고 내부 온도계 또는 외부에서 적재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③ 1000리터 이상의 냉장(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음(운반차량 아님/적정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④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음(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은 제외함)										
평가내용 정성지표	해당항목 가중치	[1.0]	4가지 항목 해당	[0.75]	3가지 항목 해당	[0.5]	2가지 항목 해당	[0.25]	1가지 항목 해당	[0.0]	해당항목 없음
평가내용 정성지표	①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적재고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임		상	중	하	상	중	하	② 냉장(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평가대상 시점	1.0	0.5	0.0	0.0	1.0	0.5	0.0	0.5	0.0		
관련근거	현장평가 시점 기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p>평가자료</p>	<p>냉동·냉장 운반차량 등록증, 냉장·냉동고 구매확인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차량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시설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점검일지 등</p>
<p>정량 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차량은 전국푸드뱅크의 운반차량 도색 예시 기준에 따라 ‘도색’이 된 차량이어야 함(도색이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기부처(공동모금회 등 기업후원)에서 요구하는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업체에서 도색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를 적용함) * 단,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이미 온도표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온도계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의 경우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장기능 저하, 정상적인 식품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차량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냉동·냉동고의 경우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비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동기능 저하, 보관 장소 협소 등 정상적인 식품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비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설비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정성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운반차량은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5점 만점) A기관이 3개 항목만 충족하고 차량은 도색되어 있는 경우, 정량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량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정량평가 가중치 5 = 3.75점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항목 ①은 상, 항목 ②는 중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0.5) = 1.5점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3.75 + 정성평가 점수 1.5 = 5.25점

구분	범칙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진략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기초 캠페인		기초 마케팅	가중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입의	당연	입의	지표성적	가중치
뱅크A-1-1-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				정량(4) +정성(2)	6
지표의미	법령상 기준에 따라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정량평가	해당항목	[1.0] 실 면적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함							
	가중치	[0.5] 실 면적 16.5㎡ 미만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함							
		[0.0]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							
평가내용 정성평가	① 보관창고의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상	중	하	② 식품보관 장소가 창고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1.0	0.5	0.0	상	1.0	중	0.5	하	0.0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보관창고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 임대차계약서(임차), 현장실사 등								
정량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보관창고는 시간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하며, 방습·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흡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평가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 (겸용인 경우에는 보관창고가 없는 것으로 함)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함(실제 보관창고를 사용하지만 임대차계약 등의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그리고 여러 개의 보관창고의 실 면적 합이 16.5㎡ 이상인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 보관창고는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표기 및 면적이 기재되어야 하나, 미등록 시에는 실제 측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조립식 창고 및 컨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의 창고라도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황이면 동일하게 인정 • 보관창고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면적 기준 충족) ‘가벽’을 두고 구분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 								
정성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식품 보관창고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보관창고의 식품은 종류가 다양하여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20cm이상 두어야 하나, 가공식품 만 보관하는 파레트 랙이 설치된 보관창고는 바닥에 한해 10cm(파레트 높이)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4점 만점) A기관이 33㎡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정량지표 가중치 4 = 4.0점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①, ②항목 모두 ‘상’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1.0) = 2.0점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4.0 + 정성평가 점수 2.0 = 6.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가중치
지표번호			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적
뱅크A-1-2-1-1	전담직원 확보수준				○				정량
지표의미	전담직원의 인원을 기준으로 전담직원의 확보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전담직원 1명보다 많은 경우	(지표 가중치) + 1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1.0] 전담직원 1명인 경우	0.7 + [(전담직원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3]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해당항목 가중치	[0.7] 담당직원(겸직) 1명보다 많은 경우	0.4 + [(담당직원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3/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담당직원(겸직)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4] 담당직원(겸직) 1명인 경우	(담당직원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4 담당직원(겸직)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0] 전담 또는 담당직원(겸직)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인건비 지급명세서, 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금 수준(또는 최저임금)에 따라 전담직원을 구분하지 않음. - 사업장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인건비'와 '4대 보험'이 별도 채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인정 • 담당(겸직)직원이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 외에 타 업무와 겸직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운영주체 내 관리자가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 형태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 업무 개월 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음. 예로 전담직원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10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담당직원 1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4, 담당직원이 1명을 초과한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7임. • 전담직원의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1.0임. 단,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 • 전담인력 및 담당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를 포함함 • 계약직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를 주 40시간이상 근무한 자 ②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③ 1년 이상 계약기간의 Full time 직원(6개월 계약직은 전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담당직원으로 인정) •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휴직자를 대신한 기간 동안 직원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출산 및 육아 휴직자와 휴직자를 대신한 계약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로 휴직예정자와 중복 근무할 경우에 1명만 직원으로 인정 • 신규채용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가 짧아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예로 5월25일에 입사하였음에도 5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5월부터 직원으로 인정). 즉 무조건 급여 지급 월에 따라 직원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결정 • 병가 휴직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여야 출산 및 육아휴직자와 같이 인정 •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가 함께 근무한 달은 1명만 직원으로 인정하고, 퇴사한 직원의 근무 개월 수도 포함함 • 기존 전담직원의 퇴사 후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공고를 냈으나,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발생한 공백은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은 36개월이고 A기관이 전담인력 2명으로, 각각 24개월,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은 2명이나 업무 개월 합계는 30개월로 1명 기준인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전담인력 1명인 경우에 해당됨. * 해당항목 가중치 = $0.7 + [(30\text{개월}/36\text{개월}) \times 0.3] = 0.95$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95 \times$ 지표 가중치 $6 = 5.7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적	가중치 +(가산점)
벙크A-1-2-1-2	보조인력 활용수준			○				정량	4+(1점)
지표의미	보조인력을 활용하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보조인력이 2명보다 많은 경우		(지표 가중치) + 1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2 < 보조인력 업무 개월 합계)					
		[1.0]	보조인력이 2명인 경우		0.5 + [(보조인력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5/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2 ≥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해당항목 가중치	보조인력이 1명인 경우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5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5]	보조인력이 없는 경우						
[0.0]	보조인력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보조인력 관리카드, 지자체 및 지역사회활동센터 등의 관리주체 공문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 VIMS(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Volunteer Management System),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인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업무 개월 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는데, 예로 보조인력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10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보조인력 1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5이며, 2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1.0임. 단,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의 2배를 초과한 경우(예로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가 24개월이고, 3명의 보조인력으로 그중 인력 1은 20개월, 인력 2는 15개월, 인력 3은 15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보조인력 업무 개월 합계 50개월이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24개월의 2배(48개월)보다 많음) • 본 지표에 적용되는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타 업무와 함께 수행할 경우 보조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자는 월 4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탈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단,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의 투입시간 합계가 매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인정함(예로 평가대상기간 36개월 중 자원봉사자들의 총 투입시간 40시간 이상이 30개월이라면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6개월을 제외한 30개월만을 인정함) • 사회복지무요원의 경우 기존 복무자의 소집해제 후 후임 복무자의 배치 사이에 발생한 공백은 복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이 36개월이고, A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20개월,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30개월로 1명 기준인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보조인력 1명인 경우에 해당함) 해당항목 가중치 = (30개월 / 36개월) × 0.5] = 0.417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417 × 지표 가중치 4 = 1.668점 • 평가대상기간이 36개월이고, B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30개월, 12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42개월로 1명 기준인 36개월을 초과함(보조인력 2명인 경우에 해당함) 해당항목 가중치 = 0.5 + [(42개월-36개월) × (0.5/36개월)] = 0.583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83 × 지표 가중치 4 = 2.332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지표성적	가중치 +(가산점)		
		전략목표	전국 광역	기초 마켓형 당연	기초 마켓형 입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입의	정량	6+(1점)		
뱅크A-1-2-1-3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					
지표의미	진담 또는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필수 : ① 식품위생교육, ② 기부물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권장 : ④ 기부식품제공사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정보화교육(FMS 활용교육 제외) 등의 기타교육								
평가내용	가산점 (+1) 위의 ①, ②, ③, ④번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만을 충족하는 경우						
		[0.8]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0.6]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①, ③), (②, ③)						
		[0.4]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④), (②, ④), (③, ④)						
		[0.2]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③)						
		[0.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교육이 포함된 교육의 수료증(수료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료확인서, 확인공문 등의 관련 증빙서류)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교육(식품위생교육, FMS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 권장 교육을 추가로 수료한 경우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 부여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이라도 필수교육을 수료하고 권장 교육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 • 본 지표에서의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자체교육기관인 경우도 인정) • 평가대상기간에 교육받은 실적만 인정되나(단, 신입직원은 2개월 이내 전국인정기관에서 수료하는 것으로 같음),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교육수료 후 1년)에 해당하면 인정됨 • 권장교육에 해당하는 정보화 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범위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말함 - 정보화교육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과정도 포함됨(FMS 활용교육은 제외) - 외부강사를 기관 내에 초빙하여 진행된 교육도 인정됨 - 세미나, 워크숍의 경우 참석확인서, 강사명, 강의 주제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가 있어야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3년간 각 연도별로 모두 3개 필수항목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추가로 권장항목 교육을 수료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7+7+7)/3 = 7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전략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뱅크A-1-2-1-4	직원 근무여건			○			5
지표의미	직원의 근무여건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전담직원의 (휴가 또는 부재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						
	②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연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음						
	③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준수)						
	해당항목	[1.0]	3개 항목 충족				
	가중치	[0.7]	2개 항목 충족				
		[0.4]	1개 항목 충족				
		[0.0]	해당 항목 없음				
평가대상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2항 [별표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 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업무분장,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인건비명세서, 인센티브 지급내역, 식비지급내역, 직원 인터뷰 등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는 평가대상 시기의 연도에 제시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함 • 평가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직원 인터뷰를 통해 2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동일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동일 푸드뱅크·마켓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을 시 상호대체 인력으로 인정함 						
평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5.0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가중치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전략목표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지표성적
뱅크A-1-3-1-1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		당연		정성
지표의미	기부식품이 법령 및 지침상의 취급·보관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내용	① 지자체와 기부식품의 대한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② 기부식품 보관 시 투명적재용기 사용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③ 보관 중이거나 제공할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함						
	④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음						
	⑤ 보건증 소지 여부						
	[1.0] 5가지 항목 해당						
평가대상 시점	[0.8] 4가지 항목 해당						
	[0.6] 3가지 항목 해당						
	[0.4] 2가지 항목 해당						
	[0.2] 1가지 항목 해당						
	[0.0] 해당 없음						
관련근거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④⑤현장평가 시점 기준						
평가자료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운반차량·냉장(냉동)시설·보관창고 관리일지, 현장실사, 지자체와의 정기점검 공문서 및 현장사진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차량·냉장·냉동고, 식품보관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기부식품의 위생 상태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해야 함 기부식품 보관 시 내용물을 육안으로 즉시 식별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준수는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20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하고 1개라도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품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FMS 또는 장부 상 보유식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보관창고의 식품은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으로 정리·보관·관리되어야 함 식품사고 등을 대비하여 보건소, 지자체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보건증은 현장평가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인정됨 보건증은 전담인력, 담당(겸직)인력, 보조인력 구분 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은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자원봉사자가 단 하루만 일하면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6 × 지표 가중치 7) = 4.2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지표성적	가중치
		전략목표	전략목표	기초 벤치마크	기초 마켓팅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뱅크A-1-3-1-2	FMS 활용도			○		정성	5
지표의미	직원의 FMS 활용 수준을 평가						
	① FMS를 통해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②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음(샘플 10개 조사) ③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샘플 10개 조사)						
평가내용	[1.0]	항목 ①, ②, ③ 모두 해당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	항목 ①, ②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①, ③에 해당함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②, ③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0.4]	항목 ①에만 해당함 항목 ②에만 해당함(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항목 ③에만 해당함(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FMS 기입내용 확인(무작위 샘플 10개), 직원대상 FMS 활용 시연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기간 연도별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 FMS를 통한 영수증 증빙관리와 관련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FMS시스템에 접수하여 기부내역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인정함 항목 ②와 관련하여 FMS 입력정보의 일치여부, 오류 등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대내외 사업보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평가지표로 구성함. (예시 : 문서 상으로는 100개,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FMS 입력 정보에 1,000개, 100만원이라고 입력한 경우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항목 ③과 관련하여 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4개 항목을 합쳐서 10개의 샘플을 조사하며, 4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누락 없이 입력되어야 함. 						
평가 예시	A 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 5.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뱅크A-1-4-1-1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전국	기초뱅크형										
지표의미	기부식품등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광역시	당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②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하고 있음(지역 내 상환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제공) ③ 자체소비를(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 제공)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음 ④ 우선지원대상, 배분제외 및 금지대상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지침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당연	입의										
평가내용	<table border="1"> <tr> <td>[1.0]</td> <td>4가지 항목 충족</td> </tr> <tr> <td>[0.75]</td> <td>3가지 항목 충족</td> </tr> <tr> <td>[0.5]</td> <td>2가지 항목 충족</td> </tr> <tr> <td>[0.25]</td> <td>1가지 항목 충족</td> </tr> <tr> <td>[0.0]</td> <td>해당 없음</td> </tr> </table>	[1.0]	4가지 항목 충족	[0.75]	3가지 항목 충족	[0.5]	2가지 항목 충족	[0.25]	1가지 항목 충족	[0.0]	해당 없음		
[1.0]	4가지 항목 충족												
[0.75]	3가지 항목 충족												
[0.5]	2가지 항목 충족												
[0.25]	1가지 항목 충족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신청서 및 이용자 관리대장 • 교체 전후 이용자리스트 등 이용자교체 증빙서류 • 기부식품 접수 및 관리대장 • 기부식품 배분문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상 이용자 무작위 샘플 5개에 대한 실제배분 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확인 후 평가함 •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결식자 및 결식위기가정의 저소득 소외계층(재가대상자)에 우선 배분되고 있는지 평가함 • 지역 내 상환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배분은 기부식품의 품목, 규모, 유통기한에 배분되어야 하며, 운영주체와의 연계, 종교적 연관성,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인한 배분 금지하여야 함 • 기부식품등 배분은 이용자 간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배분식품 등의 양적·질적사항도 고려되어야 함 • 자체소비를(매주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제공) 준수에 대한 자료는 각 광역푸드뱅크에서 제공 	지표성적	가중치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지표 가중치 7 = 3.5점 	정성	7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지표번호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정성	6
코드	뱅크A-1-4-1-2				○					
지표의미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1.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중치	[0.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직접모집경비 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평가자료	이용자 무상제공 관리 자료,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직접모집경비란 기부식품의 차량적제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등을 의미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6 = 6.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격	가중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벵크A-1-4-1-3	기부자(처) 관리수준			○				정성	5	
지표의미	기부자(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음									
	②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ex. 기부협약, 표창수여, 기관장 감사서신 등)를 실시함									
	③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개 모두 해당함							
	해당항목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개 해당함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개 해당함								
	[0.0]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기부자(처) 관리활동 증빙서류, 기부자(처) 의견수렴 자료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기부협약 체결·갱신, 표창장 수여, 감사서신, 전국대회 공적조사 등 기부자(처) 관리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것만을 인정함 • 기부자(처)의 의견수렴제도는 기부자와의 만남, 간담회, 기부자(처) 설문조사 등 서류상으로 입증 가능한 공적인 절차를 의미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 × 지표 가중치 5 = 3.5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평가지표명		전략목표		기초 벤치형		기초 마켓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당연		가중치	
뱅크A-1-4+1-4	이용자 관리수준				○				5	
지표의미	이용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개인이용자와 단체이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함									
	③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있음									
	④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해당항목		[1.0]	4개 항목 충족						
	가중치		[0.75]	3개 항목 충족						
		[0.5]	2개 항목 충족							
		[0.25]	1개 항목 충족							
		[0.0]	충족 항목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연도별 이용자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는 고객센터,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용자와의 만남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 인정 •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 공지방법 예시 (판매방지 스티커 부착, 배분 시 기부식품등에 관한 취급주의사항 배포)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푸드뱅크)이 3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지표 가중치 5 = 3.75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뱅크A-1-4-1-5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의미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 적절성	진국	광역	기초뱅크형		지표성적
				당연	입의	
평가내용	행정관리문서의 구비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		정성
	①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등(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음					6
	②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운영주체의 홈페이지(홈페이지 없을 시 지자체 및 광역 홈페이지 공고란, 블로그, SNS 등)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평가대상 시점	해당항목	[1.0]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가중치	[0.5]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			
		[0.0]	해당 없음			
관련근거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자료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문서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문서로는 기부식품 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내역 등이 있음(단, 관련 문서들이 FMS에 입력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으므로 FMS에 입력한 내용의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하나라도 미충족 시 ②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함). 소식으로 공개한 경우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2. 기부식품의 종류·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제공자 00인 00단체, 이용자 00인 00단체) • 단,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기부자가 사업자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해당 항목(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만 게재하지 않아도 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판이 1가지 항목만 해당하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6)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벤크형		기초 마켓형	
뱅크A-2-1-1-1	사업계획의 적절성		당연	입의	당연	입의
지표의미	연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			
		[0.7]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항목이 부족한 경우(1~2개 부족한 경우)			
		[0.4]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많은 항목이 부족한 경우(3~4개 부족한 경우)			
		[0.0]	연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5개 이상 항목이 부족한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사업계획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상의 사업계획서 예시에 따라 다음의 항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 등 ②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③ 설치·운영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현황 (3년 이내 자료)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④ 사업예산 계획 ⑤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단, 기관이나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계획서 서식은 달라도 기본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인정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연단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평가 예시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평가역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임의			
뱅크A-2-1-1-2	예산관리 수준			○			정성	3
지표의미	연도별 예산관련 장부관리가 이루어지며, 적법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내용	① 연단위의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가 이루어짐							
	③ 회계처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충실히 갖추고 있음							
	해당항목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됨					
	가중치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해당됨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됨						
	[0.0]	위의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평가자료	연도별 예결산보고서 또는 장부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함(※ 자부담 포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행정형		가중치
뱅크A-2-1-1-3	운영위원회 운영			당연	임의	정성
지표의의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p>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음</p> <p>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거나 지침이 없을 경우 제공자, 기부자, 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p> <p>③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p> <p>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됨</p>					
	해당항목	[1.0]	위의 항목 중 4가지 모두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9 적용)			
	가중치	[0.75]	위의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65 적용)			
		[0.5]	위의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4 적용)			
		[0.25]	위의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15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운영위원회 위원명부,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에 속한 운영위원회여야 하며,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운영개선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1회 이상 다루어져야 함. •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운영위원회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정함(회의의 시 기 부식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서류 증빙 제시(공문, 미팅 등) • 단,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항목 가중치보다 0.1점 차감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평가 예시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략목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뱅크A-2-1-2-1	사업홍보의 적극성	진국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당연	당연	정량	3
지표의미	사업홍보 10건 이상					
평가내용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해당항목	[1.0]	사업홍보 10건 이상			
	가중치	[0.75]	사업홍보 7건 이상			
		[0.5]	사업홍보 4건 이상			
		[0.25]	사업홍보 1건 이상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홍보 관련 증빙자료(보도자료, 팸플렛, 홍보결과보고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행사, 이벤트,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유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위해 비정기적 활동을 포함한 외부 홍보활동을 시행함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함께 연계하여 홍보행사를 추진한 경우, 연계하여 실시한 행사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명칭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사업홍보란 기부자(처) 및 이용자 발걸을 위해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통한 언론노출 및 팸플렛 등 인쇄물 배포를 포함함 • 동일한 내용을 수회에 걸쳐 홍보하였거나 언론사가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홍보 및 행사는 일자나 장소가 달라도 1건으로만 인정함(단, 캠페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라도 연도별 1건으로 인정) - 사업장에서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A신문사, B신문사 등에 광고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내용은 동일하지만 행사 주최가 다른 경우에는 주최별로 각각 1건으로 인정함(예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한번은 시(군)청이 주최로, 다른 한번은 교육청이 주최로 행사를 한 경우에는 2건으로 함) -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홍보방법 건수에 따라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으면서 홍보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함 • 24개월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당항목 가중치를 차등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해당없음, [0.25] 사업홍보 1건 이상, [0.5] 사업홍보 3건 이상, [0.75] 사업홍보 5건 이상, [1.0] 사업홍보 7건 이상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홍보사업 5건을 추진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3 = 1.5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진략목표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표번호	뱅크A-2-1-2-2		사업 교류협력도		기초뱅크/기초푸드마켓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기초푸드마켓이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광역, 기초 사업장, 유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정도를 평가							
평가내용	항목	① 광역푸드뱅크와 교류한 실적이 있음	②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이 있음	③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 원천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이 있음	④ 관련단체, 기타 법인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행사 실적이 있음	⑤ 기초사업장간의 협력한 실적이 있음		
	항목 가중치	1	1	1	0.5	0.5		
	등급 가중치	상 1.0, 중 0.5, 하 0.0	상 1.0, 중 0.5, 하 0.0	상 1.0, 중 0.5, 하 0.0	상 1.0, 중 0.5, 하 0.0	상 1.0, 중 0.5, 하 0.0	상 1.0, 중 0.5, 하 0.0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관련 문서 및 자료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푸드뱅크와의 교류는 광역에서 주최한 워크숍 및 간담회, 행사 및 홍보 공동협력 등 종합적인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특별사업(공동 홍보 및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거나 광역 행사에 지자체가 참여한 수준 등)을 지원한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역 내 관련단체, 기타 법인 등 유관기관들과의 공동 홍보 및 행사 등의 협력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기초사업장과 간의 협력은 타 기초사업장과 공동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하였거나 타 기초사업장 행사에 참여한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 교류협력 증빙자료를 사진만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사진에 행사 명칭, 날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4개 모든 항목에 대해 '상' 등급을 받았을 경우 * 지표 평가점수 = [(①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①항목 가중치 1.0) + (②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②항목 가중치 1.0) + (③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③항목 가중치 0.5) + (④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④항목 가중치 0.5)] = 3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전략목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지표성적	가중치
				담당연	임의		
뱅크A-2-2-1-1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			5
지표의미	평가년도의 기부식품등 접수환가액을 평가함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평균 등급 100% 이상 S		기초푸드뱅크 유형별(당연/임의) 평균 대비 80%이상~ 100%미만 A 60%이상~ 80%미만 B 40%이상~ 60%미만 C 40%미만 D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접수환가액 해당기관 사업비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접수환가액 해당기관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접수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접수환가액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1.0 0.8 0.6 0.4 0.2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 사업비에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함 •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뱅크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값으로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접수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0.85×세부지표 가중치 0.2)+(0.95×세부지표 가중치 0.2)+(0.93×세부지표 가중치 0.4)]×지표 가중치 5 = 0.878 × 지표 가중치 5 = 4.39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평가지표명	전국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지역	기초마켓형	
			지역	지역
뱅크A-2-2-1-2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	정량	5
지표의미	평가년도의 기부식품 배분환가액을 평가함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해당기관 사업비			
평가대상시점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관련근거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관할지역 인구 수			
평가자료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지표 해설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 배분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 사업비에는 기능보장비를 제외함 •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뱅크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값으로 적용			
평가 예시	•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0.85×세부지표 가중치 0.2)+(0.95×세부지표 가중치 0.2)+(0.93×세부지표 가중치 0.2)]×지표 가중치 5 = 0.878 × 지표 가중치 5 = 4.39점			

2. 기초푸드뱅크(임의사업장) 평가지표

□ 지표 개수 : 20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평가지표명	지표유형	지표번호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뱅크B-1-1-1-1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뱅크B-1-1-1-2	6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정량	뱅크B-1-2-1-1	6+(1)
			보조인력 확보수준	정량	뱅크B-1-2-1-2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정량	뱅크B-1-2-1-3	6+(1)
			직원의 근무여건	정성	뱅크B-1-2-1-4	5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 위생관리	정성	뱅크B-1-3-1-1	7
			FMS 활용도	정성	뱅크B-1-3-1-2	5
			기부식품 배분의 적절성	정성	뱅크B-1-4-1-1	7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정성	뱅크B-1-4-1-2	6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기부자(처) 관리수준	정성	뱅크B-1-4-1-3	5
			이용자 관리수준	정성	뱅크B-1-4-1-4	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정성	뱅크B-1-4-1-5	6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량	뱅크B-2-1-1-1	3
			예산관리 수준	정성	뱅크B-2-1-1-2	3
			운영위원회 운영	정성	뱅크B-2-1-1-3	3
가중치 소계	가중치 소계	가중치 소계	사업홍보의 적극성	정량	뱅크B-2-1-2-1	3
			사업교류 협력도	정성	뱅크B-2-1-2-2	3
			기부식품 접수실적	정량	뱅크B-2-2-1-1	5
			기부식품 배분실적	정량	뱅크B-2-2-1-2	5
			가중치 소계			25+(3)
			지표 수 계			20
			가중치 총계			100+(3)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진락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기초 냉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적	가중치
뱅크B-1-1-1-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			정량(5) +정성(2)	7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차량·냉장·냉동고 시설구비와 청결성 위생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①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고 있음(차량은 도색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② 운반차량의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음(운반차량의 적재고 내부 온도계 또는 외부에서 적재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③ 냉장(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음(운반차량 아님/적정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④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음(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은 제외함)								
정량지표	[1.0]	4가지 항목 해당							
	[0.75]	3가지 항목 해당							
	[0.5]	2가지 항목 해당							
	[0.25]	1가지 항목 해당							
	[0.0]	해당항목 없음							
평가내용	①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적재고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임		② 냉장(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정성지표	상	중	하	상	중	하			
	1.0	0.5	0.0	1.0	0.5	0.0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p>평가자료</p>	<p>냉동·냉장 운반차량 등록증, 냉장·냉동고 구매확인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량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시설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점검일지 등</p>
<p>정량 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차량은 전국푸드뱅크의 운반차량 도색 예시 기준에 따라 ‘도색’이 된 차량이어야 함(도색이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기부처(공동모금회 등 기업후원)에서 요구하는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업체에서 도색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를 적용함) * 단,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이미 온도표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온도계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의 경우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장기능 저하, 정상적인 식품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차량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의 경우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비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동기능 저하, 보관 장소 협소 등 정상적인 식품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비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설비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정성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운반차량은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5점 만점) A기관이 3개 항목만 충족하고 차량은 도색되어 있는 경우, 정량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량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정량평가 가중치 5 = 3.75점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항목 ①은 상, 항목 ②는 중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0.5) = 1.5점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3.75 + 정성평가 점수 1.5 = 5.25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가중치	
		전국	광역	기초	마켓형	기초	마켓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마켓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벡크RB-1-1-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			정량(4) +정성(2)	
지표의미	법령상 기준에 따라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1.0]	보관창고가 있는 경우						
정량평가	가중치	[0.0]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						
평가내용	① 보관창고의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상	하	② 식품보관 장소가 창고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정성평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하	
		1.0	0.5	0.0	1.0	0.5	0.0	0.0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평가자료	보관창고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 임대차계약서(임차), 냉장(냉동)시설 보관창고 관리일지, 현장실사 등								
정량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보관창고는 시간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하며, 방습·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흡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평가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당면사업장의 경우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임의사업장은 겸용이어도 인정)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함(실제 보관창고를 사용하지만 임대차계약 등의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단, 임의사업장은 면적과 단독사용 규정이 없으므로 보관창고 보유 여부만으로 평가함 • 보관창고는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표기 및 면적이 기재되어야 하나, 미등록 시에는 실제 측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조립식 창고 및 컨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의 창고라도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황이면 동일하게 인정 								
정성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식품 보관창고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보관창고의 식품은 종류가 다양하여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20cm이상 두어야 하나, 가공식품 만 보관하는 파레트랙이 설치된 보관창고는 바닥에 한해 10cm(파레트 높이)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4점 만점) A기관이 33㎡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정량지표 가중치 4 = 40점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①, ②항목 모두 ‘상’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1.0) = 20점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40 + 정성평가 점수 20 = 60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가산점)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벙크B-1-2-1-1	전담직원 확보수준				○				6+(1점)	
지표의미	전담직원의 인원을 기준으로 전담직원의 확보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지표 가중치) + 1 전담직원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항목 가중치	[1.0]	담당직원(결직)이 1명인 경우		(담당직원(결직)의 업무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수)×1.0 단, 담당직원(결직)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간 개월로 함					
		[0.0]	담당직원(결직)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인건비 지급명세서, 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금 수준(또는 최저임금)에 따라 전담직원을 구분하지 않음. - 사업장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인건비'와 '4대 보험'이 별도 계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인정 • 담당(겸직)직원이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 외에 타 업무와 겸직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운영주체 내 관리자가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 형태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 업무 개월 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음. 예로 전담직원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10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담당직원 1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4, 담당직원이 1명을 초과한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7임. • 전담직원의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1.0임. 단,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 • 전담인력 및 담당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를 포함함 • 계약직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를 주 40시간이상 근무한 자 ②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③ 1년 이상 계약기간의 Full time 직원 (6개월 계약직은 전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담당직원으로 인정) •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휴직자를 대신한 기간 동안 직원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출산 및 육아 휴직자와 휴직자를 대신한 계약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로 휴직예정자와 중복 근무할 경우에 1명만 직원으로 인정 • 신규채용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가 짧아도 급여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예로 5월25일에 입사하였음에도 5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5월부터 직원으로 인정). 즉 무조건 급여 지급 월에 따라 직원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결정 • 병가 휴직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여야 출산 및 육아휴직자와 같이 인정 •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가 함께 근무한 달은 1명만 직원으로 인정하고, 퇴사한 직원의 근무 개월 수도 포함함 • 기존 전담직원의 퇴사 후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공고를 냈으나,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발생한 공백은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지표 해설</p>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은 36개월이고 A기관이 담당인력 2명으로, 각각 24개월,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인력은 2명이나 업무 개월 합계는 30개월로 1명 기준인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해당항목 가중치 = $[(30\text{개월}/36\text{개월}) \times 1.0] = 0.83$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83 × 지표 가중치 6 = 4.98점

구분	범칙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전락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가산점)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시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뱅크B-1-2-1-2	보조인력 활용수준				○			정량	4+(1점)
지표의미	보조인력을 활용하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보조인력이 1명을 초과한 경우 (지표 가중치) + 1 보조인력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항목 가중치	[1.0]	보조인력이 1명인 경우 (보조인력의 업무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수)×1.0 평가대상기간 개월수는 평가대상기간 개월로 함						
		[0.0]	보조인력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기부식품등 지원사업 안내								
평가자료	보조인력 관리카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의 관리주체 공문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 VMS(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Volunteer Management System),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인증 등								

<p>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업무 개월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는데, 예로 보조인력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만큼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단,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과한 경우(예로 평가대상기간이 12개월이라면 2명의 보조인력이며 그중 인력 1은 9개월, 인력 2는 5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 • 본 지표에 적용되는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타 업무와 함께 수행할 경우 보조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자는 월 4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단,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의 투입시간 합계가 매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인정함(예로 평가대상기간 36개월 중 자원봉사자들의 총 투입시간 40시간 이상이 30개월이라면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6개월을 제외한 30개월만을 인정함) • 사회복지무요원의 경우 기존 복무자의 소집해제 후 후임 복무자의 배치 사이에 발생한 공백은 복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은 12개월이고 A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5개월, 3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8개월로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해당항목 가중치 = (8개월 / 12개월) × 1.0] = 0.67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67 × 지표 가중치 4 = 2.68점 • 평가대상기간은 12개월이고 B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9개월, 5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14개월로 12개월을 초과함. * 지표 평가점수 = 지표 가중치 4 + 가산점 1 = 5.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가중치 +(가산점)
		전략목표	전략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지표성적
				당연	임의	
벵크B-1-2-1-3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0	정량
지표의미	전담 또는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필수 : ① 식품위생교육, 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권장 : ④ 기부식품재공사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정보화교육(FMS 활용교육 제외) 등의 기타교육 가산점 (+1) 위의 ①, ②, ③, ④번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6+(1점)
평가내용	[1.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만을 충족하는 경우					
	[0.8]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0.6]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①, ③), (②, ③)					
	[0.4]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④), (②, ④), (③, ④)					
	[0.2]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③)					
[0.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교육이 포함된 교육의 수료증(수료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료확인서, 확인공문 등의 관련 증명서류)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교육(식품위생교육, FMS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 권장 교육을 추가로 수료한 경우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 부여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이라도 필수교육을 수료하고 권장 교육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 본 지표에서의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자체교육기관인 경우도 인정) 평가대상기간에 교육받은 실적만 인정되나(단, 신입직원은 2개월 이내 전국인정기관에서 수료하는 것으로 같음),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교육수료 후 1년)에 해당하면 인정됨 권장교육에 해당하는 정보화 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범위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말함 - 정보화교육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과정도 포함됨(FMS 활용교육은 제외) - 외부강사를 기관 내에 초빙하여 진행된 교육도 인정됨 - 세미나, 워크숍의 경우 참석확인서, 강사명, 강의 주제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A기관이 3년간 각 연도별로 모두 3개 필수항목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추가로 권장항목 교육을 수료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7+7+7)/3 = 7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전략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기초뱅크형		가중치
				당연	입의	
뱅크B-1-2-1-4	직원 근무여건			○		5
지표의미	직원의 근무여건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전담직원의 (휴가 또는 부재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					
	②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연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음					
	③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준수)					
	해당항목	[1.0]	3개 항목 충족			
	가중치	[0.7]	2개 항목 충족			
	[0.4]	1개 항목 충족				
	[0.0]	해당 항목 없음				
평가대상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2항 [별표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 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업무분장,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인건비명세서, 인센티브 지급내역, 식비지급내역, 직원 인터뷰 등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는 평가대상 시기의 연도에 제시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함 • 평가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직원 인터뷰를 통해 2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동일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동일 푸드뱅크·마켓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을 시 상호대체 인력으로 인정함 					
평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5.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임의			
벵크B-1-3-1-1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		정성	7
지표의미	기부식품이 법령 및 지침상의 취급·보관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① 지자체와 기부식품의 대한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② 기부식품 보관 시 투명재용기 사용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③ 보관 중이거나 제공할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함 ④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음 ⑤ 보관중 소지 여부							
평가내용	[1.0]	5가지 항목 해당						
	[0.8]	4가지 항목 해당						
	[0.6]	3가지 항목 해당						
	[0.4]	2가지 항목 해당						
	[0.2]	1가지 항목 해당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④⑤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평가자료	운반차량·냉장(냉동)시설·보관창고 관리일지, 현장실사, 지자체와의 정기점검 공문서 및 현장사진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차량·냉장·냉동고, 식품보관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기부식품의 위생 상태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해야 함 기부식품 보관 시 내용물을 육안으로 즉시 식별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준수는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20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하고 1개라도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품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FMS 또는 장부 상 모두 식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보관창고의 식품은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으로 정리·보관·관리되어야 함 식품사고 등을 대비하여 보건소, 지자체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보건증은 현장평가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인정됨 보건증은 전담인력, 담당(겸직)인력, 보조인력 구분 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은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자원봉사자가 단 하루만 일하면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6 × 지표 가중치 7) = 4.2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진락목표	진국	광역	기초 팩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당연	입의	당연	입의	지표성격	가중치	
뱅크B-1-3-1-2	FMS 활용도		○			정성	5	
지표의미	직원의 FMS 활용 수준을 평가							
	① FMS를 통해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②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음(샘플 10개 조사) ③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샘플 10개 조사)							
평가내용	[1.0]	항목 ①, ②, ③ 모두 해당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	항목 ①, ②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①, ③에 해당함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②, ③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0.4]	항목 ①에만 해당함 항목 ②에만 해당함(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항목 ③에만 해당함(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FMS 기입내용 확인(무작위 샘플 10개), 직원대상 FMS 활용 시연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기간 연도별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 FMS를 통한 영수증 증빙관리와 관련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FMS시스템에 접수하여 기부내역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인정함 항목 ②와 관련하여 FMS 입력정보의 일치여부, 오류 등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대내외의 사업보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평가지표로 구성함. (예시 : 문서 상으로는 빵 100개,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FMS 입력 정보에 빵 1,000개, 100만원이라고 입력한 경우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항목 ③과 관련하여 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4개 항목을 합쳐서 10개의 샘플을 조사하며, 4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누락 없이 입력되어야 함. 							
평가 예시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 5.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뱅크B-1-4-1-1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전국 광역시
지표의미	기부식품등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기초뱅크형 당연 입의
평가내용	<p>①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p> <p>② 추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하고 있음(지역 내 상황과 이용기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제공)</p> <p>③ 자체소비율(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 제공)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음</p> <p>④ 우선지원대상, 배분제외 및 급지대상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지침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p>	지표성적 가중치
	[1.0] 4가지 항목 충족	정성
	[0.75] 3가지 항목 충족	7
	[0.5] 2가지 항목 충족	
	[0.25] 1가지 항목 충족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신청서 및 이용자 관리대장 교체 전후 이용자리스트 등 이용자교체 증빙서류 기부식품 접수 및 관리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부상 이용자 무작위 샘플 5개에 대한 실제배분 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확인 후 평가함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결식자 및 결식위기가정의 저소득 소외계층(재가대상자)에 우선 배분되고 있는지 평가함 지역 내 상황과 이용기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배분은 금지하여야 함 기부식품등 배분은 이용자 간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배분식품 등의 양적·질적사항도 고려되어야 함 자체소비율(매주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제공) 준수에 대한 자료는 각 광역푸드뱅크에서 제공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지표 가중치 7 = 3.5점 	

구분	범칙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지표번호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정성	6
뱅크B-1-4-1-2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				
지표의미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1.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중치	[0.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직접모집경비 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평가자료	이용자 무상제공 관리 자료,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직접모집경비란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등을 의미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6 = 6.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격	가중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뱅크B-1-4-1-3	기부자(처) 관리수준				○			정성	5	
지표의미	기부자(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음									
	②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ex. 기부협약, 표창수여, 기관장 감사서신 등)를 실시함									
	③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개 모두 해당함							
	해당항목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개 해당함							
가중치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개 해당함							
		[0.0]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기부자(처) 관리활동 증빙서류, 기부자(처) 의견수렴 자료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기부협약 체결·갱신, 표창장 수여, 감사서신, 전국대회 공적조사 등 기부자(처) 관리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것만을 인정함 기부자(처)의 의견수렴제도는 기부자와의 만남, 간담회, 기부자(처) 설문조사 등 서류상으로 입증 가능한 공적인 절차를 의미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 × 지표 가중치 5 = 3.5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가중치
				당연	임의	
벵크B-1-4-1-4	이용자 관리수준			○		5
지표의미	이용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개인이용자와 단체이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함 ③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있음 ④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1.0]	4개 항목 충족			
	해당항목	[0.75]	3개 항목 충족			
		[0.5]	2개 항목 충족			
	가중치	[0.25]	1개 항목 충족			
		[0.0]	충족 항목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연도별 이용자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는 고객센터,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용자와의 만남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 인정 •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 공지방법 예시 (판매방지 스티커 부착, 배분 시 기부식품등에 관한 취급주의사항 배포)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푸드벵크)이 3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지표 가중치 5 = 3.75점					
평가 예시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뱅크B-1-4-1-5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의미	행정관리문서의 정비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전국	광역	기초 뱅크형		기초 마켓형
				당연	임의	
평가내용	해당항목					정성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6
		[0.5]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자료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문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문서로는 기부식품 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내역 등이 있음(단, 관련 문서들이 FMS에 입력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으므로 FMS에 입력한 내용의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하나라도 미충족 시 ②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함). 소식으로 공개한 경우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자 소재지 -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격 및 모집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격 및 제공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 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제공자 00인 00단체, 이용자 00인 00단체) • 단,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기부자가 사업자 명칭 및 사업자 명칭 및 사업자 소재지 등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해당 항목(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만 게재하지 않아도 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1가지 항목만 해당하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6)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평가영역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가중치
뱅크B-2-1-1-1	사업계획의 적절성			당연	당연	3
지표의미	연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평가내용	해당항목	[1.0]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			
	가중치	[0.7]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항목이 부족한 경우(1~2개 부족한 경우)			
		[0.4]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많은 항목이 부족한 경우(3~4개 부족한 경우)			
		[0.0]	연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5개 이상 항목이 부족한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사업계획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상의 사업계획서 예시에 따라 다음의 항목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 등 ②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③ 설치·운영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현황 (3년 이내 자료)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④ 사업예산 계획 ⑤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관이나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계획서 서식은 달라도 기본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인정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연단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평가 예시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기초 뱅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뱅크B-2-1-1-2	예산관리 수준			○			정성	3	
지표의미	연도별 예산관련 장부관리가 이루어지며, 적법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내용	① 연단위의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가 이루어짐								
	③ 회계처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충실히 갖추고 있음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됨						
	해당항목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해당됨						
가중치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됨							
	[0.0]	위의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평가자료	연도별 예결산보고서 또는 장부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함(※ 자부담 포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기초 벤치마크		기초 마켓팅		지표성적	가중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입의	당연	입의	정성	3
					○				
지표의의	사업계획서가 수립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거나 지침이 없을 경우 제공자, 기부자, 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 ③ 사업계획서가 수립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 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됨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 4가지 모두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5]	위의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65 적용)						
		[0.5]	위의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4 적용)						
		[0.25]	위의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15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평가대상시점	연도별 운영위원회 위원명부,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근거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주체에 속한 운영위원회여야 하며,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운영개선에 관한 내용이 안전으로 1회 이상 다루어져야 함.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운영위원회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정함(회의의 시 기 부식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서류 증빙 제시(공문, 미팅 등) 단,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항목 가중치보다 0.1점 차감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평가 예시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략목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지표의미	사업홍보의 적극성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당연 당연
	가중치	당연 당연
	해당항목	당연 당연
	가중치	당연 당연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당연 당연
평가자료	홍보 관련 증빙자료(보도자료, 팸플렛, 홍보결과보고서 등)	당연 당연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행사, 이벤트,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유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위해 비정기적 활동을 포함한 외부 홍보활동을 시행함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함께 연계하여 홍보행사를 추진한 경우, 연계하여 실시한 행사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명칭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사업홍보란 기부자(처) 및 이용자 발굴을 위해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통한 언론노출 및 팸플렛 등 인쇄물 배포를 포함함 • 동일한 내용을 수회에 걸쳐 홍보하였거나 언론사가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홍보 및 행사는 일자나 장소가 달라도 1건으로만 인정함(단, 캠페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라도 연도별 1건으로 인정) - 사업장에서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A신문사, B신문사 등에 광고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내용은 동일하지만 행사 주최가 다른 경우에는 주최별로 각각 1건으로 인정함(예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한번은 시(군)청이 주최로, 다른 한번은 교육청이 주최로 행사를 한 경우에는 2건으로 함) -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홍보방법 건수에 따라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이면서 홍보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함 • 24개월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당항목 가중치를 차등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해당없음, [0.25] 사업홍보 1건 이상, [0.5] 사업홍보 3건 이상, [0.75] 사업홍보 5건 이상, [1.0] 사업홍보 7건 이상 	정량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홍보사업 5건을 추진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3 = 1.5점 	3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지표영역		가중치	
		전략목표	진국	지표성적	가중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기초뱅크	기초마켓팅	지표성적	가중치		
뱅크B-2-1-2-2	사업 교류협력도	당연	당연	정성	3		
지표의미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평가내용	항목	① 광역푸드뱅크와 교류한 실적이 있음	②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이 있음	③ 관련단체, 기타 법인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행사 실적이 있음	④ 기초사업장간의 협력한 실적이 있음		
		항목 가중치	1	0.5	0.5		
		등급	상	중	상	중	하
		등급 가중치	1.0	0.5	1.0	0.5	0.0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관련 문서 및 자료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푸드뱅크와의 교류는 광역에서 주최한 워크숍 및 간담회, 행사 및 홍보 공동협력 등 종합적인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특별사업(공동 홍보 및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거나 광역 행사에 지자체가 참여한 수준 등)을 지원한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역 내 관련단체, 기타 법인 등 유관기관들과의 공동 홍보 및 행사 등의 협력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기초사업장과 간의 협력은 타 기초사업장과 공동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하였거나 타 기초사업장 행사에 참여한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 교류협력 증빙자료를 사진만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사진에 행사 명칭, 날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A기관이 4개 모든 항목에 대해 '상' 등급을 받았을 경우 						
평가 예시	$\text{지표 평가점수} = [(\text{①항목 등급 가중치 } 1.0 \times \text{①항목 가중치 } 1.0) + (\text{②항목 등급 가중치 } 1.0 \times \text{②항목 가중치 } 1.0) + (\text{③항목 등급 가중치 } 1.0 \times \text{③항목 가중치 } 0.5) + (\text{④항목 등급 가중치 } 1.0 \times \text{④항목 가중치 } 0.5)] = 3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전략목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지표성격	가중치
				당연	임의		
뱅크B-2-2-1-1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정량	5
지표의미	평가년도의 기부식품 접수환가액을 평가함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평균 등급 기초푸드뱅크 유형별(당연/임의) 평균 대비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		해당기관 접수환가액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		해당기관 접수환가액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접수환가액 =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		관할지역 인구 수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지표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사업비에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함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뱅크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값으로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0.85×세부지표 가중치 0.2)+(0.95×세부지표 가중치 0.2)+(0.73×세부지표 가중치 0.2)+(0.93×세부지표 가중치 0.4)]×지표 가중치 5 = 0.878 × 지표 가중치 5 = 4.39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평가지표명	진략목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진국	기초뱅크형	
			당연	입의
뱅크B-2-2-1-2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지표의미	평가년도의 기부식품 배분환가액을 평가함	○	정량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평균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평균 등급	기초푸드뱅크 유형별(당연/입의) 평균 대비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100% 이상	60%이상~ 40%이상~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80%이상~ 100%미만	80%미만 60%미만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 = _____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 _____	가중치	S A B C	D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지표 해설	배분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사업비에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함			
평가 예시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뱅크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값으로 적용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0.85×세부지표 가중치 0.2)+(0.95×세부지표 가중치 0.2)+(0.73×세부지표 가중치 0.2)+(0.93×세부지표 가중치 0.4)]×지표 가중치 5 = 0.878 × 지표 가중치 5 = 4.39점			

3. 기초푸드마켓(당연사업장) 평가지표

□ 지표 개수 : 21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평가지표명	지표유형	지표번호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마켓A-1-1-1-1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마켓A-1-1-1-2	6
			독립매장 유무	정량	마켓A-1-1-1-3	3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진담직원 확보수준	정량	마켓A-1-2-1-1	6+(1)
			보조인력 확보수준	정량	마켓A-1-2-1-2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정량	마켓A-1-2-1-3	6+(1)
			직원의 근무여건	정성	마켓A-1-2-1-4	5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 위생관리	정성	마켓A-1-3-1-1	7
			FMS 활용도	정성	마켓A-1-3-1-2	4
			기부식품 배분의 적절성	정성	마켓A-1-4-1-1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정성	마켓A-1-4-1-2	6	
		기부자(자) 관리수준	정성	마켓A-1-4-1-3	4	
		이용자 관리수준	정성	마켓A-1-4-1-4	4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정성	마켓A-1-4-1-5	6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량	마켓A-2-1-1-1	3
			예산관리 수준	정성	마켓A-2-1-1-2	3
		운영위원회 운영	정성	마켓A-2-1-1-3	3	
		사업홍보의 적극성	정량	마켓A-2-1-2-1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 교류협력도	정성	마켓A-2-1-2-2	3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정량	마켓A-2-2-1-1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정량	마켓A-2-2-1-2	5
			가중치 소계			25+(3)
			가중치 소계			75+(3)
지표 수 계						21
가중치 총계						100+(3)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전략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기초뱅크형 당연	기초마켓형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적	가중치
마켓A-1-1-1-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		정량(5) +정성(2)	7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차량·냉장·냉동고 시설구비와 청결성 위생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정량지표	①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고 있음(차량은 도색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 ② 운반차량의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음(운반차량의 적재고 내부 온도계 또는 외부에서 적재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③ 1000리터 이상의 냉장(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음(운반차량 아님/적정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④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음(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은 제외함)								
평가내용 정성지표	①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적재고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임 ② 냉장(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p>평가자료</p>	<p>냉동·냉장 운반차량 등록증, 냉장·냉동고 구매확인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량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시설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점검일지 등</p>
<p>정량 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차량은 전국푸드뱅크의 운반차량 도색 예시 기준에 따라 ‘도색’이 된 차량이어야 함(도색이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기부처(공동모금회 등 기업후원)에서 요구하는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업체에서 도색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를 적용함) * 단,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이미 온도표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온도계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의 경우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장기능 저하, 정상적인 식품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차량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의 경우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비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동기능 저하, 보관 장소 등 정상적인 식품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비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설비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정성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운반차량은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5점 만점) A기관이 3개 항목만 충족하고 차량은 도색되어 있는 경우, 정량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량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정량평가 가중치 5 = 3.75점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항목 ①은 상, 항목 ②는 중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0.5) = 1.5점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3.75 + 정성평가 점수 1.5 = 5.25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진락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전국	광역	기초 캠프형 당면	기초 마켓형 당면	지표성적	가중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캠프형 당면	기초 마켓형 당면	지표성적	가중치		
마켓A-1-I-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	정량(4) +정성(2)	6		
지표의미	법령상 기준에 따라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정량평가	해당항목	[1.0]	실 면적 16.5㎡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함						
	가중치	[0.5]	실 면적 16.5㎡ 미만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함						
		[0.0]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						
평가내용 정성평가	① 보관창고의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상	중	하	② 식품보관 장소가 창고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1.0	0.5	0.0	상	중	하		
평가대상 시점	현재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보관창고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 임대차계약서(임차), 현장실사 등								
정량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보관창고는 시간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하며, 방습·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평가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당면사업장의 경우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함 (실제 보관창고를 사용하지만 임대차계약 등의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그리고 여러 개의 보관창고의 실 면적 합이 16.5㎡ 이상인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 보관창고는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표기 및 면적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실제 측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조립식 창고 및 칸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의 창고라도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황이면 동일하게 인정 • 보관창고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면적 기준 충족) ‘가벽’을 두고 구분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 								
	정성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식품 보관창고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보관창고의 식품은 종류가 다양하여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20cm이상 두어야 하며, 가공식품 만 보관하는 파레트 랙이 설치된 보관창고는 바닥에 한해 10cm(파레트 높이)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4점 만점) A기관이 33㎡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정량지표 가중치 4 =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①, ② 항목 모두 ‘상’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1.0) =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4.0 + 정성평가 점수 2.0 = 6.0점 							
	평가 예시								

구분	목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진락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A-1-1-1-3	독립매장 여부						○	정량	3
지표의미	마켓매장이 사업주체의 사업장과 독립되어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독립매장이 있음						
		[0.0]	독립매장이 없음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평가자료	현장실사, 독립매장 임차계약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문(무상임대)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를 통해 푸드마켓 사업장이 운영주체와 독립된 공간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임차계약서외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 기부자 등이 무상임대하기로 명시한 공문 등 증빙서류도 가능 • 독립매장의 주변 여건, 이용자 접근성, 장애인 경사로 등 위치 및 시설이 미흡 할 경우에는 평가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기재하 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독립매장이 있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범칙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가중치 +(가산점)
지표번호	진담직원 확보수준		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격
마켓A-1-2-1-1	진담직원 확보수준						○		정량
지표의미	진담직원의 인원을 기준으로 전담직원의 확보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진담직원 1명보다 많은 경우	(지표 가중치) + 1 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1.0] 진담직원 1명인 경우	$0.7 + [(\text{진담직원 업무 개월 합계} / \text{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times 0.3]$ 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해당항목 가중치	[0.7] 담당직원(겸직) 1명보다 많은 경우	$0.4 + [(\text{담당직원 업무 개월 합계} - \text{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times (0.3 / \text{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담당직원(겸직)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4] 담당직원(겸직) 1명인 경우	$(\text{담당직원 업무 개월 합계} / \text{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times 0.4$ 담당직원(겸직)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0] 진담 또는 담당직원(겸직)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인건비 지급명세서, 업무분장표, 직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금 수준(또는 최저임금)에 따라 전담직원을 구분하지 않음. - 사업장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인건비'와 '4대 보험'이 별도 채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인정 • 담당(겸직)직원이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 외에 타 업무와 겸직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운영주체 내 관리자가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 형태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 업무 개월 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음. 예로 전담직원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10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담당직원 1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4, 담당직원이 1명을 초과한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7임. • 전담직원의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1.0임. 단,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 • 전담인력 및 담당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를 포함함 • 계약직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를 주 40시간이상 근무한 자 ②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③ 1년 이상 계약기간의 Full time 직원 (6개월 계약직은 전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담당직원으로 인정) •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휴직자를 대신한 기간 동안 직원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출산 및 육아 휴직자와 휴직자를 대신한 계약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로 휴직예정자와 중복 근무할 경우에 1명만 직원으로 인정 • 신규채용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가 짧아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예로 5월25일에 입사하였음에도 5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5월부터 직원으로 인정). 즉 무조건 급여 지급 월에 따라 직원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결정 • 병가 휴직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여야 출산 및 육아휴직자와 같이 인정 •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가 함께 근무한 달은 1명만 직원으로 인정하고, 퇴사한 직원의 근무 개월 수도 포함함 • 기존 전담직원의 퇴사 후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공고를 냈으나,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발생한 공백은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은 36개월이고 A기관이 전담인력 2명으로, 각각 24개월,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은 2명이나 업무 개월 합계는 30개월로 1명 기준인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전담인력 1명인 경우에 해당됨. * 해당항목 가중치 = $0.7 + [(30\text{개월}/36\text{개월}) \times 0.3] = 0.95$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95 × 지표 가중치 6 = 5.7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진략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가중치 +(가산점)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격
마켓A-1-2-1-2	보조인력 활용 수준					○		정량	4+(1점)
지표의미	보조인력을 활용하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보조인력이 2명보다 많은 경우		(지표 가중치) + 1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2 < 보조인력 업무 개월 합계)					
		[1.0]	보조인력이 2명인 경우	0.5 + [(보조인력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5/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2 ≥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해당항목 가중치	[0.5]	보조인력이 1명인 경우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 수)×0.5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 개월 합계 ≤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0.0]	보조인력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보조인력 관리카드, 지자체 및 지역사회센터 등의 관리주체 공문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 VMS(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Volunteer Management System),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인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업무 개월 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는데, 예로 보조인력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10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보조인력 1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5이며, 2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1.0임. 단,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의 2배를 초과한 경우(예로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가 24개월이고, 3명의 보조인력으로 그중 인력 1은 20개월, 인력 2는 15개월, 인력 3은 15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보조인력 업무 개월 합계 50개월이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 24개월의 2배(48개월)보다 많음) • 본 지표에 적용되는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지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타 업무와 함께 수행할 경우 보조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자는 월 4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단,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의 투입시간 합계가 매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인정함(예로 평가대상기간 36개월 중 자원봉사자들의 총 투입시간 40시간 이상이 30개월이라면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6개월을 제외한 30개월만을 인정함) • 사회복지부요원의 경우 기존 복무자의 소집해제 후 후임 복무자의 배치 사이에 발생한 공백은 복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이 36개월이고, A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20개월,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30개월로 1명 기준으로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보조인력 1명인 경우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항목 가중치 = (30개월 / 36개월) × 0.5] = 0.417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417 × 지표 가중치 4 = 1.668점 • 평가대상기간이 36개월이고, B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30개월, 12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42개월로 1명 기준으로 36개월을 초과함(보조인력 2명인 경우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항목 가중치 = 0.5 + [(42개월-36개월) × (0.5/36개월)] = 0.583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83 × 지표 가중치 4 = 2.332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전략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당연	임의	
지표번호	평가지표	전국	광역	기초마켓형		가중치 +(가산점)
				당연	임의	
마켓A-1-2-1-3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	6+(1집)
지표의미	전담 또는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필수 : ① 식품위생교육, ②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권장 : ④ 기부식품제공사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정보화교육(FMS 활용교육 제외) 등의 기타교육					
평가내용	가산점 (+1)	위의 ①, ②, ③, ④번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1.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만을 충족하는 경우				
	[0.8]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0.6]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①, ③), (②, ③)				
	[0.4]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④), (②, ④), (③, ④)				
	[0.2]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③)				
	[0.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교육이 포함된 교육의 수료증(수료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료확인서, 확인공문 등의 관련 증명서류)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교육(식품위생교육, FMS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 권장 교육을 추가로 수료한 경우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 부여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이라도 필수교육을 수료하고 권장 교육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 본 지표에서의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자체교육기관인 경우도 인정) 평가대상기간에 교육받은 실적만 인정되나(단, 신입직원은 2개월 이내 전국인정기관에서 수료하는 것으로 같음),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교육수료 후 1년)에 해당하면 인정됨 권장교육에 해당하는 정보화 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범위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말함 - 정보화교육에는 해설,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과정도 포함됨(FMS 활용교육은 제외) - 외부강사를 기관 내에 초빙하여 진행된 교육도 인정됨 - 세미나, 워크숍의 경우 참석확인서, 강사명, 강의 주제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가 있어야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A기관이 3년간 각 연도별로 모두 3개 필수항목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추가로 권장항목 교육을 수료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7+7+7)/3 = 7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략목표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입의	당연	입의			
마켓A-1-2-1-4	직원 근무여건	전국 광역			○		정상	5	
지표의미	직원의 근무여건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전담직원의 (휴가 또는 부재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								
	②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연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음								
	③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준수)								
	해당항목	[1.0]	3개 항목 충족						
	가중치	[0.7]	2개 항목 충족						
		[0.4]	1개 항목 충족						
		[0.0]	해당 항목 없음						
평가대상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2항 [별표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 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업무분장,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인건비명세서, 인센티브 지급내역, 식비지급내역, 직원 인터뷰 등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는 평가대상 시기의 연도에 제시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함 • 평가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시 직원 인터뷰를 통해 2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동일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동일 푸드뱅크·마켓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을 시 상호대체 인력으로 인정함 								
평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5.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기초 매킷형	기초 매킷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입의
마켓A-1-3-1-1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	정성
지표의미	기부식품이 법령 및 지침상의 취급·보관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7
평가내용	① 지자체와 기부식품의 대한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② 기부식품 보관 시 투명척재용기 사용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③ 보관중이거나 제공할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함 ④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음 ⑤ 보건건중 소지 여부				
평가대상 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④⑤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평가자료	운반차량·냉장(냉동)시설·보관창고 관리일지, 현장실사, 지자체와의 정기점검 공문서 및 현장사진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차량·냉장·냉동고, 식품보관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기부식품의 위생 상태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해야 함 기부식품 보관 시 내용물을 육안으로 즉시 식별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준수는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20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하고 1개라도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품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FMS 또는 장부 상 보유식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보관창고의 식품은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으로 정리·보관·관리되어야 함 식품사고 등을 대비하여 보건소, 지자체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보건증은 현장평가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인정됨 보건증은 전담인력, 담당(겸직)인력, 보조인력 구분 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은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자원봉사자가 단 하루만 일하면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6 × 지표 가중치 7) = 4.2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지표성격	가중치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당연	기초 마켓형 당연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마켓A-1-3-1-2	FMS 활용도			○		정성	5	
지표의미	직원의 FMS 활용 수준을 평가							
평가내용	① FMS를 통해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②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음(샘플 10개 조사) ③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샘플 10개 조사)							
	[1.0]	항목 ①, ②, ③ 모두 해당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	항목 ①, ②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①, ③에 해당함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②, ③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0.4]	항목 ①에만 해당함 항목 ②에만 해당함(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항목 ③에만 해당함(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가중치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FMS 기입내용 확인(무작위 샘플 10개), 직원대상 FMS 활용 시연							
지표 해설	• 평가대상기간 연도별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 • FMS를 통한 영수증 증빙관리와 관련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FMS시스템에 접수하여 기부내역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인정함							
	• 항목 ②와 관련하여 FMS 입력정보의 일치여부, 오류 등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대내외의 사업보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평가지표로 구성함. (예시 : 문서 상으로는 빵 100개,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FMS 입력 정보에 빵 1,000개, 100만원이라고 입력한 경우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 항목 ③과 관련하여 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4개 항목을 합쳐서 10개의 샘플을 조사하며, 4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누락 없이 입력되어야 함.							
평가 예시	•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 5.0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진척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가중치
				당연	당연	
마켓A-1-4-1-1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정성	7
지표의미	기부식품등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②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교체하고 있음(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제공					
	③ 자체소비율(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 제공)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음					
	④ 우선지원대상, 배분제외 및 금지대상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지침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1.0]	4가지 항목 충족				
	해당항목	[0.75]	3가지 항목 충족			
	가중치	[0.5]	2가지 항목 충족			
		[0.25]	1가지 항목 충족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신청서 및 이용자 관리대장 교체 전후 이용자리스트 등 이용자교체 증빙서류 기부식품 접수 및 관리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부상 이용자 무작위 샘플 5개에 대한 실제배분 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확인 후 평가함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결식자 및 결식위기가정의 저소득 소외계층(재기대상자)에 우선 배분되고 있는지 평가함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배분은 기부식품의 품목, 규모, 유통기한에 배분되어야 하며, 운영주체와의 연계, 종교적 연관성,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인한 배분은 금지하여야 함 기부식품등 배분은 이용자 간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배분식품 등의 양적·질적사항도 고려되어야 함 자체소비율(매주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제공) 준수에 대한 자료는 각 광역푸드뱅크에서 제공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지표 가중치 7 = 3.5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격	가중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격	가중치
마켓A-1-4-1-1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		정성	6
지표의미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1.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중치	[0.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직접모집경비 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평가자료	이용자 무상제공 관리 자료,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직접모집경비란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등을 의미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6 = 6.0점 									

구분	별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마켓형		가중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A-1-4-1-3	기부자(처) 관리수준					○		5
지표의미	기부자(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음							
	②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ex. 기부협약, 표창수여, 기관장 감사서신 등)를 실시함							
	③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개 모두 해당함						
	해당항목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개 해당함					
평가대상 시점	관련근거	가중치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개 해당함				
			[0.0]	해당사항 없음				
평가자료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지표 해석	평가예시	연도별 기부자(처) 관리활동 증빙서류, 기부자(처) 의견수렴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기부협약 체결·갱신, 표창장 수여, 감사서신, 전국대회 공적조사 등 기부자(처) 관리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것만을 인정함 기부자(처)의 의견수렴제도는 기부자와의 만남, 간담회, 기부자(처) 설문조사 등 서류상으로 입증 가능한 공적인 절차를 의미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 × 지표 가중치 5 = 3.5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가중치	
마켓A-1-4-1-4	이용자 관리수준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정성	
지표의미	이용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개인이용자와 단체이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함 ③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있음 ④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1.0]	4개 항목 충족							
	해당항목	[0.75]	3개 항목 충족							
		[0.5]	2개 항목 충족							
	가중치	[0.25]	1개 항목 충족							
		[0.0]	충족 항목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연도별 이용자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는 고객센터,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용자와의 만남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 인정 •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 공지방법 예시 (판매방지 스티커 부착, 배분 시 기부식품등에 관한 취급주의사항 배포)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푸드뱅크)이 3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지표 가중치 5 = 3.75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가중치	
	마켓A-1-4-1-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의미	행정관리문서의 구비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등(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음									
	②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운영주체의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시 지자체 및 광역 홈페이지 공공란, 블로그, SNS 등)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해당항목		[1.0]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가중치		[0.5]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자료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문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문서로는 기부식품 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내역 등이 있음(단, 관련 문서들이 FMS에 입력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으므로 FMS에 입력한 내용의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하나라도 미충족 시 ②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함). 소식으로 공개한 경우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격 및 모집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격 및 제공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 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제공자 00인 00단체, 이용자 00인 00단체) • 단,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기부자가 사업자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해당 항목(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만 기재하지 않아도 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1가지 항목만 해당하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6) = 3.0점 									
	평가 예시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성적		정량		
지표번호	마켓A-2-1-1-1	평가지표명		진국		기초 벤치마크		기초 마켓팅		
		사업계획의 적절성		광역		당연		입의		
지표의미	연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3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							
		[0.7]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항목이 부족한 경우(1~2개 부족한 경우)							
		[0.4]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많은 항목이 부족한 경우(3~4개 부족한 경우)							
		[0.0]	연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5개 이상 항목이 부족한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사업계획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상의 사업계획서 예시에 따라 다음의 항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 등 ②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③ 설치·운영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현황 (3년 이내 자료)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④ 사업예산 계획 ⑤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기관이나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계획서 서식은 달라도 기본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인정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연단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평가 예시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A-2-1-1-2	예산관리 수준					○	3
지표의미	연도별 예산관련 장부관리가 이루어지며, 적법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됨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해당됨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됨				
		[0.0]	위의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평가자료	연도별 예산산보고서 또는 장부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함(※ 기부담 포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행정형		가중치	
				당연	임의		지표성격
마켓A-2-1-1-3	운영위원회 운영			○		정성	3
지표의미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거나 지침이 없을 경우 제공사, 기부자, 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 ③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 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됨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 4가지 모두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5]	위의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65 적용)				
		[0.5]	위의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4 적용)				
		[0.25]	위의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15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운영위원회 위원명부,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에 속한 운영위원회여야 하며,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운영개선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1회 이상 다루어져야 함. •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운영위원회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정함(회의의 시 기 부식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서류 증빙 제시(공문, 미팅 등) • 단,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항목 가중치보다 0.1점 차감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진략목표	진국	광역	기초뱅크형 당연	기초마켓형 당연	지표성적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기초뱅크형 당연	기초마켓형 당연	기초마켓형 입의	기초마켓형 입의	지표성적	가중치
마켓A-2-1-2-1	사업홍보의 적극성				○	정량	3
지표의미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1.0]	사업홍보 10건 이상				
		[0.75]	사업홍보 7건 이상				
	해당항목	[0.5]	사업홍보 4건 이상				
	가중치	[0.25]	사업홍보 1건 이상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0.0]	해당 없음				
관련근거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평가자료	홍보 관련 증빙자료(보도자료, 팸플렛, 홍보결과보고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행사, 이벤트,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유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위해 비정기적 활동을 포함한 외부 홍보활동을 시행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함께 연계하여 홍보행사를 추진한 경우, 연계하여 실시한 행사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명칭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사업홍보란 기부자(처) 및 이용자 발품을 위해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통한 언론노출 및 팸플렛 등 인쇄물 배포를 포함함 동일한 내용을 수회에 걸쳐 홍보하였거나 언론사가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홍보 및 행사는 일자나 장소가 달라도 1건으로만 인정함(단, 캠페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라도 연도별 1건으로 인정) - 사업장에서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A신문사, B신문사 등에 광고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내용은 동일하지만 행사 주최가 다른 경우에는 주최별로 각각 1건으로 인정함(예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한번은 시(군)청이 주최로, 다른 한번은 교육청이 주최로 행사를 한 경우에는 2건으로 함) -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홍보방법 건수에 따라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이면서 홍보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함 24개월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당항목 가중치를 차등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해당없음, [0.25] 사업홍보 1건 이상, [0.5] 사업홍보 3건 이상, [0.75] 사업홍보 5건 이상, [1.0] 사업홍보 7건 이상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홍보사업 5건을 추진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3 = 1.5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진략목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가중치	
	마켓A-2-1-2-2		사업 교류협력도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기초푸드마켓이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광역, 기초 사업장, 유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정도를 평가								3	
평가내용	항목	① 광역푸드뱅크와 교류한 실적이 있음		②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이 있음		③ 관련단체, 기타 법인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행사 실적이 있음		④ 기초사업장간의 협력한 실적이 있음		
		1		1		0.5		0.5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등급 가중치	1.0	0.5	0.0	1.0	0.5	0.0	1.0	0.5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관련 문서 및 자료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푸드뱅크와의 교류는 광역에서 주최한 워크숍 및 간담회, 행사 및 홍보 공동협력 등 종합적인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특별사업(공동 홍보 및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거나 광역 행사에 지자체가 참여한 수준 등)을 지원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역 내 관련단체, 기타 법인 등 유관기관들과의 공동 홍보 및 행사 등의 협력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기초사업장과 간의 협력은 타 기초사업장과 공동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하였거나 타 기초사업장 행사에 참여한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 교류협력 증빙자료를 사진만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사진에 행사 명칭, 날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4개 모든 항목에 대해 '상' 등급을 받았을 경우 <p>* 지표 평가점수 = [(①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①항목 가중치 1.0) + (②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②항목 가중치 1.0) + (③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③항목 가중치 0.5) + (④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④항목 가중치 0.5)] = 3점</p>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가중치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의 성과성 제고	
지표번호	마켓A-2-2-1-1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기초뱅크형 당연	기초마켓형 당연	지표성적
지표의미	평가년도의 기부식품등 접수환가액을 평가함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평균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해당기관 사업비}}$ 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해당기관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전체 기초푸드마켓 수}}$ 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관할지역 인구 수}}$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뱅크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사업비에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함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마켓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값으로 적용 					
평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0.85×세부지표 가중치 0.2)+(0.95×세부지표 가중치 0.2)+(0.93×세부지표 가중치 0.4)]×지표 가중치 5 = 0.878 × 지표 가중치 5 = 4.39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전략목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의 성과	사업의 성과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기초마켓형		지표성격	가중치
				담당	임의		
마켓A-2-2-1-2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		정량	5
지표의미	평가년도의 기부식품등 배분환가액을 평가함						
	평가년도의 기부식품등 배분환가액을 평가함		평균 등급		기초푸드마켓 유형별(담당/임의) 평균 대비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100% 이상 80%이상~1 60%이상~8 40%이상~6 0%미만 0%미만		S A B C D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사업비		가중치		1.0 0.8 0.6 0.4 0.2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가중치		1.0 0.8 0.6 0.4 0.2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배분환가액 = _____ 해당기관 배분환가액		가중치		1.0 0.8 0.6 0.4 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 _____ 관할지역 인구 수		가중치		1.0 0.8 0.6 0.4 0.2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마켓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 사업비에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함 •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마켓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값으로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뱅크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0.85×세부지표 가중치 0.2)+(0.95×세부지표 가중치 0.2)+(0.73×세부지표 가중치 0.2)+(0.93×세부지표 가중치 0.4)]×지표 가중치 5 = 0.878 × 지표 가중치 5 = 4.39점 						

4. 기초푸드마켓(임의사업장) 평가지표

□ 지표 개수 : 21개 (법적기준 지표 14개, 운영성과 지표 7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평가지표명	지표유형	지표번호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마켓B-1-1-1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마켓B-1-1-2	6
			독립매장 유무	정량	마켓B-1-1-3	3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진단직원 확보수준	정량	마켓B-1-2-1	6+(1)
			보조인력 확보수준	정량	마켓B-1-2-2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정량	마켓B-1-2-3	6+(1)
			직원의 근무여건	정성	마켓B-1-2-4	5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 위생관리	정성	마켓B-1-3-1	7
			FMS 활용도	정성	마켓B-1-3-2	4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정성	마켓B-1-4-1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정성	마켓B-1-4-2	6
			기부자(처) 관리수준	정성	마켓B-1-4-3	4
			이용자 관리수준	정성	마켓B-1-4-4	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정성	마켓B-1-4-5	6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량	마켓B-2-1-1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관리 수준	정성	마켓B-2-1-2	3
			운영위원회 운영	정성	마켓B-2-1-3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홍보의 적극성	정량	마켓B-2-1-2-1	3
			사업 교류협력도	정성	마켓B-2-1-2-2	3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정량	마켓B-2-2-1-1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정량	마켓B-2-2-1-2	5
가중치 소계						75+(3)
가중치 소계						25
지표 수 계						21
가중치 총계						100+(3)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전략목표		기초마켓형		기초마켓형		지표성격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격	가중치
마켓B-1-1-1-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	정량(5) +정성(2)	7
지표의미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차량·냉장·냉동고 시설구비와 청결성 위생성을 평가함								
평가내용 정량지표	<p>① 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고 있음(차량은 도색이 반드시 되어있어야 함)</p> <p>② 운반차량의 냉동 또는 냉장 시설로 된 적재고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음(운반차량의 적재고 내부 온도계 또는 외부에서 적재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p> <p>③ 1000리터 이상의 냉장(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음(운반차량 아님/적정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p> <p>④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음(지자체와의 정기점검은 제외함)</p>								
평가내용 정성지표	<p>①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적재고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임</p> <p>② 냉장(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p>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준용								

<p>평가자료</p>	<p>냉동·냉장 운반차량 등록증, 냉장·냉동고 구매확인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량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시설점검 확인서 및 관리목록,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점검일지 등</p>
<p>정량 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차량은 전국푸드뱅크의 운반차량 도색 예시 기준에 따라 ‘도색’이 된 차량이어야 함(도색이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기부처(공동모금회 등 기업후원)에서 요구하는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업체에서 도색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를 적용함) * 단,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이미 온도표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온도계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 냉동·냉장 운반차량의 경우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장기능 저하, 정상적인 식품운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차량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의 경우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비의 노후로 인한 냉동·냉동기능 저하, 보관 장소 등 정상적인 식품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비구비는 인정하나, 평가보고서에 설비교체를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정성 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운반차량은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5점 만점) A기관이 3개 항목만 충족하고 차량은 도색되어 있는 경우, 정량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량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정량평가 가중치 5 = 3.75점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항목 ①은 상, 항목 ②는 중의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0.5) = 1.5점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3.75 + 정성평가 점수 1.5 = 5.25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전략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기초 점검형		기초 마케팅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담당	담당	지표성격	가중치
마켓B-1-1-1-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정량(4) +정성(2)	6
지표의미	법령상 기준에 따라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1.0]	보관창고가 있는 경우				
정량평가	가중치	[0.0]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				
평가내용	① 보관창고의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중	하	② 식품보관 장소가 창고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정성평가	상		상	중			
	1.0	0.5	0.0	1.0	0.5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준용						
평가자료	보관창고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 임대차계약서(임차), 냉장(냉동)시설 보관창고 관리일지, 현장실사 등						
정량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하며, 방습·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흡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평가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 당면사업장의 경우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임의사업장은 겸용이어도 인정)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함(실제 보관창고를 사용하지만 임대차계약 등의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단, 임의사업장은 면적과 단독사용 규정이 없으므로 보관창고 보유 여부만으로 평가) • 보관창고는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표기 및 면적이 기재되어야 하나, 미등록 시에는 실제 측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조립식 창고 및 컨테이너 등 가건물 형태의 창고라도 건축물로 허가가 난 상황이면 동일하게 인정 						
정성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 식품 보관창고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보관창고의 식품은 종류가 다양하여 바닥으로부터 승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20cm이상 두어야 하나, 가공식품 만 보관하는 파레트 랙이 설치된 보관창고는 바닥에 한해 10cm(파레트 높이)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6점 만점) A기관이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정량지표 가중치 4 = 4.0점 • 정성평가 (2점 만점) A기관이 ①, ②항목 모두 ‘상’ 평가를 받은 경우, 정성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정성지표 평가점수 = (1.0 + 1.0) = 2.0점 • 총 점수 = 정량평가 점수 4.0 + 정성평가 점수 2.0 = 6.0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진락목표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당연	입의	당연	입의		
마켓B-1-1-1-3	독립매장 여부						○	정량	3
지표의미	마켓매장이 사업주체의 사업장과 독립되어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가중치	[1.0]	독립매장이 있음						
		[0.0]	독립매장이 없음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평가자료	현장실사, 독립매장 임차계약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문(무상임대)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를 통해 푸드마켓 사업장이 운영주체와 독립된 공간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임차계약서외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 기부자 등이 무상임대하기로 명시한 공문 등 증빙서류도 가능 독립매장의 주변 여건, 이용자 접근성, 장애인 경사로 등 위치 및 시설이 미흡 할 경우에는 평가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기재하 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독립매장이 있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법적 기준		전략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가중치 +(가산점)	
	진담직원 확보수준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B-1-2-1-1							○	정량 6+(1점)	
지표의미	진담직원의 인원을 기준으로 진담직원의 확보수준을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지표 가중치) + 1 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항목 가중치	[1.0]	담당직원(겸직)이 1명인 경우		(담당직원(겸직)의 업무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수)×1.0 단, 담당직원(겸직)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간 개월로 함				
		[0.0]	담당직원(겸직)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2항 [별표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 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금 수준(또는 최저임금)에 따라 전담직원을 구분하지 않음. - 사업장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인건비'와 '4대 보험'이 별도 계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인정 • 담당(겸직)직원이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업무 외에 타 업무와 겸직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운영주체 내 관리자가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 형태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 업무 개월 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음. 예로 전담직원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10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담당직원 1명인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4, 담당직원이 1명을 초과한 경우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0.7임. • 전담직원의 최대 해당항목 가중치는 1.0임. 단, 전담직원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 • 전담인력 및 담당인력은 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를 포함함 • 계약직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를 주 40시간이상 근무한 자 ②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③ 1년 이상 계약기간의 Full time 직원 (6개월 계약직은 전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담당직원으로 인정) •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한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휴직자를 대신한 기간 동안 직원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출산 및 육아 휴직자와 휴직자를 대신한 계약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로 휴직예정자와 중복 근무할 경우에 1명만 직원으로 인정 • 신규채용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가 짧아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예로 5월25일에 입사하였음에도 5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5월부터 직원으로 인정). 즉 무조건 급여 지급 월에 따라 직원으로 인정하는 시기를 결정 • 병가 휴직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여야 출산 및 육아휴직자와 같이 인정 •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가 함께 근무한 달은 1명만 직원으로 인정하고, 퇴사한 직원의 근무 개월 수도 포함함 • 기존 전담직원의 퇴사 후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공고를 냈으나,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발생한 공백은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지표 해설</p>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은 36개월이고 A기관이 담당인력 2명으로, 각각 24개월,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인력은 2명이나 업무 개월 합계는 30개월로 1명 기준으로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해당항목 가중치 = $[(30\text{개월}/36\text{개월}) \times 1.0] = 0.83$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83 × 지표 가중치 6 = 4.98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시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가산점)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시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지표성적	가중치 +(가산점)	
마켓B-1-2-1-2	보조인력 활용수준							○	정량	4+(1점)	
지표의미	보조인력을 활용하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가산점 [+1]	보조인력이 1명을 초과한 경우		(지표 가중치) + 1 보조인력의 업무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항목 가중치	[1.0]	보조인력이 1명인 경우		(보조인력의 업무개월 합계/평가대상기간 개월수)×1.0 평가대상기간 개월수는 평가대상기간 개월로 함						
		[0.0]	보조인력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2항 [별표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 설비 및 인력기준” 준용										
평가자료	보조인력 관리카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의 관리주체 공문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 VMS(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Volunteer Management System),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인증 등										

<p>지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업무 개월수에 따라 해당항목 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하였는데, 예로 보조인력 1개월 근무자를 둔 기관과 평가대상 기간 1개월 수만큼 근무자를 둔 기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임. • 단, 보조인력의 업무 개월 합계가 평가대상기간 개월을 초과한 경우(예로 평가대상기간이 12개월이라면 2명의 보조인력이며 그중 인력 1은 9개월, 인력 2는 5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을 부여함. • 본 지표에 적용되는 보조인력에는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타 업무와 함께 수행할 경우 보조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자는 월 4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단,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의 투입시간 합계가 매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인정함(예로 평가대상기간 36개월 중 자원봉사자들의 총 투입시간 40시간 이상이 30개월이라면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6개월을 제외한 30개월만을 인정함) •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기존 복무자의 소집해제 후 후임 복무자의 배치 사이에 발생한 공백은 복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p>평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기는 12개월이고 A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5개월, 3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8개월로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해당항목 가중치 = (8개월 / 12개월) × 1.0] = 0.67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67 × 지표 가중치 4 = 2.68점 • 평가대상기기는 12개월이고 B기관이 보조인력 2명으로, 각각 9개월, 5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 2명의 업무 개월 합계는 14개월로 12개월을 초과함. * 지표 평가점수 = 지표 가중치 4 + 가산점 1 = 5.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가중치 +(가산점)
		전략목표	전국 광역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기초 마켓형 담당 임의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지표 설명	기초 마켓형 담당 임의	기초 마켓형 담당 임의	지표성적	가중치 +(가산점)
마켓B-1-2-1-3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정량	6+(1점)
지표의미	진담 또는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필수 : ① 식품위생교육, 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권장 : ④ 기부식품제공사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정보화교육(FMS 활용교육 제외) 등의 기타교육 가산점 (+1) 위의 ①, ②, ③, ④번 항목 모두 충족한 경우					
평가내용	[1.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만을 충족하는 경우					
	[0.8]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0.6] 위의 항목 중 필수 2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①, ③), (②, ③)					
	[0.4]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을 충족하고 권장항목을 충족한 경우 (①, ④), (②, ④), (③, ④)					
	[0.2] 위의 항목 중 필수 1개 항목만 충족한 경우 (①), (②), (③)					
[0.0] 위의 항목 중 필수항목(①, ②, ③번)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시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생교육이 포함된 교육의 수료증(수료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료확인서, 확인공문 등의 관련 증빙서류)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교육(식품위생교육, FMS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 권장 교육을 추가로 수료한 경우 지표 가중치에 +1의 가산점 부여 - 전담직원 또는 담당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이라도 필수교육을 수료하고 권장 교육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 본 지표에서의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자체교육기관인 경우도 인정) 평가대상기간에 교육받은 실적만 인정되나(단, 신입직원은 2개월 이내 전국인정기관에서 수료하는 것으로 같음),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교육수료 후 1년)에 해당하면 인정됨 권장교육에 해당하는 정보화 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범위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말함 - 정보화교육에는 해설,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과정도 포함됨(FMS 활용교육은 제외) - 외부강사를 기관 내에 초빙하여 진행된 교육도 인정됨 - 세미나, 워크숍의 경우 참석확인서, 강사명, 강의 주제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가 있어야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A기관이 3년간 각 연도별로 모두 3개 필수항목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추가로 권장항목 교육을 수료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7+7+7)/3 = 7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인력현황		지표성격	가중치
		전략목표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B-1-2-1-4	직원 근무여건				○	정성	5
지표의미	직원의 근무여건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전담직원의 (휴가 또는 부재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 ②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연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음 ③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준수)						
평가대상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평가자료	업무분장,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인건비명세서, 인센티브 지급내역, 식비지급내역, 직원 인터뷰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는 평가대상 시기의 연도에 제시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함 • 평가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위원이 현장평가를 시 직원 인터뷰를 통해 2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동일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동일 푸드뱅크·마켓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을 시 상호단체 인력으로 인정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5.0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벵크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입의		
마켓B-1-3-1-1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정성	7
지표의미	기부식품이 법령 및 지침상의 취급·보관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① 지자체와 기부식품의 대한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② 기부식품 보관 시 투명적재용기 사용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③ 보관 중이거나 제공할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함 ④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음 ⑤ 보건건중 소지 여부						
평가내용	[1.0]	5가지 항목 해당					
	[0.8]	4가지 항목 해당					
	[0.6]	3가지 항목 해당					
	[0.4]	2가지 항목 해당					
	[0.2]	1가지 항목 해당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④⑤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평가자료	운반차량·냉장(냉동)시설·보관창고 관리일지, 현장실사, 지자체와의 정기점검 공문서 및 현장사진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함 차량·냉장·냉동고, 식품보관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 해당 없음으로 평가함 기부식품의 위생 상태와 협조를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해야 함 기부식품 보관 시 내용물을 육안으로 즉시 식별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준수는 현장실사 시 평가위원이 20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하고 1개라도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품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FMS 또는 장부 상 보유식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보관창고의 식품은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으로 정리·보관·관리되어야 함 식품사고 등을 대비하여 보건소, 지자체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보건증은 현장평가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인정됨 보건증은 전담인력, 담당(겸직)인력, 보조인력 구분 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은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자원봉사자가 단 하루만 일하면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함) 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6 × 지표 가중치 7) = 4.2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지표성적	가중치
		진락목표	진국	평가지역	진락목표		
지표번호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지표의미		기초 캠프형		기초 마케팅형			
		당연		당연			
		임의		임의			
		O		O			정성
		5		5			
		직원의 FMS 활용 수준을 평가		직원의 FMS 활용 수준을 평가			
		① FMS를 통해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① FMS를 통해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②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음(샘플 10개 조사)		②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음(샘플 10개 조사)			
		③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샘플 10개 조사)		③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샘플 10개 조사)			
		[1.0]	항목 ①, ②, ③ 모두 해당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	항목 ①, ②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①, ③에 해당함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항목 ②, ③에 해당함 (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6 적용)				
		[0.4]	항목 ①에만 해당함				
		[0.0]	항목 ②에만 해당함(FMS 입력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항목 ③에만 해당함(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이용자 정보가 일부(각 샘플 10개 중 2개 이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해당 없음				
평가대상시점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현장평가 시점 기준		①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②③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FMS 기업내용 확인(무작위 샘플 10개), 직원대상 FMS 활용 시연		FMS 기업내용 확인(무작위 샘플 10개), 직원대상 FMS 활용 시연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기간 연도별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 FMS를 통한 영수증 증빙관리의 관련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FMS시스템에 접수하여 기부내역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인정함 항목 ②와 관련하여 FMS 입력정보의 일치여부, 오류 등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대내외의 사업보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평가지표로 구성함. (예시 : 문서 상으로는 빵 100개,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FMS 입력 정보에 빵 1,000개, 100만원이라고 입력한 경우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항목 ③과 관련하여 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4개 항목을 합쳐서 10개의 샘플을 조사하며, 4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누락 없이 입력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기간 연도별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함. FMS를 통한 영수증 증빙관리의 관련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FMS시스템에 접수하여 기부내역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인정함 항목 ②와 관련하여 FMS 입력정보의 일치여부, 오류 등이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대내외의 사업보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평가지표로 구성함. (예시 : 문서 상으로는 빵 100개,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FMS 입력 정보에 빵 1,000개, 100만원이라고 입력한 경우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항목 ③과 관련하여 접수, 배분, 기부자, 이용자 4개 항목을 합쳐서 10개의 샘플을 조사하며, 4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누락 없이 입력되어야 함. 			
평가 예시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 5.0점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5 = 5.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가중치	
				당연		당연
마케B-1-4-1-1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입의	정성	7
지표의미	기부식품등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입의		○
평가내용	①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②	주요이용자를 교체하고 있음(지역 내 상환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제공)				
	③	자체소비를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 제공)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음				
	④	우선지원대상, 배분제외 및 급지대상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지침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1.0]	4가지 항목 충족			
	[0.75]	3가지 항목 충족				
	[0.5]	2가지 항목 충족				
	[0.25]	1가지 항목 충족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2017년도만 평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신청서 및 이용자 관리대장 교체 전후 이용자리스트 등 이용자교체 증빙서류 기부식품 점수 및 관리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부상 이용자 무작위 샘플 5개에 대한 실제배분 여부 및 무상제공 여부 확인 후 평가함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결식자 및 결식위기가정의 저소득 소외계층(재가대상자)에 우선 배분되고 있는지 평가함 지역 내 상환과 이용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9개월/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하여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배분은 기부식품의 품목, 규모, 유통기한에 배분되어야 하며, 운영주체와의 연계, 종교적 연관성,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인한 배분은 금지하여야 함 기부식품등 배분은 이용자 간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며, 배분식품 등의 양적·질적사항도 고려되어야 함 자체소비를(매주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제공) 준수에 대한 자료는 각 광역푸드뱅크에서 제공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지표 가중치 7 = 3.5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평가지표명		진국	광역시	기초 벵크형		기초마켓형		지표성격	가중치
지표번호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정성	6
지표의미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1.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중치	[0.0]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직접모집경비 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평가대상 시점	현장평가 시점 기준									
관련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평가자료	이용자 무상제공 관리 자료,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직접모집경비란 기부식품의 차량적제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등을 의미함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6 = 6.0점 									

구분	범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벙크형		기초 마켓형		가중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B-14-1-3	기부자(처) 관리수준							정성	5
지표의미	기부자(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고 있음								
	②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ex. 기부협약, 표창수여, 기관장 감사서신 등)를 실시함								
	③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개 모두 해당함							
	해당항목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개 해당함						
가중치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개 해당함							
	[0.0]	해당사항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기부자(처) 관리활동 증빙서류, 기부자(처) 의견수렴 자료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기부협약 체결·갱신, 표창장 수여, 감사서신, 전국대회 공적조사 등 기부자(처) 관리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것만을 인정함 기부자(처)의 의견수렴제도는 기부자와의 만남, 간담회, 기부자(처) 설문조사 등 서류상으로 입증 가능한 공적인 절차를 의미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2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 × 지표 가중치 5 = 3.5점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전략목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형		기초마켓형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B-1-4-1-4	이용자 관리수준						5	
지표의미	이용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개인이용자와 단체이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함 ③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있음 ④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음							
		[1.0]	4개 항목 충족					
		[0.75]	3개 항목 충족					
	해당항목	[0.5]	2개 항목 충족					
	가중치	[0.25]	1개 항목 충족					
		[0.0]	충족 항목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평가자료	연도별 이용자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는 고객센터,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용자와의 만남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 인정 •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 공지방법 예시 (판매방지 스티커 부착, 배분 시 기부식품등에 관한 취급주의사항 배포)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푸드뱅크)이 3가지 항목만을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75 × 지표 가중치 5 = 3.75점							
평가 예시								

구분	법적 기준	성과영역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기초 벵크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임의		
마켓B-1-4-1-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지표의미	행정관리문서의 구비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내용	①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등(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음					
	②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운영주체의 홈페이지(홈페이지 없을 시 지자체 및 광역 홈페이지 공고란, 블로그, SNS 등)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해당항목	[1.0]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가중치	[0.5]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자료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문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문서로는 기부식품 접수문서, 제공문서,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내역 등이 있음(단, 관련 문서들이 EMS에 입력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으므로 FMS에 입력한 내용의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하나라도 미충족 시 ②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함). 소식으로 공개한 경우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자 소재지 -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격 및 모집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격 및 제공일자(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00 종류 00품목 00개 00원 00일)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내용별 합계 공개 시 인정, 예시 제공자 00인 00단체, 이용자 00인 00단체) • 단,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기부자가 사업자 명칭 및 사업자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해당 항목(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만 게재하지 않아도 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1가지 항목만 해당하는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6)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운영 성과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 마켓형		가중치
	평가지표명		기초 벵크형		입의		
마켓B-2-1-1-1	사업계획의 적절성		당연		입의		정량
지표의미	연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평가내용	해당항목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				
	가중치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 항목이 부족한 경우(1~2개 부족한 경우)				
			연단위 사업계획 내용의 많은 항목이 부족한 경우(3~4개 부족한 경우)				
			연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5개 이상 항목이 부족한 경우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연도별 사업계획서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상의 사업계획서 예시에 따라 다음의 항목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 등 ②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③ 설치·운영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현황 (3년 이내 자료)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④ 사업예산 계획 ⑤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기관이나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계획서 서식은 달라도 기본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인정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연단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기초 벵크형		기초 마켓형		지표성적	가중치	
			당연	임의	당연	임의			
마켓B-2-1-1-2	예산관리 수준						○	3	
지표의미	연도별 예산관련 장부관리가 이루어지며, 적법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내용	① 연단위의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가 이루어짐								
	③ 회계처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충실히 갖추고 있음								
		[1.0]	위의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됨						
	해당항목	[0.7]	위의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해당됨						
가중치	[0.4]	위의 항목 중에서 1가지 항목이 해당됨							
	[0.0]	위의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평가자료	연도별 예결산보고서 또는 장부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함(※ 자부담 포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지표번호	마케팅B-2-1-1-3	전략목표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지표의미	운영위원회 운영	전국	광역	기초 캠프형		가중치
				당연	입의	
	사업계획서가 수립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	3
평가내용	<p>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음</p> <p>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거나 지침이 없을 경우 제공자, 수혜자, 기부자, 전문가 등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음</p> <p>③ 사업계획서가 수립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p> <p>④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됨</p>					
평가대상시점	해당항목 가중치	[1.0]	위의 항목 중 4가지 모두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9 적용)			
		[0.75]	위의 항목 중 3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65 적용)			
		[0.5]	위의 항목 중 2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4 적용)			
		[0.25]	위의 항목 중 1가지 항목 해당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 가중치 0.15 적용)			
		[0.0]	해당 없음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연도별 운영위원회 위원명부,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등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주체에 속한 운영위원회여야 하며,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운영개선에 관한 내용이 안전으로 1회 이상 다루어져야 함.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운영위원회와 같은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정함(회의의 시 기 부식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서류 증빙 제시(공문, 미팅 등) 단, 운영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로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항목 가중치보다 0.1점 차감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A기관이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1.0 × 지표 가중치 3 = 3.0점 					
평가 예시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략목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마켓B-2-1-2-1	사업홍보의 적극성	기초뱅크형 당연
지표의미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기초 마켓형 당연 입의 정량 3
평가내용	<p>[1.0] 사업홍보 10건 이상</p> <p>[0.75] 사업홍보 7건 이상</p> <p>[0.5] 사업홍보 4건 이상</p> <p>[0.25] 사업홍보 1건 이상</p> <p>[0.0] 해당 없음</p>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홍보 관련 증빙자료(보도자료, 팸플렛, 홍보결과보고서 등)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행사, 이벤트,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유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위해 비정기적 활동을 포함한 외부 홍보활동을 시행함 •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함께 연계하여 홍보행사를 추진한 경우, 연계하여 실시한 행사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명칭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사업홍보란 기부자(처) 및 이용자 발걸을 위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통한 언론노출 및 팸플렛 등 인쇄물 배포를 포함함 • 동일한 내용을 수회에 걸쳐 홍보하였거나 언론사가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홍보 및 행사는 일자나 장소가 달라도 1건으로만 인정함(단, 캠페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라도 연도별 1건으로 인정) - 사업장에서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A신문사, B신문사 등에 광고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내용은 동일하지만 행사 주최가 다른 경우에는 주최별로 각각 1건으로 인정함(예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한번은 시(군)청이 주최로, 다른 한번은 교육청이 주최로 행사를 한 경우에는 2건으로 함) -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홍보방법 건수에 따라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이면서 홍보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함 • 24개월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당항목 가중치를 차등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해당없음, [0.25] 사업홍보 1건 이상, [0.5] 사업홍보 3건 이상, [0.75] 사업홍보 5건 이상, [1.0] 사업홍보 7건 이상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이 홍보사업 5건을 추진한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평가점수 = 해당항목 가중치 0.5 × 지표 가중치 3 = 1.5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진락목표		진락목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기초뱅크		기초마켓		지표성적	가중치
	마켓B-2-1-2-2		사업		당연		당연			
지표의미	사업 교류협력도								정정	3
평가내용	항목		① 광역푸드뱅크와 교류한 실적이 있음		②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이 있음		③ 관련단체, 기타 범인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행사 실적이 있음		④ 기초사업장간의 협력한 실적이 있음	
	항목 가중치	1	1		0.5		0.5		0.5	
	등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등급 가중치	1.0	0.5	0.0	1.0	0.5	0.0	1.0	0.5	0.0
평가대상 시점	평가대상기간 통합 평가									
관련근거	관련 문서 및 자료									
평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푸드뱅크와의 교류는 광역에서 주최한 워크숍 및 간담회, 행사 및 홍보 공동협력 등 종합적인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특별사업(공동 홍보 및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거나 광역 행사에 지자체가 참여한 수준 등)을 지원한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지역 내 관련단체, 기타 범인 등 유관기관들과의 공동 홍보 및 행사 등의 협력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기초사업장과 간의 협력은 타 기초사업장과 공동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하였거나 타 기초사업장 행사에 참여한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 교류협력 증빙자료를 사진만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사진에 행사 명칭, 날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해당항목 가중치에 적용 A기관이 4개 모든 항목에 대해 '상' 등급을 받았을 경우 									
평가 예시	<p>* 지표 평가점수 = [(①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①항목 가중치 1.0) + (②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②항목 가중치 1.0) + (③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③항목 가중치 0.5) + (④항목 등급 가중치 1.0 × ④항목 가중치 0.5)] = 3점</p>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전략목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의 성과	사업의 성과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	기초뱅크		지표성격	가중치
				당연	임의		
마켓B-2-2-1-1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	정량	5
지표의미	평가연도의 기부식품등 접수환가액을 평가함						
평가내용	$\text{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 \times 0.2$ $+ (\text{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 \times 0.2)$ $+ (\text{전체 기초푸드마켓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 \times 0.2)$ $+ (\text{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 \times 0.4)$		평균 등급 평균 등급		기초푸드마켓 유형별(당연/임의) 평균 대비 100% 이상 80%미만 60%이상~ 40%이상~ 40%미만 S A B C D		
	$\text{사업비 백만원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해당기관 사업비}}$ $\text{이용자 1인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해당기관 이용자 수}}$ $\text{전체 기초푸드마켓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전체 기초푸드마켓 수}}$ $\text{관할지역 인구 1인당 접수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접수환가액}}{\text{관할지역 인구 수}}$		가중치		1.0	0.8	0.6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관련근거							
평가자료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지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마켓,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사업비에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함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마켓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값으로 적용 						
평가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 = $[(0.85 \times \text{세부지표 가중치 } 0.2) + (0.95 \times \text{세부지표 가중치 } 0.2) + (0.73 \times \text{세부지표 가중치 } 0.2) + (0.93 \times \text{세부지표 가중치 } 0.4)] \times \text{지표 가중치 } 5 = 0.878 \times \text{지표 가중치 } 5 = 4.39\text{점}$ 						

구분	운영 성과	성과영역		사업의 성과			
		전략목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업의 성과	사업의 성과		
지표번호	평가지표명	전국	광역시	기초마켓형		지표성격	가중치
				당연	임의		
마켓B-2-2-1-2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정량	5
지표의미	평가연도의 기부식품 배분환가액을 평가함						
평가내용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평균 가중치×0.2)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2)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평균 등급 가중치×0.4)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해당기관 사업비}}$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해당기관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배분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전체 기초푸드마켓 수}}$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 = $\frac{\text{해당기관 배분환가액}}{\text{관할지역 인구 수}}$						
평가대상시점	평가대상기간 연도별 평가						
평가자료	전국푸드뱅크를 통한 FMS 자료 일괄 제공						
지표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환가액은 사업비, 이용자 수, 전체 기초푸드마켓 수, 관할지역 인구 4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적을 평가함 • 사업비에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함 • 4가지 요인별 기초푸드마켓의 평균값 대비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 각 연도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연도별 평가의 '평균값'을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값으로 적용 						
평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 사업비 백만원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85%, 이용자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5%, 전체 기초푸드마켓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73%, 관할지역 인구 1인당 배분환가액은 평균 대비 93%인 경우 지표 평가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지표 평가점수=[(0.85×세부지표 가중치 0.2)+(0.95×세부지표 가중치 0.2)+(0.73×세부지표 가중치 0.2)+(0.93×세부지표 가중치 0.4)]×지표 가중치 5 = 0.878 × 지표 가중치 5 = 4.39점 						

부록 2 : 2018년 지역별 평가 결과

1. 강원지역 평가 결과

순위	코드 번호	사업장 일반 현황			잔액/입상·납고 보증금 및 관리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독립 매장 유무 (푸드 마일/해당)	전담 인력 확보 수준	보조 인력 활용 수준	직원의 교육 참여 수준	지역의 근무 여건	기부 식품 등의 위생 관리	기부 식품 등의 배분 적정성	기부 식품 등의 무상 제공	이용자 관리 수준	행정 문서 및 정보 관리 적정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예산 관리 수단	운영 위험의 운영	사업 현장의 적정성	사업 고유의 전문성	기부 식품을 배분 실적	기부 식품을 접수 실적	사업 기준 (75점) + (15점) (25점)	100점 환산 점수										
		사업장		지역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평가 지표
		뱅크/마켓	시도 (광역시)																																
1	S11702	마켓	강원	원주시	7.00	3.00	7.00	5.00	7.00	7.00	5.00	4.20	4.00	4.00	6.00	3.00	3.00	3.00	3.00	3.00	3.00	0.67	4.67	3.53	72.45	20.87	93.32	90.60							
2	S12201	뱅크	강원	홍천군	7.00	0.00	6.00	5.00	7.00	5.00	7.00	7.00	5.00	5.00	6.00	3.00	3.00	2.70	3.00	3.00	3.00	1.50	1.80	2.93	75.25	17.93	93.18	90.47							
3	S12001	뱅크	강원	속초시	7.00	0.00	6.00	5.00	7.00	5.00	7.00	7.00	3.5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0.50	3.07	2.80	73.50	18.37	91.87	89.19							
4	S25901	뱅크	강원	정선군	7.00	0.00	6.00	4.00	7.00	5.00	7.00	7.00	5.25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0.58	1.87	3.00	72.75	17.45	90.20	87.57							
5	S27601	뱅크	강원	강릉시	7.00	0.00	7.00	1.28	7.00	5.00	5.60	5.00	5.25	5.00	5.00	6.00	3.00	3.00	2.70	3.00	3.00	0.75	1.60	1.73	71.13	15.78	86.91	84.38							
6	S29501	뱅크	강원	인제군	7.00	0.00	7.00	4.00	6.67	5.00	7.00	7.00	4.50	5.00	5.00	6.00	2.10	3.00	0.45	1.50	1.50	0.58	2.07	2.67	74.42	12.37	86.78	84.26							
7	S11701	뱅크	강원	원주시	5.25	5.00	5.90	4.00	7.00	5.00	5.60	5.00	3.50	5.00	5.00	6.00	2.10	3.00	3.00	3.00	0.83	2.60	3.20	68.25	17.73	85.98	83.48								
8	S12301	뱅크	강원	영월군	7.00	0.00	7.00	5.00	5.93	3.50	5.60	5.00	5.25	4.00	4.58	4.00	2.40	3.00	3.00	3.00	0.50	1.27	3.27	68.87	16.43	85.30	82.82								
9	S29401	뱅크	강원	횡성군	7.00	0.00	7.00	4.00	6.27	5.00	7.00	7.00	3.50	3.75	6.00	1.20	3.00	2.70	1.50	1.50	0.42	2.67	2.73	70.02	14.22	84.23	81.78								
10	S26001	뱅크	강원	양구군	7.00	0.00	7.00	5.00	7.00	5.00	7.00	7.00	5.00	5.00	5.00	2.00	3.00	3.00	3.00	3.00	0.67	2.07	2.93	70.25	13.77	84.02	81.57								
11	S11601	뱅크	강원	춘천시	7.00	0.00	6.00	5.00	2.80	5.00	7.00	5.00	3.50	4.17	6.00	2.10	3.00	2.30	3.00	3.00	0.08	3.07	2.87	66.97	16.42	83.38	80.95								
12	S11901	뱅크	강원	태백시	7.00	0.00	6.00	5.00	7.00	5.00	7.00	5.00	3.50	6.00	3.00	3.00	3.00	3.00	3.00	3.00	0.17	2.53	2.33	67.25	14.03	81.28	78.92								
13	S12101	뱅크	강원	삼척시	4.50	6.00	7.00	0.00	4.33	5.00	4.20	5.00	5.25	6.00	3.00	3.00	3.00	3.00	3.00	1.50	0.17	3.53	3.60	60.53	17.80	78.33	76.05								
14	S29801	뱅크	강원	양양군	4.50	6.00	6.00	5.00	7.00	5.00	4.20	5.00	5.25	6.00	3.75	6.00	2.10	3.00	0.00	0.75	1.42	2.47	3.20	63.70	12.93	76.63	74.40								
15	S56401	뱅크	강원	원주시	7.00	0.00	4.35	0.11	5.87	3.50	7.00	5.00	5.25	6.00	0.67	5.00	2.10	1.80	1.50	1.50	0.25	1.20	1.47	61.74	9.82	71.56	69.48								
16	S26501	뱅크	강원	철원군	3.50	6.00	0.00	4.00	5.20	0.00	7.00	7.00	3.50	3.50	6.00	3.75	6.00	1.20	3.00	0.00	0.75	0.00	1.13	1.87	48.45	7.95	56.40	54.76							
17	S31601	뱅크	강원	고성군	5.75	6.00	7.00	1.78	6.27	2.00	4.20	4.00	3.50	6.00	2.50	0.00	0.00	2.10	0.00	0.00	0.17	2.47	3.53	44.99	8.27	53.26	51.71								

최소값	3.50	5.00	0.00	0.00	0.00	4.20	(0.00)(4.00)	3.50	6.00	(0.00)(2.50)(4.00)	0.00	0.00	1.80	0.00	1.13	1.47	44.99	7.95	53.26	51.71	
최대값	7.00	6.00	3.00	7.00	5.00	7.00	(5.00)(4.00)	5.25	6.00	(5.00)(4.00)	6.00	3.00	3.00	3.00	1.50	4.67	3.60	75.25	20.87	93.32	90.60
평균	6.32	5.88	0.18	6.01	3.72	6.25	(4.56)(4.00)	4.53	6.00	(2.95)(4.38)(4.00)	5.53	2.26	2.88	1.79	2.21	2.36	2.80	66.50	14.83	81.33	78.96
표준편차	1.16	0.33	0.73	1.71	1.77	1.18	(1.28)(0.00)	0.89	0.00	(2.13)(0.76)(0.00)	1.50	0.84	0.35	1.36	1.04	0.91	0.63	8.57	3.67	11.53	11.20

2. 경기지역 평가 결과

순위	코드 번호	사업장 일반 현황		지역		사업장	지역구 (기초)	평가 기준 점수	차량/ 냉장 냉동고 보유 및 관리	부관 장고 보유 및 관리	독립 매장 유형 (푸드 마켓 헤엄)	전달 인력 확보 수준	보조 인력 활용 수준	직원의 교육 참여 수준	직원의 근무 여건	기부 식품 등의 위생 관리	FMS 활용도	기부 식품 등의 배출 적정성	기부 식품 등의 무상 제공 수준	기부 차(지) 관리 수준	행정 문서 및 정보 관리 적정성	사업 계획 적정성	예산 관리 수준	운영 위험 운영	사업 홍보의 적극성	사업 교류 협력도	기부 식품 배분 실적	기부 식품 점수 실적	법적 기준 가중치 합계 (75점) + (가점 3점)	사업 운영 가중치 합계 (25점)	종합 점수 (100점)	100점 확산 점수				
				시도 (광역)	시군구																															
				평가 기준 점수	가중치																															
1	S510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이천시	이천시신양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3.50	7.00	5.00	7.00	5.00	7.00	5.00	3.75	6.00	2.10	3.00	3.00	3.00	3.00	3.00	3.00	4.07	3.47	73.50	21.63	95.13	92.36	
2	S098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고양시	임의고양시문촌7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4.00	7.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17	2.53	2.13	77.00	17.83	94.83	92.07
3	S433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고양시	임의고양시한아를푸드마켓	경기	7.00	6.00	3.00	6.00	4.00	7.00	5.00	7.00	4.00	7.00	5.00	7.00	7.00	4.00	6.00	3.00	3.00	3.00	3.00	3.00	0.92	3.27	2.53	76.00	18.72	94.72	91.96		
4	S097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고양시	임의고양시문촌9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4.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0.75	2.47	2.13	77.00	17.35	94.35	91.60		
5	S305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시흥시	당연시흥시정원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1.67	2.73	2.73	75.10	19.13	94.23	91.49		
6	S508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화성시	당연화성시나래울푸드마켓	경기	7.00	6.00	3.00	7.00	4.00	7.00	5.00	7.00	4.00	7.00	5.00	7.00	5.00	4.00	6.00	3.00	3.00	3.00	3.00	3.00	1.33	2.47	2.93	75.25	18.73	93.98	91.25		
7	S102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시흥시	당연시흥시목감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2.67	1.73	1.27	76.25	17.67	93.92	91.18		
8	S084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성남시	당연성남시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6.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1.75	3.67	2.40	73.75	19.82	93.57	90.84		
9	S309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파주시	당연파주시희망나눔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2.17	3.60	3.07	72.58	20.83	93.42	90.70		
10	S468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안양시	임의안양시우쾌원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1.17	3.47	2.93	73.22	19.57	92.78	90.08		
11	S096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고양시	임의고양시원돌기조푸드뱅크	경기	7.00	5.5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0.75	2.27	2.00	75.75	17.02	92.77	90.06		
12	S519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남양주시	당연남양주천나눔푸드마켓	경기	7.00	6.00	3.00	6.00	2.00	7.00	5.00	7.00	4.00	7.00	5.00	7.00	5.00	4.00	6.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47	2.87	72.25	20.33	92.58	89.89	
13	S372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용인시	당연용인시농시홍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5.4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2.25	3.53	3.00	71.65	20.78	92.43	89.74		
14	S384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평택시	당연평택시송탄기조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6.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3.00	2.25	2.08	1.80	75.25	17.13	92.38	89.69		
15	S108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포천시	당연포천시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6.00	1.67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4.17	6.00	3.00	3.00	3.00	3.00	0.75	3.67	3.13	72.83	19.55	92.38	89.69			
16	S421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시흥시	당연시흥시농시홍푸드마켓	경기	7.00	6.00	3.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4.00	6.00	3.00	3.00	3.00	3.00	1.58	1.47	2.13	75.10	17.18	92.28	89.60			
17	S431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평택시	당연평택시송탄기조푸드마켓2호점	경기	7.00	6.00	3.00	7.00	3.89	7.00	5.00	7.00	4.00	7.00	5.00	7.00	5.00	4.00	6.00	3.00	3.00	3.00	3.00	1.58	2.00	1.40	75.14	16.98	92.12	89.44			
18	S105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하남시	당연하남시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6.00	2.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3.75	6.00	2.40	3.00	2.70	3.00	2.33	3.87	3.53	71.25	20.83	92.08	89.40			
19	S456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안성시	당연안성시푸드뱅크	경기	7.00	5.5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1.33	3.47	3.00	72.26	19.80	92.06	89.38			
20	S374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가평군	당연가평군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0.92	3.20	3.40	73.10	18.92	92.02	89.34			
21	S112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안성시	당연안성시푸드뱅크	경기	7.00	5.50	0.00	6.00	2.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2.10	3.00	3.00	3.00	2.00	3.33	3.40	72.00	19.83	91.83	89.16			
22	S500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양주시	당연양주연화푸드마켓	경기	7.00	6.00	3.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4.00	6.00	3.00	3.00	2.30	3.00	2.25	1.00	1.13	3.07	75.45	15.75	91.20	88.54			
23	S288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양주시	당연양주시조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0.50	3.33	3.47	71.85	19.30	91.15	88.50			
24	S479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남양주시	당연남양주주드마켓	경기	7.00	6.00	0.00	6.00	2.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4.00	6.00	3.00	2.90	3.00	2.30	3.00	1.50	4.53	3.00	72.68	18.18	90.87	88.22		
25	S318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광주시	당연광주시중앙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6.00	2.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2.33	2.13	2.00	72.25	18.47	90.72	88.07			
26	S083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수원시	당연수원시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6.00	2.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5.00	6.00	3.00	3.00	3.00	3.00	2.33	2.13	2.00	72.25	18.47	90.72	88.07			
27	S337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수원시	당연수원시관선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5.00	4.17	6.00	3.00	3.00	1.80	3.00	1.92	3.00	2.13	72.42	17.85	90.27	87.64			
28	S420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수원시	당연수원시혜누리푸드마켓	경기	7.00	6.00	3.00	6.00	2.00	7.00	5.00	7.00	5.00	7.00	5.00	7.00	4.00	6.00	3.00	3.00	3.00	3.00	3.00	2.00	1.20	1.07	74.00	16.27	90.27	87.64			
29	S113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구리시	당연구리시푸드뱅크	경기	7.00	6.00	0.00	7.00	4.00	7.00	5.00	7.00	4.67	3.50	7.00	4.50	7.00	5.00	6.00	3.00	3.00	3.00	3.00	2.25	0.00	3.27	72.67	16.85	89.52	86.91			
30	S62601	평가 기준 점수	7.00	경기	안양시	당연안양시현푸드마켓	경기	7.00	6.00	3.00	7.00	1.71	5.90	5.00	7.00	4.00	5.25	6.00	4.00	4.00	6.00	3.00	3.00	3.00	3.00	3.00	2.50	1.90	1.20	71.86	17.60	89.46	86.86			

6. 대구지역 평가 결과

순위	코드 번호	사업장 일반 현황		지역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보관 창고 보유 및 관리	특별 매장 유무 (판매회사 제외)	진담 인력 확보 수준	보조 인력 활용 수준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	직원의 근무 여건	기부 식품들의 위생 관리	FMS 활용도	기부 식품 등의 배분 적절성	기부 식품 등의 제조	기부 식품 관리 수준	행정 문서 및 정보 관리 적절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자의 전문성	예산 관리 수준	운영 위험도	사업 운영의 적극성	사업 종류	기부 식품들의 실적	기부 식품들의 실적	법적 기준 준수 여부 (75점) + (25점)	사업 운영 실적 (108점)	100점 환산 점수	
		뱅크/마켓	신고 유형																										사업장 명칭
1	S49701	마켓	임의	대구	중구	7.00	3.00	7.00	5.00	7.00	5.00	4.00	4.00	6.00	6.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67	3.27	3.93	76.25	21.87	98.12	95.26
2	S05301	뱅크	임의	대구	중구	7.00	0.00	7.00	5.00	7.00	5.00	5.60	5.00	6.00	6.00	5.00	3.00	3.00	2.25	3.00	2.25	3.00	2.33	3.67	3.67	76.60	20.92	97.52	94.68
3	S47101	마켓	임의	대구	북구	7.00	3.00	7.00	6.00	4.00	7.00	5.60	4.00	5.25	6.00	4.00	3.00	3.00	3.00	3.00	3.00	3.00	1.50	3.47	3.73	72.85	20.70	93.55	90.83
4	S05101	뱅크	임의	대구	수성구	7.00	0.00	7.00	6.00	5.00	7.00	7.00	5.00	5.25	6.00	5.00	3.00	3.00	3.00	3.00	3.00	3.00	1.33	2.07	2.27	75.25	17.67	92.92	90.21
5	S04301	뱅크	당연	대구	달서구	7.00	0.00	7.00	6.00	5.00	7.00	7.00	5.00	5.25	6.00	5.00	3.00	3.00	2.75	3.00	2.75	3.00	0.50	3.33	2.93	74.25	18.52	90.67	88.03
6	S04401	뱅크	임의	대구	달서구	7.00	0.00	7.00	4.00	7.00	5.00	7.00	5.00	5.25	6.00	5.00	3.00	3.00	3.00	3.00	3.00	3.00	1.83	2.13	2.00	75.25	17.22	92.47	89.77
7	S47301	마켓	임의	대구	달성군	7.00	3.00	7.00	3.11	7.00	5.00	5.60	4.00	4.00	6.00	4.00	3.00	3.00	3.00	3.00	3.00	3.00	2.67	1.00	2.60	72.96	18.27	91.23	88.57
8	S51801	뱅크	당연	대구	동구	7.00	0.00	7.00	6.00	5.00	7.00	7.00	5.00	5.25	6.00	5.00	3.00	3.00	3.00	3.00	3.00	3.00	0.00	1.80	1.67	75.25	15.47	90.72	88.07
9	S42601	마켓	당연	대구	중구	7.00	3.00	7.00	6.00	5.00	7.00	7.00	4.00	4.00	6.00	4.00	3.00	3.00	2.25	3.00	2.25	3.00	1.00	2.27	2.40	73.75	16.92	90.67	88.03
10	S04501	뱅크	당연	대구	동구	7.00	0.00	7.00	4.80	7.00	5.00	7.00	5.00	5.25	6.00	5.00	3.00	3.00	3.00	3.00	3.00	3.00	1.42	1.60	2.13	73.05	17.15	90.20	87.57
11	S47001	마켓	임의	대구	남구	7.00	3.00	7.00	6.00	5.00	7.00	7.00	4.00	4.00	6.00	4.00	3.00	3.00	3.00	3.00	3.00	3.00	1.50	1.53	2.67	72.25	17.70	89.95	87.33
12	S47201	마켓	임의	대구	북구	7.00	3.00	7.00	6.00	4.00	7.00	5.60	4.00	5.25	6.00	4.00	3.00	3.00	3.00	3.00	3.00	0.83	1.67	2.27	72.85	16.77	89.62	87.01	
13	S58501	뱅크	임의	대구	달서구	7.00	0.00	7.00	5.83	7.00	3.50	7.00	5.00	5.25	6.00	5.00	3.00	3.00	3.00	3.00	3.00	0.50	1.47	1.87	71.14	15.83	86.97	84.44	
14	S05401	뱅크	임의	대구	달성군	7.00	0.00	7.00	6.00	0.00	7.00	5.60	5.00	3.50	6.00	5.00	3.00	3.00	3.00	3.00	3.00	1.67	2.73	2.67	67.10	19.07	86.17	83.66	
15	S04701	뱅크	당연	대구	북구	7.00	0.00	7.00	5.40	7.00	5.00	5.60	5.00	5.25	6.00	5.00	3.00	3.00	2.75	3.00	2.75	3.00	0.00	1.93	1.93	70.25	15.87	86.12	83.61
16	S42501	마켓	당연	대구	달서구	7.00	3.00	7.00	2.40	7.00	5.00	7.00	4.00	4.00	6.00	4.00	3.00	3.00	3.00	3.00	3.00	1.58	2.07	1.67	67.92	17.07	84.98	82.51	
17	S61601	뱅크	임의	대구	동구	7.00	0.00	7.00	6.00	4.00	7.00	7.00	5.00	3.50	6.00	5.00	3.00	3.00	3.00	3.00	3.00	0.00	0.80	1.50	70.17	14.30	84.47	82.01	
18	S05001	뱅크	임의	대구	수성구	7.00	0.00	7.00	6.00	4.00	7.00	5.60	5.00	3.50	6.00	5.00	3.00	3.00	3.00	3.00	3.00	1.50	0.00	2.20	69.10	14.70	83.80	81.36	
19	S04801	뱅크	임의	대구	북구	7.00	0.00	7.00	6.00	0.89	7.00	5.60	5.00	5.25	6.00	5.00	3.00	3.00	3.00	3.00	3.00	0.83	0.93	0.93	65.24	14.70	79.94	77.61	
20	S49501	뱅크	임의	대구	수성구	4.00	5.50	0.00	6.00	0.00	5.20	0.00	5.60	3.00	3.50	6.00	2.00	5.00	6.00	3.00	2.25	0.75	0.00	0.80	1.27	51.80	11.07	62.87	61.04
					최소값	4.00	5.50	0.00	2.40	0.00	4.67	0.00	5.60	(3.00)	7.00	6.00	(5.00)	3.00	3.00	2.25	0.75	0.00	0.80	0.93	51.80	11.07	62.87	61.04	
					최대값	7.00	6.00	3.00	7.00	5.00	7.00	5.00	7.00	(5.00)	4.99	6.00	(5.00)	6.00	3.00	3.00	3.00	3.00	2.67	3.67	3.93	76.60	21.87	98.12	95.26
					평균	6.85	5.98	1.05	5.92	3.48	6.71	4.60	6.37	(4.85)	0.86	0.00	(4.65)	5.60	3.00	2.83	2.81	1.11	2.04	2.31	71.16	17.09	88.25	85.68	
					표준편차	0.67	0.11	1.47	0.99	1.69	0.67	1.18	0.71	(0.55)	0.86	0.00	(0.90)	0.99	0.00	0.30	0.59	0.89	0.88	0.80	5.52	2.51	7.50	7.28	

10. 울산지역 평가 결과

순위	코드 번호	사업장 일반 현황		사업장		차량/냉장고 보유 및 관리	관장 유무 (현장 관리 담당)	진단 인력 확보 수준	보조 인력 활용 수준	직원의 교육 참여 수	직원의 근무 여건	기부 식품 등의 위생 관리	FMS 활용도	기부 식품 등의 배분의 적절성	기부 식품 등의 자유로운 사용	기부 자(자) 관리 수준	행장 문서 및 정표 관리의 적절성	사업 자체의 적절성	예산 관리 수준	운영 위원회 운영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 목표의 실현도	기부 식품들 접수 실적	기부 식품들 배분 실적	법적 기준 충족 (75점) + (간접점 3점)	사업 운영 기록지 합계 (25점)	총점 (108점)	100점 환산 점수	
				신규 유형	명칭																								지역
		뱅크/마켓	시도 (광역시)	시군구 (기초)	평가 지표 점수																								가중치
1	S07901	뱅크	울산	동구	동구푸드뱅크	7.00	0.00	2.40	5.00	3.93	5.00	5.60	5.00	6.00	5.00	5.00	6.00	3.00	3.00	1.20	3.00	2.25	3.87	3.80	67.18	20.12	87.30	84.76	
2	S30402	마켓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나눔푸드마켓	7.00	3.00	7.00	5.00	4.73	3.50	5.60	3.60	6.00	4.00	4.00	6.00	3.00	3.00	3.00	3.00	0.00	2.33	2.33	70.18	16.67	86.85	84.32	
3	S08001	뱅크	울산	북구	북구푸드뱅크	7.00	0.00	7.00	3.94	6.00	5.00	7.00	5.00	6.00	3.50	5.00	6.00	3.00	3.00	1.20	0.75	1.00	2.00	2.07	72.69	13.02	85.71	83.21	
4	S08101	뱅크	울산	울주군	울주군푸드뱅크	7.00	0.00	5.10	1.00	4.33	5.00	7.00	5.00	6.00	4.50	5.00	6.00	3.00	3.00	1.05	3.00	0.50	2.80	2.93	65.43	16.28	81.72	79.34	
5	S30401	뱅크	울산	남구	남구나눔푸드뱅크	2.25	0.00	6.00	5.00	4.73	2.00	5.60	4.50	6.00	3.50	5.00	6.00	3.00	3.00	3.00	3.00	2.25	0.00	1.87	1.67	61.33	14.78	76.12	73.90
6	S07801	뱅크	울산	남구	남구푸드뱅크	6.50	3.50	6.00	2.00	4.00	2.00	2.80	5.00	6.00	1.33	1.67	6.00	1.20	2.10	0.00	0.00	0.00	1.93	1.60	52.05	6.83	58.88	57.17	
7	S36701	뱅크	울산	중구	아름다운푸드뱅크	2.25	0.00	6.00	4.00	6.00	0.00	4.20	5.00	6.00	2.00	3.75	3.00	3.00	1.20	1.95	0.00	0.00	3.67	2.33	45.70	12.15	57.85	56.17	
8	S61801	뱅크	울산	북구	나눔과기쁨울산푸드뱅크	3.50	5.00	5.54	0.00	4.33	0.00	2.80	5.00	6.00	2.00	2.50	3.00	0.70	0.00	0.00	0.00	0.00	1.40	1.80	43.17	3.90	47.07	45.70	
		최소값				2.25	0.00	2.40	0.00	3.93	0.00	2.80	(4.50/3.60)	3.50	6.00	(1.33/4.00)	3.00	0.70	0.00	0.00	0.00	0.00	1.40	1.60	43.17	3.90	47.07	45.70	
		최대값				7.00	3.00	7.00	5.00	6.00	5.00	7.00	(5.00/4.00)	5.25	6.00	(5.00/4.00)	6.00	3.00	3.00	3.00	3.00	3.00	3.87	3.80	72.69	20.12	87.30	84.76	
		평균				5.31	4.69	5.63	3.24	4.76	2.81	5.08	(3.12/4.93)	4.59	6.00	(3.12/4.00)	5.25	2.49	1.43	1.50	0.47	2.48	2.32	59.72	12.97	72.69	70.57		
		표준편차				2.23	2.07	1.46	1.98	0.82	2.14	1.66	(0.19/0.00)	0.91	0.00	(1.38/0.00)	1.39	0.96	1.13	1.17	1.45	0.81	0.89	0.74	11.33	5.34	15.78	15.32	

**부록 3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현장평가 SHEET**

부록 3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현장평가 SHEET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Code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	----	----------------------	----------------------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현장평가 SHEET 기초푸드마켓(당연신고사업장)

사업장 명	
지역	_____ (시.도, 시.군.구)

평가수행 확인서

◎ 사업장 명 _____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호(2018.1.10),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구 분	성 명	확 인 (서명)
현장평가위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사업장 대표자		

간사(광역푸드뱅크 담당자) 참석 여부 : 성명 _____ 서명 _____

※ 현장평가위원과 사업장 대표자가 현장평가를 수검함에 있어 현장평가를 종료 또는 계속 진행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당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Tel : 02) 6277-3606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일반현황

◎ 사업장 소재지 및 유형

사업장명 (공식명칭)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지역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지역번호 : 팩스번호 :
법인유형	<input type="checkbox"/> 1)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2)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3)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4) 학교법인 <input type="checkbox"/> 5) 종교법인 <input type="checkbox"/> 6) 의료법인 <input type="checkbox"/> 7) 기타(개인 등)		

◎ 전담인력 및 담당(겸직)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18년 7월 말 기준)

자격증	사회복지사				계
	1급	2급	3급	자격증 없음	
전담인력 (명)					
담당(겸직)인력 (명)					

◎ 재정 현황('18년 7월 말 기준)

세입.세출 현황			
세입 총액			세출 총액
지방비	후원금 등	소 계	원
원	원	원	
인건비 총액		사업비 총액	운영비 총액
원		원	원

※ 2018년 예산서 기준

◎ 기부자(처) 현황('18년 7월 말 기준)

기부자(명)	기부업체(개소)	합계

◎ 이용자 현황('18년 7월 말 기준)

* 개인이용자(가정/명)

개인 구분	긴급구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 저소득층	합계
가정 수(개)					
인원 수(명)					

* 단체이용자(개소/명)

단체 구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기타 시설	합계
단체 수(개소)				
인원 수(명)				

※ 인원수는 현원 기준

◎ 사업장 시설장비 보유 현황('18년 7월 말 기준)

구분	냉장(냉동)차량 (연식/대수)	냉장(냉동)시설(ℓ)	식품보관창고(m ²)	푸드마켓 매장면적(m ²) (푸드마켓만 해당)	비고
보유현황	___ 년도/ __ 대	___ ℓ	___ m ²	___ m ²	

■ 기초푸드마켓(당연신고사업장) 평가지표체계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평가지표명	지표유형	지표번호 (문항번호)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마켓A-1-1-1-1 (문1)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정량/정성	마켓A-1-1-1-2 (문2)	6
			독립매장 유무	정량	마켓A-1-1-1-3 (문3)	3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정량	마켓A-1-2-1-1 (문4)	6+(1)
			보조인력 확보수준	정량	마켓A-1-2-1-2 (문5)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정량	마켓A-1-2-1-3 (문6)	6+(1)
			직원의 근무여건	정성	마켓A-1-2-1-4 (문7)	5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 위생관리	정성	마켓A-1-3-1-1 (문8)	7
			FMS 활용도	정성	마켓A-1-3-1-2 (문9)	4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 배분의 적절성	정성	마켓A-1-4-1-1 (문10)	7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정성	마켓A-1-4-1-2 (문11)	6
			기부자(처) 관리수준	정성	마켓A-1-4-1-3 (문12)	4
			이용자 관리수준	정성	마켓A-1-4-1-4 (문13)	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정성	마켓A-1-4-1-5 (문14)	6
가중치 소계						75+(3)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량	마켓A-2-1-1-1 (문15)	3
			예산관리 수준	정성	마켓A-2-1-1-2 (문16)	3
			운영위원회 운영	정성	마켓A-2-1-1-3 (문17)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홍보의 적극성	사업홍보의 적극성	정량	마켓A-2-1-2-1 (문18)	3
			사업교류 협력도	정성	마켓A-2-1-2-2 (문19)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 접수실적	정량	마켓A-2-2-1-1 (문20)	5
			기부식품 배분실적	정량	마켓A-2-2-1-2 (문21)	5
가중치 소계						25+(3)
지표 수 계						20
가중치 총계						100+(3)

1.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냉동 또는 냉장 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보유한 운반차량의 전국푸드뱅크 운반차량 도색 예시 기준에 따른 도색 여부 (기부처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업체에서 도색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예외 적용)		① 기준에 따라 도색이 되어 있다. ② 기준에 따라 도색이 되어있지 않다. ③ 예외에 해당 - 사유 :
1,000ℓ 이상 전용 냉장(냉동)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용량 ()ℓ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온도계 정상작동 여부 확인)	운반차량	① 예 ② 아니오
	냉장·냉동시설	① 예 ② 아니오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냉장고 10℃이하, 냉동고 -18℃이하로 유지)	운반차량	① 예 ② 아니오
	냉장·냉동시설	① 예 ② 아니오
운반차량, 냉장시설, 냉동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와의 정기점검 제외)	운반차량	① 예 ② 아니오
	냉장·냉동시설	① 예 ② 아니오
정성평가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적재고의 상태가 청결하고 위생적입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냉장(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2.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보관창고 보유 여부		① 16.5㎡ 이상 ② 16.5㎡ 미만 ③ 없음	면적 ()㎡
단독사용 여부 (단,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독사용으로 인정)		① 단독 사용 ② 겸용 사용	
정성평가	보관창고의 주위 및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방습, 방서 등에 필요한 환기구, 제습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기부식품 보관 시 적정량으로 바닥과 이격거리(20cm)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있습니까? (파레트 랙이 설치된 경우 10cm이상)	① 상 ② 중 ③ 하	

3. 독립매장 유무

사업주체의 사업장과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4. 전담인력 확보수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월수 합계
전담직원	인원				
	인건비 지급 개월수				
담당(겸직)직원	인원				
	인건비 지급 개월수				

5. 보조인력 활용수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월수 합계
보조인력	인원				
	40시간 이상 개월수				

6.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구분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관리교육	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기타교육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2015년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2016년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2017년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① 이수 ② 미이수

7. 직원의 근무여건

전담직원의 부재(휴가) 시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 다양한 교육연수, 인센티브 제도 등)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8.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부식품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정기적(최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기부식품 보관 시 투명한재용기 사용 등 내용물을 육안으로 즉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장시점	① 예 ② 아니오
보관 중이거나 제공할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현장평가 시 보유 식품이 있는 경우 20개 표본 무작위 추출 확인)	현장시점	① 예 ② 아니오
식품사고 등을 대비하여 보건소, 지자체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현장시점	① 예 ② 아니오
전담직원, 담당(경직)직원, 보조인력 등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은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현장시점	① 예 ② 아니오

9. FMS 활용도

FMS를 통해서 영수증 증빙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FMS 입력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고 오류가 없습니까? (2018년 자료 무작위 샘플 10개 조사 : 가능한 1월~6월 자료 샘플)	현장시점	① 샘플 10개 모두 일치. ② 샘플 10개 중 8~9개 일치 ③ 샘플 10개 중 7개 이하 일치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 기부자·이용자 정보에 대한 FMS 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8년 자료 무작위 샘플 10개 조사 : 가능한 1월~6월 자료 샘플)	현장시점	① 샘플 10개 모두 일치. ② 샘플 10개 중 8~9개 일치 ③ 샘플 10개 중 7개 이하 일치

10.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장부상의 이용자에게 실제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2017년 자료 무작위 샘플 5개 확인)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이용자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주기적(1년 이하 단위: 6개월/9개월/1년 등)으로 이용자를 교체하고 있습니까?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모집한 기부식품의 80% 이상을 배분하고 있으며,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충족해야함)	2017년	80% 이상 배분	① 예 ② 아니오
		매주 3회 이상	① 예 ② 아니오
		매주 60인 이상	① 예 ② 아니오
우선지원대상, 배분제외 및 금지대상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지침 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까?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11.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현장시점	①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② 대가를 받고 있다
-----------------------	------	-----------------------------------

12. 기부자(처) 관리수준

신규 발굴 기부자(처) 수	2015년	기업(법인) : ()개 개 인 : ()명
	2016년	기업(법인) : ()개 개 인 : ()명
	2017년	기업(법인) : ()개 개 인 : ()명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부자(처)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장기기부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부협약 체결/갱신, 표창장 수여, 감사서신, 전국대회 공적조사 등)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기부자(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습니까? (기부자와의 만남, 간담회, 기부자 설문조사 등)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13. 이용자 관리수준

신규 발굴 이용자 수	2015년	단 체 : ()개 개 인 : ()명
	2016년	단 체 : ()개 개 인 : ()명
	2017년	단 체 : ()개 개 인 : ()명
개인이용자와 단체이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까? (판매방지 스티커 부착, 배분 시 취급주의사항 배포 등)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적인 제도나 절차가 있습니까? (고객소리함,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와의 만남 등)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1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접수문서대장,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홈페이지(홈페이지 없을 시 지자체 및 광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블로그/SNS)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까? ※ 개인명의 블로그/SNS는 인정되지 않고, 사업장 명으로 관리되어야 함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15. 사업계획의 적절성

<p>연단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까?</p> <p>① 기관소개 : 설립목적, 주요사업, 조직체계 등</p> <p>②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p> <p>③ 설치·운영 사업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현황 (3년 이내 자료)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 (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후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p>④ 사업예산 계획</p> <p>⑤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등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p>	2015년	<p>① 계획을 충실히 수립</p> <p>②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없음(1~2개 부족)</p> <p>③ 상당부분 내용이 부실하거나 없음(3~4개 부족)</p> <p>④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또는 5개 이상 항목 부족</p>
	2016년	<p>① 계획을 충실히 수립</p> <p>②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없음(1~2개 부족)</p> <p>③ 상당부분 내용이 부실하거나 없음(3~4개 부족)</p> <p>④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또는 5개 이상 항목 부족</p>
	2017년	<p>① 계획을 충실히 수립</p> <p>②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없음(1~2개 부족)</p> <p>③ 상당부분 내용이 부실하거나 없음(3~4개 부족)</p> <p>④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또는 5개 이상 항목 부족</p>

16. 예산관리 수준

연단위의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자부담 포함)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회계처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까?	2015년	① 예	② 아니오
	2016년	① 예	② 아니오
	2017년	① 예	② 아니오

17. 운영위원회 운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②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③ 아니오	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②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③ 아니오	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②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③ 아니오
운영위원회에서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만 다루어졌습니까?	① 예 ② 부분적으로만 논의	① 예 ② 부분적으로만 논의	① 예 ② 부분적으로만 논의
운영위원회(혹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운영위원회(혹은 이사회)의 위원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구성되어 있거나 지침이 없을 경우 제공자, 기부자, 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사업계획서가 수반된 운영위원회(혹은 이사회)의 운영이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업에 반영하거나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8. 사업홍보의 적극성

사업 홍보 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건	()건	()건	()건

19. 사업 교류협력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푸드뱅크와 교류 실적 (광역푸드뱅크의 기초사업장에 대한 이관 지원은 교류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특별사업 지원 실적 (지자체의 기능보강비(차량, PC, LED, 현장기구 및 시설 등 지자체 지원)는 특별사업 지원에 포함)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관련 단체, 기타 법인 등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및 행 사 실적(운영주체에서 진행되는 홍보실적 불인정)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기초사업장 간의 협력한 실적 (기초사업장간 이관실적은 인정)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① 상 ② 중 ③ 하 교류 횟수 ()건
<p>다음의 권고기준은 참고로만 활용고 사업장의 특성이나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권고기준 : 광역푸드뱅크와 교류 실적 평균 20~30건 (상 : 20건 이상, 중 : 5건 이상, 하 : 5건 미만) 지자체 협력 실적/유관기관 협력 실적 평균 5~6건 (상 : 10건 이상, 중 : 3건 이상, 하 : 3건 미만) 기초사업장 간 협력 실적 평균 40~50건 (상 : 30건 이상, 중 : 10건 이상, 하 : 10건 미만)</p>			

20.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접수 환가액 (원)			
사업비 (원) (단, 기능보강비를 제외한 세입·세출결산 기준)			
이용자 수 (명)			
관할지역 인구 (명)			

21.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배분 환가액 (원)			
사업비 (원) (단, 기능보강비를 제외한 세입·세출결산 기준)			
이용자 수 (명)			
관할지역 인구 (명)			

**부록 4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이용자 및 평가위원 만족도**

부록 4 :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이용자 및 평가위원 만족도

■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

이용자 만족도의 조사는 411개 사업장별 5명의 이용자들을 임의로 할당·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903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통계 처리하였다. 이용자 만족도에 참여한 각 사업장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푸드뱅크는 1,322명(69.5%), 기초푸드마켓은 581명(30.5%)이었다. 기초푸드뱅크 1,322명 중 당연사업장은 594명(44.9%), 임의사업장은 728명(55.1%)이었다. 그리고 기초푸드마켓은 581명 중 당연사업장은 281명(48.4%), 임의사업장은 300명(51.6%)이었다.

[표 부록4-1] 사업장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 현황

구분		명		%	
유형	기초푸드뱅크	당연	594	44.9	31.2
		임의	728	55.1	38.3
		소계	1,322	100	69.5
	기초푸드마켓	당연	281	48.4	14.8
		임의	300	51.6	15.8
		소계	581	100	30.5
계		1,903			100.00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록3-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자 709명(37.3%), 여자 1,135명(59.6%), 무응답 59명(3.1%)이었으며, 기초푸드뱅크는 남자 484명(36.6%), 여자 795명(60.1%), 무응답 43명(3.3%)이었고, 기초푸드마켓은 남자 225명(38.7%), 여자 340명(58.5%), 무응답 16명(2.8%)이었다. 기초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약 6:4의 비율로 더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부록4-2]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구분		계		기초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당연		임의		소계		당연		임의		소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자	709	37.3	233	39.2	251	34.5	484	36.6	102	36.3	123	41.0	225	38.7
	여자	1,135	59.6	334	56.2	461	63.3	795	60.1	170	60.5	170	56.7	340	58.5
	무응답자	59	3.1	27	4.5	16	2.2	43	3.3	9	3.2	7	2.3	16	2.8
	계	1,903	100.0	594	100.0	728	100.0	1,322	100.0	281	100.0	300	100.0	581	100.0
연령대	10대 이하	80	4.2	29	4.9	33	4.5	62	4.7	6	2.1	12	4.0	18	3.1
	20대	65	3.4	20	3.4	29	4.0	49	3.7	6	2.1	10	3.3	16	2.8
	30대	151	7.9	49	8.2	69	9.5	118	8.9	12	4.3	21	7.0	33	5.7
	40대	314	16.5	99	16.7	121	16.6	220	16.6	51	18.1	43	14.3	94	16.2
	50대	390	20.5	129	21.7	129	17.7	258	19.5	63	22.4	69	23.0	132	22.7
	60대	343	18.0	114	19.2	118	16.2	232	17.5	56	19.9	55	18.3	111	19.1
	70대	346	18.2	99	16.7	133	18.3	232	17.5	57	20.3	57	19.0	114	19.6
	80대 이상	214	11.2	55	9.3	96	13.2	151	11.4	30	10.7	33	11.0	63	10.8
계	1,903	100.0	594	100.0	728	100.0	1,322	100.0	281	100.0	300	100.0	581	100.0	
이용기간	1년미만	776	40.8	240	40.4	213	29.3	453	34.3	151	53.7	172	57.3	323	55.6
	1년이상 2년미만	428	22.5	145	24.4	173	23.8	318	24.1	53	18.9	57	19.0	110	18.9
	2년이상 3년미만	242	12.7	68	11.4	119	16.3	187	14.1	31	11.0	24	8.0	55	9.5
	3년이상 5년미만	234	12.3	68	11.4	120	16.5	188	14.2	21	7.5	25	8.3	46	7.9
	5년이상 10년미만	174	9.1	51	8.6	85	11.7	136	10.3	19	6.8	19	6.3	38	6.5
	10년이상	49	2.6	22	3.7	18	2.5	40	3.0	6	2.1	3	1.0	9	1.5
계	1,903	100.0	594	100.0	728	100.0	1,322	100.0	281	100.0	300	100.0	581	100.0	

※지역별 당연 및 임의사업장 구분 비교는 지역 내 소수 사업장의 정보보호를 위해 생략함.

응답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58.5세였으며, 기초푸드뱅크는 57.9세, 기초푸드마켓은 59.8세로 기초푸드마켓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1.9세 정도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모두 40대(16.5%), 50대(20.5%), 60대(18.0%), 70대(18.2%) 이용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80대 이용자 비율도 11.2%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이용기간은 전체 사업장 평균 25.3개월이었으며, 기초푸드뱅크는 28.0개월(당연사업장 25.7개월, 임의사업장 29.8개월), 기초푸드마켓은 19.3개월(당연사업장 21.9개월, 임의사업장 16.9개월)로 기초푸드뱅크의 이용기간이 8.7개월 더 길게 나타났다. 푸드뱅크의 당연 및 임의사업장을 비롯하여 푸드마켓의 당연 및 임의사업장 모두 ‘1년미만’ 또는 ‘1년이상 2년미만’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용해 온 응답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만족도 분석결과

총 7개 세부항목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Cronbach' α =0.832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척도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기초푸드뱅크의 당연(평균 4.39점) 및 임의(평균 4.37점) 사업장은 물론이고 기초푸드마켓의 당연(평균 4.14점)과 임의(평균 4.32점) 사업장 모두 4.00점을 초과하는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는데, 두 유형의 각 사업장 모두 'Q6)귀하께 식품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태도에는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Q5)귀하가 이용하고 계시는 식품의 유통기한은 만족하십니까?'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부록4-3] 이용자 만족도 기술통계

(단위 : 점)

구분	전체	Cronbach' α	기초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당연	임의	전체	당연	임의	전체
Q1) 기부식품을 제공받은 후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54	0.803	4.52	4.58	4.55	4.53	4.49	4.51
Q2) 귀하가 이용하는 식품의 신선도는 만족하십니까?	4.31	0.790	4.27	4.31	4.29	4.33	4.35	4.34
Q3) 귀하가 이용하는 식품의 양적 정도는 만족하십니까?	4.33	0.874	4.29	4.43	4.37	4.15	4.30	4.23
Q4) 귀하가 이용하는 식품의 종류에는 만족하십니까?	4.23	0.791	4.22	4.29	4.26	4.18	4.16	4.17
Q5) 귀하가 이용하고 계시는 식품의 유통기한은 만족하십니까?	3.98	0.801	4.03	3.88	3.95	4.07	4.03	4.05
Q6) 귀하께 식품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태도에는 만족하십니까?	4.67	0.815	4.63	4.71	4.68	4.62	4.67	4.65
Q7) 푸드뱅크를 통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4.54	0.794	4.53	4.57	4.55	4.50	4.53	4.52
만족도 전체	4.37	0.832	4.36	4.40	4.38	4.34	4.36	4.35

■ 현장 평가위원 만족도 결과

현장 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총 411개소 가운데 ‘학계 평가위원’ 만족도에 응답한 사업장은 336개소(81.75%)였으며, ‘실무자 평가위원’ 만족도에 응답한 사업장은 365개소(88.81%)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장평가위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계는 평균 4.65점, 현장실무자는 평균 4.64점으로 매우 높았다. 6개 문항 중에서 학계와 실무자 모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평가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시설평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까?’ 로써 현장평가위원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사업장들의 만족수준이 매우 높았다(학계 4.79점, 실무자 4.78점).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장평가위원들은 많은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현장평가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록 다른 사항들과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항목 ‘평가위원은 비권위적인 자세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까?’ 는 학계와 현장실무자 각각 평균 4.47점과 평균 4.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부록4-4]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기술통계

(단위 : 점)

항목	평균	
	학계	실무자
Q1) 평가위원은 평가지표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평가에 임하였습니까?	4.66	4.70
Q2) 평가위원은 정해진 타임스케줄을 준수하며 평가에 임하였습니까?	4.63	4.67
Q3) 평가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시설평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까?	4.79	4.78
Q4) 평가위원은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하였습니까?	4.71	4.69
Q5) 평가위원은 비권위적인 자세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까?	4.47	4.41
Q6) 현장평가위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4.64	4.61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전체	4.65	4.64

2018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결과보고서

인 쇄 2018년 11월

발 행 2018년 11월

연구기관 한국정책평가연구원(<http://www.kipe.re.kr>), 02) 6277-3600

발 행 인 서 상 목

발 행 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04195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2층

전화 02-2077-3989 Fax 02) 718-3384
